

Rhee Syng Man Government and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ong-Sik Sul and Jae-Hee Yoon*

目 次

| | |
|---|--|
| I. Introduction | IV. Foreign Assistance and Korea's Economy |
| II. Farmland Reform and Redistribution of Wealth | V.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
| III. Korean War and Wartime Economy | VI. Conclusions |

I. Introduction

During the past 50 years since the 2nd World War, Korea(South Korea) saw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coming the status of a underdeveloped country characterized by illiteracy, poverty and diseases, Korea's economy has matured to an extent that it is about to be admitted to OECD, an advanced country group.

The per capita GNP during the early development stage of Korea's economy was less than \$100; however, as of 1995, the per capita GNP stands at \$ 10,000. During the same period, the total amount of exports exceeded \$100 billion from the old \$100 million.

Such enormous economic development was realized amidst changes in political situation. Economic development continued throughout the period starting from Rhee Syng Man government(Rhee government) to Park Jung Hee government,

* The authors are professors of department of Industrial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and department of Trade and Distribution, Anyang University, respectively.

Chun Doo Hwan government, Roh Tae Woo government and to current Kim Young Sam government (Of course, there were transitional governments in between, such as the Chang Myon government and Choi Kyu Ha government).

Effects on economic development differ from each other, however, depending on government.

We can say that while Park Jung Hee government accomplished economic growth, Rhee government laid foundation for the economic growth; and, while Chun Doo Hwan government realized economic stabilization, Roh Tae Woo government realized economic democratization.

Despite the above achievements, former presidents showed negative images in that we can say ex-president Rhee Syng Man was a dictator; the ex-president Park Jung Hee had prolonged one-man rule; ex-president Chun Doo Hwan was involved in the 5th Republic scandals, and ex-president Roh Tae Woo was involved in the scandal of slush funds and other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s.

Based on such argument, this paper attempts to discuss what influence th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made by Rhee Syng Man,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on economic development.

The structur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Section II analyzes and evaluates the policies of farmland reform and redistribution of wealth. Section III presents wartime economy. Section IV analyzes foreign assistance and Korean economy. Section V discusses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A final section brings together the main conclusions.

II. Farmland Reform and Redistribution of Wealth

The Rhee government established a variety of systems to realize political foundation and stability, and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ose systems, the farmland reform was a systematic foundation and political subject selected as a top-priority task.

The farmland reform is meaningful in that property was to be re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so called the “principle of tillers should own land” under which the ownership of land is to be granted to actual farmers.

Laws related to such farmland reform were enacted by the Constitutional Assembly on Jun. 21, 1949 amidst ups and downs since 1945, and were promulgated in Mar., 1950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 and revision procedures.

According to Farmland Reform Law, first, land is to be distributed to farmers in principle, however, the limit on farmland ownership for 1 farm household is 3 Jungbos(1 jungbo = 9917.4m²) : second, the Farmland Committee shall accept, and preferentially distribute to farmers, the portion of farmland and land reverted to the government(i.e. the farmland illegally seiz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since 1876) exceeding 3 jungbos from land owners ; and, third,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for the portion of land exceeding 3 jungbos which was compulsorily bought over to farmers, the government will pay land owners during the forthcoming 5 years in installments in accordance with deduction rates.

Such farmland reform has been realized based o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The desire of farmers to own farm land is, first of all,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Of course, the convenience enjoyed by land owners derives from the value of land resulting from income, such as the land rent. However, as to social position of land owners, psychological satisfaction should be more significant in non-monetary earnings obtained from owning land, rather than from the earning born from the land rents.

In such aspects, the significance behind the farmland reform was to impartially redistribute land to petty farmers exposed to economic compulsion and noneconomic compulsion, and improve their social position. In fact, after farmers possessed title to farm land, their political power has been expanded and opportunities of participating in politics were broadened. Anyway, the farmland reform became conditions essential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erms of macroscopic view.

The transfer of farmland ownership to farmers from land owners provided a momentum for farmers to accumulate agricultural surplus. While farmers eliminated the action of non-economic power, they were able to create agricultural surplus from the land rent not required to pay.

The agricultural industry of an underdeveloped country has realized revolutionary improvement in land productivity since the farmland reform. Many economists, in

fact, expressed their opinions that the farmland reform had induced increase in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leading to food self-reliance, and further improved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 This has been proven by the empirical fact that countries which successfully carried out farmland reform, such as Egypt, Taiwan and Iran, including Korea, have acquired social benefits, i.e. agricultural production increase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mprovement, through the redistribution of farmland ownership.

There were also many side effects in relation to farmland reform when we view from the short term period. Prices of industrial products jumped continuously due to persistent inflation, and farmers were unable to escape from the deficit farm operation as the price of farming materials, such as fertilizers, also hiked. The farmer's debt continued to pile up, leading to the loss of farmers' intention to produce, and more farmers sold off their land to move to cities. Thus, purchase of farmland by usurers began to prevail again, leading to the revival of the illegal tenant-farming system. According to surveys conducted by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s of the end of Mar., 1963, the number of nationwide tenant farmers, including those who concurrently cultivate own land, stood at 17%.

The reason, why rural economy failed to see development even after the farmland reform, and the centralization of land by non-resident land owners and the tenant-farming system prohibited by the Farmland Reform Law appeared again in rural economy, is that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were not equally implemented between cities and rural areas.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were concentrated on cities, and while cities were supported by the privileg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farm villages were forced to sacrifice for cities. With an aim to realize food self-reliance and grain price stabilization, government established the 1st 5-year agricultural production promotion plan in 1953 to increase food production. However, the increased production policies pursued by the government then was only an encouragement of increased production by the farmers' own capability, such as the improvement of cultivation method, expansion of farmland, seed improvement and concentrating on fertilizers, without making any significant investment in agriculture, such as the expansion of irrigation facilities or provision of agricultural financial support.

On the other hand, the farmland reform has greatly helped government achieve economic stabilization and operate finance effectively. Grain received in kind as compensation for the distributed farmland was used as military provisions or as other government-required grain; and, because the government assessed prices were less than prevailing market prices, it helped government greatly in the operation of finance and suppression of inflation. Furthermore, as shown by the meaning of farmland reform, it has constructed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farm economy by preventing part of farm products from being disposed of in the form of farm rents, contributing to converting the land owners' land to industrial capital. Of course, there were side effects and revival of tenant farming since the farmland reform was introduced, due to outbreak of the Korean war ; however, the farmland reform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move great burden required in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some economists point out limitations in the farmland reform while discussing counter relation between the size of farmland owned and efficiency. If efficiency increases the larger the scale of land owned, this argument can be said to be appropriate. However, if property and earnings are unequally distributed despite the fact efficiency is promoted according to the size of farmland, it can be described as nothing but another social costs.

In the case of Korea, the farmland reform, along with the established of related laws in 1949, attempted to prevent a few land owners from occupying farmland and to eliminate damage to tenant farming. In particular, the creation of owner farmers by means of regulations which prohibit owning more than 3 jungbos of land has sought to bring forth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socio-political stability. After 40 years since the farmland reform was first introduced, however, the farmland reform of today calls for changes in related systems and environment due to chan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decrease in agricultural population, and the agricultural technology improvement. This is because,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tillers should own land" is being destroyed with the number of tenant farmers on steady increase, and many farmers are leading unstable livelihood due to excessive burden of farm rents.

In a new open economic environment resulting from the advent of WTO system,

government is currently expediting the establishment of new farmland law with an intention to adjust the limitations on owning farmland and establishment of desirable farmland lease system. However, the new farmland system might induce appearance of non-resident land owners and their arrogance, and the premodern phenomena of hatred, such as revival of tenant farming system.

III. Korean War and Wartime Economy

President Rhee Syng Man, along with the inauguration of government, took office with an enormous duty to improve the old systems and policie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create foundation for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Rhee government met critical national crisis, the Jun 25 war, even before the government has taken root.

The Korean war, which lasted for 3 years from Jun. 25, 1950 to Jul. 27, 1953, totally destroyed the found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not to speak of personal and property damage.

The number of causalities, surprisingly, reached 4,000,000 which include approximately 1,500,000 in the case of South Korea and U.N., and approximately 2,500,000 for North Korea and Red China. This has caused drastic decrease in the number of superior human resources.

According to surveys conducted by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the property damage caused by the Korean war exceeded an amount as high as \$3 billion, while the GNP, too, saw a sudden decrease to the extent that the GNP, which stood at \$1,750,000,000 during the fiscal year 1949~50, dropped to \$1,380,000,000 during 1952~53.

To make matters worse, the war had destroyed social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s, bridges and power facilities, in addition to 600,000 houses. Such war damage, based on dollar values and the scale of GNP then, was so fatal that it shook the root of Korea's economy.

The Korean war and the people's painful wound cannot be healed simply by scolding the heads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invader. When we consider that the basic duty of the government i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first of

all, the Rhee government cannot evade criticism that it made critical, political mistake of failing to anticipate, or stop in advance, the June 25th incident. In fact, the Rhee government then had uncertain future with respect to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nation, and the Korean war can be said to have broken out under such background.

In 1949, the 2nd year of Rhee government's inauguration, 60% of the government annual expenditures was in the red, as the money supply expanded by double compared with that of the end of U. S. military government, commodity prices also jumped by double. Moreover, Rhee Syng Man, who saw no chance of victory in the next election, requested postponement of election about the time when the term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expired but met with negative results due to pressure from the U. S. military side. The results of the election held on May 30, 1950 showed only 20 seats, among the total 270 seats, in favor of Rhee Syng Man, while there were 126 independent candidates elected, creating continuous political instability and providing part of the background behi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However, it is considered possible that we affirmatively evaluate the political efforts made by the Rhee government to manage the wartime economy in crisis into stabilization policies.

The economist of the century, J. M. Keynes, in his essay titled "How to pay for the war", said that strong military power must be equipped with to bring a war to victory, and it is possible through the creation of effective demand. The war expenses can only be financed through currency inflation, taxation increase and foreign loans. However, the slump in currency value, excessive tax burden on the part of people and high reliance on foreign loans cause damage to economic stabilization and shrink economic activities at private level, making it difficult to raises funds for the war expenditures. The economic theory is that economic stabilization is the very key to overcome economic crisis.

To operate wartime economy effectively, the Rhee government pursued stabilization in currency value through currency reform along with the increase in currency supply. As of Sep., 1950, the money supply increased by 72% compared with that of the pre-war time, and the net increase in total money supply during 1950~55 increased by as much as 12 times.

In order to seek currency stabilization during war time, the Rhee government changed currency several times, and implemented currency reform in Feb., 1953,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 purpose of such action was to maintain external and internal value of currency to eliminate wartime inflation and economic distortion factors.

Meanwhile, the wartime tax system was established as a political means aimed at raising the enormous amount of war expenses. The 1st tax reform implemented in Dec., 1950, resulted in the increase of all taxes by 4~100%.

As the tide of the war turned for the worse again in 1951 and economic order extremely disrupted leading to the intensified inflation, special tax law was promulgated in the same year in addition to establishing temporary land acquisition tax law, adding heavy tax burden to farmers. As a result, the wartime economy contributed to the shrinkage of production activities at private level.

Such short-term therapeutic political basis intended to bring the war to victory gave birth to a new requirement, along with the armistice signed in 1953, to convert the political basis to new policies seeking economic stabilization, war damag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industry following. We can say that, even though the efforts made by the Rhee government to heal the sore wound resulting from the Korean war had not seen significant results, certainly such efforts were the base manure leading to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since the 60's.

V. Foreign Assistance and Korea's Economy

It is true that the economic stabilization achieved by the Rhee was based on foreign assistance centered around the U.S.A.

Since the Korea's liberation, the U.S. provided more than \$3 billion economic assistance to Korea during the Rhee government age. In particular, the economic assistance provided by the U.S. up to 1961 since the armistice, reached some \$2,280,000,000, and most of it was used to heal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Thus, we could say that such economic assistance had served as lubricants for the restoration of production and livelihood facilities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economic reconstruction, and for effective circulation of national economy.

The economic assistance provided by the U.S.A. during that time wa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first, of the total assistance, more than 30% was food, and second, approximately \$2.5 billion comprising more than 80% of the total assistance was given in the form of end consumer goods. Thus, as pointed out in the preceding section, the economic aid provided by the U.S.A. had been used to seek economic stabilization rather than to seek economic growth.

Some people criticize that such characteristics of the assistance acted as reverse function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economy of Korea since its foundation had no basis of growth and, to make matters worse, the Korean war had totally destroyed the foundation based on which economic growth could have been achieved.

Thus, it is true that the U.S. economic assistance has contributed to the relief of the severe thirst in Korea's economy, and further to the formation of initial conditions required to realize economic growth.

It seems then the problem lay in the fact that the U.S. had misused food assistance as a means to dispose of surplus farm products, while, on the other hand, the excessive supply of food had ultimately caused stagnation in Korea's agriculture, and farmers' poverty. The U.S. bill P.L. 480(i.e. Farm product trading promotion and assistance law) promulgated in 1954 brought forth negative side of U.S. assistance. The U.S. government called this Food for Peace, however, the real purpose was to dispose of accumulated excessive farm product inventory as a means to solve the chronic agricultural panic existing since 1949. Such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occupied nearly 1/3 of the total U.S. farm product exports, and the majority of grain and dairy product export, in particular, was carried out using the government's assistance program funds.

The amount of the U.S. surplus farm products actually imported exceeded, by approximately 410,000 soks(unit of volume : 1 sok = 5.12 US bushels), the domestic food shortage estimated by the government as of 1957, by approximately 2,000,000 soks in 1958 and approximately 870,000 in 1959. Importation of such large amount of surplus farm products resulted in the drop of domestic farm product price and shrinkage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Furthermore, the importation of food grain, which cannot be produced in Korea or the supply of which is limited, changed domestic consumption structure, creating continuous demand for, and being continuously subordinated to, foreign farm products.

Looking back upon the past, such policy of importing surplus farm products failed to achieve industrialization for the economic stabilization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creating a burden that the government, as developed since the 60's, select industrialization at the sacrifice of the farming village economy.

Despite the argument held with respect to such reverse function, it is necessary to restress the need to affirmatively evaluate the fact that the U.S. economic assistance had greatly contributed to the economic stabilization under the Rhee government. Even some scholar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make affirmative evaluation to certain degree. This is proven by their arguments that "The U.S. assistance to Korea was the direct motive power which enabled Korea's economy to realize stabilization and quantitative growth, and the experience obtained from the industrialization realized during the 1950's had created foundation to advance to full-fledged industrialized society since the 1960's". If we look from another aspect, the Rhee government cannot escape from criticism that the aid-dependent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pursued by the Rhee government, had left political tasks of achieving independent development in Korea's economy to the Chang Myon government and to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V.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A famous college professor favorably appraises the achievements made by President Rhee Syng Man. He argues that "Because President Rhee, even during the maelstrom of war, was so enthusiastic about education to the extent that students were exempted from conscription, human resources, capable of pushing ahead economic growth during the 1960's, could have been created".

Of course it is true that the elements of economic growth lie in the size of production factors, such as capital and labor force, and productivity and technology improvement. However, to realize economic success, material resources supply and

system should be rearranged, supported by the intention to make progress and the knowledge and technology capable of implementing such progress.

Even L. Pie, a well-known political scientist, stated that people must possess modernization consciousness in order to be able to truly modernize a society. He added that such awareness of modernization is not produced spontaneously but through education.

Considering that education, as above, is an extremely important factor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 nation, we are obliged to appraise President Rhee Syng Man more affirmatively. We must remember we were unable to escape from the status of underdeveloped nation dubbed ignorance, poverty and diseases. What a difficult time it was when Korea did not have sufficient natural resources as other countries, and the market which stimulates growth was so narrow, coupled with the war's wound unbearably deep!

Under such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President Rhee Syng Man hurried to establish the systems, laws and regulations that were related to education, to accumulate and supply human resources through education, thereby providing momentum and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nment, since Korea's liberation, made every effort to realize, as top-priority policies, perfect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or elementary education. First, the Constitution stipulated "All people have rights to receive equal education, and at least, the element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and free of charge". The government then planned to perfect compulsory education system over 6 years starting from Jun., 1950.

Unfortunately, the plan was delayed due to the Korean war; however, full-scal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as the education law enforcement bylaws were promulgated in 1952.

As a result, the percentage of elementary school attendance which stood at approximately 64%, 1,570,000 students, at the time of Korea's liberation in 1945, jumped to 74.8%, 2,400,0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1948.

Even though school facilities were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and educational finance was very weak, compulsory education was implemen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elementary education population, and by 1959, 3,600,000 children

attended elementary schools presenting a 96.4% school attendance percentage.

Professor Kang Man Kil, in his book "Modern History of Korea", stated there were justifiable reasons behind such drastic increase in the education population, namely :

First, as the education suppression policy, such as the "policy to make ignorant people" implemented during the colonial days, came to a close, enthusiasm for education became intensified.

Second, educational open-door policy was realized in pace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age population and enthusiasm for education.

Third, the closed ruling-class-centered and the propertied-class-centered colleges of the colonial days were opened and liberalized.

And fourth, thanks to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granted to students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n war, and due to difficulty of getting job after Korea's liberation, particularly for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graduates, percentage of students entering into college increased.

Someone said, "Education is growth". And another contended, "Education is life. Education is the life itself rather than being a process of making preparation for life".

The government's educational policies after the 1960's were to expand middle and college education, concentrating particularly on college education on science and engineering to secure skilled and talented manpower. Of course, such policies also gave birth to many problems, such as the frequently changed education systems, craze for out-of-school studies resulting from people's excessive zeal for education, and social side effects of Woogol-tap(Sarcastic nickname for college) ; however, in the case of early development stage like the period of the Rhee government, it is true that the nation was founded by education.

According to comments made by OECD it is surprising that Korea's elementary education became totally generalized even when the Korea's GNP was at a level of only \$100. In addition, they said Korea's economic development was a rare example of success characterized by well educated work force.

However, the quantitative growth of education, continuously pursued after the Rhee government, served as an obstacle to its qualitative progress due to

people's excessive burdens on private tutoring costs, excessively crowded classrooms, and lack of adequate educa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further acting as new hindrances to the upgraded economic development.

VI. Conclusions

Someone stated that a corporation was one of the great inventions realized for the mankind. This is because, at a corporation where owning and management are separate, all members, such as managers, technicians and workers, are doing their best to achieve management results and high earnings through a variety of wisdom and strength, leading to the enterprise growth and capital accumulation,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Korea's economic growth was realized based on capitalism selected and maintained by the Rhee government since the Korea's Liberation.

Looking back over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e liberated country was forced to see division into the North and South immediately after Korea broke away from the Japanese colonial age. The direct cause of the sad division into the North and South was the Japan's colonial rule, while the indirect cause was the divided occupation by the U.S. and Russia.

Of course, there was a resolution that free election be held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centered around U.N., to form a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and that the U.S. and Russian military forces withdraw out of Korea, while joint efforts were being made continuously to establish unified country.

As noted by Professor Kang Man Kil, however, divided Korea was formed and national split determined as a result of the breakup between the left and right ideology emerged during the process of independence movement, the establishment of 38th parallel after the Liberation, the reality that the U.S. and Russian military forces occupied divided part of the country, and later by the maneuvers of political force taking advantage of foreign influence.

The Rhee government, founded under such situation, is being criticized for having brought forth the national division into the North and Sou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deological discord which persisted for 50 years since the div-

ision of Korean peninsula, and a variety of division costs. However, today when the issue of battle between the ideology of the left and right has been historically verified, we believe that the selection and maintenance of capitalistic system, without requiring further discussion, played the role of creating foundation for the Korea's economic growth, and that we could favorably appraise the achievements made by the Rhee government.

However, President Rhee Syng Man had to step down in the middle along with the Apr. 19th revolution occurred owing to Rhee's dictatorship, prolonged one-man rule, and corruptions, disclosing limitations that he failed to implement plans or policies to realize future-oriente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References

- Amsden, Alice H.,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Cho, S., *Theories and Realities of Korean Econom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7.
- Hong, S. Y., *Korean Economy and American Assistance*, Bak Young Sa, Seoul, 1962.
- Hunt, Diana, "Economic Theories of Development : An Analysis of Competing Paradigms", Harvester Wheatsheaf, London, 1989.
- Kang, M. K., *Modern History of Korea*, Changbi Publishers, Seoul, 1989.
-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40 Years-history of Korea's Economic Policy*, Seoul, 1986.
- Yoo, K. H. et al., *Modern Korean Economic Histor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eoul, 1981.

공맹사상과 유교자본주의*

The Confucian Thought and Capitalism

양 창 삼**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아시아적 가치 비판 |
| II. 유교의 정체성에 관한 비판 | IV. 공맹의 기본사상과 유교의 자본주의정신 |
| 1. 배려의 비판 | V. 공맹사상과 새로운 한국적 가치의 창출 |
| 2. 유교의 변혁주의 | VI. 맷는 말 |

I. 머리말

제임스 윌킨슨 세계은행 총재는 국제사회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순수한 경제적 측면 외에 사회적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로렌스 서머스 미재무부장관도 경제기적을 가져온 아시아 모델을 버리기보다는 잘 손질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서구적 경제모델을 강요하기에 앞서 아시아를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무엇이 먼저 작동해야 하는가를 일깨워 준다. 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공맹사상에 대한 접근은 필수적이다.

서양은 일본의 경제발전을 유가자본주의, 유교자본주의라 불렀다. 이것은 유교를 부정적으로만 보아왔던 서양의 인식이 다소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시아가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유교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유교가 과다평가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소평가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공자와 맹자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비록 중국 철학자이지만 우리의 사회제도와 사상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공자와 맹자를 통해 경제나 경영을 논한다는 것은 무척 생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유교사상은 실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형식을 만들어 갔다는 점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된 것임.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 교수

다. 우리 선조들은 여러 유가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생활의 기틀을 잡아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유가의 사상은 정치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문제는 공맹사상과 유교의 기본사상이 철저하게 개혁주의적이고 변혁적임에 비해 이것을 수용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그러한 면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상과 실제의 적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문제에 봉착하면서 서구로부터 이른 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라는 이름 아래 유교문화권 전체가 도마 위에 올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글은 공맹의 기본사상을 점검하고 그것이 왜곡 적용됨으로써 유교 뿐 아니라 아시아문화가 비판 받게 되었음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잊어버린 유교의 변혁주의적 성향을 회복한다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II. 유교의 정태성을 관한 비판

1. 베버의 비판

일찍이 독일의 사회경제학자 막스 베버는 유교문화권의 정태성을 문제 삼았다. 베버는 비교사회학적 관심에 따라 「종교사회학 논문집」을 펴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동양과 서양 사회의 주요한 차이를 이해하는데는 각각의 사회에 고유한 종교의 이해가 핵심적이라 보고, 정치·경제를 비롯한 여러 생활영역의 합리화 과정에 끼친 세계 종교들의 상이한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했다.

베버는 동양종교에 관한 연구에서 유교와 도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서구의 경우 금욕적 개신교의 윤리가 자본주의정신과 선택적 친화력을 지니고 자본주의의 팽창과 합리화에 기여한 여러 요소들중 하나로 기능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서구와 유사한 종교윤리의 부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유리한 물질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통주의의 질곡에서 벗어나 근대적 합리적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베버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친다(Weber, 1996).

첫째, 화폐제도·도시와 길드·봉건제도·친족제도·법제도 등을 김토해본 결과 중국의 사회구조 속에는 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혼합되어 있으며 아울러 물질적 구조적 특성이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함이 발견되었다.

둘째, 중국의 지배적 종교인 유교의 생활지침은 일관되게 전통주의적이며 개혁보다는 주어진 현실세계에 적응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대중 속에 널리 퍼져 있는 또 하나의 주도적 종교인 도교 또한 ‘내세지향적 신비주의’와 주술적 경향 때문에 유교의 전통지향성을 대체하여 혁신할 수 없다.

이러한 배비의 주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법론적으로 여러 시대의 자료를 넘나들며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 내용적으로 신유학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 기타 자질 구레한 자료의 오류 등이 흔히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전체적인 문제의식과 기본적인 통찰력은 여전히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비는 서구의 근대자본주의의 발전을 동태적인 개신교 윤리에서 찾고 있으며, 이러한 동태성을 유교문화권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다고 유교가 동태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유교의 근간을 이루는 공맹사상은 원래 사회개혁적 동태성이 담겨 있다. 문제는 유교의 개혁사상이 그 문화권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허만 칸이 유교에서 어떤 동태성을 찾으려 한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2. 유교의 변혁주의

유교는 기본적으로 변혁주의적이다. 공자가 살아있을 당시는 정치적으로 무질서하고, 경제적으로 불균등하며, 사회적으로 변화가 심한 혼돈의 시기였다. 우리도 격심한 혼돈 속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에 공자는 타락한 사회를 개탄하며 이를 바로 잡아보려고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의 개혁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인과 예와 같은 도덕적 항목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강한 정치적, 경제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공자의 사상을 담은 「논어」는 경영학적 측면에 대한 기여가 크다. 이 책은 일찍이 유가의 경전 역할을 해왔다.

공자 당시 그의 명성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었으나 당시의 시끄러운 세상은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일만한 위정자가 없었다. 그러나 공자는 이에 뜻을 굽히지 않고 학문과 철학에 정진하여 마침내 천리를 터득하게 되고, 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그의 사상은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에 파급되어 동양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다.

공자의 개혁사상은 ‘수신체가 치국평천하’로 나타난다. 이것은 작은 것과 큰 것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즉,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자기를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며, 천하를 잘 다스리려면 나라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라와 온 천하의 안온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개혁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의 다스림, 가정의 다스림, 그리고 조직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가가 기본적으로 정신수양이 갖추어져 있어야 올바른 기업정신과 기업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질적 자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자본이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다스림을 위해 그는 인(仁)과 덕(德), 예(禮)와 악(樂)의 정신을 강조한다. 특히 그의 인사상은 효행을 최고의 선으로 하는 인륜적 본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인간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는 평소 지련용예(知廉勇藝)를 갖추고 예약(禮樂)으로 문체를 내면 성인 이 될 수 있다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요즘” 성인은 이로운 것을 보면 그것이 과연 의로운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으로써 시대에 따라 관점이 신축 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치와 경제를 잘하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가 부단히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주자는 대학의 도가운데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고쳤다. 사람들과 친숙하게 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인간을 계발하고 풍속을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항구여일 한 것은 없으며 항상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단히 개선노력을 하는 것이 유교의 근본사상이다(조 순, 85).

공맹철학은 끊임없는 변혁을 요구한다. 공맹사상에서 혼히 나타나는 역(易)은 변역(變易)이다. 변역은 부단히 변화하는 음양의 생활원리를 나타낸다. 사람은 수시로 변역하여 도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정(靜) 중에도 동(動)이 있어야 하고, 동 중에서도 정이 있어야 한다(황갑연, 309-10). 역의 원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회의 개발을 도모하는 데에 공맹의 정신이 살아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마음은 혁신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습페터의 창조적 파괴도 가능하고 사회 뿐 아니라 과학도 진보하게 된다.

논어에는 나라에 도가 있다, 도가 없다는 말이 많다. 이것은 나라가 무도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리켜 준다(김태길, 23). 공자는 한 마디로 혼란한 사회에 질서를 수립하려 한 인물이다. 그 질서는 도로 나타나며 그 목표는 전 인류를 구제하는 데 있다. 그 도가 윤리에서 나타나고 정치 뿐 아니라 경제행위에서도 나타난다(윤사순, 1984:12). 지나친 겸손으로 자신의 재능을 감추고 나라를 어지럽게 놓아둔다면 그를 어진 사람이라 할 수 없다(Do-Dinh, 1960).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유교적 논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III. 아시아적 가치 비판

최근 아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상황과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학자들 사이에 아시아적 가치 또는 유교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영향을 받아 아시아에서조차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분분하게 일었다. 태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단은 언뜻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8년 11월 APEC에서도 아시아적 가치를 들러싸고 논쟁이 일었다.

미국 언론과 학자들은 아시아 경제를 가리켜 기적의 끝으로 친단하였다. 미국의 대표적 신문과 잠지들은 아시아 모델 또는 일본주식회사에 종언을 고하면서 이제는 아시아는 아시아적 가치에 집착하지 말고 서구식 정치 경제개혁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가 좋을 때 아시아 지도자들은 아시아적 가치에 매달렸다. 경제성장에 걸맞게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촉구하는 미국 논자들에 맞서 아시아족이 내민 것이 아시아적 가치였다.

미국 내에서 이런 주장은 비민주적 체제 옹호논리로 비춰졌지만 “과연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우선을 두면서 독재에 가까운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과연 경제성장이 가능했겠느냐”는 아시아쪽의 문제제기를 선뜻 뿐리치기 어려웠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다. 특히 1994년 말 MIT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허구이며 “아시아 기적은 끝났다”라고 혹평했을 때만 해도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경제문제 해결을 일본식 모델에서 찾아보려 했던 논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아시아 경제의 붕괴 시나리오가 지금 실증되고 있자 아시아적 가치는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크루그먼에 따르면 아시아의 고도성장은 기술개발 및 그 진보(요소생산성의 향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총량적 확대 재투입만으로 진행하고 있어 아시아 경제성장의 화려한 지표는 신기루에 가까운 것일 뿐이다. 기술개발이 결여된 채 노동력 재투입만으로는 경제성장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의 성장도 한계에 이르기 마련이라는 그의 논리가 적중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를 지정학으로 볼 때 우세문화와 열세문화가 있다. 우세문화란 온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구미문화라면 열세문화란 한국처럼 지구 한 쪽 작은 반도에 해당하는 문화이다. 열세문화는 그 크기나 파급효과에서 상대적으로 열세하다. 문화발전 이론에 따르면 열세문화는 종족적으로 우세문화에 종속된다 수렴설과 열세문화가 독자성을 키워 우세문화에 기여하며 공존 공생한다는 비수렴설이 있다.

한국의 산업경제는 유교에서 비롯된 가족주의적인 덕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IMF 구제금융 사태는 이같은 덕목만으로는 국제화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한계를 제시해서 문화적 충격을 주고 있다. IMF는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국제화에 맞게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규태는 이를 가리켜 우세문화가 열세문화를 향해 자기의 문화로 수렴하라는 주문과도 같다고 보았다.

특히 한국의 거래망이라 할 수 있는 계열구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계열구조는 한국기업의 특성으로 이것은 형제 부자이거나 언젠가 신세를 진 분이라든가 하는 가족주의적 인정이나 의리로 맺어진 비경제적 관계일 경우가 많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오늘의 한국경

제 위기는 대기업 총수의 무모한 야망이나 취향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좌우된 때문이라 하고 그렇게 된 데에는 혈연관계로 구성된 임원들의 견제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유교 자본주의를 그 원흉으로 지목했다.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할 때 한동안 미국과 아시아를 오가며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 논쟁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뤄졌다. 하나는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 신화의 비밀을 풀려는 노력에서였고, 다른 하나는 개발독재 형태의 아시아적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이 논쟁의 기본바탕은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있었다. 만약 한국 등의 경제기적이 없었다면 남미나 아프리카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군사정부나 권위주의 정권 등 정치체제가 굳이 문제될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그 힘을 잃고 있다.

서구 경제학자들은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들이 인정에 얹매여 있으나 부단한 자기 반성과 근면으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이를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으로 묶어 짧은 기간 내 고도성장을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시아적 가치로 정의해 왔다. 아시아적 가치를 경제신화에서 찾은 것이다. 이런 정의는 처음에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이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부정적 의미로 바뀌었다. 가족 및 친지 중심의 이른 바 정실 자본주의가 부패의 온상이 되고 경제효율에도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관유 수상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달라 해당초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도입은 무리였다고 지적하고 싱가포르 관리의 청렴성, 경제적 성공을 아시아적 가치의 꾸준한 추진 덕분이라 했다. 범죄자에게는 곤장을 치는 싱가포르에서는 인권도 질서를 위해서는 제한 가능한 것으로 본다.

개발독재형 아시아적 가치는 마하티르에서 찾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금융위기를 맞았으나 그는 아시아적 가치를 내세우며 고정환율제를 실시하고 자본이동을 규제해 주가상승, 성장률 제고 등 경제지표를 호전시켰다. 이를 근거로 마하티르 수상은 강력한 정책을 구속까지 시키는 등 지도력에 의한 경제회복 추구를 내걸고 IMF요구와 맞섰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을 우리 새마을운동에서 많이 배워 갔다. 새마을운동으로 집약된 60~70년대의 한국적 가치가 아시아적 가치의 뿌리인 것이다.

세계적 금융그룹 CSFB(Credit Swiss First Boston)의 부회장 리처드 홀브룩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투자 컨퍼런스에서 그동안 전세계에 회자되어온 이른 바 아시아적 가치라는 수사 뒤에는 명확함을 거부하는 연기 자욱한 스크린, 끼리끼리 자본주의, 이중규범, 부패 등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런 가치체계가 변하지 않고 아시아경제가 회복된다면

또 다시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그 유명한 아시아적 가치란 강한 가족연대의식, 유교적 교육체계, 근면 등인데 그것은 아시아적 가치가 아니라 전세계 보편적인 가치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아시아의 25년 발전시대는 지났으며 불분명한 아시아적 가치가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아시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꽂히던 아시아적 가치가 금융대란 이후 모든 악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래학자 혀만 칸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을 유교 자본주의로 보았다. 경제적 이해 관계를 초월해 우리집 일처럼 근면과 성실을 가속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IMF시대를 맞아 이 자본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부자관계라 할 종신고용이 파탄하고 명예퇴직이 선행하며 장유유서라 할 연공서열도 능력업적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가부장적 온정주의라 할 보너스도 반납이 선행하고 급식이니 교육비 보조, 주택자금 대부 등 기업외적 복지도 풍전등화와 같다.

그렇지만 유교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아시아적 방식이 높이 평가된 것도 따지고 보면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아시아 나라들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서구지성의 평가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의 침체기에 일본을 비롯한 개발도상에 있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모두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루한 배경을 연구한 그들의 결론이 바로 유교적 가치였다.

아시아적 가치를 대표적으로 주도해 성공시킨 이관우 싱가포르 전수상은 아시아 금융혼란은 과도한 정경유착 등 아시아의 공통된 문제를 반영하지만 아시아적 경제모델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금 아시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과 대만, 필리핀 등은 견재하고 있다.

함재봉은 아시아적 가치로서 유교를 옹호하는데서 한국 보수주의의 가능성은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유교를 무조건 반동적 사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는 부국강병 도구로 유교가 사용된 것은 분명 보수적 측면이지만 민주화와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자식인과 학생들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정신적 배경 또한 유교에서 나온 평등의식의 산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는 재벌과 기업가에 대한 맹목적 비판은 금물이며 박정희 발전모델은 당시로서는 최상의 출구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은 박정희 모델이 초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후 성격을 바꿔야 함에도 20년 가까이 재조정을 하지 못한 때문으로 간주한다(함재봉, 1998).

함재봉은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름아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통 유교사상과 가치관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본주의, 공동체주의, 가족주의, 교육의 승상 등은 체제와 동서양의 구분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한국이 경제개발을 시작하고 민주화를 추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삶을 건설하는 데 보탬이 되었다고 본다.

함재봉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아시아적 가치와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반대한다. 한국의 전통사상과 가치체계를 서구의 자유주의와 시장주의가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이상과 근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과 근본으로 돌아가 나름대로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함재봉, 1999).

군사독재자들이 주장해온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반론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가 내세우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병행론을 내세워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잠시 희생해도 좋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리콴유식 아시아적 가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웨이징성,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의 호세 라모스 오르타 등 아시아 인권운동가들은 '98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관련 국제토론회에서 그동안 일부 아시아 독재자들이 주장해온 이른 바 아시아적 가치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교 교리 등 아시아인들의 전통적 아시아적 가치관은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 존중 등 보편적 인권관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시아 경제난을 악화시킨 것은 바로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의 결여 때문이라고 말한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시아적 가치관은 유교적인 해석만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인권이 서방의 전유물만도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정치연구회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실패로 간주했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경제위기도 박정희 발전모델 때문으로 간주한다. 유교 자본주의론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이다. 그렇다고 이 연구회가 김대중 정부의 노선에 호의적인 것도 아니다. 손호철은 김대중 정부의 노선을 종속적 신자유주의로 규정한다. 미국형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한국정치연구회, 1998).

현재 우리 사회과학계에는 당면한 현실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노선이 형성되고 있다. 유교 자본주의론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형 보수주의, 김대중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변형된 신자유주의, 그리고 언제나 있어온 진보노선 등이다.

지금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은 압도적 위세를 자랑하는 미국의 세계시장 지배체제가 아직 발전도상의 취약한 아시아 나라들의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중국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물론 크루크먼의 주장처럼 경제학의 기본개념과 확고한 통계는 중요하다. 또 아시아 나라들의 특성인 정경유착, 협연, 지연, 가부장적 형태, 재벌집중 등 사이비 유교적

퇴영성은 분명히 극복되어야 한다.

IMF기준에 맞는 개방도 불가피하다. 아시아 자본주의를 국가관료 개입에서 보다 시장논리쪽으로 접근시키는 것도 절실하다. 아시아가 거대한 경제적 흐름을 의식하지 못했거나 무시해 왔다면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설불리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 비판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IV. 공맹의 기본사상과 유교의 자본주의정신

맑시즘에 따르면 아시아는 이른 바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따라 근대국가로 발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의 가능성도 아주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통농업과 유교적 봉건질서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유교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창의성을 구속하며 공업과 상업을 천시하고 기술과 과학을 멸시하며 전문화를 가로막는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유교에 대한 폐해를 규탄하는 움직임은 강하게 일었다.

1920년대 중국에서는 이른바 신문화운동(New Movement)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실증주의와 실학에 바탕을 둔 반유가운동이었다. 그들은 과학의 발전, 사회의 진보, 민주주의의 정착을 내세우며 유학을 이같은 진보를 방해하는 공적 1호로 간주하고 “공자와 그 무리들을 타도하자”고 외쳤다(Chai & Chai, 18).

이 운동은 1919년 5월 4일에 일어난 5·4운동을 말한다. 이것은 공자격하운동이자 공자비판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과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적 운동이었다. 그러나 1950년을 전후로 신유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유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Nansen, 548-49).

모택동도 문화혁명 당시 봉건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자를 격하시키고 사원을 파괴했다. 그러나 지금은 유교에 대한 재해석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유교의 정신이 중국근대화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Eber, 1986; Fang, 1989; Kuang, 1985; Hu, 1987).

맹자는 도덕이건 정치이건 경제적 안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맹자」, 보민론) 산업을 일으키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안빈락도의 공자사상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그는 권력을 이용한 물욕충족을 거부했으며 기능과 지능에 따른 분업을 강조했다(안종운, 434-36).

대니언과 코헨에 따르면 중국철학과 과학사의 르네상스가 진행 중이다(Dainian & Cohen, x).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가 부정적으로만 여겨졌던 유교의 역할이 재평가 됨에 따라

유교의 교육중시 가치관, 근검절약 및 규율과 질서의 존중 등이 공업화의 성취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등이 관찰되었다.

공맹사상은 인간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을 밝게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인간을 성숙, 성장하는 존재로 본다(이동준, 65). 이것은 유교가 사회를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고자 하는가를 보여준다.

공맹은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했다(Cua, 2). 공자는 인간중심의 마음(human-heartedness)을 가지고 있고 삶 속에서 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신유학자들도 사람은 밝게 되고, 계속해서 밝아지면 천지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Chang, 121). 공맹사상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은 군자이다.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행동해야 한다(「논어」, 안현편). “답게”는 겉치례적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 자아를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가도 기업가답게 행동해야 한다(Do-Dinh, 1960). 아시아적 가치로 평가절하되고 비판받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유교가 그토록 강조한 본질적 자아를 실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으로 계층간의 모순이 더욱 침예화됨에 따라 지배질서가 붕괴되어 가는 사회적 위기가 감돌자 공자는 계층간의 문제도 없고 자연발생적 노동분업만이 지배했던 주(周)시대를 이상적인 사회로 간주했다. 그리하여 주의 질서를 강조하며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최대과제로 삼았다. 공자가 주를 이상사회로 간주한 것은 주가 하(夏)와 은(殷) 2대의 문물을 본받아 찬란한 것을 경탄하고 ‘나는 주를 따르겠다’는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만일 나를 등용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동주(東周)를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논어」, 양화편). 공자는 능력주의 사회를 강조하였다. 그는 지위없음을 근심하지 말며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걱정하라, 나를 불려줄을 근심하며 알려질 일을 하기에 힘쓰라 하였다.

맹자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농업, 어업, 목축업 등을 장려하고 더불어 자원의 이용과 보호를 권장하였다. 맹자에 따르면 민생의 바탕이 되는 이러한 기간산업을 장려함으로써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고 백성의 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국력 또한 부강해진다고 부았다. 중농정책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이런 기간산업 장려는 주목할만한 일이다(이승환, 201).

순자 역사 세관이나 시장에서의 관세철폐, 자유로운 상품경제의 유통, 천연자원의 이용과 보호 등 맹자가 제시했던 것과 차이가 없다. 봉건적 경제체제 아래서 농업생산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은 오늘날의 경제적 조건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맹자나 순자의 사상은 기충민의 경제적 안정이 곧 국가부강의 근원이라는 민생경제우선의 원칙이다.

맹자는 인간을 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지만 순자는 아담 스미스처럼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보았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이 자유롭

게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불균형과 문제점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순자는 사회 안에서의 직분에 따라 수입을 정해야 난리가 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렇게 직분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예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순자의 예에 의한 분배는 신분제도나 계급구분에 따른 것이므로 현대에서 존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군주와 기충민 간의 호혜적 이익계산에 의한 민생경제의 보호라는 순자의 견해는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맹자나 순자는 민생경제의 안정이 곧 정권안정의 자름길이며 특정인을 중심으로 국가의 부가 집중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이 생각은 새겨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이승환, 211-213).

우리는 공자가 인간의 부귀의 욕망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이었다(유인희, 1990). 공자는 “재부를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을 잡는 노릇일지라도 나 또한 그것을 구하겠다”(「논어」, 술이편) 하였다. 이 말은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심정을 솔직히 밝힌 것이다(유인희, 1992:57). 「논어」가 상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많지 않다.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아름다운 옥이 여기 있으면 독에 넣어 감추겠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팔 것이다. 팔지만 나는 그 값을 높을 사람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논어」 자한편). 이것을 보아 공자는 상행위의 존재여부와 상행위를 부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공자가 상행위에 대해 비교적 언급을 적게 한 것은 당시의 사회가 농업중심이어서 상업을 천시한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의 경제구조는 사농공상의 형태로 선비가 제일 상층의 자리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농민이 중시되었으며 공업이나 상업은 천시되었다. 그러나 경영이라고 하면 상행위만을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경영, 조직관리, 가정관리, 자기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그는 경영이라는 현대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 그의 모든 사상은 경영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공자는 군자로서의 길을 말함에 있어서 인과 정과 의와 중용을 강조했다. 인간행위를 이끌고 조절하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제품생산이나 상행위를 군자의 길이라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도 군자의 도는 강조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생활이요 도는 생활에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와 귀함은 누구나 탐내는 것이나 정당한 방법(正道)으로 얻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난과 비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감수하라’고 말하고 있다(「논어」, 이인편). 삶에서 부귀의 개념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정도를 따라 얻은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누리지 않도록 했다. 이것은 군자의 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게 있어서는 가난하고 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살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맹자도 인을 사상의 중심점에 놓고 인격수양을 위해 인이 의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hai & Chai, 70). 그의 사단지심(四端之心), 곧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을 파악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금장태, 454). 민생경제의 근거문제에 있어서 맹자는 군주의 측은지심이라는 도덕심에 호소하고 인정(仁政)의 효과로 민심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했다. 맹자가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는 기업가들의 측은지심에 호소해서 기업의 이윤추구 자체와 기충민의 절대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의 파격적 가격인하를 요구했을 것이다.

유교가 군자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자개념을 적용하는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근대 이전의 우리의 군자개념에는 대개 입신양명과 연관시켜 이해했다. 그러나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는 입신양명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과 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군자라 볼릴 수 있다. 군자를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나 명부에 오른 사람으로 국한하여 이해하는 것은 군자개념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세속화의 단적인 표현이 바로 ‘만가에 의한 만가의 투쟁’이다. 맹자는 벼슬은 가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홍인표, 341). 선비는 재물을 탐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익을 위해 의로움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지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다. 나라에 도가 행해지고 있으면 녹을 먹어도 되지만 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데 녹을 먹으면 그것은 수치다(김학주, 237, 243).

그러면 오늘날의 군자는 누구인가? 최봉영은 정치인, 관료, 학자, 기업가, 예술가 등을 오늘날의 새로운 군자들로 간주하고 있다(최봉영, 1994). 이러한 사람들을 군자로 간주하려는 것은 매우 넓은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그들 가운데 군자에 해당되는 인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 모두를 군자로 보기에는 군자로서 너무 부족한 면이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군자로 간주된 사람들 가운데는 군자가 아닌 소인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들을 일률적으로 군자군에 편입시킨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는 이런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 아니다. 군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인과 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군자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본화나 자본주의가 이기적인 자기성취에 있지 않음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자는 위험한 일을 보면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하고(見危授命), 오래된 약속에 대해서 평소의 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충직과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국가가 이런 정신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고통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학과 실학자 홍대용은 과거를 허학(虛學)의 근원이라 보고 평생 이를 거부해 온 인물이다. 그는 “사방으로 번잡하게 왕래하는 자들이 모두 이익있는 곳으로 모여들고, 물건값이 세

배쯤 뛰어오르면 군자라도 이익을 다룬다”며 자기시대를 개탄했다(김태준, 1998).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숨은 선비정신을 읽을 수 있다.

공자 당시 사유재산의 성립과 더불어 사회계층 내부에서는 상대방을 회생시켜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는 무리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해의 충돌과 대립이 더욱 침예화되었다. 여기에 주제(周制)에 따른 종래의 인간관계, 곧 제후와 세습귀족, 군자와 소인, 빈부계층 사이에서의 이해의 충돌이 원(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공자는 물질적 이익추구, 곧 이(利)로 보았다. 그가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고 말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이보다 의를 강조한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자각의 유무와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시계키, 96).

그는 이익을 죄아 행동하면 원한이 많게 된다 하였다. 그는 이러한 원을 지양하기 위해 인의 실천을 주장했다. [논어] 가운데 인에 관한 공자의 말이나 제자와의 대화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공이 ‘만일 백성에게 널리 베풀어 대중을 구한다면 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어찌 인에 그치겠는가, 그야말로 성리라 할 수 있다. 요순도 오히려 그런 일로 근심하였다’([논어], 용야편). 여기서 ‘널리 베풀어 대중을 구제한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규범만이 아니라 경제적 풍요라는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공자의 주장을 매우 관념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인은 철학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나 이, 심지어 빈부도 관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군자는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군자는 도를 구해야지 밥을 구해서는 안된다’, ‘선비로서 도에 뜻을 두고도 나쁜 의복과 빈약한 음식을 수치로 여기는 자와 더불어 논할 것이 없다’는 [논어]의 여러 말들이 이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들은 마치 의식을 피하는 것을 공자가 금하는 것처럼 해석하여 그의 경제관은 관념에 치우쳐 물질적인 면을 경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唐慶增, 72).

그러나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백성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급선무라고 주장할만큼 현실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공자가 위국(衛國)을 방문했을 때 백성이 많은 것을 보았다. 그를 모시고 가던 사람이 ‘백성이 많은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하고 묻자 그는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논어], 자로편). 자공(子貢)이 정치에 관해 물었을 때도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튼튼히 하며,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논어], 언연편). 경제, 국방, 백성의 신임을 정치의 주요 요건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애공(哀公)이 정치에 관해 물었을 때도 정치하는데 급선무는 백성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오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경제적 풍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공자가어], 현군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이익을 배척한 것은 이익을 구하는 척도를 도덕에 두고 있기 때-

문이다. ‘이로운 것을 보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見利思義)’, ‘이득을 보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見得思義)’는 말은 모두 이익을 경계한 말이다(「논어」, 헌문편).

그러나 이 말은 이를 무조건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직에 있으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면 원한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배제하라는 것이다. 요컨대 이를 추구할 때는 의에 합당한가의 여부를 생각한 후에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이익관이다. 합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버리고서라도 의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에 따르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지(知)도 의를 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어에 “지자이인(知者利仁)”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 지자의 할 일임을 가르쳐 준다. 이때 ‘이(利)’는 “이롭게 한다, 얻게 한다”는 동사적 의미를 가진다. 인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인이 인됨을 보존하고 어리석지 않게 해야 한다. 의가 인을 이롭게 하고 지가 인을 이롭게 해야 한다(진대체, 254-55).

공자의 이러한 생각은 인의 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이가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는 남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회생(살신)하여 인을 이루도록 했다(「논어」, 위령편). 의를 위해 자신을 회생시키는 봉공정신(奉公精神)이 우선되는 것이다. 그는 밥을 먹는 시간에도 인을 어기지 않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인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김태길, 25).

공자의 인사상은 경영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공자는 인(仁)과 지(知)를 강조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지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논어」, 언연편). 인은 두 사람을 상징한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끼게 되는 따뜻한 인정이다. 이 인정이 사람들을 연계시켜 주는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 연결을 통해 집단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된다(윤사순, 1984:12). 따라서 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경영학임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인에서 바탕을 둔 인정(仁政)을 강조한다. 정(政)은 바로잡음이며 바로잡기 위해 정명정신(正名精神)을 가져야 한다. 정명정신이란 군주가 군주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비가 아비답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정신이 바르게 확립되면 국가와 사회가 바로 잡힌다. 기업조직도 마찬가지다.

공자는 원래 덕치주의자였다. 그는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게 된다고 보았다(「논어」, 이인편). 그에 따르면 ‘정치란 법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러면 북극성을 모든 별이 따르듯이 온 국민이 위정자를 따르게 된다’. 그런 그도 정치권력을 쥐자 법치를 했다. 공자는 56세 때 법무장관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되었다. 공자가 기쁨을 감추지 않자 이를 보고 제자가 물었다. ‘군자란 화를 당해도 두려워 하지 않고 행운을

맞아도 기뻐하지 않는 법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공자는 ‘그건 맞는 말이지만 군자는 귀한 몸이면서도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을 즐긴다’고 했다.

그는 법무장관이 되자마자 가장 부정을 저지른 자를 잡아 처형했다. 그런지 3개월이 지나자 양이며 돼지를 파는 장사꾼이 폭리를 취하지 않게 되어 상도덕이 바로 잡히고, 남녀가 거리를 같이 걸어 다니지 않게 되어 풍기가 바로 잡히며, 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슬쩍 줍는 사람이 없을 만큼 치안이 바로 잡혔다. 「사기」에 따르면 나라가 바로 잡힌 것은 덕치 때문이 아니라 법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법치와 덕치를 함께 사용했다. 물론 그의 정치적 이상은 덕치이다. 하지만 덕치로 다스릴 형편이 되지 못하면 법치를 세우고, 그 다음 덕치로 다스리면 될 일이다. 그러므로 덕치와 법치의 균형이 그의 관리적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송나라 태종에 따르면 정치의 요령은 관(寬)과 맹(孟)의 균형을 잡는 데 있다. 관이 덕치라면 맹은 법치이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에 치우치면 나라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반대로 맹에 치우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관대해야 할 때는 관대하고, 엄중해야 할 때는 엄중해야 한다. 이것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자는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낙도하며 부유하면서도 예를 존중하는 경지를 존중한다(「논어」, 학이편). 흑백논리에 따라 외곬에 빠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김태길, 43). 그가 덕과 예를 강조하는 것도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데 있다. 염치있게 만들고 바로잡아 인간과 사회가 바로 서게 한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이면 남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논어」, 위령편). 그의 덕치나 예치론은 이렇듯 민본, 위민적 성격을 띠고 있다. 맹자의 성선 및 민본사상도 이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공자는 곧고 올바른 사람을 등용하여 굽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 위에 쓰면 올바르지 못한 사람도 올바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굽은 사람 위에 놓으면 굽은 사람도 곧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맹자도 조화를 이룬 사람이 조화를 이루지 않은 사람을 기른다고 보았다(홍인표, 265).

이러한 지적은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먼저 기용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강직한 사람을 등용하면 그 밑에 강직하지 않은 사람들도 윗 사람을 본받아 강직하게 된다는 것은 최고경영층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기업사명이 모든 하부조직 및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공맹은 군자의 책임을 강조함은 물론 조화(harmony)를 이상으로 삼았다(Cua, 120). 공자는 중용을 강조한다. 중(中)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에 알맞는 것이며, 용(庸)은 언제나 바르고 일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며 용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책으로 엮어 그이 제자 맹자에게 전승한다. 이것은 경영자가 어떤 태도로 경영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중용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표현이 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教)라 한다. 도는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며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가 보여지지 않는 바를 삼가하며 그가 들려지지 않는 바를 두려워 하는 것이다. 숨은 것보다 자 드러남이 없으며, 미세한 일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때문에 군자는 그가 흘로 있음을 삼기는 것이다’.

중용은 이처럼 과함과 모자람이 없이 중간을 유지한다. 자공이 공자를 향해 ‘선생과 상인 가운데 누가 더 현명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선생은 재주가 지나치고 상인은 모자란다’ 하였다. 자공은 ‘그러면 선생이 났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과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답하였다. 공자는 과함과 모자람이 없이 항상 중용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공자와 노자의 중용은 분열적이고 유한한 현실세계를 인식하고 이를 부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초월적 진리의 세계를 지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금장태, 288). 중용은 중생과 연관되며 중생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을 획득한 존재가 된다(금장태, 260).

우리의 지도자들은 직접 쟁기기를 좋아한다. 이런 지도자들을 친정 스타일이라 한다. 그러나 공자를 비롯하여 맹자, 한비자, 순자, 노자, 장자 등 중국의 주요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친정론보다 위임론을 강조한다.

공자, 맹자, 순자는 군주가 덕망있고 유능한 대신들에게 정부의 행정을 위임하도록 했다. 전문경영론을 제창한 것이다. 위임을 받은 대신에게 있어서 일차적 충성심이 군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 곧 도에 바쳐져야 한다. 전문성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주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 올바른 대신이라면 그를 반대해야 한다(Creel, 285).

공자는 개혁운동에 열의가 대단했다. 따라서 대신을 세습하는 일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시게키, 132). 공직후보자를 선정할 때 그 자격이 중요하다. 공자는 우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택하도록 했다. 선발의 공정성은 물론 인물의 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에머슨은 공직자 시험선발을 위한 미국의 법안이 계류중일 때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서양을 훨씬 앞선 선배라며 칭찬해 마지 않았다(Creel, 333). 공자는 예를 통한 체용을 강조했는 데 여기서 예란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경우에 맞는 인사조치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다(이문영, 567).

노자는 무위론을 통해 위임을 주장한다. 세상을 등지려했던 노장마저 무위를 제왕의 도로 간주했고, 유위(有爲)를 신하의 도로 보았다. 군주가 친정을 하면 신하들은 게을러지고 일을 피한다. 신하는 진심, 재능, 학식을 숨기고 위선의 얼굴로 군주를 대한다. 일단 잘못이 드러나면 그들은 “그 일은 본래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며 지체없이 그 잘못을 군주에게 돌린다.

중국의 여러 사상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현명한 군주는 알맞는 사람을 구하는 일을 서두르며 어리석은 군주는 세력을 불리는데 급급하다”, “군주, 재상, 관리는 연, 계절, 달에 비견된다. 군주는 한가하게 1년에 한 번 정도 말을 하면 되고, 재상은 군주보다 조금 더 바쁘다.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관리의 업무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관리는 매달 자신이 하는 일을 결산해야 한다.”

중국 역사에서 친정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명청시대에는 친정론이 위임론을 앞섰다. 명태조 주원장은 아주 분명하게 원나라가 멸망한 원인은 군주가 몸소 정치를 쟁기지 않고 권신들에게 정치를 위임했기 때문이라며 친정강화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중국 사상가들이 맹목적으로 위임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제왕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순자는 군자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고 위임이 가능한 군주가 어떤 유형인가 밝혔다. 첫째, 군주가 재능이 있고 유능한 보좌를 얻으면 천하의 왕노릇을 할 수 있다. 둘째, 군주에게 재능은 없지만 유능한 보좌를 구하면 나라와 백성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는 불행한 경우다. 군주에게 능력이 없는데다가 두려워하여 인재를 구할 줄 모르면 나라는 약해져 결국 망하고 만다. 이것은 누가 위임적 관리를 하게 되며 그 결과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곽준복, 1998).

공자는 철법(徹法)이라는 조세제도를 주장하였다. 이 조세제도는 주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그의 복고의지의 발현이기도 하다. 공자는 정전제에 따른 철법을 주장하였다. 맹자에 따르면 정전제란 사방 1리, 곧 900묘를 하나의 정전(井田)으로 하되 가운데를 공전으로 하고, 여덟 가구가 각각 100묘씩을 사전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공전은 모두 함께 경작하고, 공전의 일이 끝난 다음에야 사전을 경작할 수 있다(「맹자」, 승문공편). 일반적으로 정전제의 세율은 1/10에 해당한다.

공자는 세금이란 균일하고 공정하며 힘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이에서 지나치면 부당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자 당시 계강자(季康子)가 정전을 만들어 놓고 법으로 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계강자의 정전법을 범법이라 하였다. 정전을 반대하지 않은 공자가 계강자의 정전제도에 반대한 것은 징수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1/10의 세가 아니고 2/10의 세를 거두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계강자는 공전수익인 1/10의 세 뿐 아니라 사전의 수익에도 1/10의 세를 징수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추가부담은 토지소유자인 제후나 신흥지주의 사전에는 적용하지 않고 농민에게만 적용시켜 농민에게만 피해를 주었다. 이에 공자는 ‘옛 선생이 토지의 세를 정할 때 전적(田籍)에 중점을 두었는 바 이것은 토지를 멀고 가까움이 없이 균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수입에 따라 세금을 받고자 함이며 힘에 맞게 일을 시키고자 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노인과 아이는 과세에서 제외시켰고, 고아와 과부에게는 특별한 군사일이 아니면 세금부과를

면제해 주었다. 어쩌다 군사일이 있을 경우 정해진 밭에 따라 벼 몇 말, 짚 몇 단만 거두고 결코 힘에 지나치지 않게 하였다. 법에 따라 조세를 시행하려 한다면 이같은 주공의 법을 따르면 될 것이다' 하였다([공자가어], 정론해편).

철법을 실시하면 세입이 격감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당시 규제를 받지 않던 새로운 토지나 신흥지주의 사전에도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여 국가의 부복한 재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공자는 생각했다. 즉, 모든 공전과 사전에 일율적으로 철법에 의해 1/10의 세를 거둔다면 공전의 부담은 경감되어 그 제도 자체가 유지되고, 사전의 부담은 가중되어 사전의 급속한 확대가 저지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전제도 존속시키고자 하였다.

공맹사상은 절약과 관리적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의 여러 사상가들은 절약과 검소를 강조하는 절검론(節儉論)을 폈다. 이것은 부해지려는 인간의 일반적인 욕구가 방임상태에 놓일 때 한정된 재화를 둘러싼 쟁탈전이 필연적으로 격화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사회자체의 존립마저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공자도 예외가 아니다. 그의 소비론은 한 마디로 검소로 요약된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일을 미덥게(信) 하며, 절약하여 쓰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되 때를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논어', 학이편). '일을 미덥게 한다'는 것은 관리의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미더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약 한다'는 것은 근검과 절약을 통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백성을 부림에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때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주의적 관리를 할 뿐 아니라 인재를 적재적소적시에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논어」와 「맹자」는 우리 거례에 처음으로 등장한 행정학 교과서로 사회적 능률을 올리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이문영, 15, 306).

공자에 따르면 선비란 자신을 깨끗이 건사하고 덕으로 목욕을 하는 사람이다. 선비는 훌륭한 것을 들으면 그것을 남에게 알려주고, 훌륭한 것을 보면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어 남을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이다(김학주, 239). 이것은 오늘날의 경영자가 어떤 경영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공자는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고 하였다('논어', 이인편). 나아가 그는 예와 사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어려움이 없으며 형식만의 예는 아무 쓸데 없다고 하였다('논어', 이인편). 이것은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다. 현대사회가 기업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공맹의 사상을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공맹사상은 기본적으로 산업과 과학의 발전을 막는 학문이 아니다. 산업의 발전을 꾀하되 이익과 봉공정신, 능력주의, 덕치와 법치, 전문경영 및 위임관리 등 현대에서 중하게 여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도록 했

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도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무엇을 중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공맹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전인류를 사람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철학을 담고 있다. 그는 인사상을 중심으로 사람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중심적인 논제로 삼았다. 그의 예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이같은 철학은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배리(S. D. Barry)는 신유학의 현대적 측면을 재해석하고 있다. 그는 주자, 황양명, 황종회 등 신유학 대가들의 사상을 미세하게 추적하면서 근대의식의 단서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보기률 들어 향약(鄉約)의 約은 일종의 공동체 성원들에 의한 계약이다. 서양의 계약이 소유권에 관한 것이라면 향약의 계약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소망에 관한 것이다. 효 또한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대옹관념으로 해석한다(Barry, 1998).

공맹시대의 유학을 원시유학이라면 신유학은 주자학과 양명학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신유학에서 근대성의 시초를 찾으려는 노력이 한국, 중국, 일본 뿐 아니라 서구의 동양학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맹사상에서 근대성을 제외시킬 수는 없다. 신유학의 뿌리는 그것에 있기 때문이다. 신유학과 서구자유주의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유학의 뿌리와 자유주의의 뿌리를 비교해 보면 서로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V. 공맹사상과 새로운 한국적 가치의 창출

지금까지 유교문화에 대한 비판,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점, 공맹의 사상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교문화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공맹사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공맹사상은 서구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에 있어서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양이나 서양 모두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적 가치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공맹사상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이것을 잘못 구사한 아시아인들에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론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에서 왜곡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구학자들이 지적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독재와 충성을 바탕을 둔다. 독재는 권력을 통해 권위주의를 실현한다. 독재에 대한 갈등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집단적으로 충성을 요구하며 발전을 위해 갈등은 유보한다. 성취를 지향하지만 실수는 용인하지 않는다. 이것을 아시아적 가치라 하고 공맹사상을 비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서구적 가치를 시장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질서로 이해한다. 문제중심으로

나아가며 갈등을 허용한다.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며 팀워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도 한다. 프로젝트팀이 그 보기이다. 이것을 서구적 가치의 모든 것이라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지금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두 기둥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 아시아적 가치의 패배와 서구적 가치의 승리를 말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잠시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현재는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문화까지도 우리의 것을 비하시킬 필요는 없다. 경제논리로 문화나 정신까지 묵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순은 유교사상이 한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조 순, 81). 첫째, 가족중심의 윤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다. 둘째, 교화를 통한 인간의 개선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고 문맹률이 낮다. 셋째, 개인주의가 아니라 단체에 대한 소속의식이 높고 장유유서의 질서의식이 높기 때문에 회사나 그 밖의 단체에서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단결을 잘 할 수 있다. 끝으로, 전통적으로 정부의 책임과 지도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정책을 비롯하여 경제발전의 초기에 민간부문을 계몽하고 영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

교육, 질서, 책임이 이렇듯 강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실제는 이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차입경영, 정경유착, 관치금융을 대표적인 지병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기업과 은행들은 전래의 비방으로 간주되어 왔던 정경유착과 채무의존형 경영시스템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한국이나 일본에는 “재벌이나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아시아적 불패의 신화가 있었다. 은행과 재벌들은 선단식 경영과 관치금융으로 정부의 보증을 받고 있다고 우겼다. 해외시장에서 한국은 한국주식회사, 일본은 일본주식회사로 인식될 정도였다. 해외시장에서 한국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잘 소화된 데에는 이같은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 모델이 보편적 시장원리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다. 그 아시아적 모델은 사실 공맹사상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제 부실한 기업은 망한다는 원리가 아시아에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맹사상이 처음부터 주장한 내용이다.

한국은 이제 공맹사상부터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 및 교육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인구 4천5백만명에 150여 4년제 대학과 155개의 전문대학을 갖고 있다. 이는 국민 개인소득별로는 고등교육기관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 비평가들은 사실(facts)에 대한 암기주입을 강조하는 한국의 유교전통이 교육체계를 표준화된 선다형의 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의 통과에만 집중도록 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성 계발과 위기문제를 해결하는 훈련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위기는 세계 경제시대에서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오랜 암기 주입식 교육방식에 대해 재고하도록 했다. 한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는 표준화된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이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인교육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차별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라는 정치적 및 예산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요된 경쟁보다는 자발적인 개혁이 더 중요하다. 기술교육 못지 않게 인성교육도 강조되어야 한다. 경제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자본을 중시해야 한다. 자본은 ‘보다 많은 재부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부’이다(최봉영, 1994). 자본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비물질적인 것도 있다. 자본개념에서 중시해야 할 부분은 3M, 곧 금전(money), 물질적 재료(material), 인간(man)이다. 금전적 자금이나 물질적 재료는 물질자본에 속하고, 사람은 비물질적인 자본, 곧 인간자본에 속한다. 경영이나 경제에서 중시하는 것은 금전과 물질적 재료도 있지만 인간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다. 부의 창출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금전이나 물질적 재료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자본(human capital)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진다. 자본이나 자본화의 개념에 있어서 인간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본화에 있어서 경제학적 및 사회학적 이론 내지 비판적 인식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노동경제학은 인간자본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슈츠(T. Schutz), 베커(G. Becker), 민서(J. Mincer) 등 인간자본 이론가들은 교육훈련을 통해 얻는 화폐수익을 강조한다. 그러나 상당수 맑스주의 이론가들은 교육으로 인한 분업 및 전문화 교육을 받은 자가 갖는 엘리뜨의식, 그리고 테크노스트럭처로 인한 화폐수익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맑스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인간자본화는 개체적인 소유욕구를 부추겨 사회의 총체성을 깨뜨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맑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각 사람은 일정한 전문적 활동영역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부문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다. 수렵가나 어부나 목동이나 비평가가 되지 않아도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고기를 낚으며, 저녁에는 가축을 먹이고, 식후에는 비평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모색하였다. 문화혁명 당시 모택동도 중국적 전통계승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중국적 전통은 전문가가 아니라 만능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경제개념을 수용하면서 이러한 면의 생각은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이념적인 면에서 볼 때 교육을 통한 인간자본화는 공산주의적 문화권보다 자본주의적 문화권에 국한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인간자본, 인간의 자본화를 논함에 있어서 이러한 국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유교문화권의 교육을 통한 인간의 자본화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유교문화가 가지고 있는 동

태성에 아울러 주목해야 한다. 헌팅تون(S. Huntington)은 문명충돌론을 통하여 서구, 유교, 일본, 이슬람, 힌두, 슬라브, 라틴아메리카, 또는 아프리카 문명 사이의 충돌을 예견했다. 이것은 유교문화권이 세계 속에 한 문명권을 확실히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왜 일본을 유교문화권에 넣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미래는 종교와 민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팅تون의 문명충돌론은 현재 여러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교문화권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적어도 앞으로 그 문화가 미래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유교문화권에 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인간적 삶을 구가하기 위해 유교가 맡아야 할 자리와 미래적 역할에 관한 논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과거보다 미래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새 한국적 가치관을 세워야 할 때이다. 서구식 자유경제를 이용하되 무작정 그것에 빠져서는 안된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인 DJ노믹스는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직 서구식보다는 동양적이고 절제된 사고가 필요하다. 혼히 동양은 선이고 서양은 점이라고 한다. 같은 선이면 동양은 곡선이고 서양은 직선이다. 전통과 관습이 다르다.

새로운 세기에는 보다 새로운 한국적 가치를 세워야 한다. 과거 한국적 가치가 근면·예의·욕구를 망라한 신바람으로 부의 창출에 역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세기에는 물질을 넘어선 정신적인 가치가 중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물질을 모두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물질과 정신을 균형화시킨 가운데 문명지향의 한국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민병문, 1998).

VI. 맷는 말

거부나 거상의 성격의 일세대 기업가들은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2~4세대에 기업가들은 기업가로서의 권위를 갖추면서 정승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최봉영, 1994). 세대가 바뀌면서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후세대들에 대해 너무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세대에 갈수록 지능적으로 세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후한 점수를 주다가 결국 IMF사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같이 봤다’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가 왔다. 일설에 의하면 ‘개같이 봤다’는 것은 ‘열심히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는 먹

이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개를 천시의 개념으로만 사용해 왔다. 이것은 개는 동물이고 정승은 고귀하신 몸이라는 비교적 의식이 더 작용한 때문이다. 돈을 벌고 쓰는 문제라면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문제에 있어 다른 각도의 이해도 필요하다.

공맹사상은 열심히 일하고 의롭게 쓰기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왔다. 예절만 잘 지키면 좋은 사람이고 유교문화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착각해 왔다. 정신은 없고 형식만 남은 것이다. 그 허구의 형식 때문에 지금 유교문화권은 서구문화권으로부터 강타를 당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가 서구적 가치로부터 비판을 당한 것도 이 형식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잊었던 정신이다. 그 정신을 회복할 때 한국적 가치도 바르게 정립되고 아시아적 가치도 재정립될 수 있다. 끊임없는 수신이 있어야 제가와 치국이 가능하듯 우리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있어야 한국의 경제가 세계 속에서 다시 설 수 있다.

자본주의의 기원을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찾은 베버의 이론이 나온 이후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특정종교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강했다. 물론 종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을 보편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발전이 특정종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조 순, 78). 다원화되어 가는 시대에 특정종교의 흐름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종교든지 나름대로 사회변혁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교가 미래지향의 사회를 그리면서 사회의 발전을 모색하려면 유교 역시 새로운 성격과 내용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전통적인 형식만으로 시대의 병폐를 치유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곽존복(1998), 권력장, 김영수 옮김, 푸른숲.
- 금장태(1997),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 출판부.
- 금장태(1998), 조선후기의 유학사상, 서울대 출판부.
- 김태길(1998), 공자사상과 현대사회, 철학과 현실사.
- 김태준(1998), 홍대용, 한길사.
- 김학주(1997), 공자의 생애와 사상, 명문당.
- 唐慶增(1975), 中國上古經濟思想史, 臺北.

- 김충렬 외(1994), 공자사상과 21세기, 동아일보사.
- 민병문(1998), “새한국적 가치”, 포스코신문, 11월 26일.
- 송영배(1986), 중국사회사상사, 한길사.
- 안종운(1996), 유학과 민주주의의 상승론, 학문사.
- 유인희(1990), “유가와 이상적 삶”, 동양철학, 1.
- _____ (1992), “공자의 경제사상”, 공자사상의 발견: 본원유학과 신실학, 윤사순 외, 민음사.
- 윤사순(1984),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을유문화사.
- _____ (1997), 한국유학사상론, 예문서원.
- 이기동(1998), 맹자강설, 성균관대 출판부.
- 이동준(1997), 유교의 인도주의와 한국사상, 한울아카데미.
- 이문영(1998), 논어맹자와 행정학, 나남출판.
- 이성규(1987), 중국고대제국성립사연구, 일조각.
- 이승환(1995), “맹자와 순자의 경제사상”, 공자사상의 계승, 1. 이애희 외, 열린책들, pp. 187~214.
- 이훈섭과 황선민(1990), 한국전통경영학조명, 한국전통상학회.
- 조 순(1994), “유교와 경제발전”, 공자사상과 21세기, 동아일보사, pp. 77~87.
- 진대제(1996), 공자의 학설, 안종수 옮김, 이론과 실천.
- 최봉영(1994), “유교문화권의 교육을 통한 인간의 자본화”, 유교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카이즈카 시게키(1991), 공자의 생애와 사상, 박민호 옮김, 서광사.
- 한국공자학회(1986), 공자사상과 현대, 사사연구서 7, 공자학회.
- 한국정치연구회 염음(1998), 동아시아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삼인.
- 함재봉(1998), 탈근대와 유교, 나남.
- _____ (1999), “아시아적 가치 재평가”, 조선일보 1월 13일.
- 홍인표(1996), 맹자, 서울대 출판부.
- 황갑연(1998), 공맹철학의 발전, 서광사.
- Allinson, R.E. (1985), “The Confucian Golden Rule : A Negative Formulation”,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12. 3 : 305~15.
- Barry, S.D. (1998), 중국의 자유전통, 표정훈 옮김, 이산.
- Chai, C. and Chai, W. (1998), 유가철학의 이해, 소강.
- Chang, C. (1958), *The Development of Neo Confucian Thought. I.* NY : Book Associates,

- 신유학의 전개(I), 이진표 옮김, 형설출판사, 1997.
- Confucius(1979), *The Analects : Luu yü*, D. C. Lau(trans.) NY : Penguin Books.
- Creel, H.G.(1997), 공자 : 인간과 신화, 이성규 옮김, 지식산업사.
- Cua, A.S.(1998), *Moral Vision and Tradition : Essays in Chinese Ethics*, DC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 Dainian, F. and Cohen, R. S.(eds.) (1996), *Chinese Studies i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and Technology*, MA : Kluwer Academic Publishers.
- Do-Dinh, P.(1960), *Konfuzius*, Paris : Editions du Seuil, 공자, 김경애 옮김, 한길사, 1998.
- Eber, I.(ed.) (1986), *Confucianism : The Dynamics of Tradition*, NY : Macmillan.
- Fang, K.(ed.) (1989), *A Collection of Modern Neo-Confucianism*. Beijing : Chinese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 Fung, Y.(1976),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 A Systematic Account of Chinese Thought from Its Origins to the Present Day*. D. Boode(ed.), NY : Free Press.
- Hu, S.(1987), *The Great Encyclopedia of China, Philosophy*, Beijing : People's Publishing House.
- Jaspers, K.(1975), *Die maßgebenden Menschen : Sokrates, Buddha, Konfuzius, Jesus*, München.
- Kaizuka, S.(1956), *Confucius*. NY.
- Krugman, P.(1994), *Foreign Affairs*, Winter.
- Kuang, Y.(1985), *Critical Biography of Confucius*, Shandong : Qi-Lu Publishing.
- Legge, J.(1870), *The Life and Teaching of Confucius*, NY.
- Nansen, H.(1997), "Confucius and Confucianism", *Companion Encyclopedia of Asian Philosohy*, B. Carr and I. Mahalingam(eds.) NY : Routledge.
- Weber, M.(1996), 유교와 도교,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 Wright, A.(1962), *Confucian Personalities*, CA : Stanford.

The Confucian Thought and Capitalism

Chang Sam Yang*

Abstract

In most of Asian history, Korea, China and Japan are the societies that have been under the strongest Confucian influences. The Confucianism was not merely a religious foundations of spiritual culture of these countries; it was an important philosophical principle that dominated and directed education, politics and other spheres of practical life. The Asian business world is not an exception.

Since the financial difficulties in some Asian countries, so called "IMF situations" broke out, the Westerners criticized the Asian value so severely. Most of the criticisms went to the Confucian practices in those countries. Chaebul monopolizing, dictatorial push, bribery, all kinds of abnormal behaviors were considered as the products of the Confucian business activities.

Max Weber studied the Confucian society, specially China and concluded there was no transformational power. Even the Chinese government led the "Down with the Confucianism" movement on May 4, 1919 because there was no sign of the so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as long as the Confucian formal rituals prevailed. Now the Asian culture under the Confucianism faced the harsh criticisms.

This thesis intends to explore the main points of the Confucian thoughts and expectations. After the through review on the Confucian writings and critics, I found the Confucian's strong desire of the social transformation, eagerness of virtual witness, and normal business practice. I could hardly see the Asian value the westerners criticized so badly.

This thesis found a big gap between the Confucian thoughts and our social practices. The thoughts are ideal, but Asian business practices are not met the standard. The Westerners looked at our practices, not thoughts.

* Department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All we have to do is to find an right way the Confucian stresses so long and put more effort to practice it. To transform our society, we have to set up new Korean value which will be the spritual heritage of all mankind, not limited by the Confucian thoughts.

Key words : Confucian thought, Asian value, and new Korean value

후레더릭 테일러와 피터 드러커의 경영사상에서의 生産性 研究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F.W. Taylor and P.F.
Drucker toward Worker Productivity

이 재 규*

目 次

| | |
|---------------------|--------------------------|
| I. 서 론 | III. 지식작업에 대한 연구 |
| 1. 문제의 제기 | 4. 테일러와 드러커의 비교 |
| 2.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 IV.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전략 |
| II. 지식과 지식사회의 의미 | 1.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강조점 |
| 1. 지식의 발전과 의미변화 | 2.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방법 |
| 2. 지식사회의 생산함수 | V. 요약과 향후 연구과제 |
| III. 육체작업과 지식작업의 비교 | 1. 요 약 |
| 1. 육체작업과 지식작업의 사례 | 2. 향후 연구과제 |
| 2. 육체작업에 대한 연구 | |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IMF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일반적 의미의 사회(society)와 지식인 사회(intellectual society) 그리고 학문적 사회(academic society) 모두에서 신지식인(homo knowledgian)¹⁾ 또는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²⁾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특히 전자는) 겸종을 거쳐 학문적 족보를 엿어 보면 타당한 것으로 수용되기도 전에 급속히 확산되어 사용하는 사람들 제각각 편리한대로 쓰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개념이 전통적인 지식인 개념과 충돌할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

*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 김효근은 신지식인을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지식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자아를 실현해 가는 인류”로 정의했다.

2) Peter F. Drucker, Post Capitalist Society, Harper,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 역, 한국경제신문사, 1993).

다³⁾.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지식이 현대 사회의 핵심 생산요소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지식사회, 지식작업, 지식근로자 등의 용어를 지어낸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후레더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즉 경영(management)이 20세기 사회에 기여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진실로 고유한 것은 제조분야에서 육체근로자의 생산성(manual worker productivity)을 50배나 증가시킨 사실이다⁴⁾. 20세기의 기업이 보유한 가장 가치있는 자산은 그 기업의 생산수단 즉 생산시설(production equipment)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조직들이 – 그것이 기업이든 또는 비기업이든 간에 – 보유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그 조직의 지식근로자 그리고 그들의 생산성이 될 것이다⁵⁾. 따라서 21세기에, 경영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여는 지식작업과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부(富)의 창출도구가 생산시설(자본)에서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지식노동)으로 이동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산성의 내용도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에 관한 테일러와 드러커의 업적과 견해를 역사적 관점에서 변화를 추적하고 그리고 그 시대적 의미의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1) 연구 목적

이 논문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영학 차원에서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지식(knowledge), 지식작업(knowledge work),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 그리고 지식근로자 생산성(knowledge worker productivity) 등에 대해 산업사회의 육체작업과 육체근로자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육체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후레더릭 테일러(Frederick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과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향상방법에 관한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의 견해를 경영사적 관점에

3) 도정일은 최근 교수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신지식인과 신지식인에 대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지식인은 지식인이 아니고, 경제활동에 연관되지 못하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는 편견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도 교수는 신지식인 운동은 결국 돈이 최고라는 가치체계를 갖게 하고, 사회는 시장이 아닌데도 시장 논리만으로 모든 재단(裁斷)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다툼 현상은 ‘신지식인 운동’ 시작 때부터 예견했다. 1998년 12월 4일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사람이 신지식인”이라고 정의하고, “농민도 머리를 써서 농사를 지으며 그것이 지식산업이고 지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4) Peter F.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Harper, 1999. § 5.

5) Peter F. Drucker, 위의 책.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규범적·서술적 방법 및 비교방법이다. 먼저 산업사회의 육체근로자 생산성에 관한 부분은 테일러가 직접 쓴 저작물들과 테일러에 관한 연구서, 최근에 발표된 테일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서를 기초로 현재적 관점에서 그 의미와 의의를 탐구한다.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에 관한 부분은 드러커의 저서와 주장들을 정리하고 탐구한 뒤 테일러와 비교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과학적 관리법과 드러커의 견해의 내용을 깊이 천착하는 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사회·정보사회의 생산이론들이 결코 역사적으로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님을 추적하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재해석과 재구성의 결과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비교서술 방식을 채택한다.

II. 지식과 지식사회의 의미

1. 지식의 발전과 의미변화

1) 내면의 지식 – 인격도야

우리는 먼저 지식 그리고 지식사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드러커는 지식사회에서 지식이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된 것은 지식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고, 또한 지식의 발전은 3단계를 거쳤다고 주장했다⁶⁾.

첫째 단계, 고대 중국과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지식은 인간의 내부에만 있었다. 고대 중국의 현인들이 도(道)를 닦는다거나 인격을 수양한다는 것,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지식은 지식인 자신의 내면을 향한 것이었다. 이 때의 지식은 요즈음 우리가 흔히 듣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에서 그 “위기”를 맞고 있는 일반교양(allgemeine Bildung)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2) 도구와 결합한 지식 – 생산성 혁명

둘째 단계, 지식이 인간의 내면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기술(technology)과 도구(tools)에 적용된 것이다. 그것이 곧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다. 산업혁명의 결과, 증기기관·엔진·자동차 등 기술과 생산 도구들이 개발되어 자본생산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켰다. 이때부터 지식은 인간의 내면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로 활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중요성을 평가받게 되었다.

19세기 말경부터 자본생산성의 증가는 한계를 맞게 된 반면, 지식이 노동과 결합하여 노동

6) Drucker,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pp. 52~56.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향상시켰다.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내재적 모순”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소외”, “착취”, “계급”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생산성 혁명(productivity revolution)이다. 그러나 생산성 혁명은 주로 육체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다. 산업혁명 후기에 노동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은 후데더릭 테일러와 그의 지지자들인 과학적 관리기사들의 역할이었다(〈표 1〉 참조).

3) 지식과 지식의 결합—경영혁명과 지식사회

지식의 발전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지식이 다른 지식들과 결합한 때부터이다. 이를 드러커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경영혁명(management revolution, M)이라 명명했다. 지식이 다른 지식들과 결합하여(옹용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되면서(이것이 바로 창의성이 중요하게 된 이유이다), 인류는 또 한번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라고 명명한다면, 지식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사회를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라고 명명할 수 있다.

〈표 1〉

지식의 의미 변화

| | |
|---------------|---|
| 과거 | 동서양 모두 지식은 존재(being)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크라테스, 도교 : 지식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 프로타고라스, 유교 : 지식은 말해야 할 것과 어떻게 말하는지를 아는 것 ⇒ 공통점 : 지식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음 |
| 18c 중반~19c 중반 | 지식이 도구, 공정, 제품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c 기술학교와 [프랑스 백과전서]는 과거 천년간 발전해온 기능들 (technique)을 세상에 공개함 · 1840년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리비히는 과학을 적용하여 최초의 인공 비료를 발명 ⇒ 산업혁명 (자본생산성 향상) |
| 19c 말~2차대전 | 지식이 노동(work)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일러는 처음으로 노동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공학화하는 데 지식을 적용 · 2차대전 기간중 미국은 테일러의 방식을 체계적으로 훈련에 적용하여 수개월 만에 일류 기술자를 만들어 냄 ⇒ 생산성 혁명 (노동생산성 향상) |
| 2차대전 이후 | 지식이 지식 자체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란 어떤 결과를 놓기 위해 기존 지식을 가장 잘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지식을 사용하는 것 · 경영혁명(지식혁명, 지식생산성 향상) |

자료 : 피터 드러커, 자본주의의 이후의 사회에서 정리

2. 지식사회의 생산함수

토지와 노동이 주요 생산요소인 사회를 농업사회라고 하고, 노동과 자본이 주요 생산요소인 사회를 산업사회라고 한다면, 지식사회는 지식이 주요 생산요소인 사회를 말한다. 지식사회의 생산함수와 지식경영에까지 이르는 개념상의 변화를 추적·비교할 필요가 있다.

1) 산업사회의 생산함수

본격적인 지식사회 이전의 사회 즉 산업사회의 생산요소(production factors)는 토지와 천연자원이었고, 생산수단(production means)은 노동수단과 각종 도구였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P_i = f(C, L)$ – 이 때 P_i 는 산업사회의 생산함수, C 는 자본, L 은 노동이다.

2) 지식사회의 생산함수

만약, 지식사회를 지식이 주요 생산요소 겸 생산수단인 사회로 정의한다면, 지식사회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P_k = f(K)$ – 이 때 P_k 는 지식사회의 생산함수, K 는 지식이다.

3) 지식경영 함수

앞에서 지식(K)을 사물지(事物知) 또는 사실지(事實知)라고 한다면, K 를 이용하여 – 드러커 식으로 표현하면 connect 하여 – 새로운 K' 를 만드는 것을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이라고 할 수 있다⁷⁾. 따라서 지식경영 함수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P_{k'} = f(K, M)$ – 이 때 M 은 지식을 융용하는 능력인 경영이다.

이런 상태를 드러커는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과 생산성혁명(productivity revolution)에 뒤이어 온 경영혁명(management revolution)으로 명명했다.

III. 육체작업과 지식작업의 비교

1. 육체작업과 지식작업의 사례

7) Alvin Toffler는 이를 K-factor(knowledge factor)로 표현하면서, 구 소련의 권력에서 지식인자(knowledge factor)가 갖는 합축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늘날의 역사적 ‘권력 이동’은 가장 기본적인 권력 원천 중 2가지 – 폭력과 부 – 를 더욱 더 제3의 원천, 즉 지식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식중심 기술의 보급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순환 때문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을 크게 앞지를 수 있었다.”

1) 테일러의 삽질 연구⁸⁾

(1) 베들레헴 강철회사의 작업 방법

숙련된 삽꾼이 모래를 푸는 일을 살펴보면 한 번에 삽질하는 무게가 일정할 때 하루의 작업량이 가장 많다. 베들레헴 강철회사에서는 그 때까지 삽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양과 무게가 다른 삽을 가지고 있었으며, 광석을 들 때는 한 삽의 무게가 30파운드에 달한 적도 있고, 같은 삽으로 석탄을 들 때는 4파운드 밖에 안된 적도 있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무거워서,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가벼워서 하루분의 일을 끝내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일류 노동자의 하루분의 일의 양은 한 삽의 무게가 5, 10, 15, 20, 25, 30 또는 40파운드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할까? 테일러는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실험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 테일러의 동작연구와 그 결과

먼저 테일러는 일류의 삽꾼을 2~3명 골라 특별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충실히 일할 것을 약속받았다. 실험의 관찰자는 노동자가 삽의 무게를 여러 가지로 바꿔 가면서 일한 결과를 여러 주간에 걸쳐 관찰했다. 그 결과 한 삽의 무게가 약 21파운드일 때 하루의 일의 양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물론, 한 삽이 언제나 정확하게 21파운드가 되도록 뜰 수는 없다).

삽질 연구 결과에 따라 베들레헴 강철회사는 노동자가 스스로 삽을 골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8~10종의 삽을 준비하고, 삽질하는 대상(모래·석탄·광석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삽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것은 평균 21파운드의 무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구에도 맞추기 위해서였다. 과학적으로 삽질 연구를 하는 동안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요소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커다란 공구실을 만들어 그 속에 삽 외에도 곡괭이, 쇠자렛대 등의 도구류를 고유한 위치에 표준화하여 넣어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가 어떤 재료를 취급하더라도 삽질 한 번에 21파운드가 되는 삽을 쉽게 제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표 2〉 일반적 관리법과 과학적 관리법의 비교

| | 과거방식 | 과학적 관리방식 |
|-----------------|----------|----------|
| 작업장내 노동자수 | 400~600명 | 140명 |
| 1인 1일의 평균 작업 톤수 | 16톤 | 59톤 |
| 1인 1일의 평균 임금 | 1.15달러 | 1.88달러 |
| 1톤의 평균작업 비용 | 0.072달러 | 0.032달러 |

자료 : 과학적 관리법, p. 112.

8) Frederick W. Taylor, 과학적 관리법, 1911.

2) 지식작업의 사례⁹⁾.

(1) 외과병원의 작업

미국 중서부 어느 도시에 25명의 정형외과 의사로 구성된 평범한 병원이 있었다. 주변 인구의 감소와 신규병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의료공급 방식을 탈피하고 다음과 같은 혁신을 시도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직하고는 최고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 의료활동을 하기로 했다. ① 의료집단의 개별 의사들은 자신의 수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이 수행하고, 개별 의사들은 개별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하는 것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수술실과 회복실의 값비싼 자원들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③ 마취사 또는 외과 간호사 등과 같은 보조 지식근로자를 최적으로 활용하고, ④ 의료집단 전체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생 학습과 지속적 혁신을 확립시키고, ⑤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2) 병원혁신의 결과

전통적으로 각각의 의사들은 아침 일찍 외과수술 계획을 짰다. 그러므로, 수술실과 회복실은 다른 시간에는 거의 비어 있었다. 지금은 그 병원은 수술실과 회복실의 사용 계획을 전체 의료팀의 상황에 맞추어 짜기 때문에 값비싼 수술실과 회복실의 자원이 하루 10시간 가동되고 있다. 그 의료팀은 진정 팀처럼 행동하고,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구와 설비의 표준화를 결정했다. 또한 품질관리를 시스템 속에 포함시켰다. 매 3개월마다 3명의 의사들을 특별히 선정하고는 각각의 의사들에 의해 수행된 모든 수술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과업을 부여했다. 그들은 진단·수술·수술 후 처리 등을 검사했다. 그런 후 그들은 수술을 집도한 개별 의사와 마주 앉아 그 수술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개선할 곳이 어딘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의사의 수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를 보고 의료팀에서 떠나 주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매년 그 병원의 감독위원회는 의료팀 전체가 참가한 가운데 품질 기준을 논의하고, 기준을 올리고, 그리고 때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도 했다.

그 결과 그 병원은 지금 과거보다 거의 4배나 더 많은 일을 한다. 그 병원은 비용을 50%나 줄였는데, 그것의 반은 수술실과 회복실의 낭비를 제거한 때문이고, 나머지 반은 도구와 설비를 표준화 한 덕분이었다. 그리고 무릎이나 어깨관절 대체수술의 성공률 또는 운동 중에 입은 타박상의 회복 등과 같이 성공률을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분야에서 그 병원은 엄청나게 성과를 개선했다.

2. 육체작업에 대한 연구

9) 피터 드러커,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 6.

<표 3>

일반병원과 지식병원의 비교

| | 일반병원 | 지식병원 |
|--------------------------|------------|---|
| 수술시간 배정 (수술실·회복실의 이용) | 오전 | 하루 종일 |
| 간호사·의료보조원 활용 | 집중된 시간에 활용 | 근무시간 중 골고루 활용 |
| 교육·훈련 | 병원 취업 이전 | 평생개념 |
| 수술 책임 | 개인 | 개인 |
| 도구와 설비 | 개인별 주문 | 표준화 |
| 품질관리 | 없음 | 3개월마다 진단, 수술, 수술후 처리 검사 (수준미달 의사 퇴직권유) |
| 품질목표 | 없음 | 매년 수준 향상 |
| 수술 건수 | 100% | 400% |
| 비용 | 100% | 50% |

자료 : 피터 드러커, *Management Challenges for 21st Century*에서 정리.

1) 테일러의 업적 : 노동에 관하여 관념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의 시도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가 육체노동과 육체근로자에 대해 글을 쓸 무렵, 마르크스는 사실상 육체노동과 육체근로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기계를 실제로 만져 본적도 없었다. 두 가지 모두를 처음으로 한 사람은, 즉 육체근로자로서 실제로 작업을 하였고 그리고 그 뒤 육체작업을 직접 연구한 사람은 후례더릭 테일러(Frederick W. Taylor, 1856~1915)였다. 따라서 테일러 이전에는 근로자들 사이에 숙련(skill)의 차이,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자의 차이, 장시간 일한 자와 단시간 일한 자의 차이는 강조됐으나, 작업연구와 시간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productivity) 향상 개념은 없었다.

2) 테일러의 육체근로자 생산성 향상 방법

(1) 태업의 원인과 방지

테일러는 태업(soldiering)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태업을 방지하므로써 노사간에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⁰⁾. 그는 만약 노동자들이 각종의 태업 즉, 게으름을 부리거나, “느릿느릿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노사의 관계를 개선하고 관리자측과 친밀하게 협동하고, 관리자측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력을 다해 최대 속도로 작업을 하면 각 노동자 및 각 기계당 산출고를 평균 2배 정도로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1900년대 초). 미국 및 영국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론이 주창되고 있었지

10) Frederick W. Taylor, *과학적 관리법* pp. 31~33.

만, 테일러는 “변영을 촉진하고, 가난을 없애는데 있어서 태업을 방지하는 것 보다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 실제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은 관세·대기업의 지배권 통제·세습권의 통제·다소 사회주의적인 과세 방법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태업과 같은 매우 중요한(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태업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직접적으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향상시키고 생활수준을 높이고 또한 나라 전체의 생산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였다.

태업이나 기타 “작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면 생산비는 감소되고, 이것으로 불경기·실업·빈곤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은 짧아지며, 공장 및 가정의 환경도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바꾸어 말해, 각 노동자가 매일매일 “최고의 생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최대의 변영을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는 일부러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테일러는 쓰고 있다. 따라서 테일러는 태업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연구와 시간연구를 착수했는데, 그 목적은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향상을 통한 산업평화였다.

(2) 필요없는 동작의 제거(피로의 제거)와 동작에 대한 지식의 적용

테일러가 작업(노동)을 실질적으로 연구할 때 관찰한 것은, 노동(labor)에 대해 과거 모든 시인과 철학자가 낭만적으로 표현한 것과 실제의 노동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그들 모두는 숙련(skill)을 찬양했다. 자신들만 할 수 있는 그 “숙련”으로 먹고사는 집단이 –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이 – 장인조합 또는 노동조합이었다.

그러나 테일러는 육체작업에는 숙련이란 것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로 테일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척당했다). “육체작업에는 다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들 뿐이다(쓸데 없는 동작을 제거하고 피로를 줄여서). 육체작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과학적 지식이고, 지식은 단순하고 미숙련된 동작을 통합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테일러는 지식을 작업방식에 적용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3) 육체작업 생산성의 정의와 측정

(1) 생산성의 정의

생산성의 사전적 의미는 ① 단위 노동에 대한 생산물의 양, ② 토지·자본·노동력 등 생산의 요소에 투입된 투입량과 그로써 산출된 생산물의 산출량과의 비율이다. 따라서 생산성은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표시되며, 투입량(input)에 대한 산출량(output)의 양적인 비율로 표현된다.

$$\text{생산성(Productivity)} = \frac{\text{산출량(Qutput)}}{\text{투입량(Input)}}$$

이러한 정의는 산업사회에서의 생산성에 관한 정의로서, 생산요소(토지·노동·자본)의 유효이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투입된 생산요소와 산출의 종류에 따라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부가가치생산성 등으로 구분·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테일러는 투입노동량 뿐만 아니라 노동의 방식 변화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text{육체근로자의 생산성} = \frac{\text{산출고 증가}}{\text{투입노동량 증가}}$$

(전통적 생산성 측정 방식)

$$\text{육체근로자의 생산성} = \frac{\text{산출고 증가}}{\text{투입노동량} + \text{작업방법의 개선(동작 감소, 피로의 제거)}}$$

(테일러의 방식)

(2) 도구의 개선

테일러는 동작의 개선을 통한 작업방법의 개선에 이어, (앞의 삽질 연구를 통해) 사용하는 각종 도구를 근로자의 육체적 조건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

$$\text{육체근로자의 생산성} = \frac{\text{산출고 증가}}{\text{투입노동량} + \text{도구의 개선}}$$

(3) 테일러 이전의 생산성과의 차이

테일러 이전의 생산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ext{과거의 생산성} = \frac{\text{산출고 증가}}{\text{토지의 투입} + \text{노동력의 투입} + \text{자본의 투입}}$$

다시 말해, 테일러 이전에는 인간의 동작연구, 시간연구, 그리고 도구의 개선으로 인한 산출고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산출의 품질도 당연히 고려하지 않았다.

$$\text{테일러의 생산성} = \frac{\text{산출고 증가}}{\text{투입노동량} + \text{작업방법의 개선} + \text{도구의 개선}}$$

3. 지식작업에 대한 연구

1) 지식작업과 관련한 연구의 학문적 위치

지식근로자 생산성(knowledge worker productivity)에 대한 연구라는 관점에서 1999년 현재의 우리는, 육체근로자 생산성(manual worker productivity)이라는 관점에서, 한 세기 전인 1893년 테일러가 과업관리·작업연구·시간연구 등 경영컨설턴트 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서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그 당시 사람들이 육체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이미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우리는 심지어 해답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그 해답을 모르는 도전들이 많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와는 달리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100년 전과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와 방법

앞의 지식작업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식근로자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과업이 무엇인가?” 육체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업”을 잘 수행하는 “방법”(how)이 중요했지만,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과업(what)의 결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

둘째, 그것은 지식근로자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책임을 개별 지식근로자에게 부과하도록 요구한다. 지식근로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해야만 한다. 그들은 자율성(autonomy)을 가져야만 하고 또한 책임(responsibility)을 져야만 한다.

셋째, 지속적인 혁신(continuing innovation)은 지식근로자의 작업의, 과업의, 그리고 책임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육체작업의 경우, 계획·지시·감독하는 사람과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근로자는(시킨대로 하면 되고) 실질적인 혁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넷째, 지식작업은 지속적인 배움(continuous learning)과 지속적인 가르침(continuous teaching)을 지식근로자의 한 속성으로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은 산출량(quantity) 뿐만 아니라 품질(quality)도 똑같이 중요하다.

여섯째, 지식근로자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식근로자를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확보·유지·보상해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들은 육체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것과는 거의 정반대이다.

〈표 4〉 육체근로자와 지식근로자 생산성의 결정요소와 방법

| 항 목 | 육체근로자 | 지식근로자 |
|-------------------|------------------|------------------|
| 1. 질문사항 | 기존과업의 보다 나은 수행방법 | 과업 그 자체의 결정 |
| 2. 성과책임 | 지시한 자 | 본인 |
| 3. 혁신 | 불필요 | 본인이 지속적으로 추진 |
| 4. 지속적 학습과 지식의 공유 | 불필요(숙련대신 행동 강조) | 필요(새로운 지식·정보 흡수) |
| 5. 생산성의 핵심(측정기준) | 양 | 질 |
| 6. 근로자를 보는 관점 | 비용 | 자산 |
| 7. 강조되는 능력 | 성실(태업의 방지) | 창의성(성실파괴) |

3) 품질에 대한 관점의 차이

(1) 품질에 대한 육체작업적 관점 : 품질은 제약 요인

육체작업에서도 품질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육체작업에서 품질의 부족(또는 미달)은 제약요인이다. 어떤 최소 수준의 품질 기준은 있어야만 한다. TQM은 그런 최소 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제품을 골라내는 능력(비록 완전히 골라내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육체작업에서 품질은 제약요인이다.

(2) 지식작업에서 품질은 산출의 핵심

그러나 지식작업에서는, 품질은 (산업사회와 육체작업과는 달리) 최소 기준도 아니고 제약요인도 아니다. 지식사회에서 품질은 산출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식사회 품질에는 사전에 정해진 수량적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연구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는 그 연구원이 연구한 시간이 몇 시간인가 (양적인 기준)하는 것보다는 연구원이 무엇을 연구했는지 (질적 기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식작업의 생산성은 먼저 (어떤 수준의) 품질의 달성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최소 필수 수준의 품질(minimum required level of quality)이 아니라, (최고 품질은 아니라 해도) 적절한 수준의 품질을 겨냥해야 한다. 그런 뒤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산출고 즉 작업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우리는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올리는 과업의 출발점을 작업의 양이 아니라 작업의 품질로부터 출발한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는 품질 그 자체가 무엇인지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지식근로자 생산성의 정의와 측정

따라서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은 “지식근로자의 투입량과 그로써 산출된 남다른 품질 수준의 산출량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지식근로자의 생산성} &= \frac{\text{산출의 품질과 수량}}{\text{지식근로자의 투입}} \\
 &= \frac{\text{산출의 품질과 수량}}{\text{지식(또는 지식재고)의 투입과 용용}}
 \end{aligned}$$

4. 테일러와 드러커의 비교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산업사회에 대한 후레더릭 테일러의 공현과 지식사회에 대한 피터 드러커의 공현을 ① 사회를 보는 관점, ② 사회에 대한 기여, ③ 생산성의 핵심, ④ 생산성 향상의 목적, ⑤ 품질을 보는 관점, ⑥ 경영자(관리자)의 임무, ⑦ 일하는 방식 등을 다음과 같이 비교·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를 보는 관점에서 테일러는 그 당시 미국의 인구증가가 이민인구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그 중심이 토지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시대였으나 정착사회를 모델로 삼았다. 드러커는 사회가 지식사회가 될수록 이동성이 커지는 현상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테일러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의 확산을 막았다. 드러커는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바뀌는 시점에 근로자가 노동생산성 위주의 육체근로자에서 지식생산성 위주의 지식근로자로 변신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셋째, 생산성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테일러는 국가와 개인의 부를 증진한다는 목적에서 산출양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드러커는 생산기술의 향상에 따라 산출양보다는 품질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거나 남다른 품질을 강조했다.

넷째, 생산성 향상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테일러는 노사 간의 갈등을 마르크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최고의 임금과 최소의 인건비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드러커는 생산성 향상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기업을 포함해 조직은 사회에 즉 조직의 외부에 결과를 제공하고 사회에 봉사할 때 조직은 존재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다섯째, 품질 자체를 보는 관점에서 테일러는 품질에 대한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생산활동에서 제약요인으로 보았고, 드러커는 끊임없이 향상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여섯째, 경영자의 임무라는 측면에서, 테일러가 초기의 조직이론에 기여한 두 가지 큰 공헌은 계획과 집행의 분리 그리고 직능식 조직이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근로자의 지식수준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경영자의 임무는 부하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드러커는 부하가 자신

〈표 5〉

테일러와 드러커의 비교

| | 테일러 | 드러커 |
|---------------|---------------------------|---------------------------|
| 1. 사회를 보는 관점 | 정착사회 | 이동사회 |
| 2. 사회에 대한 기여 | 산업사회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 지식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
| 3. 생산성의 핵심 | 산출양의 증가 | 품질의 증가 |
| 4. 생산성 향상의 목적 | 산업평화 | 결과의 산출 |
| 5. 품질을 보는 관점 | 제약요인 | 향상의 대상 |
| 6. 경영자의 임무 | 부하의 감독 | 지식근로자의 지식재고 증가(지식관리) |
| 7. 일하는 방식 | 계획과 집행의 분리, 지시와 감독 그리고 명령 | 계획과 집행의 통합, 자율과 창의 그리고 책임 |

IV.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전략

1.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강조점

1)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은 고객만족 수준의 결정부터 출발한다

(1) 과업의 결정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바퀴를 조립하는 근로자는 조립공정에 차대(샤시)가 도착하고 이어서 바퀴가 도착하는 동시에 그것을 조립하도록 작업이 (또는 직무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다. 즉 육체작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항상 분명하다.

육체작업에서 핵심질문은 언제나, 작업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이다. 육체작업에서 과업은 언제나 주어진 것이다. 육체근로자 생산성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 누구도 “육체근로자가 해야 할 작업 그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유일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육체근로자가 (이미) 주어진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가?”였다.

그러나 지식작업에서는 과업 자체가 근로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식근로자의 창의성과 판단능력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강조해야 할 것을 가운데 첫번째 것은, “과업은 무엇인가?”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근로자 생산성에 관한 것과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질문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하나의 이유는 육체작업과는 달리 지식작업에서 지식근로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사전에 계획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고객만족과 품질

결론적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지식근로자의 과업은 만족한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

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근로자 자신이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해야 한다. 이는 제공해야 할 품질의 수준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1) 지식근로자에게는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1) 자신에 대한 책임의 강조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그 다음에 강조해야 할 사항은 지식근로자 자신이 스스로 기여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이다. 품질과 수량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지식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지식근로자는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지식근로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와 명령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끊임없는 혁신, 지속적인 배움, 지속적인 가르침도 지식근로자 직무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야만 한다.

(2) 새로운 성과급으로서의 연봉제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 이전의 임금 지급방식인 시간급을 차별적 성과급으로 대체했다. 지식사회에서는 소위 학력파괴·성실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고정급 또는 연공급 대신에 새로운 성과급인 연봉제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3) 지식작업은 높은 품질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형적인 공립학교는 자신의 과업을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돋는 것”으로 규정했고, 전형적인 기독교계 학교(특히 가톨릭 교회 교구산하의 학교)는 그들의 과업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한 곳은 학문적 실패를 바탕으로, 다른 한 곳은 학문적 성공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당연히 전자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작업의 사례에서 매년 품질 기준을 향상하는 것과 같이) 지식작업의 품질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 그 자체가 지식작업을 규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식근로자는 자기 스스로 작업해야만 한다. 그를 감독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그는 품질을 규정해야만 하고, 그것을 제공해야만 한다.

2.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방법

1) 리엔지니어링과 체계적 폐기를 해야 한다

(1) 리엔지니어링 또는 불필요한 프로세스의 통합

지식작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지식근로자를 어떤 과업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불필요한 모든 과업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에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후 마이클 해머의 주장과 같이 작업 프로세스 가운데 불필요한 프로세스, 조직, 동작 등을 “통합” 해야 한다¹¹⁾.

(2) 체계적 폐기

그러므로 지식근로자 생산성에 관한 연구는 지식근로자 스스로에게, “무엇이 당신의 과업인가? 당신이 기여 (또는 공헌)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답을 들은 후에, “그리고 당신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리고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다시 질문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드러커는 체계적 폐기(systematic abandoning)으로 명명했다.

2) 자본적 재산으로서 지식근로자의 확보와 활용이 필요하다.

(1) 육체근로자와 지식근로자의 차이

① 비용 대 자산

육체근로자 생산성과 지식근로자 생산성 사이의 차이점을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보는 관점”이다. 경제이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 실무는 육체근로자를 비용(cost)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올리려면 지식근로자는 자본적 재산(capital asset) – 사전적 의미로는 일반적인 재산과 달리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는 구입할 수도 팔 수도 없는 장기적 재산 – 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비용은 통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절감될 필요가 있다. 그 반면 재산은 증가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의 전적으로 육체작업 뿐인 시대의 작업에서는, 이직비용을 제외하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원칙은 매우 숙련된 사람들만 제외하고, 어떤 육체근로자는 다른 육체근로자와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작업과 지식근로자의 경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식근로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② 육체작업을 하는 종업원들은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육체근로자들은 종종 실제로 값진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오직 그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 내에서만 값진 것이다. 그들은 기계와 도구가 있는 공장으로 일하러 갔다. 기계와 도구 그리고 공장은 휴대가 불가능하다(달리 표현하면 육체근로자는 공장을 떠나 재택근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식근로자는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두 귀 사이에 축적돼 있는 지식은 전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엄청난 자본적 재산이다. 지식근로자는

11) Hammer, Michael, “Reengineering work : don’t automate, obliterate”, Harvard business review, Vol. 68, No. 4, July-August 1990.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높다. 작업이 그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온다. 따라서 재택근무 또는 어디서나 작업이 가능하다.

(2) 경영자의 임무는 재산의 보전이 아니라 지식근로자의 유지이다.

경영자의 임무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지식근로자의 지식이 재산으로 되는 경우에 경영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될 터이지만, 지식이 어떤 기관의 주요 재산이 되는 경우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인적자원관리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고로 생산성이 높은 지식근로자를 유인하고 보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육체작업의 생산성에도 “국적”이 없다. 과학적 관리에 기초한 훈련은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육체근로자 생산성을 최고 선진국 수준의 산업 또는 기업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오직 지식근로자의 교육분야에서만 여전히 의미있는 경쟁적 우위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지식근로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갖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3) 지식근로자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과업의 시작방법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작업과 지식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점은 육체근로자를 더욱 생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근로자에게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태도의 변화는 개별 지식근로자 쪽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도 태도를 바꾸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 것은 탐색적 시도(pilot test)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조직 또는 일단의 지식근로자들 가운데 수용 가능성이 높은 한 분야를 찾아 먼저 탐색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앞의 지식작업 사례에서 정형외과 의사집단은 오래 전부터 근본적 변화를 부르짖은 4명의 의사들—연장자 한 명에 나머지 3명은 젊은 의사들—에게 그들의 아이디어를 먼저 실행토록 의뢰했다. 그런 뒤에 범위가 좁은 영역에서 소규모 집단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중단하지 않고 연구했다. 그 이유는 조직에서 첫번째 시도하는 것들은 대체로 비록 대환영 받을 일이라 해도, 거의 틀림없이 모든 종류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 그리고 저항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V. 요약과 향후 연구과제

1. 요 약

이 논문은 최근 우리 사회의 정부 고위층에서부터 작업계층까지, 그리고 언론에서부터 대학과 연구소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신지식인”, “지식혁명”, “지식경영”,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논쟁과 논의에 역사적·비교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는 것이다. 언론과 정부에서 “신지식인”이라는 용어를 앞세워—그리고 그것으로 IMF를 극복할 수 있는 듯이—암묵적으로 추진하는 “사회개조운동”이(우리 사회 일각에서) 역사성도 없이 마치 우리 나라가 최초로 벌이는 운동처럼 인식되고 있는 점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 시기에 정부와 언론과 학계가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역사성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그것은 각종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신지식인을 간단히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그런 개념과 사람 또한 오래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돈벌이 위주의 신지식인에 대한 인문과 학자의 반론을 차지하고라도) 슘페터가 말하는 혁신의 핵심은 즉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의 핵심은 신결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최초로 지식을 도구와 작업에 적용한 태일러와 지식을 다른 지식과 융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지식경영혁명 개념을 최초로 제공한 드러커를 비교하고, 드러커가 주장하는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방법을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즉 지식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2. 향후 연구과제

지식근로자의 등장이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들은 경제시스템의 미래와 구조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고용조직의 목적 그리고 고용조직 경영의 목적에 대해 다시 정의를 내려야만 한다. 그것은 첫째, 주주와 같은 법적 소유주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둘째, 조직에 부의 창출 능력을 제공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소유자 즉 지식근로자를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존능력은 점점 더 지식근로자를 생산성 있게 만드는 그들의 “비교우위”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고의 지식근로자를 유인하고 보유하는 능력은 조직의 최우선의 전제조건이자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은 순수히 “무형적”인가? 그것은 확실히 중심적 문제일 것이다. 그것은 경영자에게도, 투자자에게도, 자본시

장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돈이 아니라 지식이 기업을 지배할 때 “자본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지식근로자가 진정한 재산인 시대에 – 다른 누구도 그 지식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 “자유시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식근로자는 사울 수도 없고, 팔려 갈 수도 없다. 그들은 인수 또는 합병에 함께 따라 오지도 않는다. 사실, 심지어 그들이 소유한 최대의 “가치”는 아무런 “시장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관점으로도 지식근로자가 소유한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질문들은 이 논문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 그러나 지식근로자와 지식근로자 생산성이 핵심 질문으로 등장하게 되므로서, 앞으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자본주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은 지식근로자에 관한 제반 연구가 조만간 직면할 새로운 연구과제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재규, 리엔지니어링과 카이Zen, 21세기북스, 1994.
2. _____, 빅뱅경영, 21세기북스, 1998.
3. 김식현·김종진·박경규, 경영학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2.
4. Copley, F. B., Frederick W. Taylor : Revolutionist, Privately Printed 1916.
5. Davenport, Thomas H., and James E. Short, “The new industrial engineering :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process redesign”,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1, No. 4, Summer 1990. pp. 11~27.
6. Davenport, Thomas H., Process Innovation : Reengineering Work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3.
7. Downs, Robert B., Books That Changed America, New American Library, Inc., 1970.
8. Drucker, P. F., Post Capitalist Society, 이재규(역), 한국경제신문사, 1993.
9. “The Discipline of Innovation”, HBR, May-June 1985. November-December 1998. 재수록.
10. “The Coming of the New Organization”, HBR, January-February 1988.
11. The New Reality, Harper, 1989.
12. Managing in a Time of Great Change, Harper, 1995.
13.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Harper, 1999.
14. Hammer, Michael, “Reengineering work : don't automate, obliterate”,

- Harvard business review, Vol. 68, No. 4, July–August 1990.
15. Howard, Ray, "Don't Automate-Elininate", WSJ, October 21, 1985.
 16. Kakar, Sudhir, Frederick Taylor : A Study in Personality and Innovation,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70.
 17. Kanigel, Robert, The One Best Way : Frederick Winslow Taylor and The Enigma of Efficiency, Viking Penguin, 1997.
 18. Taylor W. Frederick, The Scientific Management, 1911. 신영철 역, 한국능률협회, 1988.
 19.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1981. 이규행(역), 한국경제신문사.
 20. Urwick, L., The Golden Book of Management, Newman Neame Limited, 1953.
 21. Wrege, Charles D. & Greenwood, Ronald G., Frederick W. Taylor : Scientific Management, Richard D. Irwin, 1991.

A Study on the Accounting Systems of the Districts in Developed Countries

Lee, Jae-Kyoo*

Abstract

The most important, and indeed the truly unique, contribution of Management in the 20th century was the fifty-fold increase in the productivity of the Manual Worker in manufacturing.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management needs to make in the 21st century is similarly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Knowledge Work and Knowledge Worker. The most valuable assets of a 20th century company was its production equipment. The most valuable asset of 21st century institution whether business or non-business will be its Knowledge Workers and their productivity.

Work on the productivity of the knowledge worker has barely begun. In terms of actual work on knowledge worker productivity we are, in the year 2000, roughly where we were in the year 1900, a century ago, in terms of the productivity of the manual worker. But we already know infinitely more about the productivity of the knowledge worker than we did then about that of the manual worker. We even know a good many of the answers. But we also know the challenges to which we do not yet know the answers, and on which we need to go to work.

There are several questions to study further. Management's job is to preserve the assets of the institution in its care. What does this mean when the knowledge of the individual knowledge worker becomes an asset, and, in more and more cases, the main asset of an institution? What does this mean for personnel policy? What is needed to attract and to hold the highest producing knowledge workers? What is needed to increase their productivity and to convert their increased productivity into performance capacity for the organization? What does the emergence of the Knowledge Worker and of Knowledge-Worker Productivity mean for the govern-

ance of the corporation? What do they mean for the future and structure of the economic system? For with the emergence of pension funds and mutual funds as the owners of publicly-owned companies, power has shifted to these new owners, namely, knowledge workers and retired knowledge workers. But it is certain that the emergence of the Knowledge Worker and of the Knowledge-Worker's productivity as key questions will, within a few decades,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the very structure and nature of the economic system.

Key-Words : knowledge, knowledge society, knowledge work, knowledge worker, knowledge worker productivity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3)

－1930年代에 설립된 기업체를 중심으로－

Characters of the Native Capitals in the Korean Cotton Industry Under the Colonial Period(3)

李 漢 九*

目 次

| | |
|--------------------|----------------|
| I. 序 論 | IV. 代表的 企業家 類型 |
| II. 1930年代의 棉作政策 | 1. 地主出身型 |
| III. 民族系 繩產業의 存在樣態 | 2. 廉民出身型 |
| 1. 製造業 | V. 結 論 |
| 2. 商業 및 貿易業 | |

I. 序 論

본 논문은 일제하 朝鮮總督府의 綿紡織產業政策의 변화에 대응, 우리나라 면방직산업의 성장을 주도한 민족계 기업가들의 성격 등을 규명함으로써 면방직산업의 근대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직접적인 연구대상은 시기별로 새롭게 면방직산업에 진출한 민족계 기업 및 기업가 등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시기 이전에 설립되어 이 시기까지 계속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분석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첫째, 작업량이 방대하고, 둘째, 계약기업들에 대한 자료수집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대상산업은 1차산업인 棉花栽培業을 비롯하여 繸綿, 紡績, 紡織 등 제조업과 면제품 판매 및 무역업부문 등 면화의 재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산업부문을 포괄하였다. 그러나 작업량이 방대하여 연구의 편의상 대상시기를 세분하였는 바, ①개항기(1876~1909년)와 ②1910年代(1910~9년), 그리고 ③1920年代(1920~9년) 및 ④1930年代(1930~9년)로 구분하여 별도의 논문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미 발표한 논문인 ①開港後 新興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1993, 黃明水教授回甲論文集 소수)와 ②日帝下 土着綿工業

* 水原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1) – 1910年代를 중심으로(1995, 經營史學 第10輯 소수), 그리고 ③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2) – 1920年代를 중심으로 – (1998, 經營史學, 第17輯 소수)의 후속작업으로 1930年代(1930~1939)를 주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즉, 1930년 대에 새로 설립된 민족계 기업을 연구대상화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東亞經濟時報社 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1년판, 1927년판, 1939년판, 1941년판), 張在洽 編 朝鮮人大商店辭典(1927), 朝鮮織物協會 編, 朝鮮纖維要覽(1943년판), 木山耕藏 編, 朝鮮紳士銘鑑(1911년판), 朝鮮研究會 編, 新朝鮮盛業銘鑑(1917년판), 朝鮮新聞社 編, 朝鮮人事與信錄(1922) 등 주요 자료 등을 전부 섭렵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업체는 공칭자본이 대체로 1萬圓 이상의 회사조직을 갖춘 기업체에만 초점을 맞춘 때문에 영세기업들의 존재양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본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면화의 생산, 면직물 제조, 면직물 판매 등 면직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들만 고찰대상화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들 중 면직물 외에 견직물, 마직물 등 기타 섬유류도 병행, 취급하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 업체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일제하 민족계 면방직산업의 총체적인 성장과정에 초점을 맞춘 때문에 개별기업들의 경영양식, 기계화 정도, 자본의 축적과정 등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I. 1930年代의 棉作政策

朝鮮總督府는 1928년에 ‘棉作獎勵 第1期 計劃’을 종료하면서 종래의 면작지 확장을 통한 면화증산정책을 중지하였다. 대신 면작농가들에 集約栽培를 장려,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면작의 증산을 도모하였다¹⁾.

그러나 총독부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간 중단했던 면작지 확장을 통한 면화증산정책을 재차 추진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1932년부터 새로 ‘棉花增產計劃’을 실시하였다. 이 계획은 첫째, 農家經濟의 향상, 둘째, 日本의 棉花自給度 향상, 셋째, 日本 國際收支의 改善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1933년부터 향후 20년 간에 걸쳐 추진하기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전국의 棉作地面積을 50萬町步로 확대, 實棉의 목표생산량을 6억斤 으로 책정하였다.

總督府는 이 계획을 2期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第1期 計劃’은 1933년부터 1942년 까지만 10년 동안, 그리고 ‘第2期 計劃’은 ‘第1期 計劃’이 끝난 직후부터 10개년 간에 걸쳐 추진하기로 하였다.

1) 1928年度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p. 229 참조.

'第1期 計劃'에서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南鮮 6도 및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등 도합 9개 도를 棉作獎勵地區로 설정하고 목표량은 作付面積 25만 町步, 實棉生產高 3억斤 등이었다. 이 계획은 종래의 계획들과는 달리 작부면적의 확장보다는 段別 生產量의 증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면작장려지역에 產業技師 및 郡駐在 產業技手制를 설치하고 指導郡에 대한 각종의 시설을 보조하기로 하였다²⁾.

일본이 이상과 같이 棉花增產計劃을 실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째, 1933년 '產米增殖計劃'의 중단 때문이었다. 일본은 1910년 韓國強占 아래 한국을 日本資本主義의 완성을 위한 原料供給地로서 개발하였는데 이와 같은 原料確保政策의 초점은 米穀, 繡絲, 棉花 등이었다.

일본이 이 중에서도 특히 역점을 둔 사업은 미곡증산사업이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米穀을 한국내에서 조달하고자 1920년부터 '產米增殖計劃'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韓國產 쌀의 일본수출량은 해마다 격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의 장기화는 급기야 일본내의 쌀값을 하락시킴으로써 "일본내의 地主階級을 중심으로 소위 鮮米排斥運動이 일어났다. 특히 1930년의 세계적인 農業恐慌이 일본을 휩쓸어 米價下落이 극에 달하자(日本政府가…引用者註) 韓國產 쌀의 수입을 제한"³⁾하면서 이 계획이 중단되었다 것이다.

둘째, 1930년대 이후 "日本 紡績資本이 대량으로 한국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산 면화는 아주 저렴한 원료로써 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⁴⁾. 즉, 국내의 면방적시설이 확대되면서 이를 위한 면화의 수요가 급증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여 1933년 이후 일본의 對韓原料確保政策의 중심은 종래 미곡증산정책에서 '南棉花羊政策'으로 변화되었다.

면화증산계획은 1934년에 들어서면서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33년 이후 10개년에 걸쳐 作付面積은 당초 25만 정보에서 35만 정보로 확장하며⁵⁾, 實棉生產高 또한 당초 3억斤에서 4억2천만斤으로 증가시키고, 둘째, 면작장려구역도 종래 9개 도에서 함경도를 제외한 11개 도로 확장하며 이를 위해 1934년에는 종래 龍岡棉作出張所를 棉作支場으로 승격시켜 이 기관으로 하여금 西鮮地方의 재래면 우량품종을 육성케 하는 한편 재배법의 연구 및 보급에 주력케 하였다⁶⁾.

그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면화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中日戰爭이 발발하던 1937

2) 1931, 2年度 施政年報, pp. 224~5 참조.

3) 大韓紡織協會 編, 紡協二十年志, 1967, p. 60.

4) 上記, 紡協二十年志, p. 59.

5) 1933年度 施政年報, p. 229 참조.

6) 1934年度 施政年報, p. 239 참조.

| | 면화 생산량 추이 | | | (단위 : 千斤) |
|-------|-----------|--------|---------|-----------|
| | 육지면 | 재래면 | 합계 | |
| 1931년 | 78,721 | 37,191 | 119,193 | 550 |
| 1933년 | 114,313 | 45,102 | 159,415 | 756 |
| 1935년 | 169,948 | 43,800 | 213,748 | 1,014 |
| 1937년 | 200,420 | 39,868 | 240,288 | 1,140 |
| 1939년 | 191,462 | 18,873 | 210,336 | 998 |
| 1940년 | 180,222 | 6,618 | 186,840 | 886 |

* 1910년을 100으로 한 지수.

자료 : 1940年度 統計年報, p. 5에서 작성.

년에는 2억4천만 근에 달했는데 이것은 '第1期 棉作獎勵計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직전인 1911년의 實棉生產高 2천6백만斤에 비하면 무려 900배에 해당한다. 실로 비약적인 증가였다.

한편 이 기간 중 면직물의 수출입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31년 현재 조면의 수출량은 17,016천斤으로⁷⁾ 국내 실면생산량 119,193천근의 14.3%였다. 그러던 것이 국내의 실면생산고가 절정을 이루던 1937년에는 조면수출량은 13,602천근(실면생산량의 5.66%)으로⁸⁾ 1931년에 비하여 오히려 20.1%나 감소하였다. 이 기간 중 실면생산량의 점진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면의 수출량은 점감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한국내에서 면작증산을 획책하여 면화생산량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조면수출량이 점감하는 것은 한국내에 방직시설 등이 확충됨으로써 한국내의 원료수요가 증가한 때문이다.

〈표 2〉 연도별 방직공업 생산액 추이 (단위 : 千圓, %)

| | 방직공업 생산액(A) | 전체공업 생산액(B) | A/B |
|-------|-------------|-------------|------|
| 1931년 | 32,924 | 252,924 | 13.0 |
| 1932년 | 47,196 | 310,836 | 15.2 |
| 1933년 | 55,327 | 367,235 | 15.0 |
| 1934년 | 67,791 | 438,401 | 15.5 |
| 1935년 | 82,327 | 607,476 | 13.5 |
| 1936년 | 99,477 | 730,806 | 13.6 |
| 1937년 | 141,153 | 959,308 | 14.7 |

자료 : 朝鮮總督府 統計年譜, 昭和, 12年版, pp. 66~67에서 작성.

7) 1931年度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pp. 287~293 참조.

8) 1937年度 統計年報, pp. 158~159 참조.

이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의 방직공업 생산액 증가로 간접확인이 가능한데 특히 이 시기에 국내 방직시설의 점증 및 일관화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면직물 수입구조의 변화이다. 즉, 1929년 아래 1930년대 초기까지 조면, 면사 등 원료 및 반제품과 면직물의 수입액은 점증하고 있다⁹⁾. 그러나 1935년 이후부터 최종 생산물인 면직물과 면사의 수입량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조면의 수입량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35년 현재 수입된 면사와 면직물은 각각 1,868천 근과 174,589만 마였는데 1937년에는 면사 1,555천 근과 면직물 133,039만 마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조면은 1935년 현재 29,198천 근에서 1937년에는 54,041천 근으로¹⁰⁾ 불과 2년 사이에 1.85배나 격증하였다.

한편 이 기간 중 면사 및 면직물이 만주, 관동주에 대한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다. 즉, 1935년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은 면사 665만 근과 면직물 15,988백만 마에서 1936년에는 면사 832만 근, 면직물 28,777백만 마로, 1937년에는 면사 1,819만 근과 면직물 74,513백만 마 등으로 해마다 격증하고 있다. 이는 1931년에 발발한 만주사변 이후 북중국 일대가 새로 일본시장에 편입되어 이 지역에 대한 면직물의 수요가 격증한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면직물 수출이 해마다 격증한 것이다. 이기간 중 한국의 면방직 시설이 급속히 확충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1930년대에도 한국은 여전히 면작증산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의 면작증산 강요는 이전 시기와는 사뭇 다른 환경 때문에 추진되었다. 즉, 1920년대까지 한국은 일본 방직산업에 필요한 원료공급 차원에서 면작증산을 강요받았다. 따라서 1920년대까지 한국에서 생산된 면직물 원료는 대부분 일본에 수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일본의 중국침략이 본격화하면서 이들 지역의 면직물 수요가 격증하자 면화증산이 절실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면화증산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 면화를 수입하여 이를 일본에서 제조한 후 만주지역에 공급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전쟁의 신속한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내의 면방직산업 시설의 확충과 일관화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 무렵 일본 섬유관련 독점자본의 한국진출에 의해 가속화하였다. 이로써 1930년대에 한국 면방직산업의 근대화, 대형화, 일관화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하 한국 면산업의 근대화는 철저하게 일본 면산업의 근대화 및 일본 군국주의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들의 주도 하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1930년대 아래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일본내의 많은 유휴 독점자본들이 자신을 보전하고 동시에 식민지 초파이윤을 얻고자 한국에 대거 진출하였는데 이는 일본 군국주의의 대륙침략욕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9) 朝鮮總督府 統計年譜, 昭和 6年版, pp. 293~295 참조.

10) 朝鮮總督府 統計年譜, 昭和 12年版, pp. 160~161 참조.

일본 자본주의 발전의 부산물로서 한국 면방직공업의 근대화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III. 民族系 編產業의 存在樣態

1930년대에 새로 설립된 기업체(자본금 1萬圓 이상의 한국인 및 일본인 경영업체, 한일 공동경영업체 포함)들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조면업 9개 업체, 방직 및 방직업 15개 업체, 상업 및 무역업 39개 업체 등 총 63개 업체이다. 이 중 일본인에 의하여 설립된 업체들의 산업별 분포내역을 보면 조면업 5개 업체(조면업전체 진출 기업체수의 55.56%), 방직 및 방직업 9개 업체(방직 및 방직업전체 진출 기업체수의 60%), 상업 및 무역업 15개 업체(상업부문 전체 진출 기업체수의 38.46%)로 이전 시기처럼 제조업에서의 일본자본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이전시기와는 달리 조면, 방직, 방직, 상업 및 무역업 등 전산업에 걸쳐 고르게 출현하고 있다.

또한 상업 및 무역업의 경우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기업체는 15개 업체로 이 부문에서는 여전히 한국자본에 비해 열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부문에 진출한 기업체들 중 일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38.46%)은 1910년대의 10.71%, 1920년대의 1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930년대에 일본자본의 상업 및 무역업에 대한 진출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다.

한편 1930년대에 새로 면방직산업에 진출한 민족계 기업체(한일 공동경영업체 포함)들의 산업별 분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10년대에 새로 설립된 기업체(공칭자본 1萬圓 이상)는 총 71개 업체인데 이 중 민족계 기업체들의 산업별 진출내역을 보면 방직업 7개 업체, 상업 및 무역업 48개 업체 등 총 55개 업체로써 방직업 및 무역업에 집중되어 있다¹¹⁾. 또한 1920년대에 설립된 기업체(공칭자본 1萬圓 이상)들 중 민족계 기업체는 총 37개 업체로써 이들의 산업별 진출내역을 보면 방직업 2개 업체, 상업 및 무역업 35개 업체 등으로 1920년대에도 여전히 방직업 및 상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¹²⁾.

반면에 1930년대에 면방직산업에 새로 진출한 민족계 기업체들의 내역은 조면업 4개 업체, 방직 및 방직업 6개 업체, 상업 및 무역업 24개 업체 등 총 34개 업체로써 이전 시기에 비해

11) 抽稿,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1)’, “經營史學” 第10輯<1995年 6月>, 9면의 ‘1910年代에 설립된 企業體의 民族別 現況’ 참조.

12) 抽稿,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2)’, “經營史學” 第17輯<1998年 6月>, 219면의 표 ‘民族別 企業體現況’ 참조.

민족계 기업설립운동이 다소 둔화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처럼 방직업 및 상업등 특정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출현이 지양되는 대신 민족계 기업체들의 불모지였던 조면업과 방직업에 새로 민족계 기업체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는 점과 산업별로 고루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면방직산업의 근대화와 관련,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표 3>

民族別 企業設立 現況

(단위: 업체수)

| | 제 조 업 | | | 상업 및 무역업 | 총 계 |
|--------|-------|-----|----|-------------|-----|
| | 조면업 | 방직업 | 계 | | |
| 한국인 기업 | 3 | 3 | 6 | 22 | 28 |
| 일본인 기업 | 5 | 9 | 14 | 15 | 29 |
| 한일공동경영 | 1 | 3 | 4 | 2 | 6 |
| 총 계 | 9 | 15 | 24 | 39 | 63 |

자료 : 張在洽 編, 朝鮮人會社大商店辭典, 中村資良 編, 朝鮮銀行會社要錄,
1921년판, 1941년판에서 작성.

또한 1930년대에 진출한 면방직관련 기업체들의 연도별 분포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즉, 설립시기가 1933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35년 이후에 대부분 출현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30년대에 일본 獨占資本을 비롯한 產業資本이 한국에 대량으로 진출한 계기는 1929년에 발발한 世界大恐慌이었다. 일본은 공황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대내적으로 獨占強化政策을 실시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1930년 초부터 紡紗, 製絲, 石油, 시멘트, 鐵鋼 등 중요산업별로 카르텔을 결성하고 1931년까지 산업별로 최저 12%로부터 최고 65%에 이르는 광범한 生產制限을 단행하였다. 일본정부는 생산제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931년에는 '重要產業統制法'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일본내 각종 산업부문에서 資本의 遊休化現象이 발생하였다.

특히 重要產業統制法으로 기업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느끼던 개별 產業資本들이 同法의 施行圈外에 놓여있던 한국에 치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까지 한국에는 '工場法'이 실시되지 않아 노동력의 무한한 착취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공황 하에 시달리던 일본 독점자본에게 있어 카르텔의 구속이 없는 식민지에의 진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식민지 특별이윤을 획득코자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紡績, 시멘트, 麥酒, 製粉, 製紙, 人絹 등의 일본 산업자본들이 꼬리를 물고 한국에 진출하였고 朝鮮總督府는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¹³⁾.

한편 일본이 공황탈출구로서 마련하였던 滿洲事變은 끝내 1937년 中日戰爭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戰爭의 長期化, 戰場의 擴大로 말미암아 한국은 끝내 日本軍國主義의 大陸侵略을 위

13) 上계, 紡協二十年志, p. 61.

한 兵站基地로 전략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는 전쟁수행과 관련한 戰爭特需狀況이 새롭게 전개됨으로써 日本獨占資本의 진출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일본의 면방직관련 독점자본도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대거 진출하였던 것이다.

<표 4>

年度別 企業設立 推移

(단위 : 업체수)

| | 제 조 업 | | | 상업 및 무역업 | 총 계 |
|-------|-------|-----|---|----------------|-----|
| | 조면업 | 방직업 | 계 | | |
| 1930년 | | | | 1 | 1 |
| 1931년 | | | | | |
| 1932년 | | 1 | 1 | | 1 |
| 1933년 | 2 | 1 | 3 | 1 | 4 |
| 1934년 | 1 | 1 | 2 | 4 | 6 |
| 1935년 | 1 | 3 | 4 | 7 | 11 |
| 1936년 | 4 | 4 | 5 | 9 | |
| 1937년 | 2 | 2 | 7 | 9 | |
| 1938년 | 1 | 1 | 5 | 6 | |
| 1939년 | 2 | 4 | 6 | 9 | 15 |

자료 : 張在治編, 朝鮮人會社大商店辭典, 中村自良編 및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1년판, 1941년판에서 작성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업 설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이다.

1930년대는 분명 한국근대 縱紡織產業의 완성기였다. 면방직산업의 근대화는 조면, 방직, 방직업의 일관화, 대량생산화를 통해 완성된다. 이는 계속기업들의 규모확대와 수직적 계열화 지속 그리고 신규기업들의 계열별 고른 진출로 촉진되었는데 산업별 상세한 진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製造業

1930년대에는 이전시기에 비해 제조업에 대한 민족계 기업들의 설립운동이 두드러지는데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면업부문이다. 한국에 근대적인 조면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이후부터이다. 이 부문의 경우 1910년대에 7개 업체, 1920년대에 1개 업체 등 극소수의 기업체들이 전라도, 경상도 등 주요 면작지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나 이들은 100% 일본자본이었다. 이 부문은 방직업, 상업부문과는 달리 1920년대까지 민족계 자본의 진출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면업에 대한 민족계 자본의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정부는 수입위체관리를 강화, 수입제한을 단행하였다. 당시 국내의 면방직 업체들은 원료로서 미국산 및 인도산 면화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바 정부의 수입위체관리 강화로 원면에 대한 수입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및 한국내에서는 원면에 대한 매점매석 현상이 나타나 원면가격이 급증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원면에 더욱 부채질을 하게 되어 업자 간에 원면획득을 위한 경쟁은 날로 격심해 갔고, 이에 둉달아 원면가격은 하늘로 그 위세를 치솟게 하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일본정부는 무슨 생각에선지 원면의 수입권을 실수요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면화상에 줌으로써 원면문제는 그 심각상을 더해 가게 하였다¹⁴⁾.

한편 일제는 1933년 3월부터 指定共販制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면작지역을 분할하여 특정지역의 면화수매권을 특정 繡棉資本家에 독점시키는 제도이다. 공판제 하에서 朝鮮紡織은 국내의 면화주산지인 전라도, 경기도, 황해도 일대를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이상과 같은 환경 하에서 국내에도 다수의 조면업체들이 새로 설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30년대에 조면업에 새로 진출한 기업체는 총 9개 업체이다. 이 중 일본인에 의하여 설립된 업체는 일본 山本棉花商店이 설립한 本田繢綿工場(1935년에 여수에서 자본 50萬圓으로 설립)과 馬山繢綿工場(1934년에 마산에서 자본 50萬圓으로 설립), 그리고 1933년에 목포에서 자본 150萬圓으로 설립한 全南棉花株式會社 및 1939년에 경성에서 자본 10萬圓으로 설립한 朝鮮纖維再生工業(再生綿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 니시키와타株式會社(1939년에 부산에서 자본 18萬圓으로 설립), 東亞絲業(1939년에 부산에서 19.5萬圓으로 설립) 등 6개 업체이다.

조면업에 진출한 민족계 기업으로는 1937년에 경성에서 金泳在가 자본 12萬圓으로 설립한 東洋製綿과 1933년에 역시 경성에서 李定宰가 자본 10萬圓으로 설립한 漢城製綿, 1937년에 평양에서 田在春이 자본 12萬圓으로 설립한 協同製綿 등 3개 업체이다. 조면업에 진출한 기업체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기업체 수가 일본 기업체에 비해 숫자적으로 적다는 점과 둘째, 자본 규모면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무렵 京城紡織에서도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원면의 자급을 위해 조면공장의 건설에 착수, 1937년 12월에 황해도 남천에 제1 조면공장을, 1939년에는 황해도 은율에 제2 조면공장을 각각 신설하였다. 南川繢綿工場은 황해도 平山, 瑞興, 新溪, 谷山, 南川 등지의 면작지를

14) 京城紡織五十年, 1969년 간, 99~100면.

를 배정받아 건설되었는데 대지 12,000평에, 공장건물 300여평, 창고 700여평을 확보하고 조면기 10대로 연산 500만 근의 면화를 생산하였다. 殷栗조면공장은 대지 8,000평에 공장건물 200여평, 창고 500여평을 확보하고 조면기 15대로 연산 300만 근의 면화를 생산하였다¹⁵⁾.

일본 자본가들은 면화 주산지인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 자본가들은 중부지방 이북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 이후 면작지가 종래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 이북으로 확대된 결과 북선지방은 상대적으로 일본자본의 침투가 더딘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이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조면업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지는데 그 와중에서 민족계 자본의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써 국내의 면공업은 종래방직, 방직중심에서 조면업으로 저변확대됨으로써 면방직업의 일관화, 대량생산화는 한층 진작되었다.

둘째, 방직 및 방직업부문이다.

1920년대까지 한국 면방직산업의 중심은 방직업이었다. 朝鮮紡織, 京城紡織, 東洋染織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제조업체는 물론 중소기업체들까지 전부 방직업에 특화, 일본 등으로부터 면사를 수입하여 직조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방직시설의 확대와 함께 방직시설의 확충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시기까지 면방직부문의 확충은 방직업체들이 원료인 면사의 직접생산방식으로 수직적 계열화하고 있는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부문에 새로 진출한 기업체들 중 자본 100萬圓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로는 1935년에 경성에서 自樂承이 자본 100萬圓으로 설립한 泰昌織物株式會社(직물제조, 원료염색가공을 위하여 설립)¹⁶⁾와 1936년에 일본 最大紡績資本의 하나인 東洋棉花가 경성에서 자본 100萬圓으로 설립한 京畿染織(1939년에 300萬圓으로 증자, 원래 緢布제조 및 염색업체였으나 후일 일반직물도 製織)¹⁷⁾, 伊藤忠商事が 1932년에 안양에서 자본 100萬圓으로 설립한 朝鮮織物¹⁸⁾ 등 3개 업체이다.

자본규모가 30萬圓 이하 10萬圓 이상인 중규모 방직업체들 중 日人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체는 朝鮮纖維工業(인천에서 1939년에 再生綿紡績을 위하여 자본 25萬圓으로 설립)¹⁹⁾ 등 6개업체이다. 반면 한국인에 의하여 설립된 업체로는 1939년에 경성에서 京城紡織과 和信이 합자하여 자본금 18萬圓으로 설립한 大同織物 등 4개 업체가 발견된다.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1936년 이후 일본 獨占資本에 의한 기업설립활동이 두드

15) 京城紡織五十年, 90, 93, 101면 참조.

16)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41년 판, p. 149 참조.

17) 上계서, p. 156.

18) 上계서, p. 142.

19) 上계서, p. 199.

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예로는 전술한 京畿染織, 朝鮮織物 외에도 일본 東洋紡績은 1934년에 仁川工場을(1945년 현재 紡織 35,088錘, 織機 1,280대)²⁰⁾ 그리고 1937년에는 紡機 45,238錘, 織機 1,140대 규모의 京城工場²¹⁾을 각각 설치하였으며 鐘淵紡績은 1934년에 紡機 33,363錘, 織機 1,510대 규모의 光州工場²²⁾과 紡機 49,720錘, 織機 1,525대의 京城工場²³⁾을 1935년에 각각 설치하였다. 또한 大日本紡績은 1939년에 京城工場을 설치하였고²⁴⁾ 帝國製麻는 1939년에 仁川工場(1942년에 麻紡積機 7,338錘, 綿紡績機 10,856錘, 織機 132대로 조업개시)²⁵⁾ 등을 설치하였다.

일본 독점자본들은 방직부문보다는 주로 방적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장하였다.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공장들은 규모면에서 볼 때 그간 한국 면직물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장악하던 朝鮮紡織, 京城紡織 등의 규모보다 월등한 것이었다.

한편 이 기간 중 京城紡織도 지속적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하는데 그러한 예로는 다음과 같다. 즉, 1933년 4월에는 직기 224대를 설치하고, 1936년 6월에는 방기 21,600초의 방적공장을 신설하였다. 그간 京城紡織에서는 원사를 100% 수입해야 했으므로 원사를 자체생산하는 朝鮮紡織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었다. 차재에 京城紡織에서는 朝鮮紡織의 한국인 방적기술자들을 스카웃하고 일본 豊田織機에 직기 224대, 방기 21,600초를 발주, 공장을 완공하였던 것이다²⁶⁾. 이로써 京城紡織은 근대적인 방적공장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1939년 1월에는 滿洲奉天省蘇家屯에 자본금 1,000萬圓의 南滿洲紡績株式會社를 신설하는 등²⁷⁾ 京城紡織 또한 이 시기 이후부터 종래 제작중심에서 조면, 방적 등으로 수직적 계열화에 착수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면방직산업은 조면, 방적, 방직 등 일관화가 완료된다. 더구나 이 시기에 이르러 종래 일본인들이 독점하던 조면업 및 방적업에 한국인 자본이 참여, 일본인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계 면공업자본은 종래 주변적 존재에서 점차 주체적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 1930년대는 확실히 국내 면공업의 근대화가 완성되는 시기였다.

2. 商業 및 貿易業

1930년대에 새로 설립된 상업 및 무역업체는 총 39개 업체로 1920년대(총 44개 업체)에 비해 다소 둔화하였다.

20) 大韓紡織協會編, 紡協十年志, 第2部, 會員工場編, p. 21.

21) 中村資良編, 삼계서, 1941년판, p. 117.

22) 上계, 紡協十年志, 제2부, p. 31.

23) 上계, 紡協十年志, 제2부, p. 107.

24) 上계, 紡協十年志, 제2부, p. 41.

25) 上계, 紡協十年志, 제2부, p. 47.

26) 京城紡織五十年, 87~89면 참조.

27) 京城紡織五十年, 94~95면 참조.

이들 업체 중 자본 50萬圓 이상인 대규모 업체로는 (株)廣澤商會, (株)廣昌商會, (株)壽南商會, (株)通口商店 등 4개 업체이다. 이 중 통口商會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전부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株式會社 廣澤商會는 1935년 京城에서 許澤이 자본금 50萬圓으로 설립하였으며²⁸⁾ 株式會社 廣昌商會는 1935년에 京城에서 趙善用, 趙鎮泰 등이 자본 50萬圓으로 설립하였다²⁹⁾. 廣昌商會는 1920년까지 趙舜用, 張命基 등이 남대문동 1정목에서 개인상회로 운영하다가³⁰⁾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1935년에 기업조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株式會社 壽南商會는 1935년에 京城에서 金泰熙 등이 자본 50萬圓으로 설립했다³¹⁾. 이 상회도 1920년까지 종로 1 정목에서 金泰熙가 개인상회로 운영해 오다가 기업조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³²⁾. 株式會社 通口商店은 1935년에 木浦에서 40萬圓으로 설립되어 1937년에 10萬圓을 증자하였다³³⁾.

자본규모가 10萬圓 이상인 업체들 중 한국인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체는 東亞織物販賣(1938년에 경성에서 趙俊鎬 등이 자본 40萬圓으로 설립), 東方織物(1939년에 경성에서 李圭元이 19萬圓으로 설립), 富屋商事(1939년에 시흥에서 張徇覺 등이 10萬圓으로 설립), 瓦信商會(1936년에 경남 산청에서 崔千弘이 10萬圓으로 설립), 浦項貿易(1936년에 포항에서 金龍周 등이 10萬圓으로 설립), 倭關商事(1937년에 왜관에서 李相周가 12萬圓으로 설립), (株)三光(1935년에 黃州에서 鄭然球가 20萬圓으로 설립), 江界商事(1936년에 강계에서 崔道衡 등이 일본인과 합자하여 30萬圓으로 설립) 등 8개 업체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일본인 기업체는 平戶商店(동사는 원래 일본 下關에서 설립된 기업체인데 1936년에 본점을 경성으로 이전함과 함께 자본 20萬圓으로 증자)³⁴⁾ 등 8개 업체로 민족계 업체와 동일하다.

한편 1930년대에는 상업부문에서도 제조업의 경우처럼 일본 獨占資本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러한 예로 東洋棉花가 1939년에 京城支店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株)山本棉花商店은 1939년에 京城支店을, (株)田村駒商店도 동년에 京城商店을 각각 개설하였고, 朝鮮紡織은 동년에 부산에서 계열사인 朝紡商事(자본 18萬圓)을 각각 설립하였다. 山本棉花商店과 田村駒商店은 일본내의 중소기업에 불과하나 朝紡商事 및 東洋棉花 京城支店은 일본최대의 독점자본인 三井財閥의 계열사이다.

28)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41년판, p. 462.

29)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41년판, p. 463.

30) 東亞日報, 1920年 4月 3日字 廣告.

31)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41년판, p. 465.

32) 東亞日報, 1920년 4월 3일자 광고.

33)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41년판, p. 456.

34)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41년판, p. 396.

<표 5>

1930年代에 설립된 企業體 現況(1930~1939)

| 제 조 업 | |
|-------|--|
| 조면업 | <p>東洋製綿(京城, 1937, 12萬圓, 대표 孫種洙, 취 : 金泳在, 孫允洙, 鄭樂圓, 恽高秀峰, 孫萬植)</p> <p>漢城製綿(京城, 1933, 10萬圓, 사장 李定宰, 취 : 金榮濟, 李重宰, 具然和, 恽洪翼杓)</p> <p>朝鮮纖維再生工業(京城, 1939, 再生綿製造, 10萬圓, 高瀬平治郎(柳町 染工場 취), 李鐘泰(감), 日人系)</p> <p>全南綿花(木浦, 1933, 150萬圓, 內谷萬平, 文在詰(취), 주), 金容安(감, 주), 金聲振(취), 合資, 日人系)</p> <p>本田繅綿工場(麗水, 1935, 50萬圓山本棉花商店系, 本田安五郎(馬山 繅綿工場 株主))</p> <p>니시키와타(釜山, 1939, 18萬圓, 奥清造, 日本系)</p> <p>馬山繅綿工場(馬山, 1934, 50만원, 山本棉花商店系, 大脇豊松, 日本)</p> <p>協同製綿(平壤, 1937, 12萬圓, 田在春)</p> <p>東亞綿業(釜山, 1939, 19.5萬圓, 米倉清三郎, 日本系)</p> |
| 방직업 | <p>泰昌織物(京城, 1935, 100만원, 사장 白樂承, 감 ; 李起柱, 취 ; 柳町助光)</p> <p>大東織物(京城, 1939, 18萬圓, 金容完, 合資, 朝鮮人系)</p> <p>同和織物(경성, 1939, 18萬圓, 金聖在, 金聖東, 合資, 朝鮮人系)</p> <p>廣熙織物(京城, 1936, 金熙培)</p> <p>京畿染織(京城, 1936, 300萬圓, 東洋棉花系, 淩山伊三郎, 日本系)</p> <p>種淵紡織 영등포공장(京城, 1936, 黑田賤夫, 日本系)</p> <p>東洋紡織 京城支店(京城, 1938, 日本系)</p> <p>朝鮮纖維工業(仁川, 1939, 25萬圓, 再生綿, 紡績, 森秀雄, 日本)</p> <p>朝鮮織物(안양, 1932, 100萬圓, 伊藤忠商事系, 高井兵三郎, 朴承稷(감), 日本系)</p> <p>오다후구와다(주)(부천공장, 1936, 日本系)</p> <p>水原織物(水原, 1933, 朝原宗郎, 日本系)</p> <p>木浦織物(목포, 1933, 20萬圓, 사장 千哲鎬, 취 ; 千吉鎬, 權寧禮, 千善才, 金公作, 감 ; 千福連, 張東植)</p> <p>(名)朝日織物(여수, 1935, 5만원, 대표 金漢永, 金正枰, 金鍾惠)</p> <p>朝鮮纖維工業(釜山, 1934, 20萬圓永淵嘉六, 朴明奎(감, 주), 1935년 조업개시, 사업처지, 정리증, 日本系)</p> <p>密陽織物(밀양, 1939, 3.8萬圓, 中野次郎, 日本系)</p> <p>共清洋機工場(평양, 1935, 1萬圓, 朴利彬)</p> <p>新光織物(龍岡, 1936, 30萬圓, 사장 權正敏, 취 ; 黃潤, 白南薰, 白南清, 韓彰煥, 감 ; 劉泰豹, 白南淑)</p> |
| 염색업 | 柳町 染工場(시흥, 1937, 30萬圓, 사장 柳町助光, 취 ; 邊相鎬, 감 ; 趙善用, 泰昌織物系) |

| 상업 및 무역업 | |
|----------|---|
| | <p>(資)崔相仁商店(京城, 1934, 2萬圓, 대표 崔相仁, 崔光勳, 趙善用)</p> <p>(주)廣澤商會(京城, 1935, 50萬圓, 사장 許澤(주), 전무 韓錫振, 상무 柳志淵, 쥐; 金正源, 감; 許槿, 주; 金正源, 安富善)</p> <p>(주)廣昌商會(京城, 1935, 50萬圓, 사장 趙善用(주) 상무 金英烈, 쥐; 趙鎮泰(주), 張泰鍼, 감; 洪鍾振, 李載昌)</p> <p>(주)壽南商會(京城, 1935, 50萬圓, 사장 金泰熙(주), 상무 金明熙(주), 쥐; 朱定均, 金眞熙, 金圭柄(주), 주주; 金圭培)</p> <p>(資)九鼎商會(京城, 1936, 5萬圓, 金淳興, 宋恩錫, 裴東秀, 姜熙復, 尹天植, 鄭龍憲)</p> <p>(資)二五商會(京城, 1937, 1.5萬圓, 金龍雲, 方晉全, 金成龍)</p> <p>(주)宋祥九商店(京城, 1937, 3萬圓 쥐; 宋祥九, 宋樂九, 田泳植, 감; 宋昌九, 洪淳赫)</p> <p>東亞織物販賣(京城, 1938, 40萬圓, 사장 趙俊鎬, 쥐; 李康國, 李容宰, 감; 金炯駿, 李正燮)</p> <p>(주)東亞商會(成興, 1930, 10萬圓, 대표 張潤河(주), 전무 金亨益(주), 쥐; 黃恒植, 金裕鉉, 金澤胤, 鄭在建, 金萬福, 金胄乾, 주주; 張道河)</p> <p>(주)京屋商店(京城, 1938, 5萬圓, 쥐; 孫台煥, 孫奎復, 孫聖俊, 奧山信太郎)</p> <p>金海織物合資(京城, 1938, 3萬圓, 白南薰, 白仁和, 朴禮分, 朴東潤, 金元根, 洪淳根)</p> <p>東邦織物(京城, 1939, 19萬圓, 사장 李圭元, 쥐; 李鍾鼎, 要然玉, 감; 李鍾湜, 李南範)</p> <p>昭和織物(京城, 1939, 6萬圓, 金淳興)</p> <p>(주)阪野(京城, 1930, 7.5萬圓, 坂野桑治郎, 日本系)</p> <p>리파인라사(京城, 1936, 30萬圓, 小林源六, 日本)</p> <p>丸宮商事(京城, 1938, 45萬圓, 山本博康, 日本系)</p> <p>(주)田村駒商店 京城支店(1939, 日本系)</p> <p>東洋棉花 京城支店(1939, 三井系, 日本系)</p> <p>(주)山本綿花商店 京城支店(1939, 日本系)</p> <p>南方商店(仁川, 1937, 20萬圓, 南方新一, 日本系)</p> <p>(資)金煥商會(開城, 1938, 2萬圓, 朴璋得, 金順福, 金煥文)</p> <p>富屋商事(시흥, 1939, 10萬圓, 사장 張洵覺, 쥐; 林相植, 감; 林永權, 合資會社, 朝鮮人系)</p> <p>東洋商工(光州, 1934, 3.3萬圓, 柳常碧)</p> <p>壺口商店(木浦, 1935, 50萬圓, 壺口由太郎, 日本系)</p> <p>內山商店(大邱, 1939, 10萬圓, 內山好亮, 日本系)</p> <p>(名)鄭仁五商店(釜山, 1937, 8.8萬圓, 鄭仁五, 朴允弘, 鄭仁石, 金壽命)</p> <p>朝紡商事(釜山, 1939, 18萬圓, 朝鮮紡織系, 時岡昇平, 日本系)</p> <p>日本帆布(釜山, 1934, 5萬圓, 前岡英明, 日本系)</p> |

(주)瓦信商會(산청, 1936, 10萬圓, 주 : 崔千弘, 崔烈萬, 閔致斌, 감 : 朴熙大, 具性根)

浦項貿易(포항, 1936, 10만원, 사장 金龍周, 취 : 崔炳基, 李恩雨 <이상 주>, 李之榮, 金斗河, 河命龍, 감사 : 姜疇錫, 주주 : 吳文祚)

(名)大興社(김천, 1937, 2만원, 李漢騏, 金容虎, 金教善)

倭館商事(와관, 1937, 12만원, 대표 李相周, 전무 文達坤, 상무 李承煥, 취 : 陳洪根, <이상 주주>, 尹炯達)

谷直商會(馬山, 1935, 25萬圓, 谷禹三郎, 日本系)

(주)三光(황주, 1935, 20萬圓, 사장 鄭然球, 취 : 趙錫助, 趙載淳, 文應奎, 朴元馨, 감 : 李東熙, 吳鎮憲)

藤村商店(安州, 1934, 10萬圓, 藤村桓一, 日本系)

江界商事(강계, 1936, 30만원, 사장 金龍宗<주>, 전무 弓昌宣<주>, 취 : 崔道衡, 韓鳳珉<주>, 崔德星, 劉相禹, 감사 : 劉昌漢, 姜炳柱, 金普源)

時弘商店(양덕, 1939, 5萬圓, 時弘德右衛門, 日本系)

(資)順榮商會(鏡城, 1937, 1.5萬圓, 金秀榮, 姜昌順)

永源合資(강릉, 1933, 3.6만원, 金永河, 金奇天, 金粉伊)

* 주 1 : 주 - 株主, 감 - 監事, 취 - 取締役

* 주 2 : (名) ; 合名會社, (資) ; 合資會社, (株) ; 株式會社

자료 : 中村資郎 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9, 1941년판, 紡協十年志, 1957에서 작성.

상업 및 무역업부문의 경우 1930년대에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자본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이전시기에 비해 일본인 자본들의 진출이 특히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서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이 부문에 대한 일본자본의 침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代表的 企業家 類型

1930년대에 민족계 기업의 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가들 중 주도적인 인사들은 총 162명이다. 이들 중 극히 일부가 일본인 기업체 및 한일합자 기업체에서 취체역, 주주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인사들은 민족계 기업의 설립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출신성분이 밝혀진 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출신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서민출신형 기업가로 추정된다.

이들 중 출신성분이 확인된 기업가들 중 지주출신은 文在喆, 趙俊鎬 등 2명과 서민출신은 朴承稷, 趙鎮泰 등 18명 뿐인데 이들의 경영참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地主出身型

文在喆은 1933년에 전남 목포에서 자본금 150萬圓으로 설립된 全南棉花株式會社의 대주주(30,000주 중 4,578주 소유) 및 취체역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사는 면화재배 및 조면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일인계 회사이다. 文在喆 외에 한국인으로는 金聲振(취체역)과 金容安(감사역)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金容安은 문재철과 함께 대주주(2,234주 소유)이기도 하다³⁵⁾.

文在喆은 木浦地方의 大地主로서 이지방에서 米穀商을 경영하여³⁶⁾ 부를 축적하였다. 그가 근대적인 기업가로 변신한 시기는 1919년에 木浦에서 玄基奉이 중심이 되어 자본 30萬圓으로 설립한 木浦倉庫金融株式會社에 취체역 및 주주(60,000주 중 680주 소유)로³⁷⁾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이후 그는 축적된 부에 근거하여 은행업, 상업, 제조업 등에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全南棉花의 설립 및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면화는 일본인계 기업으로써 문재철은 주변적 존재로 추정된다.

趙俊鎬는 1903년 4월에 구한말 명문거족이며 대부호였던 趙重鼎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본 中央大學 專門部 法科를 졸업한 후 1926년에는 영국에도 유학을 한 인테리 기업가였다. 그가 기업가로 변신한 것은 1930년에 자본금 30萬圓으로 설립한 東亞商事株式會社의 전무취체역을 맡으면서부터였다. 그후 그는 정력적으로 기업설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가 설립 및 경영에 관계한 기업체들은 '米豆王'이란 별명에 걸맞게 대부분 중권, 금융업이었다³⁸⁾.

금융통인 그가 어떠한 이유로 면산업에 진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는 없다. 그는 1938년에 京城에서 자본금 40萬圓으로 설립된 東亞織物販賣株式會社의 사장을 맡고 있다. 동사의 경영에는 조준호 외에도 李康國, 李容宰, 金炯駿, 李正燮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동사의 발행주식은 8,000주이고 이를 7명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趙俊鎬는 무려 7,000주를 소유하고 있다³⁹⁾.

2. 庶民出身型

한편 서민출신 기업가들 중 원로그룹에 속하는 인사로는 趙鎮泰와 朴承稷을 들 수 있다. 朴承稷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그의 축적기반인 면산업에서 꾸준한 기업설립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는 1932년에 경기도 안양에서 자본 100萬圓으로 설립된 朝鮮織物株式會社의 감사역

35)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39년판, p. 153~154 참조.

36) 趙俊鎬, 韓國企業家史, 1983, p. 152 참조.

37)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21년판, p. 78.

38) 振善, 日帝下 韓國企業設立運動史, 1989, pp. 217~8 참조.

39)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39년판, p. 500.

을 맡고 있다. 동사는 일반직물 제조를 목적으로 伊藤忠商事와 淩野合名會社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일본계 기업체인데 그는 1914년 公益社 설립 이래 伊藤忠商事와 긴밀한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그러나 朝鮮織物에서 그가 담당한 역할로 보아 동사 설립에 있어 그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趙鎮泰는 嘉永 6년에 경기도 양주에서 출생하여 1875년에 武科에 응시하였다. 그후 그는 1886년에 副司果라는 관직생활을 하였는데 곧 이를 청산하고 1895년에 株式會社 軍部被服工場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상인의 길로 접어든다. 이후 그는 1898년에 大韓天一銀行의 설립에 참여, 頭取에 취임하면서 근대 기업가로 변신하였다.

1905년 京城의 市廳商人 및 客主 등이 한국상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漢城商業會議所가 설립되었는데 그는 初代 會頭로 추대되는 등 명실상부한 경성의 商業界를 대표하는 실업가였다. 이 후에도 그의 기업가활동은 계속되어 1905년 漢城手形組合의 설립에도 깊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漢城倉庫會社 사장을 역임하였고, 1908년 일본의 한국침략의 전위기구인 東洋拓殖株式會社의 설립시에는 감사로도 추대되었다. 1911년에는 漢湖農工銀行의 이사에, 그리고 1920년에는 京城現物取引所 설립시 발기인 및 취체역에, 1925년에는 朝鮮鐵道株式會社의 취체역으로 추대된다.

이상에서 보듯 그는 구한말에 기업가로 변신하였는데 초창기에는 주로 한국인들이 설립한 기업체 및 각종 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일본의 韓國強占 이후부터는 주로 일본의 한국침략 前衛機構들의 중역을 맡으면서 점차 親日企業家로 변신한다. 이와 같은 공로가 인정되어 1927년에는 總督府로부터 中樞院 稱議에 추대된다⁴¹⁾.

한편 그는 1935년에는 주식회사 廣昌商會의 취체역 및 대주주로서 여전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동사는 京城에서 자본금 50萬圓으로 설립되었는데 사장은 趙善用이 맡고, 상무는 金英烈이, 취체역은 趙鎮泰·張泰鎮이, 감사역은 洪鐘振·李載昌이 각각 맡고 있다. 동사의 주식은 총 10,000주로서 11명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장인 趙善용이 4,310주를 그리고 趙鎮泰가 4,250주를 확보함으로써 이 두 사람이 동사의 실질적인 오너임을 알 수 있다⁴²⁾. 그러나 이 시기 그의 나이 및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는 동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廣昌商會는 경성 남대문통 1丁目에서 국내외 주단판매로부터 시작한 개인상회로서 1920년 4월 3일 현재의 주인은 趙舜用과 張命基로 되어 있다⁴³⁾. 그후 동 상회는 사업이 번창하여 1935년에 주식회사로 탈바꿈하였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원래 주인인 趙舜用과 張明基

40)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39년판, p. 152.

41) 朝鮮紳士刊行會 編, 朝鮮紳士錄, 1931, p. 278.

42)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39년판, p. 451.

43) 東亞日報, 1920년 4월 3일자 광고.

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어째서 경영진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趙善用과 造舜用은 형제지간이며 趙鎮泰 또한 이들과 특수한 인척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외에도 이 시기에는 경향각지에서 다수의 서민출신형 기업가들이 면산업에 등장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기업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에는 조면업, 방직업 등 제조업에서 약간의 민족계 기업체들이 등장하는데 한국인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체 중 가장 큰 기업체는 自樂承이 설립한 泰昌織物株式會社이다. 동사는 1935년에 경성 徽慶町에서 자본금 100萬圓으로 설립된 방직회사인데 경영진에는 矢野棟一, 後藤和雄, 柳町助光, 李起柱 등이 참여하고 있다⁴⁴⁾.

自樂承은 구한말 市廳商人 출신인 自潤洙의 4男으로 1886년에 태어났다. 그는 일본에 유학하여 明治大學 法科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家業을 계승·발전시켜 1916년에 大昌貿易株式會社를 설립하면서 기업가로 변신하였다. 그후 그는 1924년에 海東織物株式會社를 설립, 사장직에 올랐으며 1926년에는 금융업체인 愛國合名會社를 설립, 경영하기도 하였다⁴⁵⁾. 그는 先代에서 축적된 상업자본을 產業資本으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민족계 기업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

金泰熙는 1935년에 경성 종로 1가에서 자본금 50萬圓의 株式會社 壽南商會를 설립하였는데 동사의 경영진으로는 金明熙, 朱定均, 金眞熙, 金圭柄, 金圭瑢 등이 있다. 동 상회의 주식 수는 총 10,000주로 16명의 주주들에 의하여 소유되었는데 이 중에서 金泰熙, 金明熙가 각각 3,000주씩 소유하고 金圭柄, 金圭瑢은 각각 1,000주씩 소유하고 있다⁴⁶⁾.

壽南商會 또한 廣昌商會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개인상회(소유주; 金泰熙)로 존재해 왔는데⁴⁷⁾ 1935년에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소유주인 金泰熙는 1905년에 金漢奎, 張斗鉉, 朴承稷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廣藏株式會社의 감사역을 맡을 만큼 오랜 기업력을 가진 종로포목상 출신이다⁴⁸⁾.

張潤河는 金亭益, 黃桓植, 金裕鉉, 金澤胤 등과 함께 1930년에 합흥에서 자본금 10萬圓의 株式會社 東亞商會를 설립하고 그는 대표를 맡고 있다. 동사의 총주식수 2천주가 71명의 주주들에 의하여 소유되었는데 이 중에서 張潤河가 325주를, 동생인 張道河가 250주를 소유하고 있다⁴⁹⁾.

張潤河는 합흥지방의 목재상 출신인 張承河의 동생으로서 1925년에 張承河가 사망하자 그

44)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39년판, p. 160.

45) 拙著, 上계서, pp. 172~173 참조.

46)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39년판, p. 453.

47) 東亞日報, 1920年 4月 3日字廣告.

48)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21년판, p. 25.

49)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39년판, p. 414.

의 사업을 인계받아 사업가로 변신한 특이한 경우인데 그는 형이 남긴 자본을 발판삼아 北鮮商業銀行의 설립 등 주로 합경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민족계 기업설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⁴⁹⁾.

이들 외에도 1930년대에는 다수의 서민출신형 기업가들이 경향각지에서 대거 등장하는데 이들의 주무대는 상업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이들이 오래전부터 경영해 오던 개인상회를 근대적인 기업조직으로 탈바꿈한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들은 자본규모도 크고 기술집약적인 방적, 방직업 등 제조업에 진출, 산업자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면산업 근대화의 중심적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록 형태면에서는 주식회사 등 근대적인 조직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家族會社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1930년대 우리나라 면공업의 근대화에 있어 민족계 기업가들은 종래 주변적인 존재에서 점차 중심적인 존재로 전환하고 있다. 기술, 자본, 경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인 기업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한국인 기업가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규모 자본을 동원, 기계설비를 일본에 발주하는 한편 기술자 등을 적극 스카웃하여 기술집약적인 방적업 등 제조업에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면직물 수요의 증대, 방직관련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인 기술자층의 양산, 일본 면방적자본의 적극적인 한국진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1930년대 우리나라 면공업 근대화의 중심세력은 종래 관료 및 지주출신 기업가에서 서민출신형 기업가로 대체되고 있다.

1930年代 代表的 企業家들의 類型

地主出身型：文在喆, 趙俊鎬

庶民出身型；朴承稷, 自樂承, 金容完, 邊相鎬, 趙善用, 趙鎮泰, 金泰熙, 崔相仁, 許澤, 金淳興, 金龍雲, 宋祥九, 張潤河, 孫台煥, 鄭仁五, 崔千弘, 金秀榮, 金永河

V. 結論

1930년대는 한국 면공업의 근대화가 완성되는 시기였다. 19세기말 이래 방직업을 중심으로 기계화, 근대화가 추진되었으나 1920년대 까지의 근대화는 방직업을 중심으로 한 근대화였

49) 中村資良 編, 上解서, 1939년판, p. 414.

50) 拙著, 上解서, p. 225.

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방직업은 물론 조면업, 방직업부문에 다수의 자본들이 진출함으로써 한국 면방직공업은 조면, 방적, 방직 등 일관생산시스템이 구축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30년 공황의 탈출구로서 마련한 ‘重要產業統制法’의 구속에서 탈피하려는 일본 산업자본들이 植民地 超過利潤을 얻기 위해 한국에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더구나 1931년 滿洲事變 이후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야욕은 끝내 1937년 中日戰爭으로 비화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은 일본의 帝國主義戰爭을 수행하기 위한 兵站基地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에는 戰爭特需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조건 때문에 이 시기 한국의 產業構造는 종래 輕工業中心의 산업구조로부터 重化學工業中心으로 전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 編紡績資本의 대량유입이 야기됨으로써 한국 編產業의近代化, 一貫化가 촉진되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서 한국의 토착자본들도 종래 일본자본이 장악하고 있던 緯綿業 및 紡績業 등에 고루 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면방직산업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30년대에 새로 면방직산업에 진출한 토착 기업가들 중 귀족, 관료출신형 기업가들은 전무하다. 지주출신 또한 상대적으로 극소한 반면 절대다수가 서민출신형 기업가들이다. 그간 우리나라 기업설립운동을 주도하였던 관료 및 지주출신 기업가들이 퇴조한 공간을 서민출신형 기업가들이 메우고 있다. 서민출신형 기업가들은 분명 1930년대 면방직관련 기업설립 운동의 중심이었다.

종래 서민출신형 기업가들은 대규모 자본동원의 한계, 기술 및 근대적 경영능력 부족 등 때문에 주로 그들의 배태기반인 상업부문에서 활발한 기업설립운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료 및 지주출신 기업가들이 설립한 기업에 비해 자본규모도 영세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자본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방적, 조면 등 제조업에도 적극 진출함으로써 서민출신형 기업가들은 이 시기 면공업 근대화의 중심축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 우리나라 면공업의 근대화의 양대축은 기존의 일본자본과 토착의 서민출신형 기업가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소유, 경영하는 기업들은 자본, 경영, 기술, 대정부관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民族性이 탈색되고 대신 점차 隸屬化, 買辦化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도 면공업은 우리나라의 최중요산업의 하나로써 일본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관리 하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들은 원료의 확보, 자금지원 등에서 과거보다 더욱 심한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또한 선진기술과 자본재 등이 이 시기에도 예외없이 일본의 선진 면공업 자본에 의해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전 시기보다 예속적일 수 밖에 없었다.

Characters of the native capitals in the Korean cotton industry under the Japanese Rule(3)

Lee, Han-Koo*

Abstract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cotton industry was begun after 1900s. The industrialization was promoted by the Japanese and Korean native capitals. But the central axis of that was cotton-weaving industry until 1920s.

The serial production system(i.e., ginning-spinning-weaving process) was completed during the decade of 1930s. Especially a great many Japanese monopolistic capitals were inflowed in Korea during the 1930s. These were accerelated by the Sino-Japanese war(1937). These days, some of Japanese monopolistic capitals and Korean native capitals were inflowed in cotton industry. Therefore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cotton industry was completed. Japanese monopolistic capitals and Korean merchant capitals led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cotton industry.

But the Korean firms were disadvantageous on the business activity in contrast with Japanese firms. Because the textile industry wa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y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Japanese rule. And the high technology and capital goods were supplied by the Japanese textile companys.

Therefore the Korean native capitals were dependant on the Japanese capitals in those days.

* Professor of Suwon University

美國 地方政府의 會計制度에 關한 考察

A Study on the Accounting Systems of the Districts in
Developed Countries

金相圭* · 尹泰和**

目 次

| | |
|-------------------------|--------------------|
| I. 서 론 | 3. 기본적 회계원칙 |
| II. 정부회계기준의 세정기관과 회계기준 | IV. 연방정부 회계제도의 논의점 |
| III. 지방자치회계제도의 개념구조 | 1. 측정초점과 회계인식기준 |
| 1.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 목적 | 2.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
| 2. 측정초점과 회계인식기준 및 질적 측정 | V. 맷 음 말 |

I. 서 론

정부의 업무는 방대하고 다양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규모나 지출규모 투자규모도 다양하고 방대해지고 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역할도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시민들의 생활과 국민경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대의정부형태로서 이러한 정부형태에서 주권은 시민과 국민들에게 있다. 정부의 조직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유전자, 납세자, 의회 등에 대하여 공공책임을 진다. 따라서 정부가 그 공공회계책임(public accountability)을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정부의 제이해관계자 집단들이 정부의 회계책임의 수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회계제도가 필요하다.

* 경원전문대학 사무자동화과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 교수

지금까지 회계학분야는 영리조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회계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이에 따라 기업회계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이론적 체계와 합리적 회계처리 및 보고실무가 정착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부회계분야에서는 그 연구면에서나 실무제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정부회계가 발달하여 기업회계와 정부회계가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있고 회계연구 및 회계실무면에서 많은 업적이 축적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회계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회계가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통일된 개념이나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적인 사무처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회계학적 관심사라기보다는 재정학이나 행정학적인 관심사로 취급되어 왔다(권수영, 1995, p. 308).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및 정부의 예산과 집행 및 정부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와 국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부회계 이용자집단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회계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세계화 과정과 IMF경제 관리체제를 맞아 금융 및 기업체도가 선진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기업회계는 과거 일본의 회계제도의 틀을 벗어나 국제적인 제도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정부회계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정부회계의 개념 및 체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정부회계제도를 정립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확신한다.

II. 정부회계기준의 제정기관과 회계기준

1. 정부회계기준의 제정기관

1) 연방정부 회계기준의 제정기관

미국의 연방정부회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의 다양한 부서와 기관들에 분권화가 이루어져 각기 독자적 회계체계와 독자적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재무관리에 관하여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부(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OMB), 회계검사원(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 GAO)의 세 기관이 각 기관들의 회계시스템 및 재무보고 관행에 대한 조정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즉 의회의 주도에 의하여 1990년 재무부장관, 관리예산실장 및 회계검사원장이 공동합의로 연방정부회계기준 자문위원회(The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 FASAB)를 설립하여 연방정부의 회계제도 및 재무보고기준을 전

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Treasury, OMB 그리고 GAO는 연방정부의 회계기준 제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FASAB¹⁾는 이들 기관에 정부회계기준에 대하여 권고할 책임을 지고 있다. 회계기준은 세 기관의 전원 동의를 얻어 채택된다. 1996년 중반에 연방정부의 재무보고의 목적을 제정한 바 있다.

2) 주 및 지방정부 회계기준의 제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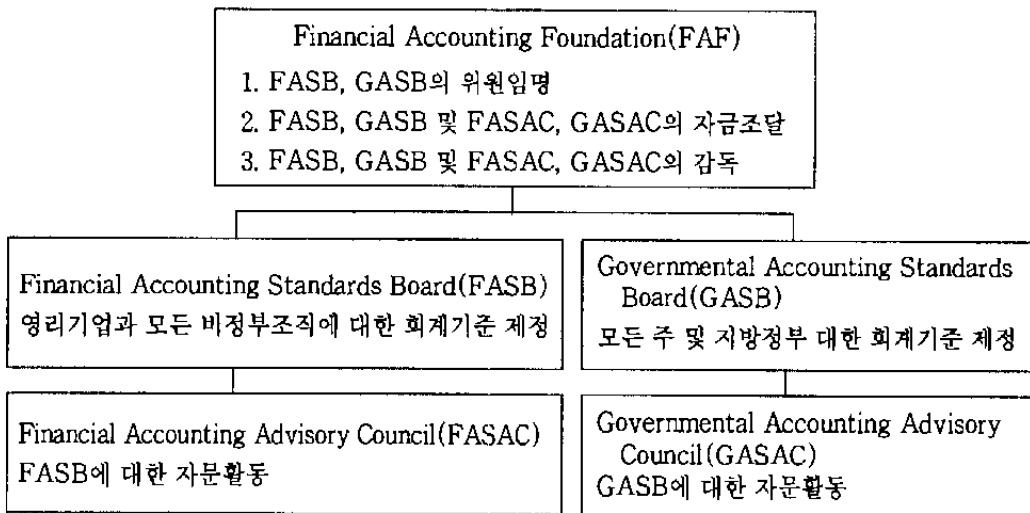
미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관은 정부부문에 대한 회계기준 제정기관과 사적부문에 대한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나뉜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연방정부를 제외한 모든 주 및 지방정부)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기준은 정부회계기준위원회(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GASB)에서 정하며, 정부부문 이외의 사적 비영리기관과 영리기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기준은 재무회계기준위원회(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FASB)에서 제정한다. GASB와 FASB는 공히 재무회계재단(The 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 FAF)의 산하기관으로서 FAF는 GASB와 FASB의 위원을 임명하고 두 기관의 운영비²⁾를 조달하며 전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한다.

비영리기관 중 정부부문이 운영하는 대학교나 의료기관과 같이 그 재무제표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와 결합되는 경우 또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기준은 GASB에서 제정하며, 그 밖의 비정부부문의 비영리기관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기준은 FASB에서 제정하고 있다³⁾.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GASB와 FASB 두 기관이 공인회계사 행동규범의 규칙(Rule 203 of Code of Professional Conduct)⁴⁾에 따라 회계원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미국의 정부부문 및 사적부문의 회계기준 설정에 관여하는 기관(Granof, 1998, p. 24)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1984년 GASB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 및 재무보고기준은 정부회계전국평의회(The National Council on Governmental Accounting : NCGA)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NCGA는 1979년에 NCGA Statement No. 1 “정부회계 및 재무보고원칙(Governmental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을 공표하였다. FASB는 1980년

- 1) FASAB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6인은 회계검사원, 관리예산국, 의회예산국, 재무부, 국방부, 민간연방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며 3인은 연방정부 밖의 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2) 운영비는 기업, 공인회계사·재무분석가·기타 재무보고와 관련된 전문직종의 단체,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조달한다.
- 3) 현재 GASB는 1인의 상임의장과 6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ASB는 의장을 포함하여 7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공인회계사 행동규범의 규칙 203호에 따르면 감사인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제정한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에 SFAC No. 4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목적(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Nonbusiness Organizations)”를 발표하여 비영리조직에 대한 재무보고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FASB가 정부기관에 대한 회계원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1984년에 정부회계기준의 연구 제정을 위하여 GASB를 발족시키면서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GASB가 정부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기준 (Governmental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을 발표하면서 NCGA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들을 그대로 모두 수용하였다.

2. GASB에 의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부회계기준

GASB는 GASB Statements(기준서), GASB Interpretations(해석서), GASB Technical Bulletins(기술공보)를 발행하며 이는 주 및 지방정부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GAAP)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GASB는 정부회계기준의 설정과 개념정립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GASB Concepts(개념서)를 발표하기도 한다.

1) GASB기준서(GASB Statements)

중요한 정부회계문제는 GASB 기준서를 공표하여 회계방법과 절차를 제정한다. GASB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토의자료(Discussion Memorandum) → 공개초안(Exposure Draft) → 기준서 제정(Standards Setting).

2) GASB해석서(GASB Interpre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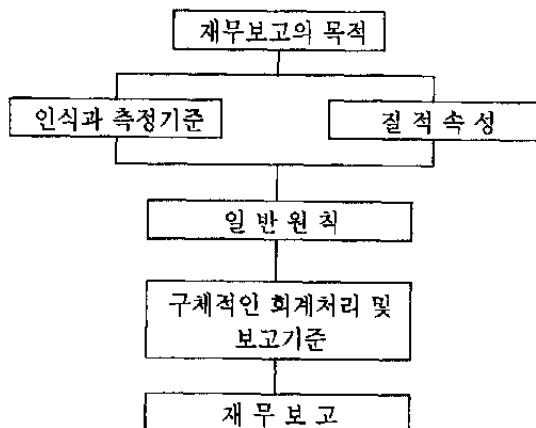
중요성이나 적용범위가 적은 문제들에 대하여는 해석서를 발행한다. 해석서는 GASB의 표결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며, GASB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3) GASB기술공보(GASB Technical Bulletins)

정부회계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한다.

III. 지방자치 회계제도의 개념구조

GASB는 주 및 지방정부의 독특한 측면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보다 적정한 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무보고의 개념구조에 해당하는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통일된 정부회계기준에 포함시킨 바 있다. GASB가 공표한 개념 등을 계층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 정부회계의 개념구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무보고의 목적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무회계의 목적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회계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재무보고의 목적이 정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인식 및 측정기준을 채택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무보고는 어떤 질적 속성을 지녀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어떤 회계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회계는 재

무보고의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권찬태, 이중희, 1996년, pp. 340~341).

1.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재무보고 목적

GASB는 1987년에 GASB개념보고서 제1호 “재무보고목적(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을 발표하고 NCGA개념보고서 제1호 “정부의 회계 및 재무보고의 목적(Objectives of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or Governmental Units)”을 대치하였다.

재무보고의 목적은 재무보고 이용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용자우선원칙과 이용자의 의사결정에의 유용성을 기초로 정립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누구인가를 규명하고 이들 의사결정자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며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떠한 정보의 내용과 성격이 필요한가를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재무보고의 목적을 도출한다.

1) 재무보고의 이용자와 재무보고의 용도

GASB는 주 및 지방정부의 외부 재무보고 이용자로 ① 정부가 공공회계책임을 갖는 시민, ② 시민을 직접 대표하는 의회 및 감독기관, ③ 정부의 공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 정부에 자금을 대여하는 채권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FASB의 개념보고서에서는 자원제공자를 주된 정보이용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GASB의 개념보고서는 시민을 가장 주된 정보이용자로 보고 있다.

재무보고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과 회계책임의 평가에 재무정보를 이용한다. ① 법적으로 승인된 예산과 실제 집행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② 정부조직의 재무상태와 운영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③ 재무관련 법률·규정·조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④ 능률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재무정보를 이용한다.

2) 회계책임과 기간 간의 형평성

GASB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정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회계책임(Accountability)과 기간별 형평성(Interperiod Equity)을 강조하고 있다.

회계책임은 기업의 재무보고에 있어서보다 정부의 재무보고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며 회계책임은 모든 정부재무보고의 기초가 되고 있다. 회계책임(Accountability)은 수탁관리책임(Stewardship)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수탁관리책임은 행정관리자가 예산 기타 법규를 준수하고 자금의 유입 유출 및 잔액을 기록하여 보고하면 그것으로 수탁관리책임을 완수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회계책임에는 행정관리자가 자원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하였는

가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이윤재, 1999, p. 26).

기간 간의 형평성은 균형예산에 관련된 것으로서 재무보고는 특정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하였는지, 결손금이 발생하였는지, 전기의 잉여금이 당기의 지출에 사용되었는지, 전기의 결손금이 당기의 수익에 의하여 충당되었는지, 당기의 지출이 당기의 수익에 의하여 조달되었는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의 목적은 재무보고 이용자들이 회계책임을 평가하고 경제적,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GASB가 제시하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재무보고는 정부가 공공회계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재무보고 이용자들이 정부의 회계책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재무보고는 당해 연도 수익으로 당해 연도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무보고는 법적으로 채택된 예산에 따라 자원이 조달되고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기타 재정관련 법규나 계약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재무보고는 재무보고 이용자들이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의 노력 원가 및 그 성취정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재무보고는 재무보고 정보이용자들이 정부실체의 당해 연도 운영결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① 재무보고는 재무자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무보고는 정부실체가 그 활동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으며 소요현금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무보고는 당해 연도의 운영결과 정부실체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는지 약화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재무보고는 정부실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과 만기가 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① 재무보고는 정부실체의 재무상태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무보고는 당해 연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 및 기타 비재무적 자원에 관한 정보와 이들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무보고는 자산에 대한 법적 계약적 제약과 자산의 잠재적 손실위험을 공시하여야 한다.

2. 측정초점과 회계인식기준 및 질적 속성

1) 측정초점

측정초점(measurement focus)이란 재무상태와 운영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무엇을 측정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재무보고에 재무자원만을 보고할 것인가 고정자산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 흐름과 상태를 보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재무자원(financial resources)의 유입과 유출 및 잔액의 측정에 회계의 초점이 맞춰지면 재무자원을 측정한다고 하고, 고정자산 등을 포함하여 경제적 자원 전체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전체의 흐름과 잔액을 측정하면 자본유지(capital maintenance) 또는 모든 경제적 자원(all economic resources)을 측정한다고 한다.

정부의 각 기금은 그 유형에 따라 측정대상이 다르다. 예산이 제1차적인 중요성을 갖는 일반기금 등에서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 예산지출에 사용가능한 자산, 예산액 중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자원⁵⁾의 흐름이 측정초점이 된다. 정부형 기금의 측정초점이 재무자원의 흐름을 측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간간의 형평성 측정을 포함하는 회계책임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재무자원의 흐름을 측정초점으로 하는 것은 정부활동의 목적과 실적의 측정, 예산 및 기타 재무통제의 계획과 결과, 예산 및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금회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무자원의 흐름을 측정초점으로 하는 회계는 발생기준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형기금에서는 재무자원의 흐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측정대상으로 한다. 사용자 보상원칙에 따라 타 기금 또는 타 정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서비스 기금이나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반시민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기금 등은 자본유지의 개념이 중시되어 재무자원 뿐만 아니라 영리기업과 같이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경제적 자원이 측정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무자원의 흐름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감가상각 등도 측정의 대상이 되어 운영보고서에 보고된다.

수탁형기금은 각 기금의 성격에 따라 회계의 측정초점이 다르다. 소모성수탁기금과 대리기금은 기금의 설정이나 운영이 정부형기금과 유사하며, 따라서 측정초점은 재무자원의 흐름에 있다. 비소모성기금과 연금기금은 사업형기금과 같이 자본유지의 개념이 중시되며, 따라서 측정의 대상도 모든 경제적 자원을 포함한다.

2) 회계인식기준

5) 재무자원이란 현금 및 현금에 대한 청구권(미수금, 미수세금 등),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선급항목 등), 소모가능재화(소모품 등)와 지분증권이 포함된다.

측정초점은 재무제표가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임에 비하여, 회계인식기준은 수익 지출 비용 및 재무자원의 이전과 이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어느 시점에서 계정에 인식하여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보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측정초점이 결정되고 나면 적용될 회계인식기준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회계의 거래나 사건은 현금기준, 발생기준, 또는 수정발생기준에 의하여 기록 보고된다.

(1) 현금기준

현금기준에서는 수익과 재무자원의 유입은 현금이 회수된 시점에서 인식, 즉 현금이 입금된 시점에서 계정에 기록되고 재무제표에 보고되고, 지출 비용 및 재무자원의 유출은 현금이 지급된 시점에서 인식된다. 현금기준에 의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수수하여야 할 받을채권과 지급채무를 인식하지 않는다. 현금기준에 의한 수익을 수입(receipt)이라고 하고 현금기준에 의한 지출을 지불(disbursement)이라고 한다. 현금기준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거래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나 운영결과를 적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GASB는 현금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발생기준

발생기준회계에서는 한 회계실체의 재무상태를 변동시키는 거래나 사건은 현금의 수수시점과는 관계없이 그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수익은 측정가능(measurable)하고 가득(earned)되었을 때 인식하고, 지출이나 비용은 발생(in-incurred)된 때 인식하며 현금을 받거나 지급한 때 인식하지 않는다. 수익이 측정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가치를 금액적으로 측정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가득되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활동을 실질적으로 종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수정발생기준

수정발생기준은 현금기준과 발생기준을 혼합한 것이다. 수정발생기준 회계에 의하면 수익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을 때(susceptible to accrual) 기록한다. 발생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을 때란 ① 그 수익의 금액이 측정가능(measurable)하고, ② 당해 연도의 지출을 위하여 사용가능(available to finance expenditures of the fiscal period)한 때를 말한다. 여기서 측정가능하다는 것은 회수될 금액을 계량화할 수 있다는 뜻이며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당기에 실제로 회수되었거나 또는 당기 말 이후에 회수되더라도 당기 말 현재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회수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수정발생기준에 의하면 지출은 ① 그 금액이 측정이 가능하고, ② 해당 기금의 부채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여기서 기금의 부채란 당해 연도의 당해 기금 세출예산에 반영된 자금의 유출을 요하는 유동부채를 말하며, 따라서 당해 연도에 사용할 자금에서 지급하지 아

니할 부채의 발생은 지출로 보지 않는다.

3) 질적 속성

정보는 회계실체와 정보이용자집단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이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용한다. 이를 위하여 재무정보는 이해가능성, 신뢰성, 목적적합성, 계속성 및 비교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GASB는 이러한 질적 속성의 개념에 대하여 FASB의 재무회계 개념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이해가능성

재무보고상의 정보는 가능한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표현되어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회계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을지도 모르는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신뢰성

재무보고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표현되는 정보는 검증가능하고, 편의가 없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여야 한다. 신뢰성이 있기 위하여 재무정보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어떤 중요한 내용도 기초적인 사건과 상황을 충실히 표현하는데 필요한 정보에서 누락되어어서는 아니되며 오도할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어서는 아니된다.

(3) 목적적합성

목적적합성이란 정보가 문제상태 또는 사건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적합하다. 목적적합성은 다른 많은 기타의 속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재무보고에 포함된 정보가 적시성이 없거나 신뢰성이 없다면 목적적합하지 못한 것이 된다. 목적적합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와 요구되는 의도 간의 밀접한 논리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보도된 사건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적시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속성과 비교 가능성

계속성이란 재무보고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단 채택한 회계원칙과 보고방법은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거래와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재무보고는 비교가능해야 한다. 이는 유사하게 조직된 정부단위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가능성은 재무보고상의 차이가 대체적인 회계절차나 실무의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의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정부구조의 실질적인 차이에 기인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무보고는 이용자들이 정부단위 간의 비교를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일된 정부회계기준의 제정과 적용이 요청된다.

3. 기본적 회계원칙

GASB의 “정부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집(The GASB's Codific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서는 12가지의 주 및 지방정부의 회계 및 재무보고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회계 및 보고의 기능

정부회계시스템은 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정부단위의 재기금과 계정그룹의 재무상태와 재무운영 결과를 적정하고 완전하게 공시하고, ② 재무관련 법규와 계약규정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산 법규 및 계약의 준수여부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기금회계제도

정부회계시스템은 기금을 기초로 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기금이란 특별규정 제약 또는 제한에 따라 특정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처리될 현금 및 기타 재무자원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부채와 잔여지분 또는 잔액과 이들 항목의 변동을 기록하는 일련의 독립적인 대차계정을 갖는 계정들의 재정실체 및 회계실체로 정의된다.

미국의 정부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금회계로서 정부회계제도는 기금기준으로 작성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활동의 성격이 다양하고 법규의 준수여부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단위의 모든 재무거래와 잔액을 하나의 회계실체에 기록하고 종합하기는 어렵다. 기업회계와는 달리 하나의 정부단위는 여러 개의 상이한 회계실체를 사용하게 되고, 각 기금은 독립된 회계실체로서 자체의 자산 부채 및 지분 또는 계정잔액을 유지하게 된다.

3) 기금의 종류

주 및 지방정부가 사용하여야 할 기금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정부형기금(Governmental Funds)

① 일반기금(General Fund) : 다른 기금에 의하여 처리가 요구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재무자원을 회계처리하는 기금.

즉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부활동(예 : 일반행정, 치안, 도로보수, 문화, 오락, 교육, 건강, 복지 등)을 위한 자원의 조달과 사용에 관한 회계에 사용되는 기금.

일반기금의 대차대조표는 일반적으로 유동자산, 유동부채, 기금잔액으로 구성된다. 기금잔액은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며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가능한 순자산이다.

② 특별수익기금(Special Revenue Funds) :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법,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특정수익원(소모성 수탁기금과 자본시설 취득기금은 제외)에서 발생된 자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기금(도로사용료특별수익기금, 유류특별수익기금 등).

하나의 정부기관에 여러 개의 특별수익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특별수익기금이 하나의 독립된 회계실체로 취급된다.

특별수익기금의 회계와 보고는 일반기금과 유사함.

③ 자본시설취득기금(Capital Projects Funds) : 사업형기금, 내부서비스기금, 수탁기금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을 제외하고, 주요 자본시설의 취득 또는 건설에 사용할 재무자원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기금(예: 시청사, 시회관, 교량 등의 건설을 위하여 조달되는 자원과 그 지출의 회계에 사용됨).

승용차, 사무기기 등 규모가 적은 자본자산은 일반기금이나 특별수익기금의 예산에 의하여 구입되며, 주요 자본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기금이나 특별수익기금에서 직접 취득하는 것은 각각 이를 취득하는 기금에서 회계처리된다.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와 수익 지출 및 기금잔액변동표가 작성됨.

자산은 현금, 미수금, 또는 타정부기관으로부터의 미수금 등, 부채는 미지급금, 타기금 또는 타정부기관으로부터의 미수금 등. 기금은 제약기금잔액과 미처분기금잔액으로 분류, 제약기금잔액은 주로 지출원인행위로 인한 것임.

수익원천은 주로 연방 및 타정부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공채의 발행,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출은 자본시설 건설 및 취득원가.

④ 부채상환기금(Debt Service Funds) : 일반 장기부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위한 재원의 축적과 그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기금. 즉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차입한 장기부채로 기업기금, 내부서비스기금 및 수탁기금에 의하여 상환되지 않는 부채를 말함.

(2) 사업형기금(Proprietary Funds)

① 기업기금(Enterprise Funds)

ⓐ 사기업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서 일반 시민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원가(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가 주로 이용자의 부담에 의하여 조달·회수되는 사업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기금 또는

ⓑ 정부단위의 의사결정기관이 자본설비유지 공공정책 경영통제 회계책임 및 기타 목적을 위하여 수익과 비용 및 순이익의 주기적인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기금.

즉 정부조직이 일반시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주 재원으로 하

여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때 사용됨(예 : 버스사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공항, 수영장, 골프장 등).

영리기업의 회계제도를 사용함.

② 내부서비스기금(Internal Service Funds) : 정부단위의 한 부서가 타부서 또는 타정부 단위에게 원가보상기준에 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금의 조달 및 운영을 회계 처리하기 위한 기금(예 : 소모품 및 사무용품의 공급, 전산실의 공동운영, 자동차의 합동운영 등).

내부서비스기금의 주요 목적은 원가의 절감과 공급의 원활에 있다.

따라서 원가의 측정이 중요하게 되고 완전발생주의 회계가 요구된다.

(3) 수탁형 기금(Fiduciary Funds)

정부단위가 개인 사적조직 타정부기관 또는 타기금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록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소모성수탁기금 비소모성수탁기금 연금수탁기금 및 대리기금 등이 포함된다.

① 소모성수탁기금(Expendable Fiduciary Fund)

기금의 이익은 물론 원금 또는 기본자산까지도 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기금(예 : 시민이 10억원을 기탁하고 원금과 이익금을 모두 장학목적으로 기부한 경우).

특별수익기금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이 정부형기금과 회계처리 및 보고가 유사하다.

② 비소모성수탁기금(Nonexpendable Fiduciary Fund)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익만을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예 : 10억원이 기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따라서 원금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당기순이익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계의 측정초점은 자본유지에 있게 되고, 완전발생주의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회계 처리 및 보고가 사업형기금과 유사하다.

③ 연금기금(Pension Fund)

정부실체가 공무원 연금제도에 의하여 정부기관, 공무원, 기타 조직으로부터 불입되는 부담금을 수납하고, 기금에 적립된 자원을 투자하며, 수혜자에게 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기금.

투자활동 측면에서 보면 비소모성수탁기금과 유사하고, 연금지급 측면에서 보면 소모성수탁기금과 유사함.

완전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사업형기금과 유사하게 처리됨.

④ 대리기금(Agency Fund)

타조직에 속하는 자원을 보관인의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사용되는 기금(예: 소속 직원들의 급료에서 공제한 각종 세금과 타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징수한 세금 등).

보관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잔액은 있을 수 없고 모든 자산은 부채와 대응된다.

대리기금은 그 성격상 보관기능만 있고, 운영활동이 없기 때문에 수익 지출 및 기금잔액 변동표는 작성되지 않고, 대차대조표와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의 변동표를 작성한다.

4) 기금의 수

정부단위는 법규와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금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기금의 설정은 재무관리의 경직성 과도한 복잡성 및 비능률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규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기금만을 설정하여야 한다.

5) 고정자산과 장기부채의 회계

기금고정자산과 일반고정자산 및 기금장기부채와 일반장기부채 간에는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1) 특정 사업형기금이나 비소모성수탁기금에 관련된 고정자산은 당해 기금에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정부단위에 속하는 모든 다른 고정자산은 일반고정자산계정그룹에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즉 이들 기금은 영리기업과 유사한 회계원칙을 사용하며 따라서 이들 기금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당해 기금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다. 반면 일반기금, 특별수익기금, 자본시설취득기금 등 정부형기금과 소모성수탁기금에서 취득되는 고정자산은 이를 일반고정자산이라 하여 일반고정자산계정그룹에서 기록 보고한다.

일반고정자산계정그룹의 재무보고는 일반고정자산명세서로 작성되어 보고되며, 일반고정자산변동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기도 한다.

총경제적자원 회계모형을 사용하는 사업형기금, 미소모성수탁기금, 연금기금 등에서는 회계초점이 자본유지에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나 정부형기금 등의 회계측정초점은 자본유지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반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선택적이다. 즉 감가상각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감가상각누계액(Accumulated depreciation) 계정을 증가시키고 일반고정자산투자(Investment in general fixed assets) 계정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Graonf, 1998, p. 322).

(2) 사업형기금이나 수탁기금의 장기부채는 당해 기금에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정부단위의 모든 기타 장기부채는 일반장기부채계정그룹을 통하여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즉, 사업형기금과 비소모성수탁기금에서 기재하는 장기부채는 그 상환에 사용될 자원을 제공할 일차적 의무를 각 해당기금이 부담하기 때문에 장기부채는 각 해당기금의 대차대조표에 보고된다. 반면 정부형기금과 소모성수탁기금의 장기부채, 즉 일반장기부채는 해당기금의 부채로 기록되지 않고 조달된 기간의 기타재무원천으로 보고됨으로써 일종의 수익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된다. 일반장기부채는 일반장기부채계정그룹에서 기록되고 보고되고 통제된다.

일반장기부채계정그룹의 재무보고는 일반장기부채명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일반장기부채변동표를 작성하기도 한다.

6) 고정자산의 평가

고정자산은 취득원가로 기록되어야 하며,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원가로 기록되어야 한다. 수증 고정자산은 중여시의 공정가치로 기록되어야 한다.

7)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1) 일반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부형기금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서는 안된다. 일반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원가회계시스템에서 기록되거나 원가분석을 위하여 계산될 수 있으며, 또한 감가상각누계액도 일반고정자산계정그룹에서 기록될 수 있다.

(2) 사업형기금에서 회계처리 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당해 기금의 원장에 기록되어야 한다. 감가상각은 또한 비용, 당기순이익 및 자본유지가 측정되는 수탁기금에서도 인식되어야 한다.

8) 정부회계의 발생기준

재무상태와 운영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정발생기준 또는 발생기준회계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형기금의 수익과 지출은 수정발생기준에 따라서 인식되어야 한다. 수익은 사용가능하고 측정가능한 기간에 인식한다. 지출은 측정가능하고, 기금부채가 발생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다만 일반장기부채에 대한 지급일 미도래 이자는 지급일이 도래한 때에 인식한다.

(2) 사업형기금의 수익과 비용은 발생된 기간에 인식한다. 수익은 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측정가능하게 된 회계기간에 인식하고, 비용은 측정가능하고, 발생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3) 수탁형기금의 수익과 비용 또는 지출은 당해 기금의 회계측정목적에 부합되는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비소모성수탁기금과 연금기금은 발생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소모성수탁기금은 수정발생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대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는 수정발생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4) 기금 간의 이전은 기금간의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9) 예산편성, 예산통제, 예산보고

- (1) 모든 정부단위는 연차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회계시스템은 적절한 예산통제의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연간예산이 채택된 정부형기금에 대한 적절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안에는 실제와의 비교가 포함되어야 한다.

10) 이전, 수익, 지출 및 비용계정의 분류

- (1) 기금 간의 이전과 일반장기부채의 발행대금은 기금의 수익, 지출 또는 비용과는 구분하여 분류되어야 한다.
- (2) 정부형기금의 수익은 기금별 및 원천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지출은 기금별, 기능별(또는 프로그램별), 조직단위별, 활동별, 성질 및 주요 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3) 사업형기금의 수익과 비용은 이와 유사한 기업의 조직별, 기능별, 활동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1) 공통용어와 분류

공통된 용어와 분류법이 예산, 원장계정 및 각 기금의 재무보고에 일관성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12) 중간재무보고와 연차재무보고

- (1) 재정운영의 관리통제와 입법기관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에는 외부보고 목적으로 재무상태 운영결과 및 기타 관련정보에 대한 적절한 중간재무제표와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2) 보고실체의 모든 기금과 계정그룹들을 포함한 포괄적 연차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포괄적 연차재무보고서에는 서론부분, 적절한 결합재무제표, 합계재무제표 및 기금별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주석, 보충적 정보, 부속명세서, 서술적 설명, 통계표 등이 포함된다.

(3) 포괄적 연차재무제표와는 별도로 보고실체의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공표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와 운영결과(사업형기금과 비소모성수탁기금의 재무상태의 변동내용)를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본재무제표와 주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반목적 재무제표와 함께 필수적인 보충정보도 보고되어야 한다.

- (4) 구성단위(a component unit)의 모든 기금과 계정그룹을 포함하는 구성단위 재무보고(서론부분, 적절한 결합재무제표, 합계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요한 보충적 정보, 명세서, 서술적 설명 및 통계표를 포함)를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5) 구성단위 재무제표를 구성단위 재무보고와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구성단위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와 운영결과(및 사업형기금과 비소모성수탁기금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변동내용)를 적정히 표시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재무제표와 주석을 포함한다. 또한 구성단위 재무제표는 특정실체의 재무보고에 필수적인 보충적 정보를 수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즉, 모든 정부실체는 공식적 연차보고서로서 포괄적 연차재무제표(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s)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차재무보고서의 내용은 서설적부분, 재무부분, 통계표로 구성되며 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설적부분

- (1) 목차 (2) 제출서 (3) 기타 중요한 자료

2. 재무부분

(1) 감사보고서

주에 따라 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주정부기관과 정부단위가 주정부의 감사기관에 의하여 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경우도 있고, 시 군 등 정부단위 조직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경우 등 주에 따라 다르다.

(2) 일반목적 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 개관)

① 결합대차대조표 - 모든 유형의 기금 및 계정그룹

② 결합수익, 지출 및 기금잔액변동표 - 모든 정부형기금

③ 결합수익, 지출 및 기금잔액변동표 - 예산과 실제 - 일반 및 특별수익기금(이와 유사한 기금으로 법적으로 예산을 채택하는 기금 포함)

④ 결합수익, 비용 및 이익잉여금변동표 - 모든 사업형기금

⑤ 결합현금흐름표 - 모든 사업형기금

⑥ 재무제표의 주석

(3) 기금과 계정그룹의 합계 및 개별재무제표와 명세서

① 합계재무제표 - 기금종류별 - 특정 종류의 기금이 두 개 이상의 기금을 가지고 있을 때

② 개별기금 및 계정그룹 재무제표 - 특정 종류의 기금이 하나의 기금으로 구성될 때

③ 명세서

ⓐ 재무관계의 법적 규정과 계약조항의 준수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명세표

ⓑ 재무제표에 산재해 있는 정보의 종합 및 분석

(◎)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

〈표 1〉 기금 종류별 측정초점과 회계인식기준 및 재무제표

| 기금의 종류 | | 측정초점 | 인식기준 | 기본재무제표 |
|-------------------------------|---|------|--------|--|
| 정부형기금 (Governmental Funds) | 일반기금 (General Fund) | 재무자원 | 수정발생주의 | 대차대조표, 수익 지출 및 기금 잔액변동표, 수익 지출 및 기금 잔액의 예산 실적비교표 |
| | 특별수익기금 (Special Revenue Funds) | 재무자원 | 수정발생주의 | 대차대조표, 수익 지출 및 기금 잔액변동표, 수익 지출 및 기금 잔액의 예산 실적비교표 |
| | 부채상환기금 (Debt Service Funds) | 재무자원 | 수정발생주의 | 대차대조표, 수익 지출 및 기금 잔액변동표 |
| | 자본시설취득기금 (Capital Projects Funds) | 재무자원 | 수정발생주의 | 대차대조표, 수익 지출 및 기금 잔액변동표 |
| 사업형기금 (Proprietary Funds) | 기업기금 (Enterprise Funds) | 자본유지 | 발생주의 | 대차대조표, 수익 비용 및 이익잉여금변동표, 현금흐름표 |
| | 내부서비스기금 (Internal Service Funds) | 자본유지 | 발생주의 | 대차대조표, 수익 비용 및 이익잉여금변동표, 현금흐름표 |
| 수탁형기금 (Fiduciary Funds) | 소모성수탁기금 (Expendable Trust Funds) | 재무자원 | 수정발생주의 | 대차대조표, 수익 지출 및 기금 잔액변동표 |
| | 비소모성수탁기금 (Nonexpendable Trust Funds) | 자본유지 | 발생주의 | 대차대조표, 수익 지출 및 기금 잔액변동표, 현금흐름표 |
| | 연금기금 (Pension Funds) | 자본유지 | 발생주의 | 대차대조표, 수익 비용 및 기금 잔액변동표, 현금흐름표 |
| | 대리기금 (Agency Funds) | 해당없음 | 수정발생주의 | 대차대조표 |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s)란 기금 종류별 그리고 계정그룹별 각각의 합계액을 표시한 재무제표를 말하며 총계칼럼은 비망용으로 표시 가능하다.

합계재무제표(Combining Financial Statements)란 같은 유형의 기금 간의 합계를 말

한다(예를 들어 정부형 기금 중 특별수익기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의 합계액).

중간재무보고서는 외부보고용이라기 보다 주로 재무운영의 관리통제와 예산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며 따라서 예산을 기준으로 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즉 계정과목별로 예산과 실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기도 하고, 재무제표의 형식을 따라 중간대차대조표와 중간수익 지출 및 기금잔액변동표를 예산과 실적을 대비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기금별 측정초점과 회계인식기준 및 요구되는 재무제표를 요약하면 위 <표 1>과 같다.

IV. 연방정부 회계제도의 논의점

1. 측정초점과 회계인식기준

FASAB가 명시적으로 연방정부회계의 측정초점과 인식기준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나. 제안서에서 연방정부 재무제표는 총 경제적자원(All Economic Resources)에 측정초점이 놓여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익과 비용은 완전한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인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대차대조표는 고정자산과 장기부채를 보고하여야 하고, 운영계산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사용 기기 등 일부 장기사용 자산은 독특한 특성상 구입시 비용화하고 자본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FASAB는 효익을 얻고 원가가 발생하는 판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교환수익(Exchange Revenues)과 자원을 획득하나 교환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없을 때 발생하는 비교환수익(Nonexchange Revenues : 예를 들면 세금, 벌금 등)으로 나누고, 교환수익은 일반 기업의 원칙과 같이 재화나 용역이 제공될 때 인식되어야 하고 비교환수익은 정보이용자들의 상이한 정보욕구에 따라 발생주의기준 또는 현금주의기준으로 인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V. 맷 음 말

위에서 미국의 정부 및 자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구조를 정리하였다. 이를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와 비교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회계기준 제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정부회계기준 제정

기관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반면 미국의 정부회계기준은 주 및 지방정부회계 및 보고에 대하여는 GASB, 연방정부기관의 회계 및 보고에 대하여는 FASAB라는 독립된 제정기관이 설립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부회계기준 정립을 위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부회계기준을 계속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회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및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합리적인 정부회계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회계제도의 측면이다. 미국의 경우 기금회계(Fund Accounting)정부회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금을 그 성격에 따라 정의하여 분류하고 각각에 적합한 회계 및 보고기준을 GASB가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금별 생산성과 수익성 재무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회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미국과 같은 성격의 기금회계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별회계와 기금회계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고 목적에 따라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금이 난립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 회계기준이 부재하여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권수영·윤성식, 1999, pp. 579~580).

또한 회계관련된 규정은 법률로 제정되어 법조문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으며 또한 회계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규정이라고는 하나 회계이론에 바탕을 둔 이론적 체계성이 없고 일관성있는 실무적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정부회계 및 지방자치단체회계규정은 기업회계에 유사하게 개념적 구조를 체계화하고, 이를 하나의 규정집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회계실무지침이 제정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기본적으로 현금기준에 의한 단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현금에 대한 통제는 쉽게 달성되나 오류검증기능이 없고, 계정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편호법, 1992, p. 601). 따라서 재무상태와 성과측정이 어렵고 효율적 자원배분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

예산회계제도 하에서 단식부기의 편의성이 주장되기도 하나(이경섭, 1997, pp. 368~369) 미국의 경우 자산 부채 기금잔액, 수익 비용 등의 인식과 기록을 발생주의 또는 수정발생주의에 의하여 복식부기로 기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금의 운영성과 및 재무상황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재무보고제도가 없고 연차보고도 회계학적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의 재무보고가 이루어지나 미국의 경우 대차대조표, 수익과 지출계산서, 예산과 실적의 대비표, 결합재무제표 등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보고를 함으로써 재무상태와 운영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차대조표 등 각종 재무상태와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회계책임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제도가 이룩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권수영,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의 정립을 위한 고찰”, 「회계저널」 제3호, 1995년 6월, pp. 307~336.

권수영, 윤성식, 「정부회계－예산 원가 회계 및 감사－」, 법문사, 1999.

권찬태, 이중희, “지방자치 회계제도의 한·미·일 비교연구”, 「회계저널」 제3호, 1995년 6월, pp. 339~372.

이경섭,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채택문제”, 「감사논집 2」, 1997년, pp. 345~375.

이윤재, 「현대정부회계 및 비영리회계」, 박영사, 1999.

편호범, 「정부회계론」, 법경출판사, 1992.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4,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Nonbusiness Organizations*, Stamford, Connecticut : FASB, 1980.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 Board, *Codific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tamford, Connecticut : GASB, 1992.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 Board, *Concept Statement No. 1,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Stamford, Connecticut : GASB, 1987.

Granof, M. H., 「Government and Not-For-Profit Accounting, Concepts and Practices」, John, Wiley & Sons, 1998.

A Study on the Accounting Systems of the Districts in Developed Countries

Kim, Sang-Kyu · Yun, Tae-Wha

Abstract

In America, the research and practice of accounting have been firmly established because the accounting system in government and in business have been developed in well balanced way. In Korea, However, the global and systematic study of accounting is hardly done since the government has been used accounting by single ent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look at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America and to compare it with the accounting system in Korea. This comparison study will provide a firm basis for korean accounting system.

朝鮮後期 實學의 現代經營學的 再照明

The Review for the Management Side of
Sil-Hak in Post Era of Choson Dynasty

朴 晨 淑*

目 次

| | |
|--------------------|-----------------------|
| I. 서 론 | III. 조선후기 실학의 경영학적 검토 |
| 1. 연구의 의의 | 1. 인사·조직관리론적 관점 |
| 2. 연구의 접근방법 | 2. 마케팅 관리론적 관점 |
| II. 조선후기 실학과 한국경영학 | 3. 회계·재무관리론적 관점 |
| 1. 조선후기 실학의 학문적 성격 | 4. 생산관리론적 관점 |
| 2. 한국경영학과의 관계 | N. 결 론 |
| 3. 조선후기 상공업 발달의 배경 | |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머지않아 도래하는 뉴 밀레니엄 시대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중심의 경제에서는 지난날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금보다는 지식이 더 중요하며 이때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는 자신의 맡은 업무를 부단히 연구, 개발, 개선, 혁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이른 바, 신지식인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¹⁾. 행동하는 지식(Knowledge in Action)을 표방하는 창의적 인간이 많은 나라일 수록 그 나라의 경쟁력강화가 용이하다고 볼 때 기업 뿐 아니라 공공단체, 비영리 단체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이러한 지식근로자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하겠다.

한국에서는 이미 17, 18세기 경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어려웠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인의 참된 역할을 강조하는 「실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실학은 바로 조선조 후기에 經世致用, 利用厚生, 實事求是의 가치를 들고 정통적인 성

* 全南大學校 經營學部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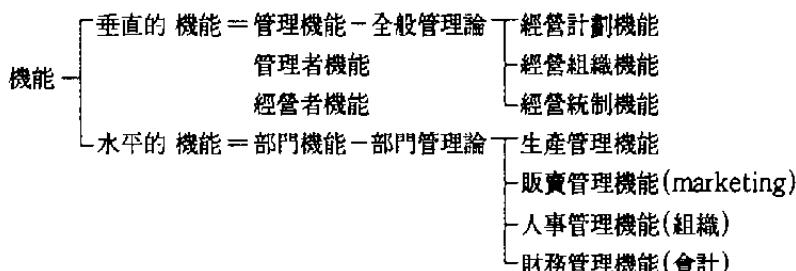
1) 김효근, 신지식인, 매일경제신문사, 1999. p. 6.

리학의 약점과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학문을 말한다. 이 당시의 실학자들은 다방면에 걸친 실용적인 지식을 계발,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학문의 구체적 목적이고 과제라고 하며 학문의 실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현대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이 실천위주의 논리를 갖추는데 주안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영학과 학문의 특성이 상통하는 조선후기 실학의 원류를 따라 올라가 한국경영학의 생성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로 생각한다. 더욱 이 지식혁명으로 대변되는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지행일치를 요구하는 지식경영의 이해가 급선무인 바, 이 차제에 조선후기 실학을 현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는 일은 뜻 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연구의 접근방법

현대경영학을 연구하는 접근방법²⁾에서는 (function)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표 1>에서와 같이 수직적 기능과 수평적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표 1> 기능(機能)의 범주(範疇)와 예(例)



資料 : 한의영(1987), 經營學總論, 茶山出版社, p. 429.

본 연구에서는 미국 경영관리론의 본질인 경영관리자 중심의 수직적 기능보다는 경영학의 주요 분야로 나누어 다루어지고 있는 수평적 기능 중심의 관점에서 조선후기의 실학을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경영학의 전반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는 경영학의 내용을 설명하는 원론적 입장보다는 관심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 각론적 입장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문 관리영역으로 나눠보았을 때 현대경영학의 흐름을 감안하여 판매관리는 마케팅(marketing)을, 인사관리는 조직관리론, 재무관리는 회계관리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보고자 한다.

2) 이는 경영학 연구를 위해 특정의 관점에서 선택,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입장을 뜻하는 것으로 연구방법의 하위개념에 해당한다(金元株(1989), 경영학 연구방법론, 박영사, pp. 184~185).

II. 조선후기 실학과 한국경영학

1. 조선후기 실학의 학문적 성격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한국의 학계에서는 조선후기의 실학에 대하여 매우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여 오고 있다. 실학연구에는 국사학만이 아니라 국문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경영학 등도 갈수록 활발히 참가하여 아마도 우리 역사상 여러 연구분야에서 가장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분야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³⁾. 일찍이 16세기 말엽(1592~98)에 조선 왕조가 겪었던 壬辰·丁酉의倭亂은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分岐點이 되었다. 이 시기는 오랜 士禍期를 거치면서 士林이 정치의 주축을 이루었지만 잦은 분열로 朋黨이 일어나 정치적인 혼미를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기강은 해이해졌으며 민중의 생활도 수탈로 인해 궁핍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맞게 된 임진왜란의 상처가 그렇게 깊었던 것은 그 당시 조선 사회가 얼마나 허약했는가를 말해준다. 또한 이 때의 사상적 영역에서는 주자학에 바탕을 둔 조선의 성리학이 형식화, 관념화 경향을 뚜렷하게 드러냄에 따라 이 시기의 사회적 격동을 충분히 흡수하고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농동적 자세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적 대립과 분열을 거듭하는 詞章的인 학풍이나 사변적인 성리학을 멀리하고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정통이념의 밖에서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 조선후기의 실학이 발생하게 되었다⁴⁾.

원래 실학이라는 말은 일찍이 魏·晉의 玄學이나 宋·明의 理學에서도 현실적 의의가 있는 학문을 가리켜 실학이라 했고 고려말기의 신흥유학자들이 불교를 배격, 인륜도덕의 실천적 규범인 禮學을 내세워 실학이라고 불렀으며 조선조 초기의 정통유학자들 역시 성리학을 다시 실학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英·正祖時代⁵⁾, 아래의 새로운 학풍이 그 당시의 비현실적인 학문을 바로잡아 현실성을 다시 찾고, 우리 나라의 실지 사정에 입각한 실제적인 사고를 세워 놓은 학풍이었으므로 이 신학풍을 「實學」으로 인식하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이 당시 실학자들이 남긴 학문적 명제만 보더라도 근대화 과정에 필수적인 토지제도, 상공업, 생산기술의 개혁과 향상, 제반생활·사상에 있어서 실용·실증적 정신의 보급에 관한 것들이 모두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3) 김영호, “실학의 개신유학적 구조”, 한국사상의 심층연구, 우석, 1982. p. 299.

4) 금장태, 한국실학사상연구, 집문당, 1993. pp. 13~15.

5) 조선후기 실학을 다룸에 있어, 흔히 영·정조시대 이후를 대상으로 삼는다. 물론 그 이전에 실학적 사고 형성에 기여한 학자들(유형원, 이수광, 한백겸 등)이 있으나 실학사상이 시대사조를 이루게 된 18세기 이후가 본격적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선후기 실학의 학문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18세기 전반에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는 약 1세기 반 동안 실학연구의 흐름을 다음의 세 학파로 나눠 살펴보자 한다⁶⁾.

(1) 성호 이익을 태두로 하는 經世致用學派(18세기 前半) : 토지제도 및 행정기구, 그 밖의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학파로 특히 소농민의 생활안정에 주력하였다.

(2)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利用厚生學派(18세기 後半) : 상공업의 유통 및 생산기구 일반의 기술 측면에 중점을 두는 학파로 도시서민층의 소시민적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주안을 두었다.

(3) 완당 김정희에 이르러 일가를 이루게 된 實事求是學派(19세기 前半) : 經書, 金石 및 고전의 고증을 주로 하는 학파로 엄격한 객관적 태도로 사실을 밝혀 내는데 노력함으로써 근대적 과학 연구태도를 심는데 공헌하였다.

이상의 세 학파는 비록 실학자들간에 연구하는 영역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이상학보다는 현실의식과 실용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실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상통된다. 실학파의 경제치용, 실사구시 및 이용후생의 학풍은 경제제민, 민본사상, 경제제도의 개혁을 위한 과학성 그리고 민족적 자주성이라 할 수 있는 주체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⁷⁾. 실학을 과거 어느 시기의 학문으로 간주하는 것도, 또 격이 낮은 實業의 학문으로 보는 것도 실학개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늘날 이처럼 일반성을 가진 실학의 유효성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점에서 실학은 실로 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본다.

2. 한국경영학과의 관계

한국경영학의 발전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 바, 조선후기의 실학부터 경영학의 시대로 보는 광의의 해석과 대학에 경영학과 설립시점을 경영학의 도입기로 보는 협의의 해석이 있다⁸⁾. 넓은 의미로 보는 경우, 경영학의 발달을 조선시대, 실학들에 의한 상업부흥론의 대두시기, 독일 경영 경제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제 식민통치의 시기, 그리고 6. 25 이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경영학자들에 의한 미국경영학의 소개시기로 구분하고 있다⁹⁾.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입장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이 실학자들에 의해 실천학문으로 연

6) 이우성, “실학연구서설”, 실학연구입문, 역사학회편, 일조각, 1983. pp. 6~15.

7) 천관우, 한국사에서 새로운 시점, 小川晴久(Ogawa Haruhisa), Chosen Bunkashi No Hitobito, 1997. Tokyo. Kadensha, 황용성 옮김, 실사구시의 눈으로 시대를 밝힌다, 도서출판 강, 1999. pp. 203~206

8) 이준용 · 이영면, “한국경영학 도입기의 재조명”, 경영학연구 제 27권 제3호(1998), pp. 709~710.

9) 김영규, 최신경영학원론, 박영사, 1999. p. 105.

구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봄으로써 한국경영학의 생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현대경영학의 학문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¹⁰⁾.

첫째, 경영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인간과 사회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둘째, 하나의 과학(science)으로서 이론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경영이론을 구축하고자 하며, 동시에 기술(art)로서 실제적용을 통해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셋째, 특정국가, 특정시점에 적용되는 제한된 원칙을 탐구하는 특수주의(particularism)와 모든 국가, 모든 시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추구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의 양면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넷째,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는 종합 과학적 또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술한 조선후기 실학의 학문적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실학은 경제, 사회, 정치, 도덕, 법률, 종교 등 사회 안에서 인간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어 상술한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학이 현실과 유리된 지식체계를 탈피하여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학문의 성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천성이 강조되는 경영학의 원류를 조선후기 실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당시의 실학자들은 외국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한 가운데 이를 뛰어 넘는 보편성을 추구하였고 아울러 당시의 당면 문제해결을 위한 특수성도 고려하였다. 오늘날의 경영학이 보편성 추구를 위해 경영이론이 적용되는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고 한편으로는 특수성 추구를 위해 미시적 차원에서 변화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찾는 경우를 볼 때, 일찍이 실학은 경영학처럼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을 지향하는 노력에서 상통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학이 결코 단세포적인 학문이 아니라 고증학, 사장학(문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의학, 기술과학, 천문학, 지리학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 학문체계¹¹⁾임을 감안할 때, 인접과학의 원용을 받고 있는 현대경영학의 모습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¹²⁾.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이 오로지 마음에서만 찾고 행동과 사물에서 경험하지 않음을 우려하고 “알게 되는 것은 사물에 접하는데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을 특기할만한 일이다. 사물에 객관적으로 접하고자 하는 태도, 접하여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어 보고자 하는 노력, 이 모두는 실학 속에 경영학이 존재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된다. 여러 실학자

10) 신유근, *현대경영학*, 다산출판사, 1996. pp. 19~25.

11) 윤사순, *한국의 성리학과 실학*, 열음사, 1994. p. 33.

12) 백낙준은 ‘실학은 실로 다방면의 학문이 종합하여 있음을 공인하거니와 또한 사회과학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백낙준, “*실학의 현대적 이해*”, 이을호 박사 정년 기념 실학논총, 1975. 전남대학교 출판부, p. 11).

들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바로 여기에서 한국경영학이 출발한 맨 처음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¹³⁾.

3. 조선후기 상공업 발달의 배경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 따르면¹⁴⁾, 조선후기 상공업의 발달은 임진왜란 이후 피지배층이 그들의 생활난을 스스로 타개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7년에 걸친 대 전란 이후에도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미흡하자, 농촌에서 생계마련이 어려웠던 농민의 일부가 도시로 모여들면서 상권이 확대되고 자유로운 상공업활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공업 발달의 단초가 열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때마침 제정, 실시된 大同法은 각 지방에서 현물로 공납하던 수많은 官需品을 貢人으로 하여금民間에서 구입, 생산·납품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독점 상인층과 수공인층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7세기 중엽에 재개된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은 차츰 활발해지면서 수출품 생산을 증대시켜 광업, 수공업, 농업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18세기 말엽에 단행된 工匠의 부역제 폐지는 이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생산 활동에 전념하게 하여 상업의 발전과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량의 제품을 다양한 형태로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공업의 성장은 賃勞動의 발달, 화폐(常平通寶)의 유통, 場市와 도시의 성장, 농촌소득의 증대, 地代의 金納化 등을 가져왔고, 이들은 다시 실학의 전개, 과학기술의 발달, 직업의식의 변화 등과 함께 상공업의 발달을 더욱 촉진시켰다¹⁵⁾. 특히 실학의 전개 과정에서는 조선왕조의 본래의 경제정책인 農本主義, 抑商主義보다 다산 정약용 등 대다수의 실학자들이 상공업 발전을 위한 상업정책론, 광공업 정책론을 주장함으로써 조선후기 상공업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다¹⁶⁾는 점도 실학의 경영학적 이해를 돋는데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III. 실학의 경영학적 검토

1. 인사·조직관리론적 관점

조선후기 특히 17세기 이후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과 농민층 분해로 노동형태에 변화가 왔

13) 양창삼, 한국의 경영사상, 양영각, 1993, p. 25.

14)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 연구개발위원회 편, 「고등학교 국사」(상, 하), 1990. pp. 26~42.

15) 한영국, "조선후기 상공업발달의 시대적 배경", 한국사 시민강좌 제9집, 1991. 일조각, pp. 3~5.

16) 강만길, 조선시대 상공업사연구, 한길사, 1984. pp. 241~242.

던 바, 고용주와 피고용층 사이의 관계는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 맺어지기 시작했다. 즉, 17세기에 접어들면서 공납제를 대신하여 대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의 제반 부역노동은 쇠퇴하고 고립제(雇立制)를 통한 고용노동이 발전하기 시작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계약관계는 민간의 농업노동, 수공업, 광업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신분적 예속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근대적 노동자의 맹아적 요소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갈등관계는 다양한 대립형태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해 관청에 소장(訴狀)을 내는가 하면, 임금인상을 위해 태업(怠業)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용자끼리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⁷⁾.

조선시대는 제도, 사상, 인습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사회계급 사이에 차별이 엄격했을 뿐 아니라 지역 간의 차별도 현격하였다. 유형원은 노비세습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평등한 인간을 재물로 취급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신분에 의한 차별을 거부하고 재덕과 능력에 따라 능력 있는 자를 선발·등용해야 한다는 인사관리관은 현대 인적 자원 관리의 인간존중경영, 능력주의 관리의 모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중앙정부의 명령체계의 일원화와 권력의 지방분권 및 전문적 관료제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는 중앙정부에로의 명령체계 일원화를 통하여 라인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으며, 특별한 능력과 자질을 요구하는 전문직의 경우 임기보장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분권은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해 각 부문 관리자로 하여금 자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해주자고 역설함으로써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일찍이 언급하였다¹⁸⁾.

또한 정약용은 이소예다(吏小隸多)의 원칙에 따라 상층부에 편재된 관료를 줄여 피라미드 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평민층의 행정참여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저서 중 인사관리론의 체계적인 저서로 인정받고 있는 최한기의 「人政」에서는 인사관리의 과정을 測人門, 教人門, 選人門, 用人門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특히 측인의 중요성을 맨 먼저 강조하면서 1,024가지의 감평(鑑枰) 기법을 소개하고 있어 현대적 인 인사고과 기법과의 접목을 통한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본다¹⁹⁾.

2. 마케팅관리론적 관점

실학자들 가운데 유통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제가는 의식주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상

17) 강만길 외, “근대이행기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운동사 대토론회 발표 논문집(99. 6. 12), 고려 대 노동문제연구소, pp. 3~5.

18) 양창삼, 전계서, pp. 63~64.

19) 박성수, “최한기의 「人政」에 관한 소고”, 광주·전남인사조직학회세미나 발표 논문집(99. 6. 12).

업유통을 통하여 상호교환되어야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보며 국내외에서의 적극적 유통을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 운송수단인 수레와 배를 만들고 도로를 발달시켜 나라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제가는 실학자 중에서 해외통상을 강조한 첫 주창자로 비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통상을 해야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글로벌 마케팅(global marketing)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조선중기 이후 상업계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시장의 발전이었다. 특히 16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정기시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8세기 중반에는 전국시장의 총수가 1,064개소에 이르렀다(東國獻備考). 이와 같이 지방의 정기시장이 5일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은 자급자족 체제의 농촌에서 5일마다 개시하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매매와 교환에 매우 유리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정기시장의 상품판매자와 공급자로는 행상인 부보상(負裸商)과, 坐商인客主를 비롯하여 居間이 활동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생산된 物貨의 유통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부보상의 활동에 의하여 각 향촌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 교환되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갔다. 객주는 상품유통 과정의 첫 단계에서 생산자나 타 상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집적하여 필요한 상인에 유통시키는 중간상인으로 주요업무는 위탁 매매업이지만 여관숙박, 금융, 도매, 보관, 운송 등과 같은 부대업무도 겸하고 있었다²⁰⁾.

또한 거간은 상품유통과정의 양 당사자 사이에 위치하여 중개하는 상인인데 오늘날 상법상의 중개인에 해당된다. 객주가 상인으로서 최초의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거간은 객주를 비롯한 모든 상인들 상호간이나 생산자나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서 거래를 매개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활동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였다. 한편 상설시장인 도시시장은 조선 초기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개성, 평양 등지에서만 개설되었으나 조선후기에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상설시장이 개설되었다. 이 시장에는 관의 허가를 받은 公商인 시전(市塵)상인 이외에 私商인 난전(亂塵)상인이 있는데 나중에는 양자간에 상권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에서 활약한 부보상, 객주, 시전상, 사상 등의 활동은 歐美의 마케팅기법이 도입되기 훨씬 이전인 조선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한국적 경영의 이해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²¹⁾.

3. 회계·재무관리론적 관점

20) 박원선, 객주,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8. pp. 59~68.

21) 이훈섭, 한국전통경영사연구, 보경문화사, 1992. pp. 183~224.

유형원은 당시 중앙관서 및 지방관서의 세입·세출과정에서 생기는 부정부폐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회계제도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즉, 각 관서의 세입 및 세출을 분석하여 관리 가능한 비용과 관리 불가능한 비용을 구분한 후 관리 가능한 비용의 조정 및 통제를 통하여 경비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회계제도가 만들어지면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하부조직으로의 권한이양도 가능해지게 된다. 이는 곧 개별경영자의 특정 의사결정에 대한 원가와 이와 관련된 수익, 그리고 자산 및 부채를 추적할 수 있도록 입안된 책임회계제도와 깊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책임회계제도의 시발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²²⁾.

한편 조선후기 상업계가 당면한 절실한 문제점은 상업자본의 집적 및 집중문제였던 바, 유수원은 대상인, 대자본의 육성을 당시의 시대적인 요청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임란 및 호란 이후 거의 파탄에 빠진 정부의 경제상태를 회복하고 상인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개별 상인자본들의 공동파멸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상인들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는 논란이 많은 금난전(禁亂塵)정책을 지지하여 대 자본의 조달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합과(合夥)상업론²³⁾을 통해 소자본의 집적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자본주인 점포주인이 자본을 투자하면 판매자는 경영하는 형태를 제시하게 되는 바, 이는 곧 주주가 자본을 형성하고 전문경영자는 이를 맡아 경영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게 되므로 우리는 여기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모습을 볼 수 있다(유수원, 遷書).

4. 생산관리론적 관점

조선후기의 공업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것은 당시 조선왕조의 쇄국정책에도 기인한다. 특히 병자호란 이후 배청(排清)정책은 당시 선진기술의 유일한 통로였던 清나라의 선진문명, 나아가서는 그곳에 수입된 서양기술 문명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국내 기술수준은 더욱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18세기 후반 박지원, 박제가 중심의 복학파 학자들은 낙후된 국내 기술을 높여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나라 선진 문물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청의 수레, 선박, 누각, 도로, 교량 등에 대하여 이용후생을 논하고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²⁴⁾. 정약용은 낙후된 기술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높이

22) 양창삼, 전개서, pp. 55~56.

23) 영세한 상인들이 소자본을 합자하여 대규모 상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상인의 자본과 군소 상인의 자본이 결합하여 대 자본을 형성하는 경우, 대상인이 소생산자층이나 소상인층을 고용하여 스스로 상품을 제조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4) 박지원, 열하일기 중 '역마를 달리며 적은 수필'편, 민족문화 추진회 옮김, 1997.

평가받고 있다. 유수원은 대량 생산을 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의 물질생활이 풍요로워 진다고 하면서 대량생산의 이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박제가는 사물의 법칙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합당하도록 도구를 만들어 사용해야 효과가 크다며 합리적 생산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발전의 주된 방법으로 기술습득을 들고 본격적인 공업기술의 교육 및 도입을 위해 다산이 말한 「이용감」과 같은 전문 국가 기술기관의 설립은 물론 서양 기술자를 초빙해서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였음을 볼 때, 당시의 적극적인 연구 및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의 필요성과 선진국 기술의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bench marking)의 노력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IV. 결 론

이상에서 조선후기에 빌홍되었던 실학을 현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수평적 기능(function)을 중심으로 재조명하여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적 경영학의 정체성(identity)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오고 있으나 우리 역사에 대한 경영학계의 무관심은 한국경영학의 뿌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고 하겠다.

모든 역사는 오늘날의 역사일 수 밖에 없고 과테의 말처럼 역사 그 자체가 과학이고 학문이라 할진대, 경영학의 원류로 간주되고 있는 조선후기의 실학 연구는 한국적 경영학의 정립을 위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외국의 문물을 도입하고 소화하는데 상대적으로 뒤졌던 조선후기의 상황에서 당면 문제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 부심하였던 실학자들의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본 것이다.

일단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후반에 국한하여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경영학의 각론 입장에서 정리하여 보았으나 향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전공분야로 관심영역을 나눠 체계적인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실학을 연구하고 집대성해 나갔던 당시 실학자들의 고뇌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를 눈앞에 둔 우리들에게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나라 산업계나 학계에서는 주로 구미지역의 선진국으로부터 경영관리이론이나 기법을 도입만의 우선시 해오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한국적 경영론의 모색을 위한 노작들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이면우의 W이론, 그리고 이장우·이민화의 혼경영이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후속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인간존중의 경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인간 존중의 가치 이념을 구현했던 조선후기 실학

의 연구는 법고창신(法古創新)²⁵⁾의 노력으로 한국적 경영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재언(1998), 서양과 조선, 그 이문화 격투의 역사, 학고재.
- 강만길(1984), 조선시대 상공업사연구, 한길사.
- _____, 외(1999), “근대이행기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운동사 대토론회 발표논문집(6. 12.),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 국사편찬위원회 ·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1990), 고등학교국사(상,하).
- 금장태(1993), 한국실학사상연구, 집문당.
- 김영규(1999), 최신경영학원론, 박영사.
- 김영호 등(1982), 한국사상의 심층연구, 우석.
- 김원수(1989), 경영학연구방법론, 박영사.
- 김효근(1999), 신지식인, 매일경제신문사.
- 박성수(1999), “최한기의 인정에 관한 소고”, 광주 · 전남인사조직학회 세미나 발표 논문집 (6. 12.).
- 박원선(1968), 객주,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 박희병 옮김(1998), 돌베개.
- 박지원, 열하일기, 민족문화추진회 옮김(1997).
- 신유근(1997), 인간존중의 경영, 다산출판사.
- _____(1996), 현대경영학, 다산출판사.
- 양창삼(1993), 한국의 경영사상, 양영각.
- 역사학회 편(1983), 실학연구입문, 일조각.
- 유봉학(1998),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 윤사순(1994), 한국의 성리학과 실학, 열음사.
- 이면우(1992), W이론을 만들자, 지식산업사.
- 이순용 · 이영면(1998), “한국 경영학 도입기의 재조명”, 경영학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경영학회.

25) 옛을 본뜨는(法古) 사람은 그 형식이나 겉모습에 구애됨이 병폐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創新) 사람은 법도가 없음이 폐단이기 때문에 옛것을 진실로 본 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 박희병 옮김(1998), 돌베개, pp. 179~180).

- 이을호 박사 정년기념 실학논총(1975), 전남대학교 출판부.
- 이장우 · 이민화(1994), 혼 경영, 김영사.
- 이훈섭(1992), 한국전통 경영사연구, 보경문화사.
- 정옥자 외(1998), 시대가 선비를 부른다, 효령출판.
- 조동일(1993),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 최한기, 人政(I, II, III, IV),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고전국역총서 203.
- 한영국(1991), “조선후기 상공업 발달의 시대적 배경”, 한국사 시민강좌 제9집, 일조각.
- 한의영(1987), 경영학총론, 다산출판사.
- 小川晴久(Ogawa Haruhisa), Chosen Bunkashi No Hitobito, 1997, Tokyo, Kadensha.
- 황용성(1999)옮김, 실사구시의 눈으로 시대를 밝힌다, 도서출판 강.

귀속재산의 소멸에 관한 연구

- 1961년 이후의 면방직설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tinction of Vested Property in Korea

徐文錫*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1961년 이후 귀속 면방직설비의 소멸 |
| II. 귀속 면방직설비의 상황(1945~1961) | 1. 각 공장별 귀속 면방직설비의 소멸 |
| 1. 귀속 면방직설비의 상황(1945~1949) | 2. 전체 귀속 면방직설비의 소멸 |
| 2. 귀속 면방직설비의 재생과 소멸 (1950~1961) | N. 맷 음 말 |

I. 머리말

해방 이전의 대규모 산업시설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것이거나 식민지 조선에서 착취와 수탈을 통하여 축적한 것이든 간에 대부분이 일본인들의 소유였다. 바로 이러한 일본인 소유의 시설들이 해방 후에 미군정의 손에서 관리되다가 한국정부에 귀속되었고, 1950년대에 거의 대부분이 민간에 불하되었는데 이러한 재산을 ‘적산(敵產)’, 혹은 ‘귀속재산(歸屬財產)’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설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대부분이 파괴되었다고 간단하게 언급하거나,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한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식민지시기와 한국의 고도성장기 사이의 공간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단지 일본인들의 재산에 의해서나, 아니면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기가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주체였던 한국의 경제주체들이 대내외의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그 중심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일 것이다. 따라서

* 檀國大學校 經濟學科 講師(經濟學博士), seoms@chollian.net

귀속재산이 본격적인 공업화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변질되었고, 어떠한 과정으로 소멸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이 시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고리 중의 하나일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연결시키고 있는 해외의 관점들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식민지로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착취와 수탈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물적 유산'의 실체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제에 의해 남겨진 귀속재산 중에서도 특히 규모면에서 대표적인 귀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면방직공장의 방적설비(精紡機)와 직포설비(織機)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귀속재산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제Ⅰ장의 머리말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1961년 이전까지의 귀속설비의 상황에 대하여 해방 직후의 상황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재생과 소멸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1961년 이후를 중심으로 귀속 면방직 설비 중에서 방기와 직기에 대하여 각 공장에 대하여 살펴보고 난 후 귀속설비 전체의 소멸과정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결론을 맺는다.

II. 귀속 면방직 설비의 상황(1945~1961)¹⁾

면방직부문의 귀속설비²⁾는 해방 이후 미설치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1949년까지 숫자으로 증가하다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약 65~70%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설비들은 각 공장에서 재생과정을 거치면서 1959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생되었다. 이후 1959년을 최고점으로 귀속설비들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는 해방 당시의 귀속설비의 상황을 정리한 뒤, 해방 직후부터 귀속설비가 가장 많

1) 1961년 이전까지의 설비의 변동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서문석, 「해방 이후 귀속재산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17집, 경영사학회, 1998년 참조.

2) 여기에서의 '귀속설비(歸屬設備)'란 해방 이전에 일본인이 지배적인 소유주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민간에게 불하된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설비로 한정한다. 따라서 해방 이전에 조선인이 지배적인 소유주로 운영되었던 '경성방직'의 설비들은 제외되며, 불하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 수입된 설비들은 제외된다. 단 해방 이후 설비의 수입이 재개되기 이전에 늘어나는 설비들은 해방 이전에 들어왔다가 미처 설치되지 못한 설비이거나 공장으로 이동 중이었던 설비들로 보아 귀속설비로 인정한다. 단 귀속기업체들도 완전히 일본인의 소유는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았던 1949년까지의 상황을 검토하여 해방 직후의 혼란과정에서 귀속설비들의 소멸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1950년부터 1961년까지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재생, 그리고 대체과정에서의 소멸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귀속 면방직 설비의 상황(1945~1949)

1) 해방 당시의 귀속 면방직 설비의 상황³⁾

(1) 방 기

해방 이전에 일본인 소유였던 면방직공장들 중에서 방기를 보유하고 있던 곳은 5개 회사의 7개 공장이었다. 이 중 일부 공장에는 일본 본토로부터 소개(疏開)해 와서 미처 설치하지 못했던 미설치설비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47년까지 설치되었던 설비들도 구체적인 자료는 드러나지 않지만 당시 완제품 설비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소속이 불명확한 설비이거나 미설치설비일 수 밖에 없는 귀속설비들이다. 당시 면방직업계 전체의 보유 방기⁴⁾ 중에서 91%에 해당하는 307,112추가 귀속 방기였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설비는 228,248추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8,864추의 설비는 미처 설치되지 못한 채로 해방을 맞게 되었다.

(2) 직 기

직포부문의 설비는 7개 회사의 9개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방기와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에 미처 설치하지 못했던 설비들을 포함하면 귀속 직기는 당시 면방직업계 전체 보유 직기⁵⁾의 89.3%에 해당하는 8,583대였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설비는 7,614대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69대는 미처 설치되지 못하였다.

2) 해방 이후 1949년까지의 귀속 방기의 변동 상황

해방 직후부터 1949년까지 일본인 기술자의 귀국과 각종 기료품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설비의 지속적인 증설이 나타났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당시 증설된 설비들은 새로운 설비들이 도입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속할 것이다. 첫째는 각 공장의 미설치설비가 설치된 경우, 둘째는 공장이 통계에 계산되지 않았던 경우, 셋째는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야적되었다가 설치된 경우 등이다⁶⁾.

이후 1950년부터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급격하게 설비들이 감소하였고, 전쟁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소개된 설비들은 각 지역으로 이동되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거나 조업 중

3) 서문석, 상계논문, 239면 참조.

4) 당시 전체 면방직 공장에서 보유하였던 방기는 경성방직의 설치설비 25,600추와 미설치설비 4,600추를 합하여 337,312추였다.

5) 당시 전체 면방직 공장에서 보유하였던 직기는 京城紡織의 설치설비 896대와 松高實業의 설치설비 130대를 합하여 9,609대였다.

인 공장의 설비로 증설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존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함으로써 보유설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분류가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종전 이후에는 해외로부터의 신규설비가 수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까지의 변화가 해방 직후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방 기

방적부문의 설비 중에서 해방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것은 미설치설비를 설치한 경우(군사방적 대구공장, 조선방적 부산공장, 종연방적 광주공장과 경성공장)와 해방 당시 파악되지 않았던 설비가 증설된 경우(종연방적 춘천공장, 대일본방적 경성공장, 오우방적 대전공장, 금성방적 안양공장)로 구분할 수가 있다. 파악되지 않았던 설비가 증설된 경우 중에서도 금성방적 안양공장은 나머지 세 공장과는 달리 해방 이후에 설립된 공장이다.

해방 이후 1949년까지의 설비상황을 아래의 <표 1>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6년의 19,928추의 감소이외에 1947년에는 36,870추, 1948년에는 12,866추, 1949년에는 16,266추가 증가하여 1949년말 귀속방기는 274,322추에 이르렀다.

방기가 최초로 소멸된 것은 해방 직후 일본인의 방화로 군사방적 대구공장의 19,928추가 소실된 것⁷⁾이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별다른 소멸은 없었다. 하지만 해방 당시 확인된 귀속설비는 미설치설비까지 307,112추였는데 반해 1949년까지 설치된 귀속방기는 274,322추에 불과하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해방 당시의 미설치설비까지 최대한으로 인정한다면 해방 당시의 약 10%에 이르는 3만여추의 방기가 해방공간에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직 기

직포부문의 설비 중에서 해방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것은 미설치설비를 설치한 경우(군사방적 대구공장, 동양방적 경성공장, 조선방적 부산공장, 종연방적 광주공장)와 해방 당시 파악되지 않았던 설비가 증설된 경우(종연방적 춘천공장, 금성방적 안양공장)로 구분할 수가 있다. 금성방적 안양공장은 방기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에 설립된 공장이다.

6) 첫째의 경우의 예는 각 공장의 미설치설비가 설치되면서 설비가 증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방 당시 소속이 불분명했던 방기 48,224추의 처리실태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중 일부는 기존의 공장들의 설비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의 경우의 예는 조선마방적 전주공장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공장은 1947년부터 활동한 면방직협회의 공식통계에서는 이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5,700추의 방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셋째 경우의 예는 그 대표적인 것이 금성방적이다. 금성방적의 김성곤은 영등포역 주변에 야적되어 그 수량도 파악되지 않은 설비를 자신이 파악하여 금성방적에 설치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7) 대한방직협회, 「방협창립 10주년 기념지」, 1957, I-13면.

〈표 1〉

해방 이후 1949년까지 귀속 방적 설비의 보유 상황

(단위 : 층)

| 工 場 别 | 1945년 | 1946년 | 1947년 | 1948년 | 1949년 |
|----------|---------|---------|---------|---------|---------|
| 郡是紡績(大邱) | 19,928 | 0 | 3,200 | 10,000 | 12,000 |
| 東洋紡績(京城) | 45,328 | 45,328 | 45,328 | 45,328 | 45,328 |
| (仁川) | 35,088 | 35,088 | 35,088 | 35,088 | 35,088 |
| 朝鮮紡織(釜山) | 40,000 | 40,000 | 50,304 | 51,024 | 50,304 |
| 朝鮮製麻(仁川) | 4,480 | 4,480 | 4,480 | 4,480 | 4,480 |
| 鐘淵紡績(光州) | 35,104 | 35,104 | 38,368 | 38,368 | 38,368 |
| (京城) | 48,320 | 48,320 | 49,720 | 49,720 | 49,720 |
| (春川) | 0 | 0 | 5,136 | 5,136 | 5,564 |
| 大日本紡(京城) | 0 | 0 | 8,190 | 8,200 | 8,656 |
| 吳羽紡績(大田) | 0 | 0 | 5,376 | 10,712 | 15,848 |
| 金星紡織(安養) | 0 | 0 | 0 | 0 | 8,966 |
| 合 計 | 228,248 | 208,320 | 245,190 | 258,056 | 274,322 |
| 設 備 增 減 | | -19,928 | 36,870 | 12,866 | 16,266 |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1957, I-12~14면, 제Ⅱ부 회원공장 편에서 작성.

주 : (1) 대한방직협회와 개별공장의 수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한방직협회에서 향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해방 이후 1949년까지의 설비상황을 아래의 〈표 2〉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포부문에서는 해방 직후 7,614대의 귀속설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정비로 1947년에는 426대가 늘어난 8,040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1949년에는 군시방적 대구공장과 종연방적 춘천공장에서 각각 408대와 200대가 감소함으로써 7,487대의 직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1949년에는 종연방적 춘천공장과 금성방직 안양공장에서 각각 176대와 226대의 증설로 1949년 말 7,713대의 직기를 보유하였다.

직기가 소멸된 것은 1947년에 동양방적 경성공장의 300대가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파손되어 철거되었으며, 나머지의 소량은 정비과정에서 변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1948년에는 군시방적 대구공장의 400대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며 종연방적 춘천공장의 200대는 설치대체관계로 철거되었다가 1949년에 176대가 다시 설치되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별다른 소멸은 없었지만 해방 당시 확인된 귀속설비는 미설치설비까지 8,583대였는데 반해 1949년까지 설치된 귀속 직기는 7,713대에 불과하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해방 당시의 미설치설비까지도 최대한 인정한다면 해방 당시의 약 10%에 이르는 870대 정도의 직기가 해방공간에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해방 이후 1949년까지 귀속 직포 설비의 보유 상황

(단위 : 대)

| 工 場 别 | 1945년 | 1946년 | 1947년 | 1948년 | 1949년 |
|----------|-------|-------|-------|-------|-------|
| 郡是紡績(大邱) | 0 | 0 | 408 | 0 | 0 |
| 大日本紡(京城) | 417 | 417 | 413 | 413 | 413 |
| 大和紡績(倉洞) | 150 | 150 | 148 | 148 | 148 |
| 東洋紡績(京城) | 1,440 | 1,440 | 1,140 | 1,140 | 1,140 |
| (仁川) | 1,292 | 1,292 | 1,280 | 1,280 | 1,280 |
| 朝鮮紡織(釜山) | 1,264 | 1,264 | 1,258 | 1,313 | 1,313 |
| 朝鮮棉花(木浦) | 86 | 86 | 158 | 158 | 158 |
| 鐘淵紡績(光州) | 1,440 | 1,440 | 1,510 | 1,510 | 1,510 |
| (京城) | 1,525 | 1,525 | 1,525 | 1,525 | 1,525 |
| (春川) | 0 | 0 | 200 | 0 | 176 |
| 金星紡織(安養) | 0 | 0 | 0 | 0 | 50 |
| 合 計 | 7,614 | 7,614 | 8,040 | 7,487 | 7,713 |
| 設 備 增 減 | | 0 | 426 | -553 | 226 |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1957, I-12~14면, 제Ⅱ부 회원공장 편에서 작성.

주 : (1) 대한방직협회와 개별공장의 수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한방직협회에서 향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2. 귀속 면방직 설비의 재생과 소멸(1950~1961)⁸⁾

1) 한국전쟁으로 인한 손실

귀속 면방직 설비들을 보유하고 있던 면방직 공장들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아 전체설비의 70% 정도를 잃게 되었으며 귀속설비들도 이로 인해 커다란 변동을 겪었다. 그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 유형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체 설비가 피해를 입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재기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경우이다. 이러한 공장들에는 동양방직 경성공장(45,328주, 1,140대), 종연방직 춘천공장(5,564주, 176대), 종연방직 경성공장(49,720주, 1,525대)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유형은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업을 진행한 경우인데, 이러한 공장들의 예로는 경상도지역의 조선방직 부산공장과 대구공장, 그리고 삼호방직 대구공장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유형은 일부 공장들이 설비를 소개하여 새로운 공장들을 임시로 가동한 경우이다. 그 예로는 동양방직 인천공장의 소개설비로 세워진 동아방직 부산공장과 금성방직 안양공장의 소개설비로 세워진 아주방직 마산공장 등이 있다.

8) 이 시기의 설비변동과 설비의 구성변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측면의 영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서문석, 상계논문을 참조.

(1) 방 기

1949년에 274,332추를 보유하고 있던 방기는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이 되면 89,992추 만이 남고, 1951년이 되면 79,794추만이 남게 된다.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재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시점을 한국전쟁에 의한 피해 수량으로 본다면 1950년과 1951년에 감소한 설비가 약 20만추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해방 당시 파악된 설비수량인 307,112추에 대해서는 약 66%에 해당하는 설비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귀속 방기 변동 상황(1949~1961)

(단위 : 추, %)

| | 1949년 | 1950년 | 1951년 | 1952년 | 1953년 | 1954년 | 1955년 | 1956년 | 1957년 | 1958년 | 1959년 | 1960년 | 1961년 |
|----------------|---------|----------|---------|---------|---------|---------|---------|---------|---------|---------|---------|---------|---------|
| 총설비합계 | 304,522 | 94,592 | 79,794 | 137,797 | 177,432 | 350,872 | 370,632 | 434,232 | 440,552 | 468,792 | 476,632 | 469,648 | 492,576 |
| 구설비합계 | 274,322 | 89,992 | 79,794 | 131,597 | 165,232 | 180,240 | 183,600 | 183,600 | 183,600 | 183,600 | 184,240 | 177,256 | 177,256 |
| 구설비증감 | - | -184,330 | -10,198 | 51,803 | 33,635 | 15,008 | 3,360 | 0 | 0 | 0 | 640 | -6,984 | 0 |
| 구설비/ 총설비(%) | 90.0 | 95.1 | 95.5 | 95.5 | 93.1 | 51.3 | 49.5 | 42.2 | 41.6 | 39.1 | 38.6 | 37.7 | 35.9 |

자료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 년도 ; 서문석, 「해방 이후 귀속재산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17집, 한국경영사학회, 1998, 246~252면에서 작성.

주 : (1) 대한방직협회와 개별공장의 수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한방직협회에서 향후 계속 사용하는 수치를 사용하였음.

(2) 총설비합계는 한국 면방직업계 전체의 설비수치이며, 구설비합계는 귀속설비로 분류되는 해방 이전에 생산된 설비의 수치임(단 구설비합계에서 경성방직 보유분은 제외).

(2) 직 기

1949년에 7,713대를 보유하고 있던 직기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말에는 3,897대, 1951년에는 1,883대만이 남게 되는데, 이 두 해에 총 5,830대의 직기가 감소된 것이다. 1952년부터는 지속적인 재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시점을 한국전쟁에 의한 피해 수량으로 본다면 해방 당시 파악된 설비수량인 8,583대에 대해서는 약 68%에 해당하는 설비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2) 전후복구과정에서의 재생

한편 한국전쟁이 끝나가는 1952년부터 각 공장들은 복구작업을 시작하고, 휴전이 성립되는 1953년부터는 본격적인 부흥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각 공장들은 피해를 입은 설비(戰災設備)들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신규설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 방 기

1951년에 79,794추를 보유하고 있던 방기는 1952년부터 전재설비의 복구와 재생이 시작되

〈표 4〉

귀속 직기 변동 상황(1949~1961)

(단위: 대, %)

| | 1949년 | 1950년 | 1951년 | 1952년 | 1953년 | 1954년 | 1955년 | 1956년 | 1957년 | 1958년 | 1959년 | 1960년 | 1961년 |
|----------------|-------|--------|--------|-------|-------|-------|-------|-------|--------|--------|--------|--------|-------|
| 총설비합계 | 8,970 | 3,487 | 1,883 | 3,554 | 3,822 | 5,180 | 6,742 | 8,442 | 10,473 | 10,646 | 10,820 | 10,054 | 9,815 |
| 구설비합계 | 7,713 | 2,815 | 801 | 2,192 | 2,340 | 3,374 | 3,891 | 3,999 | 3,999 | 3,999 | 3,999 | 3,661 | 3,661 |
| 구설비증감 | - | -4,898 | -2,014 | 1,391 | 148 | 1,034 | 517 | 108 | 0 | 0 | 0 | -338 | 0 |
| 구설비/ 총설비(%) | 85.9 | 80.7 | 61.6 | 61.6 | 61.2 | 65.1 | 57.7 | 47.3 | 38.1 | 37.5 | 36.9 | 36.4 | 37.3 |

자료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 년도 ; 서문석, 「해방 이후 귀속재산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 17집, 한국경영사학회, 1998, 246~252면에서 작성.

주 : (1) 대한방직협회와 개별공장의 수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한방직협회에서 향후 계속 사용하는 수치를 사용하였음.
 (2) 총설비합계는 한국 면방직업계 전체의 설비수치이며, 구설비합계는 귀속설비로 분류되는 해방 이전에 생산된 설비의 수치임(단, 구설비합계에서 경성방직 보유분은 제외).

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59년이 되면 약 10만여추가 증가한 184,240추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전후 복구과정에서 재생한 구설비는 해방 당시 파악된 설비수량인 307,112추에 대해서 약 34%에 해당하는 설비를 재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2) 직 기

1951년에 1,183대를 보유하는데 그쳤던 직기는 1952년이 되면서 귀속설비인 구설비의 복구와 재생이 시작된다. 이 과정은 1956년까지 지속되면서 구설비의 보유대수가 3,898대가 증가한 5,081대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해방 당시 파악된 설비수량인 8,583대에 대해서는 약 45%에 해당하는 설비가 재생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3) 시설개체과정에서의 소멸

1950년대 중반 즉 방기는 1953년부터, 직기는 1955년부터 해외에서 신규설비가 도입되었다. 이 설비들의 도입은 구설비들의 재생과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개별 공장에서는 구설비를 신설비로 대체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61년까지는 이러한 시설개체과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구설비의 개체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일부 개체과정에서의 소멸이 나타나기도 하였다⁹⁾.

(1) 방 기

1952년부터 시작된 전재설비의 복구와 재생으로 1959년에 184,240추를 보유하게 된 구설비는 1960년에 6,984추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조선방직 부산공장에서 5,200대를 소모방으

9) “1958년부터는 노후설비 개체에 따른 구기처리문제가 업계의 최대쟁점으로 대두..., 내용면으로는 상당수의 노후 및 전재시설을 보유... 동시에 舊機가 능률면에서는 비록 新機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 진다해도 부속품의 개체 또는 보수로 太番手生產에 활용한다면 사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신기대체 후 구기의 완전폐기는 곤란하였으므로 신기대체에 따른 구기처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대한방직협회, 『방협 30년사』, 1987, 249면).

로 전환하면서 감소된 것이고, 태창방직에서 재생복구하였지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방기 1,784추를 폐기하였던 것이다¹⁰⁾. 이러한 상황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2) 직 기

1952년부터 시작된 구설비의 복구와 재생으로 1956년에는 5,081대의 직기를 보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55년부터 시작된 신규설비의 도입으로 인해 구설비를 신설비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구설비가 감소하게 되었다¹¹⁾. 1960년에 338대가 감소하였던 것은 삼호방직 대구공장에서 300대, 동양방직 인천공장에서 12대, 조선방직 부산공장에서 26대가 변동이 되었던 것이다. 이 설비 모두는 이재설비(罹災設備)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각 공장별로 처분한 것이었다¹²⁾. 1961년에는 239대의 직기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전남방직에서 239대의 직기를 감소시킨 때문이었다. 따라서 1961년까지 총 577대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해방 당시 파악된 설비수량인 8,583대에 대해서는 약 7%에 해당하는 설비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III. 1961년 이후 귀속 면방직설비의 소멸

1961년 이후부터는 1959년부터 감소하던 귀속 설비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 이유는 1950년대 말부터 면의 수요가 감소되면서 면방직산업이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귀속설비의 재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첫째 이유로는 해방된지 25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 활용되지 않은 설비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50년대 내내 전재설비에 대한 재생을 해왔던 업계가 50년대 말에 면제품 소비의 감소로 인해 그동안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재생하여 조업에 이용했던 구설비들을 오히려 폐기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설비의 숫자가 원면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시설을 수입하고서도 구설비들을 폐기하지 않았던 공장들이 구설비의 폐기를 조건으로 해야만 신규설비의 도입을 허가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³⁾.

10) 대한 방직협회, 『섬유연보』, 1961, 국내동향 편, 5면 참조.

11) “이러한 직기설비의 감소경향은 1959년의 10,820대를 정점으로 하여 매년 거듭된 것으로서 6·25동란 시의 罷災織機의 폐기가 주인이라고 할 것이며, 그 밖에도 면포수요의 대종이라 할 수 있는 광목수요의 감퇴에도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대한방직협회, 『방협창립 20년사』, 1977, 147면).

12)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1961, 국내동향 편, 5면 참조.

13) 면방직의 도입에 대한 기본 기본시책이 마련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잉시설을 이유로 개체를 위한 시설도입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수용 설비와 수출용 설비의 원료배정에 차등을 두게 되자 공장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면방시설 등록원칙을 만들었다(대한방직협회, 『방협20년사』, 1977, 152~154면).

이 장에서는 귀속 면방직설비이 소멸되는 과정을 귀속설비를 보유하였던 기업체별로 살펴보고 난 후 귀속설비 전체의 소멸과정을 정리하도록 한다.

1. 각 회사별 귀속 면방직설비의 소멸¹⁴⁾

1) 郡是紡績 대구공장의 보유설비

군시방적 대구공장은 1955년 불하되면서 대한방적 대구공장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1999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1) 냉기 : 35,600추

이 공장은 해방 당시 설치설비 19,928추와 미설치설비 15,672추를 합하여 총 35,600추의 방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46년 화재로 인해 설치설비 전부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1947년부터 미설치설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설비를 재생한 결과 1956년에는 25,376추의 재생설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이 설비들은 비교적 늦은 1971년에 가서야 3,200추를 시작으로, 1972년에는 800추, 1976년에는 17,152추가 각각 감소되어 1976년부터 4,224추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공장의 방기는 모두 일본의 TOYODA의 제품으로 1953년 제작되어 1956년에 설치된 7,200추를 제외하면 모두 해방 이전에 제작된 설비들이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1933년도 제작된 4,608추, 1934년에 제작된 13,600추, 1936년에 제작된 7,168추 등 모두 25,376추의 설비가 해방 이전에 제작된 귀속설비였으며 이 설비는 1998년 말까지도 4,224추가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직기 : 직기 408대(미설치설비)

이 공장에는 해방 당시에 설치되어 운용되던 설비가 없었으며 미설치설비만 408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설비는 1948년의 화재로 인해 전부 소실되고 말았다.

이후 이 공장에는 1950년에 204대가 새로이 설치되었는데 이 설비는 소실된 408대의 설비 중의 일부가 재생되었거나 한국전쟁 중에 다른 회사의 소개설비가 이전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귀속설비임에는 틀림없다.

이 공장에는 1950년에 204대, 1951년에 182대, 1952년에 22대, 1953년에 30대, 1954년에 12대, 1955년에 66대의 직기가 증설되었는데 이 설비들은 모두 소개설비이거나 재생설비였다.

하지만 1957년에 300대, 1969년에 300대의 신규직기를 수입하기도 하여 1970년에는 357대

14) 대한방직협회, 『설유연보』, 각 년도 ; 대한방직협회, 『면방직공업시설현황』, 각 년도 ; 대한방직협회, 『면방직공업 공정별 시설현황』, 각 년도 ; 한국섬유기술시험연구소, 『면방직공업생산 시설실태조사 결과종합보고서』, 각 년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회사 보유설비들을 분석하였기에 각 수치들에 대한 각주는 생략한다.

의 구설비와 600대의 신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1970년에 감소된 159대는 TOYODA와 남은 357대 모두 1935년에 TOYODA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이 설비는 1973년에 256대가 감소하여 101대¹⁵⁾로 줄어들었다가 1979년 101대 모두가 폐기되면서 군사방적 대구공장이 소유하고 있던 귀속설비는 모두 소멸되었다.

2) 동양방적 인천공장 보유설비

동양방적 인천공장은 1955년 불하되면서 동양방직주식회사로 출범하였다가 1966년 동일방직 인천공장으로 개칭하여 1999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1) 방기 : 35,088추

이 공장은 해방 당시 이미 설치된 35,088추의 방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설비전체가 피해를 입었지만 1952년에 29,712추, 1954년에 384추를 재생복구하여 30,096추를 보유하게 되었고 1965년에 2,352추가 감소되어 27,744추를 보유하였다.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27,744추의 설비들은 모두 일본 회사들이 1932년에 제작한 설비들이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1932년 OMM이 생산한 2,400추와 같은 해에 TOYOTA에서 생산한 25,344추가 그것이다. 이 설비 중 OMM이 생산한 2,400추는 1997년에 소멸되었고, TOYOTA에서 생산된 설비는 1995년에 2,304추, 1996년에 240추, 1997년에 1,296추가 감소되어 1998년 말까지 21,504추의 귀속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직기 : 1,292대

해방 당시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1,292대의 직기는 1947년 12대가 감소한 후 1949년까지 1,280대를 유지하였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설비전체가 피해를 보았지만 1952년에는 1,234대, 1956년에는 82대를 증설하였다. 한편 1960년부터는 노후 직기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1969년에는 780대의 직기를 보유하였다. 이 때의 설비 중 해방 이전에 제작된 귀속설비는 217대였으며 이 설비는 모두 일본의 TOYODA에서 1933년에 생산된 설비였다. 이 귀속설비는 1970년에 전부가 폐기됨으로써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귀속설비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3) 대일본방적 경성공장 보유설비

대일본방적 경성공장은 1953년 불하되면서 한영방직주식회사로 되었다가 1968년 명민방적, 1969년 대성방직을 거치고 1970년 폐쇄되었다.

(1) 방기 : 8,656추

이 공장은 해방 당시 방기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1947년에 8,190추, 1948년에 8,200추, 1949년에 8,656추를 보유하였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체시설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전후복구과정에서 1953년에 5,488추, 1954년에 448추, 1959년에 352추를 재생하

15) 이 직기는 1955년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있다(대한방직협회, 「면방직시설현황」, 1954, 20면).

였으며, 1967년에는 구설비 1,104추를 확보하여 7,392추의 구설비를 보유하였다.

이 설비들은 모두 해방 이전에 제작된 것들인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1927년 DOB-SON사에서 제작된 3,200추, 1934년에 일본의 OMM에서 제작된 800추, 같은 해 일본의 TOYODA에서 제작된 3,392추의 설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설비들은 1970년에 회사가 폐쇄되면서 모두 폐기되었다.

(2) 직기 : 417대

이 공장이 해방 당시 보유하고 있던 직기는 모두 417대였는데 1947년 4대가 감소하여 413대를 보유하였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전체설비에 피해를 입어서 방기와는 달리 다시 복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설비 417대는 한국전쟁으로 소멸되었다 것이다.

4) 대화방적 창동공장 보유설비

이 공장은 해방 당시 직기만 가지고 있었으며 대아방적이라는 이름으로 경영되다가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다시 복구되지 못한 공장이다.

이 공장은 해방 당시 직기 15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47년 2대가 감소되어 148대로 한국전쟁을 맞았으나 이 설비 전체가 피해를 입어 다시 복구되지 못함으로써 이 공장에서 보유하였던 직기 150대는 한국전쟁으로 소멸되었다.

5) 조선방직 부산공장 보유설비

조선방직 부산공장은 조선에 가장 먼저 세워진 근대적 대규모 면방직 공장이었으나 1955년 불하된 이후 불하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1968년 전 시설을 매각처분하여 이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설비는 모두 소멸되었다.

(1) 방기 : 50,304추

해방 당시 40,000추를 보유하고 있던 이 공장은 1947년에 10,304추를 증설하여 50,304추를 보유하였다. 다른 공장들이 한국전쟁의 피해를 겪은 것에 비해 이 공장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피해를 전혀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귀속설비들이 가장 원형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 공장의 설비는 1960년에 5,200추가 감소되어 45,104추를 보유하고 있다가 1968년에 매각처분되었다^[16].

(2) 직기 : 1,313대

16) 당시 조선방직의 설비는 이 회사의 설비가 감소되는 것과 동시에 귀속설비로 증설을 한 방림방직(16,160추, PLATT, 1920년 제작), 삼호방직(944추, HOWA, 1940년 제작), 충남방직(18,000추, 국안방직-T&S, 1921년 제작) 등이 그 시설의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림방직의 증설설비는 이후 한일방직(구 홍한방직)으로 이전되었다가 1978년에, 삼호방직의 설비는 1980년에, 충남방직의 설비는 1982년에 모두 소멸되었다.

이 공장에서는 해방 당시에 설치설비 1,264와 49대의 미설치설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방 이후의 정비와 설치로 1,313대의 설비를 보유하였다. 이 공장은 한국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고 소량의 변동을 거치면서 1968년에 보유했던 1,553대의 직기가 처분됨으로써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귀속설비는 1968년에 완전히 소멸되었다.

6) 종연방적 광주공장

종연방적 광주공장은 1953년 불하되면서 전남방직주식회사로 되었다가 1970년에 전방주식회사로 개명되어 1999년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1) 방기 : 38,368주

이 공장에서는 해방 당시 설치설비 35,104주와 미설치설비 3,264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1947년에 미설치설비 3,264주를 모두 설치하고 조업을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설비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1951년의 5,000주를 시작으로 1952년에는 1,800주, 1953년에는 10,240주, 1954년에는 4,000주를 재생하여 재생설비 21,04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공장의 설비를 1961년 일신방직과 반분(半分)한 결과 이후 귀속설비는 10,52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10,520주는 일본 OMM에서 1930년에 제작된 것이었으며 1976년에 8,920주, 1982년에 1,600주가 감소되어 모두 소멸되었다.

(2) 직기 : 1,510대

이 공장에서는 해방 당시 1,440대의 설치설비와 70대의 미설치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947년이 되면 미설치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1,510대의 직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전체설비가 피해를 입었지만 1952년에 184대를 시작으로 설비를 재생하기 시작하여 1969년에는 336대가 되었다. 이 설비는 모두 일본의 ENSHU가 제작한 설비였다. 1973년에는 176대로, 1974년에는 146대로 감소되다가 1975년에 146대가 모두 소멸됨으로써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1,510대의 직기는 모두 소멸되었다.

7) 조선면화 목포공장

이 공장은 직포시설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전쟁의 피해로 인해 전후복구되지 못하였다.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설비는 해방 직후 직기 86대가 전부였는데 1947년 72대의 직기가 증설이 되어 158대의 직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설비 전체가 피해를 입어 복구되지 못하고 모두 소멸되었다.

8) 종연방적 경성공장

종연방적 경성공장은 1955년에 불하되면서 태창방직, 1963년 판본방적으로 되었다가 1967년 방림방적으로 되어 1999년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1) 방기 : 49,720추

이 공장은 해방 당시 48,320추의 설치설비와 1,400추의 미설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가 1947년 미설치설비 1,400추를 설치하여 49,720추의 방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통하여 전체설비에 피해를 입고 1955년까지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였다가 1956년에 60,000추의 신규설비를 갖추고 조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해방 당시 이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49,720추의 설비는 한국전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조선방직 부산공장의 매각설비로 추정되는 1920년 PLATT에서 제작된 16,160추의 설비를 보유하기도 하였다.

(2) 직기 : 1,525대

이 공장에서는 해방 당시 1,525대의 직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체설비에 피해를 입고 조업을 중단하였다가 태창방직에 불하되고 난 후에 다시 조업을 시작하지만 다시 재개된 조업에서는 새로운 설비가 수입되어 가동되었다. 따라서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1,525대의 설비는 한국전쟁과정에서 소멸되었던 것이다.

9) 오우방직 대전공장

오우방직 대전공장은 해방 직후까지도 방기만을 보유하고 있던 공장으로 1953년에 불하되었다가 대전방직주식회사에 합병된 후 1969년에 三畿紡織에 합병되었다. 이후 1973년부터는 合同紡織 대전공장으로, 1981년에는 金河紡織으로 개칭되었다가 1991년에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 공장은 해방 당시 설비를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가 1947년 5,376추의 방기를 보유하고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948년에 5,336추, 1949년에 5,136추의 방기를 증설하여 15,848추를 보유했던 이 공장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체설비를 잃었다. 1954년에 조업이 재개되지만 이 시기에는 1953년에 제작된 영국 PLATT사의 새로운 신규설비가 도입되어 운영되었을 뿐 귀속설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전쟁을 통하여 이 공장의 15,848추의 설비는 소멸되었다.

10) 금성방직 안양공장

해방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장으로 해방 당시부터 영등포역에 약적되어 있던 설비를 시작으로 1949년 조업을 시작하였다가 1975년 대농 청주공장으로 설비가 이설된 공장이다.

(1) 방기 : 8,966추

이 공장에서 1949년에 보유하였던 방기는 8,966추이며 이 설비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전부 파괴되었지만 1954년 조업이 재개되었을 때 귀속설비인 구설비는 5,824추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설비는 1938년에 TOYODA에서 제작된 설비였는데 1972년에 소멸되었다.

(2) 직기 : 50대

1949년 50대의 직기를 보유했던 이 공장은 한국전쟁으로 설비전체에 피해를 입었으나 1954년부터 다시 조업을 시작해서 1968년에는 해방 이전에 제작된 설비 80대를 보유하였다. 이 설비는 ENSHU가 1939년 제작한 설비였는데 1972년에 설비전체가 소멸되었다.

11) 삼호방직 대구공장

해방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장으로 1976년 대농 대구(서)공장으로 되었다.

(1) 방 기

1950년 한국전쟁 중에 4,800추를 신설하여 생긴 공장으로 귀속설비를 모아 1954년에는 신설비와 더불어 6,000추의 귀속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1959년에 이 중 5,600추를 폐기하고 400추의 귀속설비만을 보유하였던 이 공장은 1969년에 944추의 설비를 증설하였는데 이 설비는 HOWA에서 1940년 제작된 설비로 조선방직 부산공장의 매각설비로 추정된다. 이 설비도 1976년 금성방직의 귀속설비 5,824추를 받으면서 폐기되었으며 1976년에 증설했던 1938년에 제작되었던 TOYODA, 5,824추도 1981년에 폐기되었다.

(2) 직 기

1954년부터 직포부문의 조업을 시작한 이 공장에서는 1968년 160대의 귀속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설비는 1938년 TOYODA에서 제작한 것이었는데 1973년 폐기되었다.

12) 내외방직 대구공장

해방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장으로 1976년 대농에 합병되면서 대구(동)공장으로 되었다. 1953년 해방 이후 최초로 신규설비 10,000추를 도입하여 조업을 시작했던 이 공장은 이후 1955년에 신흥방직으로부터 설비를 인수하면서 총 5,360추의 귀속설비를 증설하였는데 이 중 1,776추는 1963년에 폐기되었으며, 남은 3,584추 중에서 일본 TOYODA에서 1939년에 제작한 1,824추는 1973년에 폐기되었고, 제작연도가 미상(未詳)인 1,760추는 1976년에 폐기되었다.

한편 직포부문에서는 구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다.

13) 일신방직 광주공장

1961년 전남방직과 반분되면서 생겨난 공장이다.

(1) 방 기

이 공장에는 분리당시 해방 이전에 제작된 설비는 10,520추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설비 중에서 1962년에 1,320추가 감소되어 9,200추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설비는 1935년 일본의 OMM에서 제작한 설비였다. 이 설비는 1973년에 3,200추, 1974년에 마지막 남았던 6,000추가 폐기되면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2) 직 기

1961년 신설비와 함께 귀속설비 237대를 가지고 조업을 시작한 이 공장은 1964년에 149대, 1969년에 40대의 설비가 감소하여 48대의 설비가 남아있었다. 이 설비는 SAKAMOTO에서 1935년 제작한 설비였는데 1972년에 소멸되었다.

14) 제국제마 인천공장

이 공장은 1953년 불하되면서 홍한방직으로 되었다가 1972년 한일방직에 인수되었다가 1995년에 방직시설을 매각하면서 영업이 중단되었다.

(1) 방기 : 4,480주

이 공장에는 해방 당시에 4,480주의 방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전체 설비에 피해를 입은 후 종전이후 1954년에 신규설비와 7,168대의 귀속설비를 보유하고 조업을 시작하였다. 1963년에 832주의 귀속설비가 증설되어 8,000주의 귀속설비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 설비는 KOTOBUKI에서 1937년에 제작된 설비였다. 또한 1973년에는 조선방직에서 방림방직으로 매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PLATT에서 1920년에 제작된 16,160주의 귀속설비를 증설하여 24,160주의 귀속설비를 보유하였다. 이 설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1981년에 모두 감소되었다.

(2) 직 기

해방 당시 직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던 이 공장은 1954년에 220대의 귀속설비를 증설하고 조업을 시작하는데 이 설비는 1937년 ENSHU가 1937년 제작한 188대와 TOYODA가 같은 해 제작한 32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설비들은 1971년에 소멸되었다.

15) 동양방적 경성공장

이 공장은 1953년 불하된 후 소멸되어 버린 공장이다. 하지만 해방 당시에는 48,320주를 보유했던 종연방적 경성공장에 이어 두번째인 45,328주의 방기와 1,440대의 직기를 보유했던 대규모 공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체설비의 피해가 극심하여 불하되면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45,328주의 방기와 1,440대의 직기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던 것이다.

16) 종연방적 춘천공장

이 공장은 해방 당시에는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나 해방 이후인 1947년 5,136주의 설비를 갖추었고 1949년에는 428주가 늘어난 5,564주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중에 전체설비가 피해를 입어 불하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되었다.

직기는 1947년에 20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설비개체관계로 완전히 철거되었다가 1949년에 다시 176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역시 한국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소멸되었다.

17) 동아방직 부산공장

한국전쟁 기간에 동양방직 인천공장의 소개설비를 이용하여 생겨난 회사로 방기만을 보유했던 공장이다. 1951년에 4,608추를 보유하고 있다가 1956년에 대한방직 대구공장으로 통합된 회사이다. 이 공장의 설비는 4,608추의 귀속설비에 1954년에 도입된 신규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18) 아주방직 마산공장

한국전쟁 기간에 금성방직 안양공장의 소개설비를 이용하여 생겨난 공장이며 1952년 5,536추의 구설비로 조업을 시작하면서 신설비와 더불어 5,536추의 귀속설비를 보유하였다. 이 공장의 설비들은 1957년에 금성방직으로 이설되었다.

19) 신흥방직 대구공장

1954년에 53,60추의 귀속설비를 가지고 조업을 시작했다가 1955년에 내외방직으로 이설되었다.

2. 전체 귀속 면방직 설비의 소멸

1) 방기 : 307,112추

면방직업계는 1959년 경부터 시작된 노후설비의 개체를 지속하였는데 이 노후설비의 개체는 60년대 중반에 주춤하다가 1968년 조선방직 부산공장의 해체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전체 설비중에서 귀속설비의 비중이 20%에 이르던 것이 1970년대 중반이 되면 약 3%대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 시기의 급격한 노후 귀속설비의 소멸이 나타나는 것은 자동공정을 갖춘 고효율의 설비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데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지만 귀속설비들이 최소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설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 전체 설비대비 약 3% 정도가 되었던 귀속설비의 비중은 1983년이 되면 1%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일제 하에서 동양방직 인천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설비 중 27,744추의 설비와 군시방직 대구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설비 중 4,224추의 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귀속설비가 이 시기가 되면 소멸된다.

이 시기 업계 전체의 설비보유 상황과 귀속설비의 변화상황은 아래의 <표 5>과 같다.

2) 직기 : 8,583대

1964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체과정을 거치면서 1961년 약 50%에 이르던 전체설비 중의 귀속설비의 비중이 약 38%정도로 낮아졌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에는 더욱 급속하게 노후 귀

〈표 5〉

귀속 방기 변동 상황(1951~1998)

(단위: 츠, %)

| | 1945년 | 1961년 | 1962년 | 1963년 | 1964년 | 1965년 | 1966년 | 1967년 | 1968년 | 1969년 | 1970년 | 1971년 | 1972년 |
|------------|---------|----------|---------|---------|---------|---------|---------|---------|---------|---------|---------|---------|-----------|
| 총설비합계 | 307,112 | 492,576 | 543,720 | 590,680 | 606,680 | 628,928 | 677,284 | 726,672 | 759,512 | 856,120 | 901,688 | 961,880 | 1,009,640 |
| 구설비합계 | 307,112 | 146,656 | 144,936 | 144,392 | 144,392 | 142,040 | 142,040 | 143,144 | 98,040 | 133,144 | 127,752 | 124,552 | 117,928 |
| 구설비증감 | | -160,456 | -1,720 | -544 | 0 | -2,352 | 0 | 1,104 | -45,104 | 35,104 | -5,392 | -3,200 | -6,624 |
| 구설비/총설비(%) | 100.0 | 29.7 | 24.4 | 24.4 | 23.8 | 22.5 | 20.9 | 19.6 | 12.9 | 15.5 | 14.1 | 12.9 | 11.6 |

| | 1973년 | 1974년 | 1975년 | 1976년 | 1977년 | 1978년 | 1979년 | 1980년 | 1981년 | 1982년 | 1983년 | 1984년 | 1985년 |
|------------|-----------|-----------|-----------|-----------|-----------|-----------|-----------|-----------|-----------|-----------|-----------|-----------|-----------|
| 총설비합계 | 1,307,092 | 1,539,972 | 1,939,672 | 2,090,668 | 2,427,960 | 2,548,268 | 3,074,892 | 3,167,124 | 3,192,212 | 3,111,396 | 3,243,040 | 3,251,342 | 3,297,692 |
| 구설비합계 | 112,904 | 104,072 | 104,072 | 73,552 | 60,192 | 60,192 | 45,392 | 45,392 | 37,968 | 35,168 | 31,968 | 31,968 | 31,968 |
| 구설비증감 | -5,024 | -8,832 | 0 | -30,520 | -13,360 | 0 | -14,800 | 0 | -7,424 | -2,800 | -3,200 | 0 | 0 |
| 구설비/총설비(%) | 8.6 | 6.7 | 3.5 | 3.5 | 2.4 | 2.3 | 1.4 | 1.4 | 1.1 | 1.1 | 0.9 | 0.9 | 0.9 |

| | 1986년 | 1987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
| 총설비합계 | 3,321,244 | 3,505,912 | 3,583,628 | 3,693,228 | 3,667,708 | 3,689,168 | 3,590,132 | 3,216,436 | 2,961,324 | 2,844,972 | 2,152,196 | 2,152,196 |
| 구설비합계 | 31,968 | 31,968 | 31,968 | 31,968 | 31,968 | 31,968 | 31,968 | 31,968 | 31,968 | 29,664 | 27,264 | 25,728 |
| 구설비증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304 | -2,400 | -1,536 |
| 구설비/총설비(%) | 0.9 | 0.9 | 0.8 | 0.8 | 0.8 | 0.8 | 0.8 | 0.9 | 1.0 | 1.0 | 1.2 | 1.1 |

자료: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 년도 ; 대한방직협회, 「면방직공업시설현황」, 각 년도 ; 한국섬유기술시험연구소, 「면방직공업생산시설실태조사 결과종합보고서」, 각 년도.

주 : (1) 대한방직협회와 개별공장의 수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한방직협회에서 향후 계속 사용하는 수치를 사용하였음.

(2) 총설비합계는 한국 면방직업계 전체의 설비수치이며, 구설비합계는 귀속설비로 분류되는 해방 이전에 생산된 설비의 수치임(단, 구설비합계에서 경성방직 보유분은 제외).

(3) 1945년의 수치는 미설치설비를 포함한 것임.

속설비를 개체하였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조선방직 부산공장의 해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5년이 되면 전체설비 중에서 귀속설비의 비중은 1%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일제 하에서 군사방적 대구공장이 보유하였던 설비 중 101대의 설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하였다. 이 설비는 1979년에 소멸됨으로써 귀속 직기는 모두 소멸되었다.

이 시기 업계전체의 설비보유 상황과 귀속설비의 변화 상황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귀속 직기 변동 상황(1949~1961)

(단위 : 대, %)

| | 1945년 | 1961년 | 1962년 | 1963년 | 1964년 | 1965년 | 1966년 | 1967년 | 1968년 | 1969년 | 1970년 | 1971년 | 1972년 |
|----------------|-------|--------|-------|-------|--------|--------|--------|--------|--------|-------|--------|--------|--------|
| 총 설비합계 | 8,583 | 9,815 | 9,690 | 9,527 | 11,300 | 11,428 | 11,102 | 11,162 | 9,473 | 9,728 | 10,083 | 11,314 | 11,317 |
| 구설비합계 | 7,614 | 4,838 | 4,708 | 4,522 | 4,336 | 4,336 | 3,549 | 3,099 | 1,442 | 1,378 | 1,101 | 821 | 693 |
| 구설비증감 | | -2,776 | -130 | -186 | -186 | 0 | -787 | -450 | -1,657 | -64 | -277 | -280 | -128 |
| 구설비/ 총설비(%) | 88.7 | 49.2 | 47.4 | 47.4 | 38.3 | 37.9 | 31.9 | 27.7 | 15.2 | 14.1 | 10.9 | 7.2 | 6.1 |

| | 1973년 | 1974년 | 1975년 | 1976년 | 1977년 | 1978년 | 1979년 |
|----------------|--------|--------|--------|--------|--------|--------|--------|
| 총설비합계 | 14,102 | 14,577 | 16,477 | 17,078 | 19,669 | 20,716 | 24,036 |
| 구설비합계 | 277 | 247 | 101 | 101 | 101 | 101 | 0 |
| 구설비증감 | -416 | -30 | -146 | 0 | 0 | 0 | -101 |
| 구설비/ 총설비(%) | 1.9 | 1.6 | 0.5 | 0.5 | 0.5 | 0.4 | 0.0 |

자료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 년도 ; 대한방직협회, 『면방직공업시설현황』, 각 년도 ; 한국섬유기술시험연구소, 『면방직공업생산시설실태조사 결과종합보고서』, 각 년도.

- 주 : (1) 대한방직협회와 개별공장의 수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한방직협회에서 향후 계속 사용하는 수치를 사용하였음.
 (2) 총설비합계는 한국 면방직업계 전체의 설비수치이며, 구설비합계는 귀속설비로 분류되는 해방 이전에 생산된 설비의 수치임(단, 구설비합계에서 경성방직 보유분은 제외).
 (3) 1945년의 수치는 미설치설비를 포함한 것임.

IV. 맷 음 말

일제시대에 형성되어 한국 정부에 귀속되었던 귀속재산 중에서 귀속면방직설비가 생산설비로서의 중요성을 상실하는 1960년대부터 그 자취가 사라지는 시기까지의 소멸과정을 검토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방 공간에서 소멸된 면방직 설비를 보면 방기가 최초로 소멸된 것은 군사방적 대구공장이 보유했던 19,928수가 소실된 것이었는데 이것 이외에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별다른 소멸은 없었다. 그러나 해방 당시 307,112수였던 귀속 방기가 1949년이 되면 274,322수에 불과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해방 당시의 약 10%에 이르는 3만여수의 방기가 해방 공간에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기가 최초로 소멸된 것은 1947년에 동양방적 경성공장의 300대가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파손되어 철거된 것이다. 이후 군사방적 대구공장과 종연방직 춘천공장에서의 변동을 제외하고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별다른 소멸은 없었다. 하지

지만 해방 당시 8,583대였는데 반해 1949년까지 설치된 귀속 직기는 7,713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해방 당시 수량의 약 10%에 이르는 870대 정도의 직기가 해방공간에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전쟁과정에서의 피해를 보면 방기는 1950년에 89,992추, 1951년에 79,794추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해방 당시 설비에 비해 약 66%에 해당하는 설비가 감소한 것이다. 직기는 1950년에 3,897대, 1951년에 1,883대만이 남게 되는데, 해방 당시 설비의 약 68%에 해당하는 설비가 감소한 것이다.

전후 복구과정에서의 설비재생을 보면 1951년에 79,794추를 보유하고 있던 방기는 1952년부터 전재설비의 복구와 재생이 시작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59년이 되면 약 10만여추가 증가한 184,240추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전후 복구과정에서 재생한 구설비는 해방 당시 설비수량의 약 34%에 해당한다. 직기는 1952년부터 시작되어 1956년까지 3,898대가 증가한 5,081대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해방 당시 설비수량의 약 45%에 해당하는 설비가 재생된 것이다.

시설개체과정에서 소멸되는 상황을 보면 먼저 방기는 1953년경부터 신설비가 도입되면서 1959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노후설비를 개체하기 시작하였지만 1960년대 후반에 조선방직 부산공장의 해체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전체 설비 중에서 귀속설비의 비중이 20%에 이르던 것이 1970년대 중반에는 약 3%, 1983년에는 1%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1998년 현재 두 회사의 2만여추를 제외하고는 모든 귀속설비가 소멸되었다. 직기의 개체는 1955년부터 신설비가 도입된 후 1960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1961년 약 50%에 이르던 전체설비 중의 귀속설비의 비중이 1964년에는 약 38% 정도로 낮아졌으며 이후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어 1975년이 되면 한 회사의 100여대의 설비만 남아 그 비중은 1%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1979년에 이 설비가 소멸됨으로써 귀속 직기는 모두 소멸되었다.

해방 당시 확인된 귀속 면방직설비는 한국의 면방직업계 전체의 보유 방기 중에서 91%에 해당하는 307,112추였고 직기는 전체 보유 직기의 89.3%에 해당하는 8,583대였다. 이 설비 중 약 10%는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소멸되었고, 약 70%의 설비가 한국전쟁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약 80%의 설비는 귀속재산으로서의 원형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복구과정에서 설비들은 각 공장의 노력으로 해방 당시의 34%의 방기와 45%의 직기를 재생해 냄으로써 식민지 유제로서의 질적인 측면을 극복하게 된다.

1950년 후반부터 시작된 시설개체과정에서 재생된 노후 귀속설비들은 1980년대 초반에 방기, 1970년대 초반에 직기가 거의 대부분이 소멸됨으로써 현재 두 공장의 방기 2만여추를 제외하면 한국경제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다.

참 고 문 헌

- 경성방직주식회사, 『경성방직 50년』, 1969.
- 권태억, 『한국근대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 대한방직협회, 『방협 창립 10주년 기념지』, 1957.
- 대한방직협회, 『방협 20년사』, 1967.
- 대한방직협회, 『방협 30년사』, 1977.
- 대한방직협회, 『방협 40년사』, 1987.
- 대한방직협회, 『방협창립십주년기념지』, 1957.
- 대한방직협회, 『섬유년보』, 각 년도.
- 동일방직주식회사, 『동일방직사사: 1955~1981』, 1982.
- 전방주식회사, 『전방 30년』, 1984.
-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년감』, 각 년도.
-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통계연보』, 각년판.
- 황명수, 「성곡과 금성방직」, 『경영사학』 제2집, 경영사학회, 1987.

미국 회계기준의 변천과정*

The Progress of American Accounting Standards

崔 松 吉*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
| II. 산업사회의 변화와 회계환경 | V. 맷 음 말 |
| III. 회계기관의 활동 | |

I. 머리말

회계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활동성과를 말해주는 언어이다. 기업활동이 국제화되면 국제적인 공통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활동이 세계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본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미국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제출과 공시가 요구된다. 이즈음 세계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을 조망함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재무활동에 유용할 것이다.

인간은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교훈에 따라 미국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관련시켜 회계기준의 생성·변천과정을 분석할 가치가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기록을 통하여 미국의 주요 경제사건을 조망한 다음 이것이 회계기준 제정과 개정에 기친 영향을 연대별로 정리하여 “was-is-ought”的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다.

Previts¹⁾ suggests that intuitive justification for the study of history exists

* 본 연구는 199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파견교수 연구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

** 한성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1) E. N. Coffman, R. H. Tondkar, G. J. Previts, 「Historical Perspectives of Selected Financial Accountins Topics, Accounting History : Definition and Relevance」, Irwin Inc, 1993, pp. 341~343

by relating what “was”(the historical state) to what “is”(the positive state) to what ought to be(the normative state).

The importance of studying and understanding issues and concepts from such a was-is-ought perspective addresses concerns about narrowness and supports the view of history as a “cultural product” acquired within the full context of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temporal environments. Accounting history inform us about how we have reached a particular present-day convention. It also encourages the thoughtful scholar to consider the interdisciplinary view of accounting and its environmental context.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도 1997년 10월 IMF상황을 당한 이후 그 제정권이 public sector에서 private sector로 이전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본주의 회계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보다나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설정시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투명하고 유용한 회계정보가 제공됨으로써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정된 자원을 운용하고 있는 개인, 기업,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수한 회계기준이 우수한 사회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회계기준은 재무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정부회계기준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기업 재무회계기준의 변천과정에 관한 것을 다룬다.

II. 산업사회의 변화와 회계환경

19세기 미국에 있어서의 상공업의 급속한 성장은 회계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당시의 회계는 관리목적을 위해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었으나 그 후 주주, 투자가, 여신자, 정부 등의 요구에 따라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나타나게 되었다.

1. 산업혁명기

1850년대에 중기기관이 발명되었으나 191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국에 산재하고 있던 공장은 석탄과 수력에 의한 동력으로부터 내연기관이나 전기에 의한 동력으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기계화된 중장비에 의해 상품생산이 놀랄 만큼 성장되었다. 예로서 미국의 연간 철강 생산량은 1867년의 약 20,000톤에서 1914년에는 2,400만 톤, 1929년에 이르러서는 약 5,600만

톤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하였다²⁾.

이와 같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에서 나타난 공업기술의 경이적인 발전에 따른 대량생산체제는 회계사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19세기 이전까지의 상업중심 산업에서는 고정자산이 중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으나 대량생산방식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원가회계, 감가상각, 재고자산 등에 대한 회계영역의 발전 계기가 되었다.

2. 철도산업의 성장

1826년 New York Central Railroad, 1846년 Pennsylvania Railroad, 1861년 California에서 The Central Pacific 등이 설립되면서 미국에서는 이른바 철도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철도산업은 제조기업에 비하여 장기적인 설비투자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철도산업으로 인하여 자본과 이익의 구별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초기에 있어서의 미국의 철도회사 설립자들은 막대한 배당을 자본으로부터 지급 받았고, 또 배당금은 철도 산업의 진실한 이익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따라서 철도회사의 주가는 한때 크게 상승 일로에 있었으나 후에 거대한 배당금이 철도산업의 장래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와 같은 배당금 지급이 계속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자 철도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과 이익을 구별하여 자본은 투자액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배당금은 이익으로부터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고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철도회사에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이것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³⁾.

3. 조세제도

회사소득에 대한 과세의 발전된 형태로서는 1909년의 회사 소비세법(corporate excise tax law)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 무렵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회계의 주요한 목적은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었으며, 기업 내에서 회계문제는 거의 도외시되었다. 따라서 소득세 규칙이 회계의 일반적 절차를 설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목적을 위한 소득산정과 재무회계 목적을 위한 이익의 측정간에는 많은 상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E.S. Hendriksen에 의하면 세법이 회계학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⁴⁾.

2)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1994, pp. 49~55.

3) 이정호, 전계서 pp. 56~57.

4) E.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Irwin, Inc 3rd ed., 1977, pp. 48~49.

첫째로, 1909년의 소비세법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적절한 충당금을 공제한 후 결정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조항은 1913년의 세입법(Revenue Act)과 그 이후의 모든 법률제정에도 영향을 미쳐 감가상각비를 계상케 하는데 공헌하였고, 또한 감가상각의 본질과 그 기간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고취시켰다.

둘째로, 1918년의 세법에서는 소득산정상 필요하다면 재고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의 방법에 관한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셋째로, 초기의 규칙에서는 재고자산 평가에 저가주의를 인정함으로써 이 절차가 일반적으로 채용되게 되었고, 저가주의 적부에 관해서 토론하게 되었다.

4. 주식회사와 증권시장의 발전

주식회사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서 회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특이할만한 것은 계속기업개념의 출현, 기업실체이론의 대두, 연결재무제표와 합병문제 등으로 근대적 재무보고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증권시장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저축의 증대이다. 자본에 대한 기업측의 수요가 현저하게 증대되어 증권시장은 매매중개 뿐만 아니라 발행시장에서부터 유통시장까지 현저한 발전을 하였고 또 정비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회사의 유가증권이나 정부채권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792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1866년에 이르기까지는 상장회사로부터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1929년의 경제공황 이후로부터 재무제표의 공표를 통하여 재무정보의 적절한 공개와 관련된 회계사고가 발전하였다.

5.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이른 바 전쟁경기를 누리게 되었다. 전쟁 중 미국은 다른 나라에 신용공여를 증대시켰으며 무역수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각종 산업의 발흥, 산업기술의 진보,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에 힘입어 1929년 말 대공황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미국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1920년대의 번영은 특히 새로운 산업,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 건설업과 같은 고가의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어서 관련산업인 철강, 고무, 유리, 석유제품의 수요증대를 유발시켰고 고속도로 건설 붐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호황은 증권시장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즉 대전 중에 일반대중에 발행한 자 유옹호국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전후에는 일반대중이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을 목표로 하여

주식투자에 흥미를 갖게 하였다. 이를 바 일반대중에게 주식분산에 의한 증권민주주의를 이루게 되었다.

증권민주주의는 기업의 공개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법적제도로서 구체화 된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나타난 1933년의 증권법과 1934년의 증권 거래법이다. 이로서 부터 미국 회계기준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법률제정 이전까지 경기호황을 누리고 있던 1920년대의 미국 회계는 무법의 회계시대 상황이었다.

Littleton과 Zimmerman은 1920년대의 미국회계를 자유회계(freedom accounting)의 시대로 부르고 있다. 여기서 자유회계란 말이 상징하고 있듯이 당시 회계는 아무런 규제나 제약을 받지 않고 회계실무를 하는 무법의 시대(unregulated era)였다⁵⁾. 당시의 고정자산 재평가와 무액면주식제도를 통하여 그 때의 자유방임적 회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정자산 재평가

자산평가에 관한 실무는 어떤 일관된 방법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의 현행 시장가격으로, 때에 따라서는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여 재무보고를 하였던 것이다. 1920년대 후반에는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회계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 하나는 감가상각비를 확대 계상함으로써 공표이익을 축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재평가 잉여금도 배당 가능하다고 보는 당시의 주식회사법을 배경으로 하여 투자를 매혹시키는 잉여금을 창출해 낼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않든가 아니면 상각을 한다하더라도 불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무액면 주식제도

1920년대에 와서는 무액면 주식제도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이 때에 무액면주식발행가격 중 얼마를 잉여금계정과 자본금 계정에 분할하여 기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였다. 환언하면 이사회는 무액면주식제도를 악용하여 자본금과 잉여금의 금액을 자유로이 변경 공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무액면제도를 통해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회계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무액면주식의 발행액 중 약간의 금액만을 자본금 계정에 편입시키는 한편, 잉여금 계정을 팽창시켜, 이 증대된 잉여금 계정을 가지고 주식 및 현금 배당, 영업권의 상각, 결손의 보전 등의 문제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이다.

5) A. C. Littleton, V. K. Zimmerman, Accounting Theory : continuity and change, Prentice-Hall Inc., 1962, p. 94.

따라서 무액면주식제도는 당시에 기업의 자본금 계정과 잉여금 계정의 경계를 자극해 변화 가능하고 탄력적인 것으로 하였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협의보고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20년대 미국의 자유회계(freedom accounting) 하에서 대기업은 공표상의 이익 및 잉여금을 축소계상 함으로써 배당억제 등을 합리화하였고, 중소기업은 주식의 유지, 조작 등을 목적으로 공표상의 이익 및 잉여금을 확대 계상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6. 경제공황

1920년대의 경제호황은 증권시장 과열, 부동산 투기, 물가상승으로 연결되어 갔으나 1929년 10월 24일 주가가 폭락하는 이른 바 “암흑의 목요일”을 만나며 주가 뿐만 아니라 경기, 임금 폭락으로 이어지며 실업자가 폭증하는 경제공황을 겪게 되었다.

1930년대 말까지 6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헤매고 있었으며, 이 숫자는 1933년대 와서는 전국노동자 5,160만 명 중 4분의 1에 달하는 1,280만 명의 실업자를 내었다⁶⁾.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회각층에서 다수 나타났을 뿐 아니라, 미국경제를 이끌어 온 지도이념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가 도전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

7.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1932년 Roosevelt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증권거래 행정의 기본 방향을 미연방회의 상원은행 통화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다. 즉,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주식을 증권시장으로부터 배제하려는 시도였다.

심의결과 연방정부가 주식의 상장적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피하고, 주식에 대한 투자상의 판단은 투자자 각자에게 일임하였다. 정부로서는 상장회사가 대중 투자자들에게 정보의 공개, 특히 회계내용을 공표(disclosure)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증권법을 1933년에 연방법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증권발행 시에 그것이 어떤 증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자신이 할 수 있도록, 공개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1960), p. 70.

8.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과 SEC

증권법이 통과 제정된 후 얼마 되지않아 미국의회는 증권이 발행된 후에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와 아울러 증권관계 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이 1934년의 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이다.

1933년의 증권법이 증권 발행시의 공개제도를 규정한 것이라면, 1934년의 증권거래법은 증권발행 등록 이후의 유통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정보공개를 규정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행정은 종래의 연방통상위원회(FTC)로부터 증권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상과 같은 미국회계기준(원칙)의 생성배경을 주요 산업사회환경과 관련시켜 연대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요약 할 수 있겠다.

III. 회계기판의 활동

미국에서도 193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회계절차의 전전성을 판단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에 관한 권위있는 보고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무제표의 정당성을 판단할 아무런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감사인도 재무제표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보고의 무법현상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1929년 후반부터 시작한 경제공황을 경험하면서 미국에서는 기업을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하던 종래의 기업관에 대한 반성이 나타났다. 특히 주식회사는 하나의 사회적제도로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른 바 주식 민주주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공개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1934년 SEC가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SEC는 상장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양식과 이의 작성(회계)절차를 결정하고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SEC가 독자적인 회계기준을 작성·공표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SEC는 ASR(Accounting Series Release) 제4호(1938)를 통하여 SEC에 제출되는 재무제표는 실질적으로 권위있는 지지를 받는 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을 규정하였다.

즉 SEC는 회계기준 제정권을 AICPA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AICPA는 실질적으로 권

〈표 1〉 미국 산업사회의 주요변천과 회계환경

| 년 대 | 산업 사회 환경 | 회 계 환 경 |
|---------|---|--|
| 1800 이전 | 가내수공업 | 기업주의 관리목적, 채권자보호 |
| 1850~ | 산업혁명 대량생산체제 자본집약적 산업 철도산업발달 | 이해관계자 집단의 확산: 투자자, 채권자, 정부, 소비자 등 원가회계, 감가상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배당금 |
| 1909 | 소비세법(Excise Act) | 기간손익 산정 |
| 1913 | 세입법(Revenue Act) |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문제 대두 |
| 1914~ | 1차대전, 전쟁경기호황 주식회사제도 증권민주주의 자동차, 철강산업의 발전 | 기업실체, 계속기업이론 대두 재무제표의 중요성인식 확산 자유(무법)회계시대 고정자산평가, 무액면주식 발행제도 악용 |
| 1929 | 경제공황 주가폭락 실업폭증 임금폭락 | 투자자보호 인식 확산, 자유방임 경제체제의 문제제기 |
| 1933 | 증권법 | 투자자보호법, 주식의 상장발행시 회계정보 공개 의 의무화 |
| 1934~현재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위원회(SEC) | 상장후에도 정기적 회계정보의 지속적인 공표 의무화 증권시장의 관리, GAAP 인식 확산 |

자료 : 필자작성

위 있는 지지를 받는 회계기준의 수립이란 임무를 부여받아 ARB(Accounting Research Bulletin)와 APB(Accounting Principles Board) 의견을 냈다. 오늘날에 와서는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SFAS(Stat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회계기준의 수립제정에 관한 활동을 회계기관별로 조사하기로 한다.

1. AIA(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와 NYSE(New York Stock Exchange)

증권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제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는 1933년도부터 회계내용의 공개문제, 재무제표 작성의 통일성 및 감사문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과정에서 회계전문직을 대표한 기관으로서 공인회계사들의 전국적 조직인 AIA의 전문적 의견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AIA의 주요활동은 뉴욕주식거래소(NYSE)와의 협력 관계에서 두드러졌다.

다음은 AIA가 1932년 NYSE에 권고한 주요내용이다⁷⁾.

- 1)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의 현재가치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점을 일반대중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것.
- 2) 대차대조표의 역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자산평가에 관한 기준을 명시할 것.
- 3) 기업의 가치는 이익력에 좌우되며 따라서 이익측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
- 4) 소수의 포괄적인 회계원칙⁸⁾을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그 원칙의 범위 내에서는 어떤 회계방법을 선택 적용한다 하더라도 제한하지 말 것.

AIA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회계 5원칙을 NYSE에 권고하였다⁹⁾.

- 1) 미실현 이익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익계정에 대기하여서는 안 된다. 이익은 특정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때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실현주의 원칙).
- 2) 회사가 생생 또는 준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잉여금은 당년도 또는 장래연도의 손익계정에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자본잉여금에 관한 원칙).
- 3) 종속회사가 합병 전에 창출한 이익잉여금은 모회사 및 종속회사의 연결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을 선언한 어떠한 부분도 모회사의 이익계정에 적당히 대기할 수 없다(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의 이익잉여금 표시에 관한 원칙).
- 4)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이익계정에 대기되어서는 안 된다(자기주식에 관한 원칙).
- 5) 임원, 종업원 또는 종속회사에 대한 수취계정 또는 받을어음은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명료성의 원칙).

이상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5원칙은 1920년대 말까지 무질서했던 자유회계 실무시대를 개선한다는 역사적 선언이었다. 한편 이 회계원칙은 회계연구공보(Accounting Research Bulletin)에 수록되므로서, 성문화된 미국회계원칙의 효시로서 그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AIA, Audits of Corporate Accountants, pp. 12~13.

8)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과 회계기준(Accounting standard)이란 용어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남상오『회계이론』, 다산출판사, 1998, p. 267].

9) 이정호, 전개서 p. 109.

2.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는 누진소득세가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나 은행은 기업이 보고하는 이익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FTC는 AAPA(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Accountants)에게 표준적인 회계절차에 관한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는 바 이것은 1917년 FRB(Federal Reserve Bulletin)에서 Uniform Accounting이란 이름으로 공간되었다. 이것은 다시 1918년 Approved Methods for Presentation of Balance Sheet Statements라는 표제로 재간행되었다. 1929년 다시 Ver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란 이름으로, 1936년에는 다시 AIA에 의해 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by Independant Public Accountants란 이름으로 공간되었다.

3. AICPA

AICPA는 1887년 AAPA(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Accountants)란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1917년 AIA(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로 개칭되었다가 1957년 AICPA(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란 명칭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AAPA는 채권자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자산 및 부채는 환금성이 높은 것부터 표시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1894년에 채택하였다. 1910년에 와서는 회계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용어의 정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2) AIA는 1938년부터 1959년까지 20년 동안 ARB(Accounting Research Bulletins)를 51호까지 발간하였다. 이중 8통은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의 개요와 검토란 제목으로 단독 공간되었다. 나머지 31통은 ARB No. 43으로 통합 편집되었으며, 나머지 3통은 삭제되었다. ARB는 회계에 관한 개별적인 문제점을 AIA의 입장에서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 수시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내용에 있어서 상호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 체계적이며 이상적인 것이 되지 못했다.

3) APB(Accounting Principles Board)는 1959년에 발족되어 1973년까지 활동하였다. AIA는 AICPA로 개칭 재편되면서 앞서 AIA의 ARB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APB를 발족시킨 것이다. 즉 연역적인 방법에 의하여 기본적인 공준의 설정, 광범한 회계원칙의 설정 등 재무회계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연구 발표된 것이 ARS(Accounting Research Study)이다. 1961년 M. Moonitz가 주도한 ARS No. 1인 "The Basic Postulate of Accounting"과 1962년 R. T. Sprouse와 Moonitz의 ARS No. 3 "A Tentative Set of Board Accounting Princip-

les for Business Enterprises”이란 명칭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ARS No. 1과 No. 3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실무와는 너무나 격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P. Grady에게 위임하였다. 이것이 1965년 ARS No. 7 “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¹⁰⁾ for Business Enterprises”이다. 그러나 ARS No. 7 역시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회계기준을 귀납적으로 도출해 나열하고만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회계원칙이 되지 못하였다.

ARS No. 1, 3, 7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APB Statement No. 4인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이었으나, 의도한 바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APB는 1973년까지 4가지 APB Statements와 31가지 APB Opinion, 101가지의 APB Interpretations¹¹⁾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APB도 개별문제에 관한 회계처리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이 전반적 체계를 가지는 기본적 회계원칙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당시 APB의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²⁾.

첫째는 SEC와 APB의 관계이다. 본래 회계기준의 제정임무는 미 의회로부터 SEC가 부여 받았으나, SEC는 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APB의 의견을 대부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었다. 그러나 APB 의견서 제2호 “투자세액 공제(Investment Tax Credit)”를 둘러싸고 APB는 SEC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둘째, 1960년대 후반 세배분(tax allocation), 콩그로머레이트 기업의 출현에 따르는 기업 결합, 지분풀링의 문제 등 중요한 회계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게 되었다. APB 위원은 비전임인데다가 자립적 위원회로서 staff 보조의 결여, 불충분한 조사연구시설 등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셋째, AP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의 강제력 문제이다. APB는 AICPA의 내부기관이며 사적 회원조직에 불과하다. 따라서 APB에서 마련된 기준은 피감사기업에 대해서 강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다. 여기서 AICPA로부터 조직상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규정된 회계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와 같은 비능률적인 APB 활동에 대한 비난 때문에 Wheat Study Committee에 의해 회계원칙을 제정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결과 1972년 독립된 기관인 FAF(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을 창설하고 이곳에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를 설치하여 종래의 APB 업무를 계승 수행하기로

10) P. R. Delaney 외 3, GAAP 98, Willy Inc. 1998, pp. 1~5.

11) 서태식, 한미회계원칙 비교해설, 1997, p. 15.

12) 이정호, 전계서, pp. 140~141.

하였다.

4. FASB

FASB는 7명의 유급 상근 멤버로 구성¹³⁾되어 있다. FASB의 주요한 임무는 FAF로부터 이양된 권한에 입각해 재무회계 및 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한다. 한편 AICPA의 ARB과 ARS에 대한 해설서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을 단순히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무회계 및 보고기준의 설정 및 개량과 관련하여 적시에 완전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FASB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단계에 따라 회계기준을 마련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협의 사항이 될 수 있는 문제 선정 → Task Force 지명 → 공청회 개최¹⁴⁾
→ 공개초안(exposure draft) 작성 → 공표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발표된 SFAS(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는 1998년 까지 Statement No. 135로 이어지고 있다¹⁵⁾.

FASB는 SFAS 외에도 SFAC(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¹⁶⁾)를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재무회계기준 및 재무보고기준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기초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에 관한 FASB의 연구결과를 공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FASB가 재무회계 및 보고기준을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목적이나 개념을 확립할 목적으로 발표된 것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¹⁷⁾.

No. 1 1978,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Business Enterprises

No. 2 1980,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No. 5 1980,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n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No. 6 1985,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a replacement of SFAC No. 3, 1980

13) 이호열, 박태승, 한미회계기준해설, 동성출판사 1992, p. 13.

14) Kieso, Intermediate Acc. 7th ed., Willy & Sons Inc. 1992,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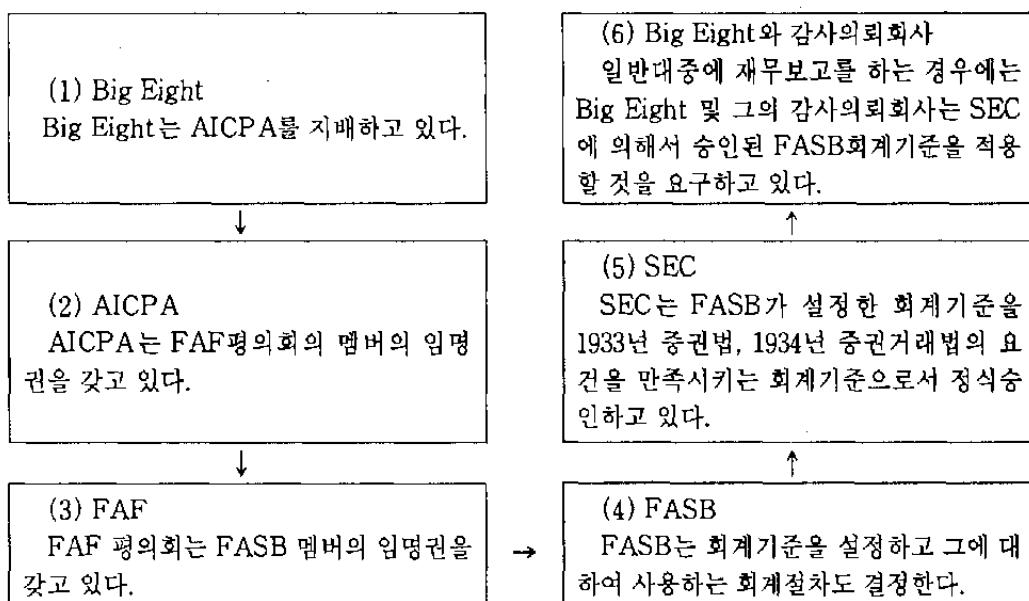
15) FASB, Statement Summaries, <http://www.rutgers.edu/Accounting/raw/fasb/st/stpg.html>

16) GAAP 98, pp. 21~27.

17) 이정호, 전개서, pp. 150~152.

FASB 체제 비판

FASB는 APB의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될까? 즉 SEC나 정치권 또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1975년에는 Big Eight 회계법인으로부터 1977년에는 미의회 Metcalf 의원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자료 :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1994, p. 153.

〈그림〉 Big Eight 회계사무소 및 AICPA에 의한 회계기준의 지배도

Metcalf 보고서는 회계실무가 기업활동의 실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Big Eight과 AICPA는 미국회계계와 회계기준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 FASB는 그 기구에 완전히 지배되어 당초에 기대했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Big Eight은 AICPA를 지배하고, AICPA는 FAF, FAF는 다시 FASB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결국에는 민간에 의한 독립불편의 회계 기준 설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AAA

1916년 AAUIA(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Instructors in Accounting)란 이름으로 출발하여 1935년 오늘의 명칭 AAA(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으로 바뀌었다.

AAA는 1936년 “A Tentative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 Affecting Corporate Reports”을 발표하여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기초원리를 제안하였다. 이 시안에서는 원가와 가치, 이익의 측정, 자본금과 잉여금의 3부로 구성되었다. 이어 1941년에는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이란 이름으로 원가, 수익, 이익, 자본의 4부로 구성된 개정판을 냈다. 1948년에는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란 개정판을 공간하였다. 여기에서는 원칙(principles)이란 용어에 대한 기준(standards)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원칙이란 용어가 절대불변의 자연법칙처럼 일반인들의 오해가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여기의 구성내용은 자산, 이익, 부채, 주주지분 및 재무제표의 5부로 나누어져 설명되어 있다.

AAA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1966년에 그 유명한 ASOBAT(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¹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회계를 정보 system으로 이해하고, 회계에서 정보가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 갖추지 않으면 안될 속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즉 회계정보는 목적적합성(relevance),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불편성(freedom from bias) 및 양적표현가능성(quantifiability)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비영리조직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회계이론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관리회계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회계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ASOBAT의 커다란 업적이라 하겠다.

회계기관별로 회계원칙 및 기준의 제정활동을 시대별 간행물과 관련시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회계기관별 주요간행물

| 년 대 | 기 관 명 | 간 행 물 명 |
|---------------------------------|---------------------------------|--|
| 1917 1918 1929 1934~현재 | Public sector FTC SEC | Uniform Accounting Approved Method for Presentation of balance sheet statement Ver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 ASR |
| 1916 1936 1937 | Private Sector AAA | A Tentative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Monograph No. 1. Principles of Public-Utility Depreciation No. 3.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

18) 이정호, 전개서 p. 129.

| | | |
|---------------|-------|--|
| 1941 | |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
| 1948 | |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
| 1966 | | ASOBAT |
| 1969 ~ 현 재 | AICPA | SAR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
| 1887 | CAP | ARB |
| 1938 | APB | APB Statements, APB opinions |
| 1959 | FAF | SFAS No. 1~No. 135 as of Dec., 1998, Interpretations |
| 1972 ~ 현 재 | FASB | SFAC |
| 1972 ~ 현 재 | | Technical Bulletins |
| | | ARB |

자료 : 필자작성

IV.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1. 발아기 : 1800~1900

1887년 AICPA의 전신인 AAPA가 창설되었다. 이 무렵 미국의 산업은 성장과 변화의 증기의 시대였다¹⁹⁾.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종전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Steam-Powerd Machinery에 의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대체되어가고 있었다. Westward Movement도 서서히 시작되었다.

이와같이 산업발전은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영국으로부터 조달되었다. 따라서 absentee 투자자들을 위하여 England와 Scotland의 회계사들이 투자 현장인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미국 회계사들과 합세하여 초기의 미국 회계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생성기 : 1900~1930

산업혁명과 제1차 세계 대전의 전쟁 경기호황으로 자동차산업, 고속도로건설, 철강산업 등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진 시대이다. 따라서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원가회계,

19) Coffman, Tondcar, Previts, Selected Financial Accounting Topics, Irwin 1993, p. 3.

감가상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그리고 기업실체, 계속기업등의 회계개념이 제기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제도의 발달로 증권민주주의가 이루어짐으로서 회계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되었다. FTC는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1917년부터 “Uniform Accounting”, “Ver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업회계 실무에서는 주식회사법의 무액면 주식발행제도, 고정자산 평가의 남용 등으로 이른 바 자유(무법)회계시대라 불리워 진다.

1929년 경제대공황은 주가폭락, 실업 폭증 및 임금폭락을 몰고 왔다. 호경기를 구가해 오던 미국사회에서 올바른 회계정보가 공개되어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재무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증권법, 증권거래법이 제정되고 SEC가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3. 격동기 : 1930~1972

1933년에 제정된 증권법은 투자자 보호법으로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때 당해 기업의 재무상태, 수익전망 등에 관한 회계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1934년의 증권거래법은 상장된 이후의 재무정보도 정기적인 공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에대한 관리업무를 위해 SEC를 설치하였다.

SEC는 회계기준 제정권을 1938년부터 1958년까지는 AICPA의 CPA에 위임하여 ARB를 발표하였으나 1959년부터 1971년까지는 AICPA의 APB에 위임하여 APB Statements와 APB opinions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Investment Tax Credit 등의 문제는 SEC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간 1930년대에는 최악의 회계방법들은 모두 사라졌으나, 2차 대전 이후에는 선택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방법이 과다하게 나타나게 되었다²⁰⁾.

당시 CAP에서도 한가지의 회계방법만으로 충분한 경우에도 절충안은 몇가지 회계방법을 승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절차를 증가시켰다²¹⁾.

4. 성숙기 : 1972~2000

1972년 Wheat Study Committee의 Establishing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에 의해 FAF를 창설하고 FASB를 설치하였다. FASB에서는 SEC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20) 이정호 역, 『회계사상사』, 경문사, 1993, pp. 417~418.

21) 상계서, p. 421.

SFAS와 SFAC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94~98, 12. 31) 발표된 SFAS No. 118~No. 135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²²⁾.

No. 135

Rescission of FASB Statement No. 75 and Technical Correction(Issue date 2/99)

No. 134

Accounting for Mortgage-Badecd Securities retained after the securities of Mortgage Loans held for state by a Mortgage Banking enterprise.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65(10/98)

No. 133

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6/98)

No. 132

Employer' Disclosures about Pension and Other Postretirement Benetits-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s
No. 87, 88 and 106(2/98)

No. 131

Disclosures about Segments of an Enterprise and Related Information(6/97)

No. 130

Reporting Comprehensive Income(6/97)

No. 129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Capital Structure(2/97)

No. 128

Earning per share(2/97)

No. 127

Defferal of the Effective Date of Certain Provision of FASB Statement No. 125- an amendment to FASB Statement No. 125(12/96)

22) FASB, Statement Summaries, <http://www.rutgers.edu/Accounting/raw/fasb/st/stpg.html>

No. 126

Exemption from Certain Required Disclosures about Financial Instruments for Certain Non-Public Entities—an amendment to FASB Statement No. 107(12/96)

No. 125

Accounting for Transfers and Servicing of Financial Assets and Extinguishments of Liabilities(6/96)

No. 124

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s Held by Not-for Profit Organizations(11/95)

No. 123

Accounting for Stock-Based Compensation(10/95)

No. 122

Accounting for Mortgage Servicing Right—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65(5/95)

No. 121

Accounting for the Impairment of Long-Lived Assets and for Long-Lived Assets to Be Disposed of(3/95)

No. 120

Accounting and Reporting by Mutual Life Insurance Enterprises and by Insurance Enterprises for Certain Long-Duration

Participating Contracts—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s 60, 97 and 113 and Interpretation No. 40(1/95)

No. 119

Disclosure about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 and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10/94)

No. 118

Accounting by Creditors for Impairment of a Loan—Income Recognition and Disclosures—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14(10/94)

5. 안정기 : 2000~

바야흐로 21세기는 digital 시대에 걸맞는 회계개념 시대로 변천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을 주요 산업환경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3> 미국회계기준의 발전단계

| 시대구분 | 연 대 | 회 계 환 경 | 산 업 환 경 |
|------|-----------|---|----------------------------|
| 발아기 | 1800~1900 | AICPA AAA | 산업혁명 |
| 생성기 | 1900~1930 | FTC, SEC | 1차대전, 경기호황 |
| 격동기 | 1930~1972 | AICPA의 APB AAA의 ASOBAT | 경제공황 |
| 성숙기 | 1972~2000 | FAF의 FASB - 현재 SFAC, SFAS, Interpretations IASC | 정보혁명 |
| 안정기 | 2000~ | FAF의 FASB IASC | Digital 시대 사회관련회계정보요구증대 |

자료 : 필자작성

V. 맷 음 말

미국 회계기준은 산업혁명 이후 기업의 대량생산체제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경기 호황 그리고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한 SEC의 성립 이후부터 각종 회계기준이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SEC는 1934년 AIA(AICPA)에 요청하여 제정한 실현주의 원칙, 자본잉여금에 관한 원칙, 이익잉여금의 표시에 관한 원칙, 자기주식에 관한 원칙 및 명료성의 원칙을 공표하였다. 이것은 미국 최초의 성문화 회계기준이라 하겠다.

그 후 AAA의 Monograph No. 3의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1949년부터 APB Statements, 1966년 AAA의 ASOBAT 그리고 1978년도부터 FASB의 SFAC 등으로 재무회계의 개념에 관한 원칙을 귀납법 또는 연역법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FASB는 1972년부터 1998년 말까지 SFAS No. 135까지 각종 재무회계기준 보고서를 발

표하였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통하여 미국 회계기준의 중심은 초기의 기업주에서 채권자, 투자자, 소비자 등으로 이동되었음이 발견된다. 산업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미국재무회계기준의 발전은 오늘날과 같은 세계중심의 미국경제를 이룩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는 점도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회계 개념, 회계기준이 생성, 제정공표, 논쟁 개정되어 왔지만 산업계 회계사 정부 등 모든 회계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고 신뢰할 만한 회계개념과 회계기준은 도출되지 않았다. 앞으로 산업환경변화에 따라 더욱 우수한 GAAP의 구축을 위해 재무제표별, 산업별, 재무회계개념, 회계감사기준 등으로 세분하여 was-is-ought to be 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의 경제, 회계 환경은 우리 나라 현재의 IMF(1997) 상황인 부실기업, 불경기, 실업문제 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 제정권은 public sector에서 private sector로 넘어가고 있다. 더욱 우수한 각종 회계기준이 개발되어 기업활동의 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측정공표 될 수 있게 함으로서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회계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정호 역, 『회계사상사』, 경문사, 1993.
2. 서태식, 『한·미 회계원칙 비교해설』, 삼일회계법인, 1997.
3. 남상오, 『회계이론』, 다산출판사, 1998.
4.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1994.
5. 이호열·박태승, 『한·미 회계기준 비교해설』, 동성출판사, 1992.
6. 고승희,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7집, 한국경영사학회, 1998.
7. 최경수·황윤식, 『회계이론』, 박영사, 1993.
8. Coffman, Tondkar, Pervits, 『Historical Perspectives of Selected Financial Accounting topics』, Irwin Inc. (Boston, MA), 1993.
9. E.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3rd ed., R. D. Irwin Inc., 1977.
10. Gary John Previts and Barbara Dubis Merino, 『A History of Accounting in America: An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Accounting』, Wiley & Sons, 1979.

11. J. L. Heck, R. P. Derstine, J. J. Huefner, 「Accounting Literature Index」, McGraw-Hill Co. (New York, N. Y.), 1990.
12. Kieso, S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7th ed., J. Wiley & Sons, Inc., 1992.
13. P. R. Delaney 외 3, 「GAAP 98」, J. Wiley & Sons, Inc., 1998.
14. S. A. Zeff, "Chronology of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of Accounting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1926~1972",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72.
15. Seidler, Carmichael, 「Accountants' Handbook」, Ronald Press (New York, N. Y.), 1981.
16. A. C. Littleton, V. K. Zimmerman, Accounting Theory : Continuity and Change, Prentice Hall Inc, 1962
17. Richard P. Brief,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at the Turn of the Century」, Journal of Accountancy, May 1987, pp. 142~157.
18. Robert T. Sprouse, 「Develop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Accounting Horizons, December 1988, pp. 121~127.
19. G. J. Previts, L. D. Parker, E. M. Coffman, 「Accounting History : Definition and Relevance」, Abacus, March 1990, pp. 1~16.
20. G. J. Previts, L. D. Parker, E. M. Coffman, 「An Accounting Historiography : Subject Matter and methodology」, Abacus, September 1990, pp. 136~158.
21. FASB, Original Pronouncements : Accounting Standards, Vol. I, II.

The Progress of American Accounting Standards

Choi, Song-Kil*

Abstract

This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accounting standards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the published literatures by the "was-is-ought to be" methodology.

The most influenced historical facts in social and economic affairs in America were industrial revolution, world war I of 1914, the panic of 1924, Security Act of 1933, and the establishment of SEC according Security Exchange Act of 1934 etc.

The significant publications of the principle and standard-setting bodies in public sectors are "Uniform Accounting in 1917", "Ver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n 1929 of FTC, and SEC's ASR from 1934 to now on. Some of them in private sectors are "A Tentative Statements of Accounting Principles" in 1916, ASOBAT in 1966 etc. of AAA, ARB, APB options of AICPA, SFAS of FASB.

I have founded that the present American Accounting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as one of cultural products. They have been acquired within the full context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during past century.

Like this change will be go on.

* Professor of Hansung University

| |
|---|
| Key-Words : Standard setting body, Significant publications |
|---|

한·미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의 역사적 고찰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Life Insuranc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U.S. and Korea

金 億 慶*

目 次

- | | |
|--------------------------------|-------------------------------|
| I. 서 론 | IV. 한국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의 역사적 고찰 |
| II. 보험정보공시제도의 필요성 | V. 한·미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의 비교 |
| III. 미국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의 역사적 고찰 | VI. 결 론 |

I. 서 론

컨슈머리즘(consumerism)이란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저항이며, 그러한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컨슈머리즘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관계에서 판매자에게 더 큰 힘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구매자들에 의한 불만의 표시이며,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컨슈머리즘이 싹튼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컨슈머리즘은 비단 그 주체를 구매자에게 한정하지 않고 일반소비 대중으로 확대시켜 보고 있다. 또한 컨슈머리즘운동은 반드시 조직적일 필요는 없고 비조직적이라 하여도 그것이 소비 대중의 일반적 불만의 구체적 표시이면 모두 컨슈머리즘에 해당한다고 본다¹⁾.

컨슈머리즘의 근원은 소비자 불만에 있으며 컨슈머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소비자 불만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규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의 기본원리로서 1962년 3월 15일에 미국의 John F. Kennedy 대통령이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²⁾’에서 밝힌 소비자의 4가지 기본권리, 즉 안전의 권리(right to safety), 정보의 권리

* 단국대학교 경제통상부역학부 부교수

1) 최병룡(1992), 『최신 소비자 행동론』, (서울, 박영사), p. 621.

2) Lee E. Preston(1968), *Social Issues in Marketing*, (Glenview, Illinois, U.S. : Forestman and Company), pp. 282~295.

(right to be informed), 선택의 권리(right to choose), 의사존중을 받을 권리(right to be heard)는 그 후 세계각국의 컨슈머리즘운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의 보험산업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보험업계의 노력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 보다도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하여 정부가 보험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는 정부의 투자재원 조달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보험산업이 점차 빠른 속도로 개방화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자생력을 길러주며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 보험소비자들의 컨슈머리즘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컨슈머리즘운동이 보험산업의 경우 미국에 있어서는 1970년을 전후하여 생명보험업계에 그 영향이 중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반소비자의 잠재적인 불만을 대변하여 지식층에 의해 운동이 주도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생명보험소비자 운동은 여러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그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첫째는 모집인제도에 대한 비판으로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매우 높고 모집인의 교체가 심하여 신입 모집인의 교육훈련비를 높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 보험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자의 부(wealth)를 잠식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계약정보에 관한 비판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보험에 관한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험약관은 글자가 작고 전문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해하기 곤란하다. 셋째는 상호회사에 대한 비판으로서 상호회사는 계약자가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자가 거의 참여하지 않는 사원(계약자)총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소비자운동은 일반적인 소비자운동이 활발치 못한 것처럼 아직까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운동을 주도할 뚜렷한 보험소비자보호 운동단체 또는 전담 기구가 없다. 그러나 생명보험 가입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생명보험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은 계속 제고되어 오고 있다. 그 예로서 1976년부터 3년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명보험 수요자의 성향을 알기 위한 전국조사, 각사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에 설치된 보험소비자 상담실, 전국주부교실 및 중·고교사 대상의 보험교육,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보험의 홍보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 소비자 보호의 과제로서는 모집제도의 개선, 계약조건의 명확화, 보험료 인하, 정확한 정보의 제공, 해약환급금 인상, 자산운용의 효율화, 계약자배당 개선, 인플레이션 대책, 보험상품의 다양화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3) 신수식(1995), 「보험경영론」, (서울, 무역경영사), p. 265.

지금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보험소비자 보호운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소비자 보호운동의 근원은 소비자 불만에 있으며 소비자 불만을 일으키는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정보의 부정확 및 정보결여로 인한 소비자무지(consumer ignorance)이다 보험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해소할 수 있고 상품선택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정보공시제도가 선진 각국에서 채택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91년 상반기부터 보험회사 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었다.

본고는 보험소비자 보호운동의 근간을 이룬 생명보험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운동에 대응하여 채택된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에 대하여 논의한다. 먼저 제2장(Ⅱ)에서는 보험정보 공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술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Ⅲ)과 제4장(Ⅳ)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정보공시제도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Ⅴ)에서 미국과 한국의 생명보험정보공시제도를 비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정보공시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제6장(Ⅵ)에서 결론을 맺을 것이다.

II. 보험정보공시제도의 필요성

보험정보공시제도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보험시장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생명보험시장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를 설명하기로 한다. 미국 생명보험시장에 대한 많은 비판자들은 불완전한 가격경쟁의 증거로서 동일 상품간 다양한 가격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불완전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보험회사들이 비슷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다른 회사와 상당히 다른 가격으로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많은 학자들은 생명보험시장에서 관찰되는 가격 다양성의 존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합리적 구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생명보험 마아케팅조사협회(LIMRA)가 행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61%는 생명보험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⁴⁾.

보험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부족은 보험산업에 과도한 이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비능률적인 보험기업의 존재를 허용할 수 있다. 보험산업이 과도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는 증거는 별로 없지만 비능률적인 기업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있다⁵⁾. 따라서 관찰된 가격 다양성

4) *Life Insurance Consumers : National Survey of Cost Comparison Attitudes and Experience*, (Hartford, Connecticut, U.S. :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1985)

5) Prichett(1977)는 미국의 30개 대규모 생명보험회사의 운영경비가 서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의 적어도 일부는 불충분한 정보 때문이며, 정보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험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합리적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고, 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을 제고하여 비능률적 기업을 도태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험정보공시제도는 유익하며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상품의 가격인 보험료율은 실제적으로 자유화가 많이 진척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달리 비슷한 보험증권에 대한 가격다양성이 크게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보험소비자들이 상품가격 비교 때문에 어려움을 크게 겪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보공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보험가격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지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쉬우며, 앞으로 생명보험 가격의 자유화가 진척되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비슷한 보험상품에 대한 다양한 가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보험정보공시제도를 통하여 보험소비자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생명보험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족과 보험증권의 난해성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모집인들의 가입권유에 의한 연고모집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관련기관들로 하여금 보험상품 구매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들의 상품선택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보험정보공시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III. 미국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의 역사적 고찰

1. 미국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의 역사적 전개

1976년 생명보험모집표준규정(Life Insurance Solicitation Model Regulation)이 제정되기 전까지 미국의 생명보험산업에 있어서 생명보험정보공시에 관한 논의와 규정은 주로 생명보험상품의 원가공표(cost disclosure)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종신생명보험의 본질이 원가공표문제 전개의 주요인이었다. 종신보험은 종종 저축과 보장의 단순한 결합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여러 기간에 걸친 현금의 흐름은 종신보험의 원가비교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 보험료는 배당금과 해약환급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상품 가격의 좋은 측정치가 되지 못한다.

보험료를 원가의 측정치로 사용할 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다. 보험상품 원가산정방법으로 처음 제시된 전통적 순원가법(traditional net cost method)은 단

순히 보험료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몇 가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⁶⁾. 1970년대까지 원가공표와 관련된 논의의 많은 부분이 전통적 순원가법의 결함을 지적하고, 그러한 결함을 극복하는 다른 방법을 권고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전통적 순원가법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Belth가 1966년 생보상품 가격과 원가비교 방법에 대한 연구서⁷⁾를 발표할 때까지는 생보업계, 정부, 소비자보호 운동가 중 어느 쪽도 원가 측정과 원가공표를 개선시키려는 본격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다. 생보업계는 1969년에 생명보험원가에 대한 합동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공식적으로 생보원가공표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1970년의 보고서에서 동위원회는 이상적 원가비교방법이 충족해야 할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완전히 만족스러운 방법은 없지만 이자감안법(interest-adjusted method)이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州)의 보험감독당국들은 Wisconsin주의 보험감독관 DuRose가 이자감안법의 사용을 요구하고, 전통적 순원가법의 사용을 금하는 원가공표규정을 Wisconsin주에 도입할 것을 제의한 1971년에 공식적으로 원가공표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DuRose는 보험감독관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 NAIC)로 하여금 1971년 12월의 회합에서 생보가격공표를 위한 표준규정(model regulation)을 개발하도록 촉구하였다. 1973년 1월 1일 Wisconsin주는 1971년 보험감독관 DuRose에 의하여 제안된 법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원가비교지수의 사용을 요구하는 첫 주가 되었다. Wisconsin주의 규정의 중요성은 처음으로 도입된 원가공표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 외에 그 법규정의 많은 조항들이 후에 NAIC 표준규정의 초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상원 법사위원회가 소비자들이 생보상품의 원가를 비교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1973년 2월에 원가공표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청회에서 소비자 대표 Ralph Nader, Joseph Belth, Herbert Dennenberg 등은 생보시장에 있어서 원가비교에 관한 정보의 결여와 소비자를 위한 정보의 혼란에 대하여 생보업계를 비난하였다.

1973년 6월의 NAIC 회의에서 보험감독관들은 원가공표와 관련된 첫 표준규정을 채용

6) 몇 가지 결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함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time value of money)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상품간의 가격(원가)을 비교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자주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 순원가법과 이자감안법(해약원가지수법 및 순자급원가지수법 포함)을 들 수 있는데, 전통적 순원가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몇 가지 결함 때문에 1970년부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이자감안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각 원가비교법의 장단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김익현(1989), 「생명보험의 구매와 생보상품의 원가비교에 관한 고찰」(생명보험협회刊, 『生協』, pp. 7~18)을 참조하기 바람.

7) Belth, J. M.(1996), *The Retail Price Structure in American Life Insurance*, (Bloomington, Indiana, U.S : Indiana University Press).

였다. “Life Insurance Interest-Adjusted Cost Comparison Index Model Regulation”이라고 명명된 이 법규는 개인종신생명보험을 판매할 때는 어떤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이자감안지수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74년 말까지 1973년의 NAIC 표준규정에 기초를 둔 법규들이 미국의 여러 주에서 채택되었다⁸⁾. 1976년 6월의 회합에서 NAIC는 1973년의 잠정적 규정을 생명보험모집표준규정(Life Insurance Solicitation Model Regulation)으로 대체하였다.

1976년에 NAIC가 채택한 생명보험모집표준규정(이하에서는 “1976년 표준규정”이라 부름)은 생보상품구매자들이 필요한 보험의 유형과 금액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비슷한 상품 간의 가격(원가)비교를 촉진하며, 생보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생보상품 구매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76년 표준규정의 첫 중요 조항은 표준규정이 생명보험의 모집활동에만 적용되며 연금보험, 신용생명보험, 단체생명보험, 변액생명보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두번째 중요 조항은 원가지수(cost index)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첫번째 지수는 해약원가지수(surrender cost index)이며 두번째 지수는 순지급원가지수(net payment cost index)이다. 1976년도 표준규정은 또한 청약시 보험자가 보험가입안내서(buyer's guide)⁹⁾와 보험증권요람(policy summary)¹⁰⁾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76년 표준규정 이후에도 생명보험 정보공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78년 봄과 여름 동안에 하원 무역위원회의 감사·조사 소위원회는 생보상품의 판매와 원가공표와 관련하여 주(州)보험국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소위원회의 보고서는 Moss보고서라고도 불리는데, 생보시장과 표준규정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Moss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i) 보험판매시 원가지수를 더 일찍 제공할 것, (ii) 보험가입안내서에 원가비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 (iii) 초기의 실효가 가져오는 높은 비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는 1976년에 원가공표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FTC의 보고서(Life Insurance Cost Disclosure, 1979)는 보통생

8) 여러 주란 Arkansas, California, New York, Oregon, Texas 등의 주를 말한다.

9) 보험가입안내서는 세 가지의 중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문은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보험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둘째 부문은 생명보험의 세 가지 기본유형인 정기생명보험, 종신생명보험, 양로보험에 대해 설명한다. 셋째 부문은 청약자들에게 여러 가지 원가지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원가지수의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한다.

10) 보험증권요람에는 생보사의 이름과 주소, 보험증권의 이름, 보험료, 해약환급금, 액면금액, 배당금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되게 되어있다.

명보험(ordinary life insurance)¹¹⁾의 구매시 소비자들이 겪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규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보통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낮은 수익률과 계약 초기의 실효와 관련된 높은 비용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생보상품의 가격 다양성이 생보산업의 유효한 가격경쟁 결여를 말해준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셋째, NAIC는 1979년 11월 생보원가공표에 관한 특별조사단(task force)을 구성하였다. 이 조사단은 1976년도 표준규정을 크게 수정하는 새로운 표준규정을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개선된 보험가입안내서와 보험증권요람이 청약서에 서명하기전에 보험청약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보험가입안내서는 더욱 이해하기 쉽게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해약원가지수와 순지급원가지수를 단일의 원가지수로 대체시켜야 한다. 넷째, 판매 후에도 정기적인 원가공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Moss보고서, FTC보고서, NAIC의 조사단에 의해 제시된 여러 제안들은 업계의 심한 반발과 맹렬한 로비활동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1990년 7월에는 NAIC의 Model Regulation Service에 의하여 생명보험공시표준규정(Life Insurance Disclosure Model Regulation)이 공표되었는데, 이 표준규정은 유니버설생명보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1976년 표준규정과 큰 차이가 없다. 유니버설생명보험의 정보공시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1989년 유니버설생명보험 표준규정(Universal Life Insurance Model Regulation)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음에 논의될 생명보험광고에 관한 규정(Rules Covering Advertisement of Life Insurance)도 1990년 생명보험공시표준규정에 포함되어 미국 생명보험정보공시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2. 미국 생보정보공시제도의 내용

미국 생명보험정보공시제도의 내용은 1990년 생명보험정보공시표준규정(이하 “1990년 표준규정”이라 함)의 제정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변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1990년 표준규정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990년 표준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보험자의 공시의무 등과 보험자가 공시하여야 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가입안내서, 보험증권요람, 보험증권통계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1) 1990년 표준규정의 목적

1990년 표준규정의 목적은 생명보험 구매자가 자신의 필요에 가장 잘 부응하는 생명보험

11) 보통생명보험이란 종신토록 사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보험료도 평생에 걸쳐 지급하는 종신생명보험의 일종이다. 종신생명보험에는 그 밖에 한정불생명보험과 유니버설생명보험이 있다.

유형을 선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구매된 혹은 구매할 보험증권의 기본적 특성에 대한 구매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비슷한 유형의 생명보험상품의 상대적 가격(원가)을 평가하는 구매자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험자가 생명보험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다.

2) 1990년 표준규정의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州)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보험의 모집이나 생보계약체결과 관련된 모든 협상에 적용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연금(Annuities), 신용생명보험, 단체생명보험, 변액보험.

3) 보험자의 의무

(1)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보험자는 청약자로부터 첫 보험료를 받기 전에 보험가입 안내서와 보험증권 요람을 모든 보험청약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증권이 최소한 「10일간의 무조건 반환규정」(unconditional refund provision)을 포함하고 있으면, 보험가입 안내서와 보험증권 요람이 증권전달 전은 물론이고 증권전달과 동시에 제공될 수도 있다. 유니버설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표준규정의 부록 D에 포함되어 있는 「청약자를 위한 보험계약정보진술서」(Statement of Policy Information for Applicant)가 청약시 혹은 청약 후 15일 이내, 또는 적어도 증권전달 5일 전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직접반응판매법(direct response marketing)¹²⁾에 의한 모집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청약자를 위한 보험계약정보진술서」를 청약자가 청약을 용낙하기 이전에 청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최소한 10일 간의 무조건 상환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정보진술서는 증권전달과 동시에 전달될 수 있다. 어느 시기든지 청약자가 보험가입 안내서, 보험증권 요람, 보험증권 통계(policy data)를 요구하면 보험자는 요구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통계는 바로 전년도부터 시작하여 20년 기간의 것이 제공되어야 하며, 유니버설생명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부록D의 예시를 따라야 한다.

(2) 판매 후 보험증권에 적용되는 규정

보험계약자가 요구하면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대한 보험증권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험증권 통계는 바로 전년도부터 시작하여 연속 20년 동안의 것이 제공되어야 한다. 보험증권 통계는 배당금 규모예시(current dividend scale)에 따른 현금배당액, 계약자대부금, 계약자대부이자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직접반응판매란 소비자들에게 우편, 전화, 신문, TV, 라디오, 각종 인쇄물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중간상이 개입되지 않은 판매방법이다.

4) 보험가입 안내서

보험가입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생명보험의 합리적 구매절차, 필요로 하는 보험금액의 결정, 생명보험상품의 결정, 보험증권의 원가비교, 보험가입 안내서는 NAIC에 의해 작성되며 어떤 당사자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자구를 수정할 수 없다. NAIC는 각 주(州)의 보험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보험관련법규를 개정하는 것을 돕는다. 아래에서는 보험가입 안내서의 중요 부문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1) 생명보험의 구매

생명보험을 구매할 때는 니드(needs)에 적합하고 비용이 낮은 보험계약을 원할 것이다. 그러한 계약을 찾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를 것이 권장되고 있다. 첫째, 보험청약자의 필요보험금액, 필요부보기간,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해 조사한다. 둘째, 보험청약자의 니드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증권들이 있는지를 알아내어 가장 적합한 하나의 증권을 선정한다. 셋째, 선정된 보험증권의 보험금액에 대해 보험회사가 얼마의 보험료를 요구하는지를 알아낸다. 보험가입 안내서에 서술된 원가비교지수를 이용하면 생명보험 상품들 간 가격차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2) 보험금액의 결정

필요로 하는 보험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주(家主)가 지금 사망하면 부양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산과 부양가족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금액을 규명하여야 한다. 새로 구입될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은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될 것이다¹³⁾.

(3) 구매할 보험유형

여러 가지 보험종류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지는 보험계약자의 니드와 경제적 능력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¹⁴⁾. 보험가입 안내서는 기본적 유형인 정기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과 종신생명보험(whole life insurance) 및 기본적 유형을 변형한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4) 저렴한 보험증권의 선택

어떤 종류의 생명보험의 가장 적합한 지 결정한 후 어느 보험계약(보험상품)이 가장 값이

13) 생명보험 구매시 필요로 하는 보험금액을 결정하는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Black, K. Jr. and Skipper, H. (1994). *Life Insura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U.S. : Prentice Hall, Inc., 12th ed.), pp. 350~373)을 참조하기 바람.

14) 생명보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억현(1993), 「생명보험 구매시 상품, 보험회사, 모집인의 선정」(충북경제연구소간, 『충북경제연구』, 제4권 제2호, pp. 23~50)을 참조하기 바람.

저렴한 지를 찾아내기 위하여 여러 보험회사들로부터 판매되는 보험증권들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보험료의 단순한 비교만으로 충분치 않으면 다른 요소들도 비교하여야 한다. 저렴한 보험증권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원가비교지수(cost comparison indexes)를 사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원가지수는 비슷한 증권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원가비교시 발견되는 지수상의 조그만 차이는 무시하여야 한다. 조그만 차이는 원가 이외의 보험계약의 다른 특징에 의해 쉽게 상쇄되기 때문이다.

5) 보험증권요람

보험증권요람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증권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보험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 기본약관과 각 특약
- 증권발행 후 보험료 및 보험급부금 패턴을 분명하게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첫 5년 간과 첫 5년 후 일정년도마다 그리고 원가비교지수를 제공하는 년도들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 : 기본 약관과 각 특약에 대한 연간 보험료, 자살이나 제외조항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 각 연도말의 해약환급금, 연도말에 지급되는 현금배당액
- 계약자대부 연간이자율
- 10년과 20년 동안의 원가비교지수, 단 어떤 경우에도 보험료 지불완료 년도 이후에 대한 지수는 나타낼 필요 없음.
- 보험증권 요람이 준비된 날짜

6) 보험증권 통계

보험증권 통계는 각 보험년도(policy year)와 일련의 지정된 보험년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숫자로 나타낸 표이다 : 연간 배당금, 연간 이외의 정기적 배당금, 최종 배당금, 보험료, 사망급부금, 해약환급금, 만기급부금.

7) 표준규정의 불이행

보험자가 보험가입 안내서, 보험증권 요람, 보험증권 통계를 표준규정에 따라 제공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의 권리, 조건, 조항 등에 대한 부실고지(misrepresentation)를 형성케 된다.

8) 보험광고에 관한 규제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1990년에 제정된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보험상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사실대로 공시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단어, 문구, 참고, 예시표 등의 사

용을 금하도록 하고 있다. 광고관련 서류는 검사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험 감독관(insurance commissioner)은 허위광고 발견시 벌금을 부과하고, 허위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한국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의 역사적 고찰

1. 한국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의 도입 과정

한국의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는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과 「보험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가장 잘 나타나 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보험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보자료의 종류별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후 4차에 걸쳐 규정이 개정·완되었는데, 1차 개정된 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차 개정에서는 '용어정의'에서 일반공시와 개별공시를 구분하였고, 2차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차 개정 때는 특별공시를 신설하여 추가하였으며, 3차개정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차 개정의 중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 PC통신 등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공시의 관리근거를 마련하였고, 보험계약 재확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험안내 자료에 보험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4차 개정규정은 1998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4차 개정 때는 일반공시를 정기공시라 개칭하고 특별공시는 수시공시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그 세부내용도 수정하였다. 일반공시에 포함되었던 「경영정보」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협회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개별공시자료에 대출안내장이 추가되었으며,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없애고 대신 「보험감독규정」과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보험정보공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 정보공시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공시사항은 정기공시, 개별공시, 수시공시로 나누어지는데 정기공시는 불특정의 보험계약자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 보험가입 안내서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개별공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보험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 자료와 기존계약자에게 보험계약 관리내용을

알려주는 보험계약 관리내용 및 요약경영실적 등을 공시하는 것이다. 수시공시는 보험사 자금불능사태 등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사고 발생, 경영개선 감독명령, 부실채권 발생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공시와 관련된 자료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가 제공하는데 보험안내서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 기준은 생명보험협회가 제공하며 상품일람표와 개별공시 자료들은 보험회사가 제공하고, 보험분쟁 처리결과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한다. 발간된 정보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는 반드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정보자료 내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를 입은데 대하여는 그 정보자료를 제공한 기관이 책임을 진다.

이하에서는 한국 생명보험정보공시제도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번째 부문은 처음으로 제정되어 1991년부터 시행된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과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두번째 부문은 그 후에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명보험정보공시제도의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보험공시제도가 1991년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오늘날까지 제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역사적으로 개관할 수 있을 것이다.

2. 1991년 시행 생명보험정보공시제도의 내용

1) 일반공시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다음의 정보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 안내서, 상품일람표, 경영실적, 보험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반공시를 명한 사항. 이러한 정보자료는 다음의 장소에 공시하여야 하며 열람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 보험감독원, 생명보험협회와 그 지방상담소, 보험회사의 본사 및 각 관리점포, 일반공시자료는 년 1회 발간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공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¹⁵⁾. 공시기관은 일반공시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이라 부름) 제10조에 따르면 보험가입 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보험의 원리와 특성 및 생활설계 등에 관한 사항

15) 일반공시자료 중 경영실적은 사업년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보험상품과 타 금융상품과의 차이점에 관한 사항
- ③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 ④ 보험계약 청약시 유의사항
- ⑤ 계약자 대출¹⁶⁾ 등 보험가입자에 대한 혜택에 관한 사항
- ⑥ 보험상담 안내에 관한 사항
- ⑦ 보험감독원의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⑧ 기타 보험가입 안내에 필요한 사항

상품일람표에는 상품명, 상품의 특징, 상품내용, 가입안내, 보험료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가입안내에는 보험종류,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기간, 가입한도,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실적은 경영방침, 회사조직, 회사연혁, 사업실적, 기타¹⁷⁾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실적은 결산실적 현황, 총자산 및 운용자산¹⁸⁾, 계약상황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결산실적 현황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내역,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총자산 및 운용자산에는 최근 5년 간의 총자산 증가추이와 연도별 현재의 운용자산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 상황에는 보험종목별 보유계약고와 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개별공시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요약 보험가입안내서, 상품종합안내장, 모집문서도화, 보험계약자 본인의 보험계약 관리내용, 경영실적, 기타 보험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요약 보험가입안내서, 상품종합 안내장, 모집문서도화는 보험계약 청약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보험계약 관리내용은 각 보험년도 말 이후 3개월 이내에, 경영실적은 각 사업년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보험계약 관리내용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에 의하면 요약 보험가입 안내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6) 계약자대출(policy loan)이란 해약환급금(cash value)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을 말한다. 계약자대출은 보험계약의 효력상실방지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자금용통 등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증권 담보대출, 약관대출, 소비자대출 등으로도 불리운다.
- 17) 기타란에는 보험회사의 해외사업활동과 사회공공복지활동 등이 포함된다.
- 18)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운용자산이란 회사의 자산 중에서 수익을 획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산을 말하며 현금 및 예금, 주식, 사채, 공채, 대출금,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 ①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 ② 보험계약 청약시 유의사항
- ③ 계약자대출 등 보험가입자에 대한 혜택에 관한 사항
- ④ 보험상담 안내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보험가입 안내에 필요한 사항

상품종합 안내장에는 판매 중인 상품의 명칭, 상품의 특징, 주요 보장내용,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자가 상품을 비교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모집문서도화에는 가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해약 환급금 예시,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안내, 보험보증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내, 보험상담 요령 및 보험분쟁조정¹⁹⁾ 안내, 자유기재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세제혜택, 청약철회청구제도 등이 기재된다.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본인의 보험계약 관리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
- ②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③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향후 계약이 유지될 경우 최소 6개월 단위의 해약환급금액 예시표 포함)
- ④ 계약자 배당금에 관한 사항
- ⑤ 계약자 기대출에 관한 사항(대출이율 포함)

개별공시 중에서 계약 후 공시에 속하는 경영실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신계약, 보유계약,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에 관한 사항
- ②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 ③ 보험계약준비금 및 배당에 관한 사항
- ④ 회사조직 및 점포에 관한 사항

3) 보험감독원에 의한 공시

보험감독원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분쟁처리

19) 금융감독원이 출범하기 이전에는 보험감독원이 보험분쟁을 조정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보험 감독원을 흡수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분쟁을 조정하고 있고, 1999년부터는 한국소비자 보호원도 보험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 등을 공시기관에 제공하여 공시케 할 수 있다. 다만, 보험분쟁 당사자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2항에 의하면 보험감독원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① 보험업법 등 민영보험관련 법률의 개폐에 관한 사항
- ② 회사설립의 허가
- ③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 ④ 해산, 합병
- ⑤ 계약의 이전
- ⑥ 기타 보험감독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현(現)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의 내용

1) 정기공시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제10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다음의 정보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 보험안내서, 상품일람표,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반공시를 명한 사항. 이러한 정보자료는 다음의 장소에 공시하여야 하며 열람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칭함),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와 그 지방상담소, 보험회사의 본사 및 각 관리점포, 보험안내서는 협회가 매년 9월 30일까지 발간하여 감독원과 보험회사에 이를 제공하고, 상품일람표는 보험회사가 매년 같은 기한내에 발간하여 감독원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보호단체(소비자보호법 제4장에 의한 단체를 말함) 및 공공기관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정기공시자료는 연 1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일람표의 경우 신상품의 개발 및 기초서류²⁰⁾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품일람표의 수정이 필요한 때 변경부분에 대한 개정판을 발간할 수 있다. 정기공시자료의 비치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협회가 공시자료 제작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회는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한 주요 보험관계 법령 또는 보험약관의 개정사항이나 새로운 보험제도의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20) 보험사업은 재경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데, 그 면허취득을 위하여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기초서류이다. 기초서류에는 정관,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재산이용방법서 등이 포함된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재경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0조에 따라 보험가입 안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1991년에 시행된 규정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상품일람표에는 상품명, 상품의 특징, 상품내용, 가입안내, 보험료 예사, 해약환급금 예시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가입안내에는 보험종류,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기간, 가입한도,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개별공시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4조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안내 자료, 보험계약 관리내용, 요약 경영실적, 대출 안내장,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험안내 자료는 본사제작 보험안내 자료와 점포, 대리점, 모집인 등 본사 이외 제작 보험안내 자료로 구분된다.

본사 이외 제작 보험안내 자료는 본사의 소비자보호 관련부서에서 이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도록 한다.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6조 2항에 의하면 본사제작 보험안내 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보험안내 자료의 제작일자 및 제작부서
- ②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청약철회청구제도²¹⁾ 안내
- ③ 보험상담 요령 및 감독원의 보험분쟁조정 안내
- ④ 해약환급금 예시 및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 ⑤ 청약서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분 미전달시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 ⑥ 보험상품별 보험금 지급사유(보장내용)를 제한하는 사항
- ⑦ 보험안내 자료 사용자의 명칭, 전화번호, 소속 점포명

보험계약 관리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및 성별
- ② 보험회사의 명칭 및 본점 또는 점포의 주소와 전화번호
- ③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④ 계약자 배당금에 관한 사항
- ⑤ 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액 및 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요약경영 실적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1) 보험청약철회제도란 보험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청약철회 청구기간은 보험 종목에 따라 1주 또는 2주로 정하고 있다.

② 신계약과 보유계약의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에 관한 사항(단,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²²⁾에 한함)

③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④ 보험계약 준비금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단, 손해보험은 제외)

보험계약 관리내용과 요약경영 실적은 사업년도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관리내용과 요약경영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시공시

수시공시는 보험경영의 전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언론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료로서 자세한 내용은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에 나타나 있다.

수시공시 자료는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보험회사에서는 그 사유를 인지 또는 발견 즉시 공시항목 등을 언론에 서면으로 배포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분쟁처리 결과 등을 공시기관에 제공하여 공시케 할 수 있다. 다만, 보험분쟁 당사자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험계약 확인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5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험계약 확인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청약서 자필서명 및 고지의무²³⁾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보험약관, 청약서부본 및 회사발행 영수증 수령에 관한 사항

③ 보험업법 제156조 및 보험감독규정 등에 의한 모집종사자의 보험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④ 처리전담 부서명 및 전화번호 등

"보험계약 확인사항"을 제공하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중 개인연금 및 장기손

22) 우리 나라의 장기손해보험에는 장기화재보험, 장기상해보험, 장기종합보험의 세 가지가 있으며, FY'96을 기준으로 할 때 장기상해보험이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의 58.8%, 장기종합보험이 24.0%, 장기화재보험이 0.6%를 차지하고 있다.

해보험으로 한다. 다만,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6) 공시자료의 기재 및 금지사항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보험회사의 중요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 ② 보험계약자의 중요한 권리에 관한 사항
- ③ 타 보험회사와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사항
- ④ 타 감독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시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하는 사항
- ② 법령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
- ③ 보험계약자 등 정보자료 취득자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
- ④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향후의 예정사실에 근거하여 타 보험회사보다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 ⑤ 기타 감독원장이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공시자료를 영업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V. 한·미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의 비교

한국과 미국의 생명보험공시제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찾을 수는 없으나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두 국가의 공시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생명보험공시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생명보공시제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공시와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공시로 나누어 정보자료를 공시하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청약자

23)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는 보험계약 성립시 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내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공시로만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정기공시 자료에는 보험안내서, 상품일람표 등이 포함되는데 미국의 경우 보험안내서에 해당하는 Buyer's Guide는 NAIC의 표준규정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보험회사나 모집인에게 요구하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상품일람표나 경영정보도 회사의 발간물이나 보험전문잡지를 통하여 공표되며, 관심있는 개인이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그 회사의 상품이나 경영정보에 대해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1976년 NAIC가 미국의 생명보험공시제도를 규정하는 표준규정을 제정할 때 정기공시를 특별히 구분하여 채택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보협회에서 제작하여 각 공시기관(생보협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등)에서 공시하게 되는 상품일람표는 각 보험사의 자율에 맡길 수도 있으나 현재와 같이 정기공시에 포함시켜 공시를 강제화 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보험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권리강화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둘째, 우리나라의 보험안내서는 미국의 Buyer's Guide에 해당하고 상품일람표는 미국의 Policy Summary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구매대상 보험의 가격을 타 보험사의 비슷한 보험의 가격과 비교하기 위하여 원가지수를 사용하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규정에는 해약원가지수와 순지급원가지수의 두 가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규정의 Section 4의 정의(Definitions) 부문에서는 이 두 원가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타나 있고, 보험증권요람(Policy Summary)에는 구매대상 보험증권의 해약원가지수와 순지급원가지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안내서(Buyer's Guide)는 이 두 원가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시제도에는 원가지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보험가격이 아직도 완전히 자유화되지 못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 가격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가비교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생보가격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의 가격분포가 커지게 될 것이며, 원가지수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하여 원가지수를 생보공시제도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산업의 국제화로 인하여 유니버설생명보험과 변액보험은 1998년 초에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은 1976년에 유니버설생명보험은 1979년에 도입되었는데, 현재 변액보험의 존재는 미미하나 유니버설생명보험의 시장점유율은 급속히 신장되어 1985년도에는 시장전체 신계약 보험료의 38%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의 유니버설생명보험의 공시제도는 Universal Life Insurance Model Regulation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니버설생명보험에 대한 정보공시제도를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보험을 계약한 보험증권 소유자에 대한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우리나라

의 정보공시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자 본인의 보험계약 관리내용은 미국의 Policy Data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증권 소유자에게 개별공시 자료로 제공되는 요약경영 실적은 미국의 생명보험공시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각 보험사의 경영실적은 여러 보험전문지에 게재되기 때문에 법규정으로 공시를 강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VI. 결 론

196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소비자 보호운동이 1970년대에는 생보업계로 그 영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생보산업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소비자 보호운동이 미미한 편이기는 하나 생보산업이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어가고 보험소비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산업의 소비자보호운동은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도 보험산업의 지원, 육성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1991년부터 시행되게 된 것은 우리나라 보험소비자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생보정보공시제도를 비교하고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정보공시제도가 개선되어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의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를 논의하였는데, 특히 미국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의 역사에 대해 비교적 많이 논의하였다. 이는 NAIC가 1976년 보험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할 때까지 학계, 업계, 의회, 주정부, 연방정부가 각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보공시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각계 각층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듭함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할 때 각계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었는지 반성해 보고, 도입 후 어떻게 이 제도를 검토 및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는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제도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가 문제이다 정보공시제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조차 생보상품 구매자들이 보험가입 안내서와 보험증권 요람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조사보고가 있다.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 생명보험 정보공시제도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산업을 위해 잘 운용되도록 보험감독당국, 생보업계, 소비자들이 협력하고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억현(1989), 「생명보험의 구매와 생보상품의 원가비교에 관한 고찰」, (생명보험협회 刊, 『生協』), pp. 7~18).
- 김억현(1993), 「생명보험 구매시 상품, 보험회사, 모집인의 선정」, (충북경제연구소 刊, 『충북경제연구』, 제4권 제2호, pp. 23~50).
- 김종국(1998), 『생명보험총론』, (서울, 형설출판사).
- 보험감독원(1996), 『소비자보호 감독기구 및 보험분쟁처리제도』.
- 생명보험협회(1997), 『생명보험 상품편람』.
- _____ (1998), 『98 생명보험 성향조사』.
- 송태희·최선경(1992), 『생명보험상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신수식(1995), 『보험경영론』, (서울, 무역경영사).
- 최병룡(1992), 『최신 소비자행동론』, (서울, 박영사).
- Belth, J. M.(1996), *The Retail Price Structure in American Life Insurance*, (Bloomington, Indiana, U.S. : Indiana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9), "Price Competition in Life Insura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33, pp. 365~379.
- _____ (1968. 12), "The Rate of Return on the Savings Element in Cash-Value Life Insura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35, pp. 569~581.
- _____ (1972), "Price Disclosure in Life Insurance." *Wisconsin Law Review*, pp. 1054~1069.
- Black, K. Jr. and Skipper, H.(1994), *Life Insura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U.S. : Prentice Hall, Inc., 12th ed, pp. 350~373.
- Dorfman, M. S.(1972), "Workable Product Competition in the Life Insurance Market",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39, pp. 613~625.
- Formisano, Roger A.(1979. 8),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NAIC Life Insurance Solicitation Regulation in New Jersey*, Wisconsin Working Paper.
- _____ .(1981. 3), "The NAIC Model Life Insurance Solicitation Regulation : Measuring the Consumer Inpaction New Jersey",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48, pp. 59~790

- Life Insurance Consumers : National Survey of Cost Comparison Attitudes and Experience,*
Hartford, Connecticut, U.S. :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1985.
- Life Insurance Cost Disclosure, Staff Report to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9. 7.
- Preston, Lee E.(1968), *Social Issues in Marketing*, Glenview, Illinois, U.S. : Forestman and Company, pp. 282~295.
- Pritchett, S. Travis and Wilder, Ronald P.(1977. 9), "Company Characteristics and Policyowner Cost Structures for Cash Value Life Insura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44, pp. 355~372.
- A Shopper's Guide to Life Insurance*, Booklet Prepared by the Pennsylvania Insurance Department, Harrisburg, Pennsylvania, 1972.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Life Insuranc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U.S. and Korea

Kim, Uk-Hun*

Abstract

Through providing adequate information, the insuranc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makes insurance buyers purchase appropriate insurance products and increases price competition in insurance markets which drives out inefficient insurance companies from the markets. Before "Life Insurance Solicitation Model Regulation"(hereafter referred to as "1976 model regulation") was enacted in 1976, in the U.S. life insurance industry life insuranc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ad been discussed only in relation to cost disclosure of life insurance products.

In addition to cost disclosure problem "1976 model regulation" deals with other problems related to rational purchase decision and asks insurance companies to provide adequate materials to insurance applicants including buyers's guide, policy summary, and policy data. "1976 model regulation" was revised in 1990, but major contents didn't change. In "1990 Life Insurance Disclosure Model Regulation" regulation relating to universal 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advertisement was added to "1976 model regulation".

In Korea, life insuranc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as first made in 1991. The system had three categories of life insurance disclosure : general disclosure, individual disclosure, and disclosure by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General disclosure requires companies to provide general insurance policyholder insurance company's management-related information, products-relat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related information. Individual disclosure asks insurance companies to provide individual policyholders information about his or her existing insurance

* Associate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Ph. D.

contracts. Disclosure by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refers to information disclosure about solution results pertaining to insurance disputes.

The system first introduced in 1991 was revised three times. In the first revision made in 1992, general disclosure and individual disclosure were differentiated in "terminology section". In the second revision made in 1995, special disclosure was added. Special disclosure is related to information about insurance companies' bankruptcy. In the third revision made in 1997, disclosure related to Internet and PC was dealt with and insurance contract confirmation system was introduced.

Key Words : life insuranc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ost disclosure, consumer ignorance

조직사회화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과 기업 하부문화의 역할

A Study on the Role of Organizational Subculture
and Leadership in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Culture
through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김우택* · 김인호**

目 次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시사점 |
| III. 연구방법 |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문화는 인성, 학습 등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민족, 국가 등 많은 개념들과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맺고 있으며, 어느 곳에서나 문화의 중요성은 이미 입증되어 왔다. 특히 경영계에서 최근 이 문화의 개념은 그 중요성이 급증하여 모든 경영은 앞으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이어야 효과성을 놓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강조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것은 한 민족의 생존력과 문화의 관계를 살펴볼 때 민족의 특유한 문화를 형성했던 문화민족은 생존력이 강하였던 반면, 민족 스스로의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던 민족은 멸망하거나 다른 문화민족에게 동화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들도 강하고 생명력 있는 문화를 구축한 기업만이 계속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이미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 기업문화는 하나의 유행이 아닌 반드시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될 가치체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 경원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 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오늘날 의사소통의 혁명을 꾀한 정보화의 추세, 시장의 세계화 추세,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무생활의 질, 그리고 인간적 경영강조 등 인간화 요인들의 인식 속에서 이같은 기업문화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변신의 노력과 실천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미국의 기업문화연구 열풍 이후로 한국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마치 자동차 경주라도 하듯 기업문화 구축에 열정을 보였으나 그 열풍은 어느덧 하나의 경영혁신기법이거나 유행이었던 것처럼 점차 그 열기는 식은 듯 보이고 다시금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위주의 경영에 더 많은 관심을 높이는 현실이 된 것 같다.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그 기업이 나름대로의 변신을 꾀하려 힘은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 그리고 생존을 넘어 더욱 발전된 모습을 이루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한 방향으로 기업구성원들의 행동도 그 방향으로 매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매진하게 하려면 목표달성을 위해 과거와 같은 직접적 통제가 아닌 목표를 기준으로 한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행동방식과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지배할 기업가치가 구성원에게 강하게 내면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전 기업구성원들이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기업가치에 대해 혼연일치된 모습을 보인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최소한 기업생존은 물론이고 모든 성과면에서도 우수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업가치 정도가 얼마나 구성원들 사이에 강하게 공유되어 있느냐 하는 정도가 기업내 여러 문제해결이나 성과달성을 매우 중요함(Denison, 1984)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치의 강한 공유를 통해 단순히 강한 문화의 구축이 좋다라는 자세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문화의 구축이 실제적이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급변하는 상황 속에 보다 유연하게 맞서기 위한 기업마다의 독특한 문화개발 및 구축의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을 반영한 실례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그런 움직임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심어주려한 움직임이었으며 그것은 곧 기업들 스스로 구성원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 조직사회화의 실시가 활발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조직사회화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적합한 문화를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사회학에서 연구되어온 사회화의 개념을 조직차원에 Schein(1968)이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으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나 규범을 받아들여 적응해 나가듯 기업조직에 소속된 조직구성원이 조직내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대응, 행동해야 하는지 적절한 요령을 파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Schein, 1980) 교육차원이다.

따라서 사회화는 조직적응 과정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써 현행의 신념과 관습 등에 반항하는

경우를 이해시키고 적용토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조직문화를 형성시켜 조직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끌고 높은 조직유효성을 낳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론적 접근이 된다.

일찍이 Pascale(1985)에 의해 조직사회화가 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써 검토된 바 있기는 하지만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입직연수시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을 실시하는 정도에 머무를 뿐 개성과 사회화간의 강한 감정적 반응유발(Pascale, 1985)을 우려하여 입직후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활성화 움직임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인재확보의 중요성을 알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재가 입직한지 5년도 채 못되어 이직한 비율은 50%를 육박한 바 있고(국립중앙직업안정소, 1984, p. 4) 심지어 1년 이내에 기업을 떠난 구성원들만 해도 10% 이상으로 나타난 점(박경규, 1991, p. 66)은 오늘날 한국기업의 중대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기업에 불황의 시기이거나 재무사정이 낙관적이라고 예측되지 않는 한 교육은 어디까지나 비용으로 인식될 뿐 미래까지의 연속적인 성공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오지 못한 탓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사회화는 그 궁극적 목표가 바로 조직의 가치를 몸에 익혀 조직구성원으로서 문화와의 적합성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며 조직구성원과 조직문화의 적합성은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을 줄이게 하며(O'Reilly, Chatman, & Caldwell, 1991), 조직사회화를 통해 소속조직이 개인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그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직을 줄이고, 조직에 몰입하게 하며,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사회화 활동이 얼마나 강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조직마다 고유하게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활용하는 사회화 방법을 총괄적 입장에서 분석하며, 조직사회화가 비교적 최근에 조직문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강하게 대두된 개념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조직문화 강도와의 관련성 또한 살펴보자 한다. 그리고 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과 정의 상 관관계에 있다(Denison, 1984 ; Gordon et. al., 1985)는 일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관계에 정적 혹은 부적으로 그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들의 효과를 밝혀보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사회화의 수준분석과 그에 따른 조직문화의 수준을 분석한다. 둘째,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 관련성을 살펴보고 그 관련성에 정적으로 혹은 부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되는 변수들의 실제적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와같은 연구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연구의 범위나 깊이가 취약한 연구현실에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해 줄 것이며, 또한 기업의 조직사회화 현황을 기반으로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연구

를 위한 기초로서 작용할 좋은 기회가 되리라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조직사회화

1) 조직사회화의 개념

조직사회화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하여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는 교육훈련과는 달리 최근에 조직문화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대두된 개념(오세덕 & 정주석, 1994)으로서 비교적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조직구성원과 새로운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기술, 능력, 가치관, 신념 등을 배워 나가는 학습과정을 의미한다(이진규 & 김창욱, 1993).

그러나 조직사회화를 보는 관점은 문화인류학자들 경우 문화동질화 과정으로서, 심리학자들 경우는 충동의 통제능력과정으로서, 그리고 사회학자들 경우는 역할훈련과정으로서 사회화를 강조하는 등 관점이 서로 상이하였으며, 무엇보다 사회화과정 그 자체에 가장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이론을 세우고 실제 연구를 행하는 학문분과는 社會心理學인데 여기에서도 정신 분석학적 접근, 형태주의적 접근, 인지학적 접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등 사회화를 다루는 여러가지 관점들이 병존하였다(전병재, 1978). 그러나 이러한 여러 견해들이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제각기 사회화 과정의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론들을 제시한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점일 것이다.

그런데 사회화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은 초기사회화 과정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었다(전병재, 1978, p. 300). 그러나 사회화 과정은 개인 일생을 통해 계속되게 되어있으며 특히 기업국가, 기업사회로 지적되는 현대사회에서 조직구성원들은 기업내 사회화 유형은 달라도 저마다 적합한 유형을 통해 끊임없이 재사회화되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Katz, 1978).

그러나 직업사회화를 대체한 개념으로서의 조직사회화 개념은 발생하는 현장에 따라 초점이 달리되고 있으며 개념자체가 매우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포괄하고 있기에 연구자들의 이론적 입장이 다를 경우 충분히 그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Feldman, 1981, p. 309).

조직사회화 개념정의는 먼저 오늘날 조직문화의 대표적 연구자로 알려진 Schein의 경우 조직사회화를 조직생활에 필요한 요령을 익혀나가고 그 조직이나 집단에서 중요한 것들을 실제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게끔 학습하고 훈련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Schein, 1968, p. 84).

Maanen은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과거의 태도나 가치관 행동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규범 및 기대되는 행위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Maanen, 1976, pp. 67~68).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입장에서 개념을 정의내린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직사회화 개념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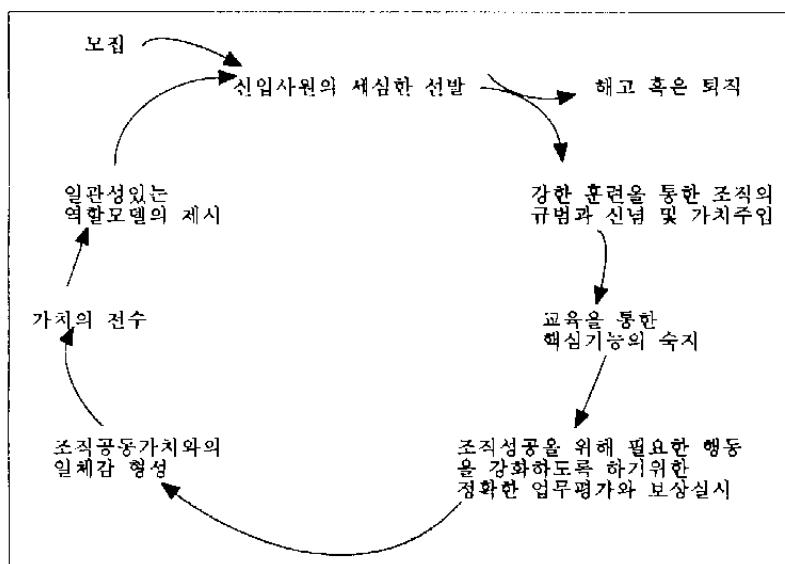
| 연 구 자 | 조직사회화 개념의 정의 |
|--------------------------------|---|
| Bakke(1953) | 개인의 목표를 조직에 수용시키고 이 목표에 따른 조직의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 |
| Caplow(1964) | 조직구성원들의 새로운 자아상의 획득과 조직에의 몰입과정 |
| Schein(1968) |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을 구성원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도록 학습하고 훈련하게 하는 과정 |
| Porter, Lawler & Hackman(1975) | 조직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개인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조직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것(조직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행동을 다듬는 조직의 노력) |
| Feldman(1976) | 구성원이 기업에 참여하고 효율적인 조직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과정 |
| Maanen(1976) |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과거의 태도나 가치관, 행동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규범 및 기대되는 행위를 학습해가는 과정 |
| Weiss(1978) |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규범적 행위, 태도, 가치 등을 학습하는 과정 |
| Louis(1980) |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 역할을 담당해나가는데 필요한 가치관, 능력 및 기대되는 행위, 사회적 지식을 익히는 과정 |
| Pfeffer(1982) |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조직통제로서 권력과 함께하는 것 |
| Jones(1983) | 개인의 입장에서의 심리적인 적용 |
| Pascale(1985) | 조직구성원들이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조직에서의 방향감각을 익히며 일하기 위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 |
| Fisher(1986) | 구성원들의 학습과 변화의 과정 |
| Ashford(1986) | 개인의 피드백 탐색활동에 의한 적극적인 적용 |
| Hall(1987) |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작업집단, 부서 및 조직의 가치·규칙·절차·규범 등을 학습하고 사회적 관계 및 업무상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 |
| Reichers(1987), Chatman(1991) | 조직가치관과 개인 가치관이 서로 일치를 이루도록 하게하는 과정 |

이상의 모든 개념정의를 종합해 보면 관점에 따라 조금씩 의미하는 바가 차이는 있지만 결국 효과적인 조직사회화란 조직가치관과 개인가치관이 서로 적합성을 이루어 적응을 잘하게끔 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Reichers, 1987).

2. 조직사회화의 과정과 결과

1) 조직사회화의 과정

신입 및 기존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직무몰입을 높혀 업적을 달성하는 데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조직에의 적응과정을 조직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에 따라 조직사회화의 정도가 결정된다. 조직사회화의 수준이 바로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 조직몰입(충성심), 생산성 및 이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조직의 안정 또한 결정하게 된다(Schein, 1968, p. 2).



자료원 : R. T. Pascale, "The Paradox of Corporate Culture : Reconciling Ourselves to Socializ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XXVII, No. 2(Winter, 1985), p. 38.

〈그림 1〉 효과적인 조직사회화 과정

조직사회화 과정은 7단계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Pascale은 조직의 기본가치가 조직구성원들에게 강하게 의식화되고 체질화된 상태에 있는 강한 문화를 가진 여러 회사들(아래 <표 2> 참고)은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기 위해 다음의 7단계를 거친다고 말하고 있다(Pascale, 1985). 첫째, 구성원들이 신중히 선발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선발자들이 표준화된 절차를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찾아내어 그에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게 된다. 둘째,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전의 행동·신념·가치 등에 의문을 갖게 하여 조직의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일 여지를 중진시킨다. 셋째, 조직의 핵심기능을 마스터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넷째, 수행한 업적을 정확히 평가하고 보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보상체계가 포괄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성공과 조직문화에 관련된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다섯째, 조직공동가치와 일체감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을 정당화시키도록 해준다. 여섯째, 조직가치의 전수단계이다. 이 단계는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행위규범을 강화시켜 준다. 일곱째, 역할모델의 제시단계이다. 이 단계는 승진과 성공으로 이르는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표 2>

Pascale의 조직사회화 측정결과

| 구 분 | 점 수 | 해 당 기 업 |
|--------------------|-------|---------------------------|
| 강하게 조직사회화된 기업 ↑ | 65~80 | IBM, P & |
| | 55~64 | ATT, Delta Airlin |
| | 45~54 | Coca Cola, United Airline |
| | 35~44 | Pepsi Cola |
| | 25~34 | ITT, United Technologies |
| | 0~24 | Atari |
| 약하게 조직사회화된 기업 | | |

자료원 : R. T. Pascale, "The Paradox of Corporate Culture : Reconciling Ourselves to Socializ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XXV II, No. 2(Winter 1985), pp. 40~41.

2) 조직유효성으로서의 조직사회화의 결과

신속한 조직사회화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직무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재빨리 감소시켜 주며, 조직측면에서 볼 때는 변화하는 가치에 구성원이 보다 빠르게 적응하여 일을 수행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므로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Reichers, 1987, p. 278). 그러나 지나치게 강한 사회화는 창조성을 해치고 조직분위기를 오히려 관료화시킬 수가 있으므로(Schein, 1968) 완벽한 사회화보다는 조직의 완전한 구

〈표 3〉

조직사회화의 결과

| 성공적인 조직사회화의 결과 | | | | | |
|----------------|-----------|----------------|-----------------|-----------|--|
| • 직무만족 역할 | • 명료성 | • 높은 작업동기 | • 문화에 대한 이해, 통제 | | |
| • 높은 직무몰입 | • 높은 조직몰입 | • 종신재직(tenure) | • 높은 성과 | • 가치의 내면화 | |

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적절한 사회화가 바람직할 수 있다(Feldman, 1981). 이것은 강한 문화를 가진 조직의 경우 구성원 개인을 사회화시키는 일은 능숙할 수 있지만 만약 그 문화가 조직에 유용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강한 사회화과정 자체가 필요한 변화를 이룩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직은 나름대로 유용한 문화를 갖출 것이고 또한 그 문화를 자신 조직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의 성공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사회화시키며(Hebden, 1986 ; Jones, 1986), 그 결과는 Toffler(1981)의 경우 직무만족, 직무긴장, 내부작업동기, 직무몰입, 상호영향성 등으로, Feldman(1981)의 경우 의존적 역할담당, 이직의도, 직무만족, 상호영향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기타 사회화결과로서 거론된 변수들을 포함하여 종합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3. 조직문화와 하위문화

1960년대에 시작되어 많은 이론을 축적하여 오고 조직행동 분야 및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1970년대 말경까지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던 연구주제 중 하나였던 조직분위기 개념을 흡수하고, 그러면서 조직분위기에 대한 연구관심을 급격히 퇴조시키며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에 들어서야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어졌던 조직문화 개념은 오늘날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 외부에의 적응과 내부적 통합이라는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배우면서 考案, 발견 또는 발전된 기본적인 가정(이 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만큼 효과를 발휘하여 새로운 구성원에게 그러한 문제들과의 관계에서 지각하고, 사고하고, 느끼는 합당한 방식이라고 가르쳐진다)의 패턴(Schein, 1985, p. 9)으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조직문화 내에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하위문화(subculture)가 모두 포함되는 것(Sathe, 1985, p. 9)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정체감 형성, 조직몰입, 사회적 체계의 안정에 기여, 의미부여의 도구로서의 기능 등 조직내부적인 기능(Smircich, 1983) 외에도 외부환경에의 적응과 존속, 존속과 적응을 지속하게 해주는 내부적 과정의 통합, 인지적 불확실성과 과부하(overload)로부터의 불안감소 등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순기능을 발휘한다

(Schein, 1985). 따라서 강한 조직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너무 강한 가치의 공유와 전통은 때로는 고도의 기술개발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측면에서, 새로운 가치의 개발이 요구될 때 부딪칠 수 있는 많은 저항측면에서 역기능적인 측면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리자의 일관성있는 행동이 결여될 경우는 강한 조직문화를 유지하는데 매우 장애가 된다(Deal & Kennedy, 1982 : 이학종, 1986). 그러나 대체로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사회화 과정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그러한 점 때문에 그 조직은 세심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조직문화를 언급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하위문화이다. 만약 조직내 하나의 문화가 존재한다고 하면 하위문화는 거의 존재치 않음을 의미하며 하위문화를 논함은 곧 조직내 하나의 문화가 아닌 여러 문화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미 사회학에서는 이와같은 여러 하위문화를 인정하면서 조직문화에 대해 접근해 왔다. 그러나 경영학 차원에서의 하위문화에 대한 개념은 1984년 Pittsburgh 대학교 MBA에서 학술회의에서 ‘하나의 조직에 하나 이상의 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가’란 주제가 논의(Kilman, Saxton & Serpa, 1985)되면서부터 본격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언급한 호손실험의 결과를 통해 이미 하위문화의 존재와 중요성은 인식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위문화는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되 그들 자신을 조직내의 여타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공통적으로 그들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집단적 이해를 기초로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는 하부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하위문화 자체가 존재한다면 이 존재자체가 이미 잠재적인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런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 하부조직내 부적절한 가정과 신념, 행동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반문화(counterculture)로서 활동하게 되며 이것은 조직의 통합을 해치고 그 유효성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Sathe, 1985). 그러나 이러한 조직내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 하위문화 모두가 반문화라고 할 수는 없으며 반문화로서 작용하는 하위문화가 형성되었는지는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한 여간해서는 감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합적인 기능발휘를 위한 성공적인 새로운 조직문화의 형성 및 개발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하위문화의 존재여부와 그 문화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하위문화 자체를 문제화시킬 차원까지는 아니지만 다만 반문화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리더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은 명백하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반문화로서 작용하는 하위문화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지나치게 강한 사회화를 추진할 경우는 조직내 통합이 더 어렵도록 문제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문화는 조직사회화를 통해서 습득하게 되며 한편으로 조직사회화는 지속적인

과정개념으로서 조직문화와 연관성을 맺고 있으므로 조직유효성을 염두한 조직사회화와 조직문화의 관련성 연구는 오늘날 소프트(soft)한 측면이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주목되고 있는 오늘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연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4. 리더십

리더십은 다분히 사색적이고 주관적이었던 20세기 초반의 시기 이후로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동안 학자에 따라 수많은 정의와 다양한 이론이 등장,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리더십이 인류의 보편적 관심사(Bass, 1990)라고 칭해졌던 것처럼 리더십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내용면에서 194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리더는 태어난다고 하는 리더의 선천성을 믿어왔으며,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는 리더십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리더의 후천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상황물로서 리더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 이후로부터는 리더는 비전을 개발·확산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되어 왔다(Bryman, 1992, p. 1).

리더십은 행동과학 분야 중 어떤 주제보다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론과 실증연구 결과 또한 그만큼 양산되어 왔다. 그러나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연구한 사람수 만큼이나 많긴 하여도(Stogdill, 1974) 일반적으로 리더란 목표를 명확히 해주며 개인, 집단, 조직이 그들의 임무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구조, 방법, 전략, 도구 등을 제공하고 목표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며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Bass, 1990)라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함께 하고 있다.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이와같은 리더의 일반적인 역할외에 리더는 구성원들의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사회화 주체세력으로서 바람직하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House, 1971),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여 그들이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 조직내 생활방법 제시 및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등을 한다(Weiss, 1978).

최근에는 가치관, 신념, 규범 등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행동을 중요시하며 리더가 조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유지시키는 등 문화적 혁신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주장함(Trice & Beyer, 1991 · 1993)에 따라 문화적 리더십(cultural leadership)이 등장하게 되고 이로써 198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조직문화와 인류의 보편사적 관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리더십이 함께 연구되도록 하는 강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조직문화와 리더십을 잘 연결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을 제시하면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4〉 조직문화의 변화와 유지에 관련한 리더십의 모델

(단위: 백만원)

| 문화적 리더십 |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 |
|-------------------|--|--|
| | 변 화 | 유 지 |
| 개인적 속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감 · 지배적 성격 · 확고한 신념 · 강한 비전의 광범위한 전파 · 극적인 성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성원에 대한 강한 믿음 · 촉진자 역할 · 확고한 신념 · 촉매역할 · 강한 설득력 |
| 인식된 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 아닌 다른 관리가능상황 |
| 비전과 사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진적 이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적 이념 |
| 리더에 대한 추종자의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가 기존의 가치관을 대표하며 과거에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인식 |
| 리더의 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역할모형이 됨 · 성공적이며 능력있다는 인상의 창출 · 이념을 명료하게 표현함 · 추종자들에게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과 그들을 믿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킴 · 동기유발에 능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역할모델로서 활동 · 이념을 명료하게 표현함 · 성공적이고 능력있다는 인상의 창출 · 추종자들에게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과 그들을 믿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킴 · 동기유발에 능함 |
| 업 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옴 |
| 관리적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구조와 전략을 구사 혹은 기존 구조와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구조와 전략의 개선 및 강화, 혹은 구조와 전략에 대한 점진적 변화의 추구 |
| 문화적 형식의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전체에 새로운 문화적 이념 및 가치관의 전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화적 이념과 가치관을 확인하고 찬양 |
| 전통의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로운 전통의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전통의 고수 |

자료원 : H. M. Trice, H. M. & J. M. Beyer, "Cultural Leadership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Science*, Vol. 2, 1991, p.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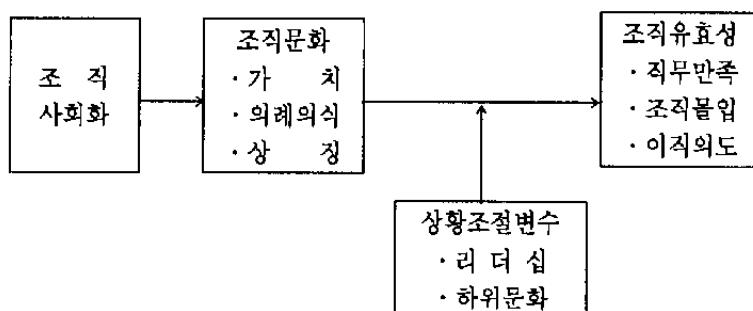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조직사회화는 어느 시점까지만 실시되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조직에 입직한 후부터 조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최근에 조직문화 연구와 더불어 그 중요도가 가중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조직은 구성원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이 아닌 각 조직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조직특성에 따라 운영방법과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구성원 적용방식이 특정내용 및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고는 있지만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유형의 사회화 방법에 국한하지 않고 결국 구성원의 적용방식이 대체로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 이를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사회화는 조직문화를 습득하게 하는 과정이며 그런 문화의 습득은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과 조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Hebden, 1986)고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조직사회화 과정에 의해서만 오로지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과업의 성격, 개인의 인성 및 욕구, 감독의 성격, 성공 및 보상받을 기회 등 여러 가지 사실과 함수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사회화와 사회화의 결과간 관계를 분석하는 등 몇 개의 변수간 상관관계에 관심을 두는 사회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벗어나 실제적으로 조직사회화 유효성 연구에 있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던 내용, 즉 사회화 담당자(리더)의 효과성 및 조직내 하위문화가 조직사회화 결과에 미치는 효과성 등이 등한시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다음과 같은 모델을 설정, 그에 따라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사회화는 사회학, 인성심리학, 문화인류학 등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로서 Schein(1968)의 용어활용 이후부터 조직행동 연구에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던 개념인데 이와같은 조직사회화 개념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어 왔었던 조직문화의 형성 확립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써도 검토(Pascale, 1985)되어 왔었다. 그것은 조직사회화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조직가치를 몸에 익혀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적합성을 창출하는 것(O'Reilly III, Chatman & Caldwell, 1991)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조직사회화가 강한 조직의 구성원일수록 조직문화의 공유강도가 높다.

Schein(1968)은 조직사회화를 일반적으로 개인이 조직내 특정역할을 학습해 나가고 조직성원으로서 기대되는 규범적 행위, 태도, 가치들을 학습하여 조직체에 적용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는데, 조직사회화의 속도와 유효성은 구성원들의 충성심, 몰입, 생산성, 이직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조직의 성과 및 안정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회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Caplow(1964)는 구성원들의 새로운 자아상 획득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직사회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성공적으로 조직사회화가 이루어진다면 조직몰입을 높여주게 되고 조직이 행하는 제반활동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자신에게 부과되는 통제에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낳게 된다(Pfeffer, 1982).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강한 조직사회화는 조직몰입을 높이고 직무만족도 높이며 이직의도를 줄일 것이다.

Sathe(1985)는 문화는 조직의 자산이며 동시에 부채라고 하면서 문화가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며 조직의 의사결정과 통제를 촉진시키며 조직내 협력수준과 몰입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키는 효율적인 결과를 이꾼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문화와 개인의 적합관계를 행동으로 표출되는 측면과 가치, 신념 등 내재적 측면에서 충실한 추종자(good soldier), 순응자(adapter), 이단자(maverick), 반항자(rebel)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기업문화와 부합되지 않는 개인이 성과도 나쁘면 조직을 떠나도록 압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업문화는 기업구성원 행동에 압도적인 영향을 주며 그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조직문화는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에 대한 일체감을 제공하며 조직몰입을 촉진시키고 사회체계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며 행위를 가이드하고 형성시키는 감지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mircich, 1983). 이상

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조직문화가 강하게 공유된 기업의 구성원은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고 직무만족도 높이며 이직의도를 낮출 것이다.

오늘날 조직을 규칙, 절차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며 가치, 규범 중심으로 결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Jones, 1983) 생각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이런 가치관, 신념, 규범 등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행동을 중요시하며 리더가 조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유지시키는 등 문화적 혁신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주장(Trice & Beyer, 1991 · 1993)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분류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기존의 여러 리더십 유형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양식을 고려해 볼 때 가부장적인 권위(일방적인 방법으로 구성원을 통솔)와 和(친화성을 도모하도록 통솔하며, 구성원간 갈등을 없애주고, 융화와 집단의식을 높이며, 온정을 베풀고, 인격적 덕을 발휘하는 것)가 기업조직 경영자들에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전통적 특성의 연속과 변화과정을 수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조직사회화에 의해 강하게 형성된 조직문화라 하더라도 리더십 유형에 따라 조직몰입 · 직무몰입 · 이직의도의 정도는 다를 것이다. 즉, 和 지향성이 높은 리더십 유형일수록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높일 것이다.

조직문화는 한 개인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관리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조직전체에 지배적으로 걸쳐진 문화의 내용이 하위문화(sub-culture)의 내용과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떨어뜨리고 동조심과 애사심을 전락시킬 것이므로 관리자의 입장에서 조직을 움직여 나가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조직전체 가치를 지배하는 지배문화(dominant culture)와 반문화(counter-culture)로 작용하는 하위문화가 매우 중요한 가치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면(Martin & Siehl, 1983, p. 54) 대립적인 관계로 존재하게 된다면 조직내 불안정한 공생관계로 인해 조직은 위협받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조직사회화에 의해 강하게 형성된 조직문화라 하더라도 하위문화가 반문화를 형성한 정도에 따라 조직몰입 · 직무몰입 · 이직의도의 정도는 다를 것이 다. 즉, 반문화 지향성이 강할수록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의 긍정적 관계는 낮아질 것이다.

2. 변수의 조직적 정의 및 측정

1) 조직사회화

조직이나 그 하부단위에서 중요한 것들을 실제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게끔 학습하고 훈련하는 과정 또는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서 참여하여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데 필요한 가치관, 능력 및 기대되는 행위, 사회적 지식을 익히는 과정이다. 즉 조직사회화란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규범적 행위, 태도, 가치들을 학습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한 조직사회화라고 일컬을 때는 이와같은 기대되는 규범적 행위, 태도, 가치들의 내면화 작업이 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은 R. Pascale(1985)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은 16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직문화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구성원 행동과 전체 조직체 행동에 기본전제로 작용하는 조직체 고유의 가치관과 신념, 규범과 관습 그리고 행동패턴 등의 거시적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조직문화를 일컫는다면 그것은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문화가 확립되어 있고 구성원들에게 그 문화가 공유되어 있으며 그것이 경영이념의 경영활동에 잘 구현되어 있는 문화를 말한다. 이와같은 조직문화를 그 구성요소별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측정문항은 신철우(1988) 논문의 설문에서 본 내용에 맞게 부분적으로 인용·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1) 가치

조직구성원들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신념과 기본개념으로써 조직체가 행동지침으로 중요시하는 조직의 목표지향성 등을 의미하며, 또한 이 가치는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구성원들의 행동의 기본전제와 전체조직체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측정문항은 9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의례·의식

조직체의 일과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규칙적으로 지켜 나가는 관습 또는 행동들을 말한다. 측정문항은 9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상징

여러 가지 의미를 모호하게 나타내는 사물(objects), 행동(acts), 관계(relationships) 또는 언어적 형성물로써 사람들로부터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특정한 행동을 유발시킨다. 측정문항은 5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리더십

주어진 상황 하에서 구체화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써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대인관계적인 영향력을 말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생활을 볼 때 가장의 지도유형은 일반적인 리더십 스타일의 분류처럼 전제적, 민주적, 방임적 등으로 단일선적인 설명이 어려우며 ‘권위’와 ‘화’라고 하는 양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본다. 측정문항은 ‘한국기업 최고경영자의 가치관과 관리행위’에 대한 신유근(1984)의 연구내용 중 본 연구에 맞게 인용·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문항수는 4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 하위문화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조직내의 여타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집단의 독특한 집단적 이해를 기초로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구성원들의 한 부분집합이 지니는 문화이다. 즉 조직내 특정계층 또는 특정부문에 있는 구성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대체문화(하위문화)의 존재를 말하며 조직을 수직으로 끊어서 볼 때 각 경영층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되고 조직을 수평적으로 나누어서 볼 때 각 부서마다 타 부서와는 상이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설문은 Martin/Siehl(1983)의 것 중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전체 측정문항은 3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 직무만족

조직구성원들이 일하는 직무와 조직에 대한 평가에 반영된 애정적 반응 또는 조직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재적, 외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된 반응이다. 측정문항은 Kendall/Hulin(1969)의 것 중 5개 문항을 인용하여 활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6) 조직몰입

각 학자들마다 조금씩 정의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동일시(목표와 가치에 대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정도), 애착(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조직을 위해 애쓰려는 의사의 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McGee/Ford(1987)에서 인용·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전체 측정문항은 4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7) 이직의도

조직에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조직구성원들의 態度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마음자세를 표출한다. 측정문항은 연구자가 본 연구내용에 맞게 2개 문항

을 개발하였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표본 및 조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50대 기업 중 문화적 특성이 드러나 있고 사풍을 논할 수 있는 23개의 대기업그룹 본사 사무·관리직, 판매·영업직, 생산·기술·연구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배포·회수되게 되었다. 설문지는 약 1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550부를 배포, 그 중 350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자료로 이용하기에 불충분한 설문응답지 41개를 제거한 309개의 설문지만이 연구목적의 실제 통계자료로서 사용되었다.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분포

| 인구통계변수 | 구 분 | 인원수 | 비율(%) | 인구통계변수 | 구 분 | 인원수 | 비율(%) |
|--------|--|--------------------------------|--|--------|--|--|---|
| 성 별 | 남 여 | 256 53 | 82.8 17.2 | 학 력 | 고 졸 대 졸 대학원졸 | 43 240 26 | 13.9 77.7 8.4 |
| 년 령 | 20~30 31~35 36~40 41 이상 | 210 71 20 8 | 68 23 6.5 2.6 | 업 무 | 생산기술연구직 판매영업직 사무관리직 | 29 60 220 | 9.4 19.4 71.2 |
| 직 위 | 사 원 대 리 계 장 과 장 차 장 부 장 | 207 63 4 27 4 4 | 67 20.4 1.3 8.7 1.3 1.3 | 재직년수 | 신입사원 1~ 2 3~ 4 5~ 6 7~ 8 9~10 11년 이상 | 61 70 79 42 23 16 18 | 19.7 22.7 25.6 13.6 7.4 5.2 5.8 |
| 전직여부 | 유 무 | 60 249 | 19.4 80.6 | 총 계 | | 309 | 100.0 |

IV. 연구결과

1. 기초통계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통계작업으로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초기에 설정되었던 항목수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모델의 가장 선행변수로서 조직사회화 변수는 한 개의 측정변수로서 활용되기에 요인분석 결과에서 제외시켰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6〉에서와 같다.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상으로 기초적인 통계작업결과 타당성·신뢰성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 설문항목 | 독립변인 | | | 조절변인 | | | 종속변인 | | | |
|------|---------------|-----------------|---------------|------|----------------|-----------------|------|-----------------|-----------------|-----------------|
| | factor1 가치 | factor2 의례의식 | factor3 상징 | 설문항목 | factor1 리더십 | factor2 하위문화 | 설문항목 | factor1 직무만족 | factor2 조직몰입 | factor3 이직의도 |
| X1 | .93176 | — | — | X49 | .88215 | — | X77 | .97226 | — | — |
| X2 | .92158 | — | — | X50 | .87104 | — | X76 | .97072 | — | — |
| X3 | .92055 | — | — | X51 | .85516 | — | X79 | .96989 | — | — |
| X4 | .91953 | — | — | X48 | .81412 | — | X78 | .96800 | — | — |
| X5 | .90977 | — | — | X62 | — | .85258 | X80 | .96533 | — | — |
| X6 | .73499 | — | — | X61 | — | .84753 | X82 | — | .88881 | — |
| X7 | .72831 | — | — | | | | X83 | — | .77954 | — |
| X8 | .65194 | — | — | | | | X84 | — | .64766 | — |
| X9 | .42794 | — | — | | | | X81 | — | .64345 | — |
| X10 | — | .73795 | — | | | | X85 | — | — | .86157 |
| X11 | — | .70153 | — | | | | X86 | — | — | .71629 |
| X12 | — | .69418 | — | | | | | | | |
| X13 | — | .65939 | — | | | | | | | |
| X14 | — | .63524 | — | | | | | | | |
| X15 | — | .63474 | — | | | | | | | |
| X16 | — | .56975 | — | | | | | | | |
| X17 | — | .52480 | — | | | | | | | |
| X18 | — | .52320 | — | | | | | | | |
| X19 | — | — | .67699 | | | | | | | |
| X20 | — | — | .61418 | | | | | | | |
| X21 | — | — | .55297 | | | | | | | |
| X22 | — | — | .54039 | | | | | | | |
| X23 | — | — | .46861 | | | | | | | |
| 아이겐값 | 9.68867 | 3.42524 | 1.11494 | 아이겐값 | 5.24405 | .41326 | 아이겐값 | 6.03669 | 2.99478 | .49074 |
| 설명비율 | 42.1 | 14.9 | 4.8 | 설명비율 | 87.4 | 6.90 | 설명비율 | 54.9 | 27.2 | 4.5 |
| 설명비율 | 42.1 | 57.0 | 61.9 | 설명비율 | 87.4 | 94.30 | 설명비율 | 54.9 | 82.1 | 86.6 |

한편, 본 연구에 이용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구해 신뢰성 조사(reliability test)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7〉과 같다.

〈표 7〉

설문항목의 신뢰성 계수

| 변 수 | | 문항수 | α 계수 | Standardized Item α 계수 |
|--------------|---------|-------|-------------|-------------------------------|
| 조직사회화 | | 16 | 0.8123 | 0.8162 |
| 조 직 문 화 | · 가치 | 9 | 0.7785 | 0.7787 |
| | · 의례·의식 | 9 | 0.6991 | 0.7092 |
| | · 상징 | 5 | 0.6806 | 0.6817 |
| 리 더 십 | | 4 | 0.8420 | 0.8426 |
| 하 위 문 화 | | 2(3)* | 0.5225 | 0.5225 |
| 조 직 유 효 성 | · 직무만족 | 5 | 0.9261 | 0.9260 |
| | · 조직몰입 | 4 | 0.8752 | 0.8763 |
| | · 이직의도 | 2 | 0.7575 | 0.7583 |

* 總 信賴性係數(Total Cronbach's α Coefficient) : 0.7994

* ()안은 초기 항목수

2. 가설검증 결과

먼저 가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남자가 여자에 비해 조직문화의 구성요인인 가치, 의례·의식, 상징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높게 지각된 결과를 냈았으며 결과변수인 조직유효성의 속성들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p<0.01$). 한편 하위문화에 있어서 반문화적 성격은 여성의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조직문화의 가치, 의례·의식, 상징의 지각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유효성의 속성들에 있어서도 높게 지각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하위문화에 있어서 반문화적 성격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직위가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하위문화의 반문화적 성격은 비교적 매우 낮았다. 전직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p<0.05$, $p<0.01$ 에서 전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조직문화에 대한 공유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사무·관리직 종사자들에 비해 생산·기술·연구직, 판매·영업직 종사자들이 조직문화 공유정도가 높은데 그것은 조직관리자의 리더십 행위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사무·관리직 종사자들이 다른 종사자들보다 강한 반문화적 성격을 지닌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년수에 따른 결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은 ‘조직사회화가 강한 집단의 조직 구성원일수록 조직문화의 공유강도가 높다’는 것이었다.

〈표 8〉

조직사회화의 집단별 차이

| 조직사회화 | 평균 | 표준편차 | T-value | 자유도 | 2-Tail Prob. |
|-------|--------|-------|---------|--------|--------------|
| 강한 집단 | 3.6292 | 0.394 | 23.03 | 120.42 | 0.000 |
| 약한 집단 | 2.6481 | 0.251 | | | |

조직사회화와 조직문화 관계를 검증하기 앞서 조직사회화의 변수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직사회화의 평균값에 따라 전체를 3등분하여 조직사회화가 강한 집단, 중간 집단, 약한 집단 등 하위집단으로 분류한 후 중간 집단을 제외한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8〉에서 보듯이 T-test 결과 유의도는 0.000으로서 통계적인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직사회화가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검증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보듯이 조직사회화가 강할 때 조직사회화와 조직문화와의 관계와 조직사회화가 약할 때 조직사회화와 조직문화와의 관계가 유의적인 차이를 갖는지를 알기 위해 표본상관계수의 차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 조직사회화가 강할수록 조직문화의 구성요소인 가치, 의례·의식, 상징의 공유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9〉

조직사회화와 조직문화와의 집단별 상관관계

| | | 가치 | 의례·의식 | 상징 |
|-------|----|---------|---------|---------|
| 조직사회화 | G1 | .5031** | .4291** | .4020** |
| | G2 | .2627** | .2507** | .3161** |

* p<0.01 ** p<0.001 G1 : 조직사회화가 강한 집단 G2 : 조직사회화가 약한 집단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는 ‘강한 조직사회화는 조직몰입을 높이고, 직무만족도 높이며, 이직의도를 줄일 것이다.’였다. 가설의 유의적 차이를 알기 위해 표본상관계수의 차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 조직사회화가 강할수록 조직적용성,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높고 이직의도도 낮게 나타났다.

〈표 10〉 조직사회화와 조직유효성 간의 집단별 상관관계

| | | 직무만족 | 조직몰입 | 이직의도 |
|-------|----|---------|---------|---------|
| 조직사회화 | G1 | .3136** | .4209** | .3590** |
| | G2 | .2698 | .1554 | -.0143 |

* p<0.01 ** p<0.001 G1 : 조직사회화가 강한 집단 G2 : 조직사회화가 약한 집단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은 '강한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고 직무만족도 높이며 이직의도를 낮출 것이다.'였다. 본 연구결과는 p<0.0001에서 강한 조직문화를 소유한 조직의 경우 조직적응성이 높으며 직무만족도 높고 조직몰입의 수준도 높으며 이직의도 또한 매우 낮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은 지지된다.

〈표 11〉 조직문화 수준에 의한 조직유효성 차이분석

| 독립변수 | 결과변수 | 그룹별 평균 | 표준편차 | F값 | 2-Tail Prob. | Separate variance estimate | |
|------------|---------|--------|-------|------|--------------|----------------------------|--------------|
| | | | | | | t값 | 2-tail prob. |
| 가치수준 | 직무만족(a) | 3.5360 | 0.829 | 1.44 | 0.046 | 5.97 | 0.000 |
| | (b) | 2.7577 | 0.997 | | | | |
| | 조직몰입(a) | 3.5515 | 0.790 | 1.07 | 0.755 | 8.73 | 0.000 |
| | (b) | 2.6373 | 0.764 | | | | |
| | 이직의도(a) | 3.4474 | 0.995 | 1.00 | 1.000 | 6.18 | 0.000 |
| | (b) | 2.6127 | 0.994 | | | | |
| 의례의식 수준 | 직무만족(a) | 3.5568 | 0.887 | 1.03 | 0.847 | 5.10 | 0.000 |
| | (b) | 2.9832 | 0.900 | | | | |
| | 조직몰입(a) | 3.5855 | 0.799 | 1.04 | 0.795 | 7.86 | 0.000 |
| | (b) | 2.7842 | 0.817 | | | | |
| | 이직의도(a) | 3.5158 | 0.977 | 1.10 | 0.593 | 6.28 | 0.000 |
| | (b) | 2.7211 | 1.023 | | | | |
| 상징수준 | 직무만족(a) | 3.5229 | 0.867 | 1.13 | 0.520 | 5.80 | 0.000 |
| | (b) | 2.8000 | 0.919 | | | | |
| | 조직몰입(a) | 3.4690 | 0.848 | 1.28 | 0.235 | 5.04 | 0.000 |
| | (b) | 2.9321 | 0.751 | | | | |
| | 이직의도(a) | 3.4151 | 1.028 | 1.29 | 0.211 | 5.34 | 0.000 |
| | (b) | 2.7286 | 0.904 | | | | |

(a) : 공유수준이 높은 집단 (b) : 공유수준이 낮은 집단

결과변수인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의례·의식, 상징 등의 영향변수가 조직유효성을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조직문화 변수와 조직유효성 변수간 다중 회귀분석 결과

| 결과변수 | 선행변수 | 계 수 | 표준오차 | T | P> T |
|------|------|------------------|---------|----------------|--------|
| 직무만족 | 상 수 | 0.16268 | 0.28172 | 0.577 | 0.5641 |
| | 가 치 | 0.46344 | 0.10740 | 4.315 | 0.0001 |
| | 의례의식 | 0.16683 | 0.09645 | 1.730 | 0.0847 |
| | 상 징 | 0.30597 | 0.07731 | 3.958 | 0.0001 |
| | | $R^2 = 0.3006$, | | $F = 43.701$, | |
| 조직몰입 | 상 수 | -0.08832 | 0.24187 | -0.365 | 0.7152 |
| | 가 치 | 0.64598 | 0.09220 | 7.006 | 0.0001 |
| | 의례의식 | 0.30739 | 0.08280 | 3.712 | 0.0002 |
| | 상 징 | 0.05956 | 0.06638 | 0.897 | 0.3703 |
| | | $R^2 = 0.4181$, | | $F = 73.048$, | |
| 이직의도 | 상 수 | -0.35237 | 0.32214 | -1.094 | 0.2749 |
| | 가 치 | 0.57288 | 0.12281 | 4.665 | 0.0001 |
| | 의례의식 | 0.34046 | 0.11029 | 3.087 | 0.0022 |
| | 상 징 | 0.14968 | 0.08841 | 1.693 | 0.0915 |
| | | $R^2 = 0.2995$, | | $F = 43.460$, | |

(a) : 공유수준이 높은 집단 (b) : 공유수준이 낮은 집단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결과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는 Step-Wise 회귀분석결과 가치, 의례의식, 상징이 비교적 설명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 4의 검증

가설 4는 ‘조직사회화에 의해 강하게 형성된 조직문화라 하더라도 리더십 유형에 따라 조직몰입·직무몰입·이직의도의 정도는 다를 것이다. 즉, 和 지향성이 높은 리더십 유형일수록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높일 것이다.’였다.

〈표 13〉 리더십의 집단별 차이

| 화에 의한 리더쉽 | 평 균 | 표준편차 | T-value | 자유도 | 2-Tail Prob. |
|-----------|--------|-------|---------|-----|--------------|
| 강한 집단 | 3.8365 | 0.463 | 27.2 | 265 | 0.000 |
| 약한 집단 | 2.2500 | 0.479 | | | |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미치는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앞서 리더십의 조절변수 분석을 하였다. 리더십의 평균값에 따라 전체를 3등분하여 화의 리더쉽이 강한 집단, 중간 집단, 약한 집단 등 하위집단으로 분류한 후 중간 집단을 제외한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 간의 유의적인 차이검증 T-test 결과 유의도는 0.000으로서 통계적인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和의 리더쉽이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검증의 신뢰성이 높음을 나타내준다.

〈표 14〉 리더십에 따른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의 상관관계

| | | 직무만족 | 조직몰입 | 이직의도 |
|---------|----|---------|---------|---------|
| 가 치 | G1 | .4849** | .6292** | .4737** |
| | G2 | .4825** | .6052** | .4638** |
| 의례 · 의식 | G1 | .4280** | .5381** | .4515** |
| | G2 | .2577* | .3309** | .2978** |
| 상 징 | G1 | .4715** | .3982** | .3504** |
| | G2 | .3548** | .2848* | .2996** |

* p<0.01 ** p<0.001 G1: 和의 리더쉽이 강한 집단 G2: 和의 리더쉽이 약한 집단

和의 리더쉽이 높을 때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와 화의 리더쉽이 약할 때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관계가 유의적인 차이를 갖는지를 알기 위해 표본 상관계수의 차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조직문화의 차원과 조직유효성 차원 간의 상관관계에 화의 리더쉽은 조절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和의 리더쉽이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에 비해 가치, 의례의식, 상징차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和에 의한 리더십일수록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에 상관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 가설 5의 검증

가설 5는 '조직사회화에 의해 강하게 형성된 조직문화라 하더라도 하위문화가 반문화를 형성한 정도에 따라 조직몰입 · 직무몰입 · 이직의도의 정도는 다를 것이다. 즉 반문화 지향성이 강할수록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의 긍정적 관계는 낮아질 것이다.'였다.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미치는 하위문화의 반문화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앞서 반문화의 조절변수 분석을 하여 반문화의 평균값에 따라 전체를 3등분해 반문화가 강한 집단 강한 집단, 중간 집단, 약한 집단 등 하위집단으로 분류한 뒤 중간 집단을 제외하고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T-test) 유의도는 0.000으로서 통

〈표 15〉

반문화의 집단별 차이

| 하위집단의 반문화 | 평 균 | 표준편차 | T-value | 자유도 | 2-Tail Prob. |
|--------------|--------|-------|---------|-----|--------------|
| 강한 집단 | 3.6323 | 0.584 | | | |
| 약한 집단 | 2.1961 | 0.507 | 23.03 | 306 | 0.000 |

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반문화가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설검증의 신뢰성은 높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에서와 같이 반문화가 강할 때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와 반문화가 약할 때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관계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기 위해 표본 상관계수의 차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조직문화의 차원과 조직유효성 차원 간 상관관계에 반문화 변수는 조절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즉 반문화는 조직가치관과 다른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조직가치관에 위배되는 차원이니 만큼 반문화 정도가 약할수록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 상관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표 16〉

반문화에 따른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의 상관관계

| | | 직무만족 | 조직몰입 | 이직의도 |
|-------|----|---------|---------|---------|
| 가 치 | G1 | .4320** | .5768** | .4222** |
| | G2 | .5194** | .5771** | .4827** |
| 의례·의식 | G1 | .3743** | .5284** | .4716** |
| | G2 | .4874** | .5396** | .4952** |
| 상 징 | G1 | .3835** | .3017** | .3477** |
| | G2 | .4709** | .3954** | .3489** |

* p<0.01 ** p<0.001 G1: 반문화가 강한 집단 G2: 반문화가 약한 집단

V. 결론 및 시사점

문화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실체적 환경이나 그들이 겪은 경험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며 이처럼 인간이 실체적 환경이나 경험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면 문화도 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질문화

(material-culture)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하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가치관이나 관념과 같은 비물질적 문화(non material-culture)는 상대적으로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린다.

이같은 변화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해 가며 지금 현재도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물질문화에 비해 비물질적 문화의 부분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며 성격상 어느 정도는 지속성을 나타낸다. 문화가 지각이라면 그 지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육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평생교육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내 교육은 환경변화에 발맞춰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영계에 공유되고 있다. 이런 교육의 중요성은 과거의 직업사회화라는 용어 사용을 대신하여 최근에 조직사회화로 명명되며 그것이 곧 조직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다는 인식 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세계 초우량기업이라 할 수 있는 P&G, IBM 등은 이미 강한 조직사회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Pascale, 1985). 이외에도 HP, GE, Ford 등 세계 굴지의 초우량기업에서도 강한 사회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사회화로서 어느정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춘 문화를 습득해 가는 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 방법으로 구성원 지각을 측정하여 질적인 조직유효성 지표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사회화의 수준분석과 그에 따른 조직문화의 수준을 분석,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 관련성 분석, 그리고 그 관련성에 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되는 리더십과 하위문화 변수의 실제적 역할을 밝혀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시킨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게 되었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이 대체로 여성보다 조직문화의 공유강도가 높았다. 그리고 년령이 높을수록 높고, 직위가 높을수록 조직문화의 공유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업무는 사무관리직이 생산·기술·연구직, 판매·영업직 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직여부와 재직년수에 관해서는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둘째, 조직문화를 강하게 만드는 방안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조직사회화 측면에서 볼 때 조직사회화가 강한 기업의 구성원일수록 조직문화에 대한 공유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직사회화의 수준이 강할수록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높았고, 이 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문화의 공유강도는 조직유효성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며 조직문화의 공유강도를 높이는 것이 조직유효성을 향상시키는 선행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 변수들 즉 리더십, 하위문화(반문화에 촛점을 둔)의 변수들의 역할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적절한 조절효과를 놓았다. 즉 和의 리더십이 강할수록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문화가 반문화로써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우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 상관성

을 보다 낮추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서구에서 제시된 리더십 유형이론의 효과성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한국실정에 적용하여 그 개념의 일반화를 도모하려 하기보다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리더십유형의 개발과 그 내용 발휘가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적절한 하위문화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사회화가 조직문화를 습득하게 하는 과정이며 그런 문화의 습득이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과 조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Hebden, 1986)고 하지만 그 결과들이 조직사회화 과정에 의해서만 오로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 하위문화, 과업의 성격, 개인의 인성 및 욕구, 감독의 성격, 성공 및 보상받을 기회 등 여러 가지 사실과 함수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것이 된다. 이는 리더십이 문화적 혁신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Trice & Beyer, 1991 · 1993)라는 사실이 조직사회화 연구에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이상으로서 인간이 가지는 복잡하고 가변적인 행위, 태도 등을 계량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사실 조직구성원들의 지각을 측정하여 그 지각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어서 설문응답 내용이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점, 응답자가 조직문화 자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의 경제적 측면이 아닌 문화적 측면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연구방법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양적인 측정척도인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했다는 그 자체가 연구한계 전체를 대변할 수도 있다.

조직사회화는 조직문화를 습득하는 학습과정이고 따라서 조직사회화의 연구분야는 앞으로 문화와 무관하게 연구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는 단순히 조직사회화의 효과성을 논하려 하지말고 조직문화와 반드시 연계성을 이룬 연구내용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문화유형에 따라 조직사회화 방법, 효과 등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래 조직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그 이면에 깔려있는 기업문화적 요소와 어떻게 관련지어 나타나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여·관찰·심층적 인터뷰 등의 질적방법을 적극활용하여 기존의 조직문화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계량적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한 보다 심층적 분석이 시도, 그 결과가 논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노동부 국립중앙 직업안정소(1984), 「근로자 채용에 관한 인사제도 조사보고서」, 서울.
 박경규(1991), “신입사원 선발제도”, 「경제연구총서 212」,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박경규(1996), “멘토시스템을 통한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 전략”, 「서강경영논총」, 제7집.
- 신유근(1984), “한국기업 최고경영자의 가치관과 관리행위”, 「경영사례 연구」, 제18권, 제1호 서울대학교 경영대.
- 오세덕 · 정주석(1994), “조직사회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회법학」, 29권1호, pp. 287~314.
- 이진규 · 김창욱(1993),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정보탐색활동과 리더의 역할”, 「고려경영 논총」, 37권, pp. 35~56.
- 이학종(1986), 「기업문화와 조직개발」, 서울, 법문사.
- 전병재(1978), 「사회심리학」, 서울, 경문사.
- Ashford, S. J.(1986), “Feedback-seeking in individual Adaptation : A Resource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9, pp. 465~487.
- Bass, B. M.(1990), *Bass Stogdill's Handbook of Leadership : Theory, Research, & Managerial Applications*(New York, N. Y. : The Free Press),
- Bryman, A.(1992), *Charisma and Leadership in Organizations*(London;Sage),
- Caplow, P.(1964), *Principles of Organiz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Davis, S. M.(1984), *Managing Corporate Culture*, Cambridge, Mass. : Ballinger Publishing.
- Deal, T. E. and A. A. Kennedy(1982), *Corporate Cultures : The Rites and Rituals of Corporate Life*, Addison-Wesley.
- Denison, D. R.(1984) “Brining Corporate Culture To the Bottom Line”, *Organizational Dynamics*, Autumn, pp. 5~22.
- Drucker, P. F.(1954), *The Practice of Management*, Harper & Row, New York.
- Feldman, D. C., “A Socialization Process that Helps New Recruits Succeed”, in J. R. Hackman, E. E. Lawler III and L. W. Porter, *Perspective on Behavior in Organizations*(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83),
- Feldman, D. C.(1981), “The Multiple Socialization of Organization Memb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6, No. 2.
- Fisher, C.(1986),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 An Integrative Review”,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Vol. 4, pp. 101~145.
- Hall, E. T.(1973), *The Silent Language*(Anchor Books ed.), Garden City, N. Y. : Anchor Press.
- Hebden, J. E.(1986), “Adopting and Organization's Culture : The Socialization of

- Graduate Trainees", *Organizational Dynamics*, Summer, pp. 54~72.
- House, R. J.(1971), "A Path Goal Theory of Leadership Effective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16, pp. 321~338.
- Jones, G. R.(1983), "Psychological Orientation and the Process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8, pp. 464~474.
- Jones, G. R.(1983), "Transaction Costs, Property Rights, An Organizational Culture : An Exchanging Perspectiv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8, Sep,
- Jones, G. R.(1986), "Socialization Tactics, Self-efficacy and Newcomer Adjustment to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9, pp. 262~279.
- Katz, R.(1978), "Job Longevity as a Situational Factor in Job Satisfac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3.
- Katz, D., and R. L. Kahn(1966),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New York, Hohn Wiley & Sons.
- Kilman, R. H.(1982), "Getting Cintrol of the Corporate Culture", *Managing*, Vol. 2.
- Kilman, R. H.(1984) *Beyond the Quick Fix*, San Francisco Jossey-Bass.
- Kilman, R. H.(1985), "Corporate Culture", *Psychology Today*, April.
- Kilman, R. H., M. J. Saxton & R. Serpa(1985), "Five Key Issues in Understanding and Changing Culture", in R. H. Kilman, et. 민.(eds), *Gaining Control of the Corporate Culture*, Jossey-Bass Pub.
- Likert, R.(1967), *The Human Organization : Its Management and Value*, New York, McGraw-Hill.
- Louis, M. R.(1980), Surprise and Sense Making : What Newcomers Experienc in Entering Unfamiliar Organizational Settings :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5, Jun, pp. 226~248.
- Louis, M. R.(1986), "An Investor's Guide to Workplace Culture", in P. J. Frost et. al(eds.) *Oragnizational Culture*, Sage Publication.
- Maanen, J. V.(1976), "Breaking in : Socialization to Work", in R. Dubin, *Handbook of Work, Organization, and Society*, Chicago Rand McNally Colleogy Publishing Co.

- Martin, J. and C. Siehl(1983), "Organizational Culture and Counterculture : An Easy Symbiosis", *Organizational Dynamics*(Autumn),
- O'Reilly III, C. A., Jenniffer Chatman, D. F. Caldwell(1991), "People and Organizational Culture : A Profile Comparison Approach to Assessing Person-Organization Fi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4, No. 3.
- Ouchi, W.(1981), *The Theory Z*(Reading, Massachusetts : Addison-Wesley Pub. Co.)
- Pascale, R. T.(1985), "The Paradox of Corporate Culture : Reconciling Ourselves to socializ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27, No. 2.
- Pfeffer, J.(1982),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 Theory*, Marshfield, Mass : Pitman Publishing Inc.
- Porter, L. W., E. Lawler III, J. R. Hackman(1975), *Behavior in Organization*,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 Price, J. L.(1968),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 Inventory of Proposition, Irwin.
- Reichers, A. E.(1987),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on Newcomer Socialization Rat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2, pp. 278~287.
- Sathe, V.(1985), *Culture and Related Corporate Realities*, Homewood, III(Irwin.)
- Schein, E. H.(1968),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the Profession of Management", *Industrial Management Review*, Vol. 9, pp. 1~16.
- Schein, E. H.(1970), *Organizational Psychology*(2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Schein, E. H.(1984), "Coming to a New Awareness of Organizational Culture", *Sloan Management Review*, Winter.
- Schein, E. H.(1983), "The Role of the Founder in Creating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Dynamics*(Summer).
- Schein, E. H.(1985),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Jossey-Bass Pub.
- Smircich, L.(1983), "Concepts of Culture and Organizational Analysi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8, No. 3(Sep).
- Stogdill, R. M.(1974), *Handbook of Leadership :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New York, N. Y. : Fress Press).
- Trice, H. M., J. M. Beyer(1991), "Cultural Leadership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 Science*, Vol. 2, pp. 149~169.

- Trice, H. M., J. M. Beyer(1993), *The Cultures of Work Organizations*(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Weiss, H.(1978), "Social Learning of work values in organiz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3.
- Wilkins, A. and W. G. Ouchi(1983), "Efficient Cultures : Exploring the Relations is between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A Study on the Role of Organizational Subculture and Leadership in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Culture through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Woo Taek Kim · In Ho Ki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ubcultur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culture through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used by 23 korean firms.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 five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analyzed empirically.

Empirical analyses of 23 korean firms revealed that : 1) strong socialization make strong culture, 2) strong socialization improve the members' satisfaction, commitment, and it reduce separation orientation, 3) when leaders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followers and subculture isn't show host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cultu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positive. Implications for managers and further research are suggested.

품질요인과 품질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Quality Factors and Quality-Related Programs

안 영진*

目 次

| | |
|--------------------|-----------|
| I. 연구의 목적 | VI. 실증분석 |
| II.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 1. 표본의 특성 |
| III. 품질프로그램 | 2. 자료분석 |
| IV. 기업의 특성 | VII. 결 론 |
| V. 연구조사방법 | |

I. 연구의 목적

최근에 품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이나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급격한 기호변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제품 내구성의 증가 그리고 기술의 발전 등으로 품질은 점차로 그 중요성이 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업도 품질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90년 Aune(1990)은 품질에 대한 유럽 최고경영자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Aune은 유럽 최고경영자들의 91%가 품질이 기업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기업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1980년대까지는 비용과 생산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품질과 탄력성이 새로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Juran(1994)은 20세기는 생산성의 시대이지만 21세기는 품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생산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몇십년 동안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품질향상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때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도입한

* 단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프로그램이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경영자들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 프로그램들의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Nohriam과 Berkley, 1994).

또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수없이 많다. 이런 요소들로 Feigenbaum(1988)은 9개의 요인들을 예로 들었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이 요인들의 중요성이 전부 다 동일하지 않고 다를 것이다. 또 이 요인들의 중요성이 모든 기업에 전부 동일하지 않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또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는 품질 향상 프로그램도 그 효과가 모든 기업에 똑같지 않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효과성이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질과 관련된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도 한국의 기업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요인을 들고 있는가? 둘째, 품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또 실제로 효과가 가장 좋은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다양한 품질프로그램 중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또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가? 넷째, 품질이 매출액과 수익성, 그리고 ROE(return on equity)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한국의 기업, 특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이 논문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써 Feigenbaum의 9M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실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산업마다 또 기업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기업의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 9M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9M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Feigenbaum(1988)의 9M은 고객, 자금, 경영, 인력자원, 동기부여, 자재, 기계와 기계화, 정보, 그리고 청결이다.

경쟁이 점점 더 심하여지는 것에 비례해 고객(markets)의 욕구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고객은 어떤 욕구든지 신제품에 의해 충족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고객은 계속 과거보다 품질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격심한 경쟁과 급격한 경기변동은 기업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자동화와

기계화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와 기계화는 막대한 자금(money)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또 모든 부서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경영자(management)가 품질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이제 종업원(men)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업원은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경제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줌(motivation)으로써 가능하다. 만족감을 느낀 종업원은 그 전보다 기업에 더 공헌을 할 것이다. 고품질의 제품이 점점 더 요구됨에 따라 제품에 들어가는 자재(materials)도 그 표준규격이 점점 더 엄격하여졌다. 이제 육안검사로서는 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없다. 너무나 상세한 규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재의 속성도 정밀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이제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량을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 기계화(machine and mechanization)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기계화는 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 컴퓨터의 등장은 새로운 정보화시대를 초래하였다. 다양한 정보(modern information methods)는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기계와 공정을 보다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는 경영자로 하여금 보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였다. 최근의 제품들은 청결(mounting product requirements)한 장소가 아니면 품질이 좋을 수가 없다.

III. 품질프로그램

이 논문에서는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품질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업들이 어떤 품질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실 기업들이 사용하는 품질프로그램들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품질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전부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문헌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품질관련 프로그램들로는 검사, 관리도, 품질분임조, 통계기법, 고객만족, 설계기법, 6σ, 품질비용 프로그램, 100ppm 기법, ISO와 같은 품질인증제도,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그리고 공급업자와의 관계, 그리고 벤치마킹 등이 있다.

Shewhart가 개발한 관리도는 과학적인 방법으로써 공정의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그 원

인을 규명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는 기법이다. Ishikawa(1986)에 의해 창안된 품질분임조는 작업장 내에서 자발적으로 품질활동을 수행하는 소집단 기법으로써 일종의 팀제도이다. Henssey(1992)는 동일한 기술과 자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동기가 고도로 부여된 개인과 집단이 정상적인 개인과 집단보다 세 배의 성과를 거둔다고 하였다. 또 최근에 중요한 경영기법으로 등장한 것이 팀제도이다. 팀을 구성하는 목적은 팀원 간에 서로 협조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Maddux(1988)는 이러한 팀조직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통계기법은 품질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7가지 도구와 새로운 7가지 기법들을 말한다. Mizuno(1988)와 Akao(1988)는 이 새로운 일곱 가지의 기법들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품질기법이라고 하였다. 품질은 이제 생산자가 아닌 고객이 결정한다. 그래서 Tenner와 DeToro(1992)는 품질이란 고객의 명시적 기대 및 묵시적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내부고객과 외부고객 전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기업의 전략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설계기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Taguchi는 모든 불량품의 불량원인 중 80%는 설계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Flynn, 1992). 또 제조품의 비용 중 약 80%는 제품을 설계할 때 결정된다고 한다(Buckle, 1992). Deming(1986)도 설계단계에 있어서 품질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래서 생산이 시작된 다음에 품질을 제품에 집어넣는 것은 너무 늦다고 하였다. 설계에 관한 중요한 기법으로는 CE (concurrent engineering)와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그리고 다구찌기법 등이 있다. Crosby(1979)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된 무결점의 개념이 1987년 모토로라(Motorola)사에 의해 6σ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6σ는 무결점과는 달리 공정에 초점을 둔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100ppm(parts per million)운동은 생산된 제품 일백만 개 중 불량품의 수를 일백개 이하로 줄이는 품질혁신운동이다. ISO 인증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보증하기 위하여 구매업자와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품질시스템의 문서화를 요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Hayes, 1994). ISO 인증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니고, 생산과정에 역점을 두는 제도이다(Singh, 1992). 욕구가 충족되어야 인간은 만족감을 느낀다.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최대의 능력과 능률을 발휘할 수 없다. 동기부여는 인간의 성과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TPM(total preventive maintenance)은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TPM에 속하는 중요한 기법으로는 5S(Nakajima, 1988)가 있다. 또 공급업자의 관계는 품질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또는 보다 우수한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추구하는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아웃소싱(outsourcing), JITII 등은 이런 기법들에 속한다. 기업의 품질을 강화시키는 기법 중 하나가 벤치마킹(benchmarking)이다. Spendolini(1992)는 벤치마킹을 조직의 향상을 위해 최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된 조직의 제품, 서

비스, 그리고 작업과정을 검토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V. 기업의 특성

기업의 특성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규모나 또는 물류의 흐름에 의해 분류할 수도 있고, 생산하는 제품의 유형에 의해 분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조업체에 국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업들의 비교분석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종업체에 속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각 산업의 특성상 기업의 성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는 독특한 요소들이 존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기업으로 한국 수출의 주력 업종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1997년도 한국 10대 수출 품목은 광전관, 승용차, 직물(면직물 제외), 선박, 사무용기기, 정제식유제품, 의류 및 부속품, 통신장비, 철강과 강판 그리고 화학원소 및 화합물의 순서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0대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V. 연구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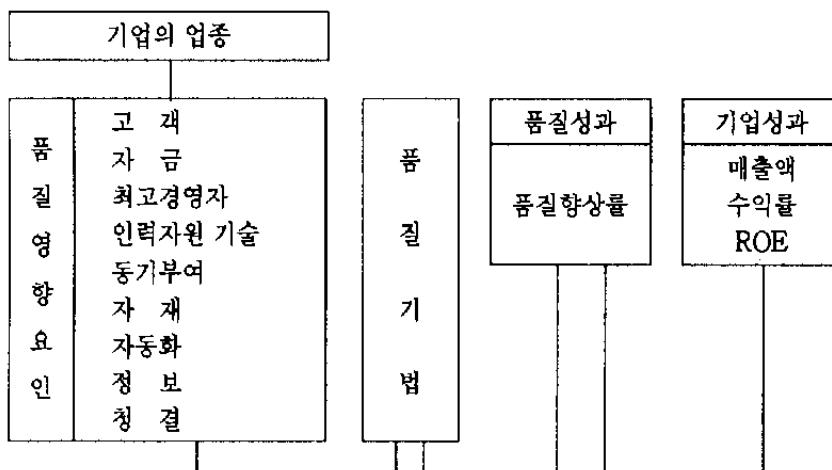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품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지, 품질향상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품질향상이 매출액과 수익성, 그리고 ROE(return on equity)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Feigenbaum의 9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품질프로그램은 검사, 관리도, 품질분임조, 통계기법, 설계기법, 6σ , 100ppm 품질운동, ISO인증, 설비보전, 공급업자와의 관계 등 14가지 기법들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성요인은 9개이고, 각 요인은 각각 4개의 세부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9개의 구성요인에 대해 36개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질문은 리커트 스케일(Likert scale)의 5점 단위(①은 매우 그렇지 않다, ②는 그렇지 않다, ③은 보통이다, ④는 그렇다, 그리고 ⑤는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품질성과는 품질향상을 하였고, 기업의 성과는 매출액과 이익률 그리고 ROE(return on equity)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표 1〉 품질요인과 기법에 대한 질문항목

| | |
|----------|----------------------------------|
| 고객 | 고객중심, 욕구조사, 고객욕구반영, 고객불평에 대한 피드백 |
| 최고경영자 | 품질비전, 적극적인 품질운동 참여, 품질전략, 현장참여 |
| 동기부여 | 권한의 이양, 종업원 만족도, 재안제도, 소집단제도 |
| 자금 | 품질비용의 측정, 예산의 확보, 품질보증비용, 투자액 |
| 인력자원의 기술 | 기술능력, 교육시간, 교육계층, 교육투자 |
| 자재 | 장기관계, 업체평가, 신속한 피드백, 구매계획의 상의 |
| 정보 | 품질전산시스템, 신속한 피드백, 품질비용정보, 경쟁업자정보 |
| 자동화 | 공정자동화, 사무자동화, 자동검사시스템, 산업재해의 정도 |
| 청결 | 청결성, 정리, 정돈, 규율성 |



〈그림 1〉 본 연구의 모형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 (2) 경영자들은 Feigenbaum의 9M 중에서 어떤 요인을 품질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가?
- (3) 실제로 기업의 품질향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인은 어떤 요인인가?
- (4) 경영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질향상 기법은 무엇인가?
- (5) 실제로 품질향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품질향상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6) 품질향상이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VI.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배포된 설문지는 1998년 9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35일 동안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261개가 배포되었으며, 그 중에서 74개가 수집되어 응답률은 28.4%이었다. 응답한 기업들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화학제품이 23%, 자동차 18.9%, 철강이 17.6%, 직물과 통신장비가 각각 14.9%, 의류가 4.1%, 석유정제와 광전관이 각각 2.7%, 그리고 선박이 1.4%이었다.

〈표 2〉

표본 기업의 특성에 대한 빈도분포

| 업 종 | 구 성 비 | 총업원수 | 구 성 비 |
|-------|-------|--------------|-------|
| 화학제품 | 23.0 | 2,000명 이상 | 20.3 |
| 자 동 차 | 18.9 | 1,000~1,999명 | 24.3 |
| 철 강 | 17.6 | 500~999명 | 23.0 |
| 직 물 | 14.9 | 100~499명 | 29.7 |
| 통신장비 | 14.9 | 100명 미만 | 2.7 |
| 의 류 | 4.1 | 합 계 | 100.0 |
| 석유정제 | 2.7 | | |
| 광 전 관 | 2.7 | | |
| 선 박 | 1.4 | | |
| 합 계 | 100.0 | | |

응답한 기업들의 종업원 수는 2,000명 이상이 20.3%, 1,000~1,999명의 기업이 24.3%, 500~999명의 기업이 23%, 100~499명의 기업이 29.7%, 그리고 100명 미만의 기업이 2.7%이었다. 응답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들이었다. 표본 기업의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은 〈표 2〉에 나와 있다.

2. 자료 분석

1) 신뢰성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그리고 연구질문을 분석하기 전에 본 연구설계의 신뢰성을 검사하기 위해 신뢰계수인 Chronbach의 α 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신뢰성이란 얼마나 오류없이 측정을 잘 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Ztkmund, 1997). 〈표 3〉은 각 질문 항목에 대한 신뢰계수이다.

〈표 3〉 질문항목에 대한 신뢰계수

| 질문 항목 | 신뢰계수 | 질문 항목 | 신뢰계수 |
|-------|-------|-------|-------|
| 고객 | .8294 | 최고경영자 | .7994 |
| 동기부여 | .6823 | 자금 | .7084 |
| 인력자원 | .7710 | 자재 | .6116 |
| 정보 | .6983 | 자동화 | .6287 |
| 청결 | .8049 | | |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α 계수 0.7을 기준으로 한다. 위 항목들의 신뢰계수 중에서 5개는 0.7보다 높고 4개는 0.7보다 낮다. 그러나 0.7보다 낮은 4개 항목의 신뢰계수도 거의 0.7에 가깝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은 신뢰성이 대체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질문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연구질문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질문한 경쟁력 강화 요소로 품질, 비용(생산성), 탄력성 그리고 적시납품의 4가지이었다. 이 4가지는 Krajewski와 Ritzman(1996)이 제안한 요소들이다. 〈표 4〉는 경쟁력 강화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표 4〉 경쟁력 강화 요소

| 요소 | 총 점 | 순위 |
|------|--------|----|
| 품질 | 267.00 | 1 |
| 비용 | 216.00 | 2 |
| 적시납품 | 150.00 | 3 |
| 탄력성 | 107.00 | 4 |

〈표 4〉에 의하면,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품질을 들었고, 다음으로 비용과 적시납품을 들었다. 그리고 탄력성을 경쟁력 강화의 가장 약한 요소로 꼽았다. 품질을 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요소로 한 결과는 Buzzel과 Gale(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두번째 연구질문은 Feigenbaum의 9M 중에서 품질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질문이었다. 〈표 5〉는 이 질문에 대한 빈도분석이다.

〈표 5〉에 의하면, Feigenbaum의 9M 중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주요한 요소로 인적자원을 들었다. 다음으로는 고객, 최고경영자, 동기부여, 정보, 자재, 자동화, 자금, 청결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표 5〉 품질향상 요인에 대한 분석

| 요 소 | 총 점 | 순 위 |
|-------|--------|-----|
| 인적자원 | 544.00 | 1 |
| 고 객 | 490.00 | 2 |
| 최고경영자 | 443.00 | 3 |
| 동기부여 | 381.00 | 4 |
| 정 보 | 316.00 | 5 |
| 자 재 | 299.00 | 6 |
| 자동화 | 295.00 | 7 |
| 자 금 | 293.00 | 8 |
| 청 결 | 233.00 | 9 |

세번째 연구질문은 기업의 품질향상에 실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업체를 품질향상의 정도에 따라 품질향상을 높은 그룹과 낮은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는 9개이고 종속변수는 하나이며, 모든 변수는 비율치로 측정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사이에 선형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여기에서는 분산확대지수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6〉은 분산확대지수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VIF의 값이 10보다 큰 경우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Marquardt, 1970).

〈표 6〉 품질향상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 요 소 | 배 타 | 유의확률 | VIF | R | R제곱 | F | 유의확률 |
|-------|-------|------|-------|------|-------|-------|------|
| 고 객 | .002 | .991 | 3.421 | .603 | 3.664 | 4.062 | .000 |
| 최고경영자 | .084 | .622 | 2.904 | | | | |
| 동기부여 | .066 | .652 | 2.134 | | | | |
| 자 금 | -.079 | .672 | 3.469 | | | | |
| 자 재 | .391 | .027 | 3.007 | | | | |
| 정 보 | -.256 | .140 | 2.941 | | | | |
| 자동화 | .274 | .103 | 2.761 | | | | |
| 청 결 | -.036 | .825 | 2.598 | | | | |
| 인적자원 | 1.584 | .118 | 2.314 | | | | |

〈표 6〉에 의하면, 모든 요소의 VIF값이 3.469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다중회귀분석은 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6〉에 의하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R제곱이 .364로 요소들이 종속변수인 품질수준의 36.4%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표에 의하면, 자재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왔다. 이 결과는 경영자들이 품질향상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요인과 실제로 품질향상에 통계적으로 많이 기여한 요인과 서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네번째 연구질문은 경영자들이 어떤 품질향상 기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표 7〉은 이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로 전체업종과 10대 업종별로 분류하였다. 이 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5개의 기법만을 명시하였다.

〈표 7〉 경영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질향상 기법

| 순위 | 전체 | 광전자 | 승용차 | 직물 | 선판 | 석유정제 | 의류 | 통신장비 | 철강 | 화학 |
|----|----|-----|-----|----|----|------|----|------|----|----|
| 1 | A | F | C | B | A | A | A | A | B | A |
| 2 | B | C* | A | D | K | D | B | B | E | B |
| 3 | C | H | I | F | J | J | K | E | C | J* |
| 4 | D | D | D | C | E | C | L | D | A* | K |
| 5 | E | G | B* | J | D | B | C | M | D | E |

A : 품질인증 B : 고객만족 C : 품질분임조 D : 통계기법 E : TPM
 F : 설계 G : 공급업자 H : 품질비용 I : 관리도 J : 검사
 K : 벤처마킹 L : 100ppm M : 6시그마
 * 위 순위와 동일

〈표 7〉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품질향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법은 품질인증, 고객만족, 품질분임조, 통계기법, 그리고 TPM의 순서이었다. 품질인증을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ISO 9000과 같은 인증으로 인해 품질시스템을 재정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객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품질분임조활동과 통계기법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 전사적 설비관리인 TPM도 중요시 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중요도가 다르나 대체적으로 품질인증과 고객만족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한 기법 중에서 QFD, CALS 등은 어떤 업종에서도 5대 기법에 들어가지 못했다.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 100ppm 제도도 그리 큰 호응을 못 받았다.

다섯번째 연구질문은 실제로 품질향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품질향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결과는 품질수준이 아주 높은 20%의 기업을 선별해서 이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 80%와 비교하여 가장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품질향상 프로그램들과의 교

차분석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를 종합하여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빈도와 적용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 8>은 다섯번째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표 8> 품질향상에 실제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품질 프로그램

| 품질 프로그램 | 품질수준 하위(80%) 빈도(%) | 품질수준 상위 20% 빈도(%) |
|---------|--------------------|-------------------|
| 품질분임조 | 48(80) | 8(61.5) |
| 통계기법 | 54(90) | 12(92.3) |
| 관리도 | 48(80) | 12(92.3)* |
| 공급업자 | 14(23.3) | 6(46.2)* |
| 설계 | 22(36.7) | 4(30.8) |
| 벤치마킹 | 34(56.7) | 8(61.5) |
| 100ppm | 20(33.3) | 5(38.5) |
| 품질인증 | 55(91.7) | 11(84.6) |
| 고객만족 | 48(80) | 12(92.3)* |
| 검사 | 56(93.3) | 13(100)** |
| TPM | 43(71.7) | 11(84.6)* |
| 6시그마 | 10(16.7) | 4(30.8)* |
| 품질비용 | 16(26.7) | 3(23.1) |

* 표는 상위 20%의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높은 적용률을 가지는 품질 프로그램을 나타내며, **표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적용률을 나타내는 품질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표 8>에 의하면 상위 20%의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높은 적용률을 나타내는 품질프로그램은 관리도, 공급업자와의 관계, 설계, 품질분임조, 벤치마킹, 고객만족, 검사, TPM, 6시그마이었다. 특히 검사는 품질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전부 사용하였다. 이 결과를 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경영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질프로그램이 실제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과는 동일하지 않았다.

마지막 연구질문은 품질향상과 기업의 성과에 관한 관계이었다. 즉, 품질향상이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률 그리고 ROE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표 9>는 품질향상을과 매출액향상률, 품질향상률과 이익률, 그리고 품질향상률과 ROE와의 Pearson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9〉에 의하면 품질향상은 매출액과 이익률, 그리고 ROE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품질의 향상은 매출액과 이익률, 그리고 ROE를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표 9〉 품질향상률과 매출액향상률, 이익률, ROE와의 Pearson 상관계수

| | 품질향상률과의 상관계수 | 유의확률 |
|--------|--------------|-------|
| 매출액향상률 | .570 | .0000 |
| 이익률 | .462 | .0000 |
| ROE | .544 | .0000 |

V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품질요인과 품질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업들은 품질을 들었다. 이 결과는 품질이 다시 한 번 기업의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둘째, 기업들은 Feigenbaum의 9M 중에서 품질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적자원, 고객만족,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을 들었다. 셋째, 품질향상에 실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인으로는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재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왔다. 넷째, 전 업종을 통해 기업들은 품질인증, 고객만족, 품질분임조, 통계기법, 그리고 TPM을 품질향상의 중요한 기법으로 들었다. 그러나 조사한 기법 중에서 설계, 공급업자와의 관계 등은 기업들로부터 그리 중요한 기법이라고 간주되지 않았다. 다섯째, 실제로 품질향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품질프로그램으로는 통계기법, 관리도, 공급업자와의 관계, 설계, 벤치마킹, 고객만족, 검사, TPM의 순이었다. 특히 검사는 품질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전부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영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질프로그램이 실제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과는 동일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품질의 향상은 매출액과 이익률, 그리고 ROE를 향상시켰다.

그러나 본 논문의 자료 회수율이 28.4% 밖에 되지 않아 업종별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또 기업을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어떤 집단에 속한 표본의 수가 그리 크지 않아 보다 많은 표본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Akao, Y.(1988), *Quality Function Deployment*, Cambridge, MA : Productivity Press.
2. Aune, A.(1990), "Total Management to Universities : A Challenge and a Necessity", *American Society for Quality Control Annual Conference*, San Francisco, May.
3. Buckle, Tom.(1992), *Technology Transfer Council*, Personal Communication, October.
4. Buzzel, Robert D. and Bradley T. Gale,(1987), *The PIMS Principles*, New York : The Free Press.
5. Crosby, Philip B.(1979), *Quality is Free: The Art of Making Quality Certain*, New York : McGraw-Hill.
6. Deming, W. Edwards(1986), *Out of the Crisis*, Cambridge, MA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enter for Advanced Engineering Study.
7. Feigenbaum, Armand V.(1988), *Total Quality Control*, McGraw-Hill International Editions.
8. Flynn, Barbara B.(1992), "Managing for Quality in the U.S. and in Japan", *Interfaces*, Vol. 22, No. 5, pp. 69~80.
9. Hayes, H. Michael(1994), "ISO 9000 : The New Strategic Consideration", *Business Horizons*, May~June, pp. 52~60.
10. Hensey, Mel.(1992), *Collective Excellence: Building Effective Teams*, New York :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1. Ishikawa, Karou(1986), *Guide to Quality Control*, Tokyo :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12. Juran, Joseph M.(1994), "The Upcoming Century of Quality", *Quality Progress*, August, pp. 29~37.
13. Krajewski, Lee J. and Larry P. Ritzman(1996), *Operations Management: Strategy and Analysis*, Fourth Edition,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4. Maddux, R. B.(1988), *Team Building: An Exercise in Leadership*, Oakville, Ontario : Crisp Publications.

15. Mizuno, S.(1988), *Management for Quality Improvement*, Cambridge, MA : Productivity Press.
16. Nakajima, Seiichi(1988), *Introduction To TPM: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Productivity Press.
17. Nohriam, N., and J. D. Berkley(1994), "Whatever happened to the take-charge manner?"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pp. 128~137.
18. Singh, Ajit(1992), "ISO 9000 : An Opportunity or a Nightmare?" Productivity, Vol. 33, No. 1, April~June, pp. 110~112.
19. Spendolini, Michael J.(1992), *The Benchmarking Book*, AMACOM.
20. Tenner, Arthur R. and Irving J. Detoro(1992), *Total Quality Management: Three Steps to Continuous Improvement*,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21. Ztkmund, William G.(1997), *Business Research Methods*, Fifth Edition, Dryden.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Quality Factors and Quality-Related Programs

Ahn, Young-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ffect of quality factors and quality-related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quality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rms. Second, the three most important factors, considered by the managers, among Feigenbaum's 9M are men, markets, and management. But,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is material. Third, managers consider quality certifications, customer satisfaction, quality circles, statistical methods, and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as the most important quality improvement programs. But the programs used by the firms which are very quality competitive are statistical methods, process control, concurrent engineer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Finally, but not the least important, high quality brings high sales, high profit, and high return on equity.

Key Word : Feigenbaum's 9M